

발간등록번호

11-B090045-000002-10

[www.rrc.go.kr](http://www.rrc.go.kr)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2008 규제개혁백서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2008 규제개혁백서

“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발 | 간 | 사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선진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승 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인 여러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을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국정의 우선 순위로 삼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  
하여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출자총액 제한제, 농지 이용 제한 등  
기업·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핵심 정책성 규제도 개혁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특히 규제개혁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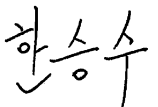
2009년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각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중산층과 취약  
계층에게 더욱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장차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산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미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을 입게 된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규제의 품질과 실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 일몰제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성공의 2009년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겠  
습니다.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선진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장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과 기업, 시민단체, 공직사회**  
모두로부터의 **신임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 병 선 민간위원장

선진일류국가의 실현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이명박정부에서 규제개혁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국정지표 중 하나로 “활기찬 시장경제”가 규제개혁의 지향점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시스템 경쟁의 시대, 제도경쟁의 시대인 21세기의 세계화시대에 과감한 규제개혁의 추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다시금 확고해진 것입니다.

규제는 정부가 일하는 기본방식의 하나이지만, 규제만능주의에 젖어서 규제로 쉽게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듯한 착각에 빠질 때 규제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규제목적의 고상함,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편익에 눈이 먼 나머지 규제로 인한 비용과 부담, 부작용과 역효과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 규제는 적정선을 넘어가고 폐해는 심각해집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규제들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물가상승을 야기하며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시들게 만듭니다. 더구나 집행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급기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법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인식 하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한 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특히 과거정부 하에서 거꾸로 간 규제마인드를 되돌리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강화된 규제심사체계 하에서 세계표준(global standard)에 아랑곳하지 않은 엉뚱한 규제, 시장경쟁의 방패막으로 악용되고 있는 규제,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의 강자에게 특권을 누리거나, 기득권에 안주하게 만드는 규제, 환경보호·국민건강과 안전 등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 행정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규제 등을 개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를 되살리고, 이 위기의 시간을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상주의와 결벽성에서 비롯된 혹은 완벽한 행정책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행정의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 각종의 비현실적인 규제기준들을 전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낼 넌센스(nonsense) 규제들은 이 기회에 확실하게 털어내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된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그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여론에 떠밀려 합리성도 현실성도 없는 규제들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일몰제의 적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규제의 신설과 강화 이전에 언제나 기존의 규제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특히 규제의 집행 현장에 대한 행정부처의 무관심과 방치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의 상충과 가치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과 기업, 시민단체, 공직사회 모두로부터의 신임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각계의 문제제기도 활발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08년도 규제개혁백서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 한 해의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과 추진성과를 낱알이 기록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북돋우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규제개혁실의 간부와 직원의 각별한 노력, 그리고 위원회 내외의 전문가 기고로 꾸며진 이 백서가 아무쪼록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재확인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선진인류국가,  
따뜻한 사회

규제개혁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 1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 2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 3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국민

규제개혁에서 시작합니다



- 1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방문
- 2 인천대교 건설현장 방문
- 3 우즈베키스탄의 알마릭 광업공사 및 인근 광산시설 시찰

200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Contents

## [ 제1장 ] 규제개혁 추진 개요 • 19

###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 20

1. 규제개혁의 의의 • 20
2.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 21

###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 24

1. 추진체계 개요 • 24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26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9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31

###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 33

1. 규제등록제도 개요 • 33
2. 등록대상 규제사무 • 33
3. 규제사무의 등록현황 • 34
4. 국제수준 비교 • 36

## [ 제2장 ] 기존규제의 정비 • 41

###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42

1. 개요 • 42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 43

### 제2절 국무총리실 자체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48

1. 개요 • 48
2. 과제별 주요 내용 • 48
3.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 86

## [ 제3장 ]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 91

### 제1절 개요 • 92

### 제2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 94

1. 기획재정부 • 94
2. 금융위원회 • 97
3. 공정거래위원회 • 133
4. 관세청 • 145

###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 147

1. 지식경제부 • 147
2. 중소기업청 • 179
3. 특허청 • 181

### 제4절 국토·해양 분야 • 183

1. 국토해양부 • 183
2. 해양경찰청 • 220

### 제5절 농림수산식품 분야 • 222

1. 농림수산식품부 • 222

### 제6절 방송통신 분야 • 259

1. 방송통신위원회 • 259

### 제7절 노동·환경 분야 • 292

1. 노동부 • 292
2. 환경부 • 321

# Contents

##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 364

1. 교육과학기술부 ● 364
2. 문화체육관광부 ● 405
3. 문화재청 ● 426

## 제9절 보건복지가족·여성 분야 ● 438

1. 보건복지가족부 ● 438
2. 식품의약품안전청 ● 511
3. 여성부 ● 532

##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 538

1. 통일부 ● 538
2. 외교통상부 ● 541
3. 국가보훈처 ● 543

## 제11절 일반행정 분야 ● 545

1. 행정안전부 ● 545
2. 소방방재청 ● 559
3. 경찰청 ● 573
4. 법무부 ● 576
5. 국무총리실 ● 583

## [ 제4장 ]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 587

###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 ● 588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요 ● 588
2.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 ● 589
3.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 ● 589

### 제2절 규제심사체계 개선 ● 591

1. 규제심사제도의 개요 ● 591
2.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 592
3. 규제심사체계 효율화 방안 ● 592

### 제3절 행정조사제도 운영 ● 594

1.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 594
2. 행정조사 정비 추진 ● 594
3. 행정조사 정비효과 측정 ● 596

### 제4절 규제정보화 추진 ● 597

1. 추진배경 및 경과 ● 597
2.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내용 ● 597
3. 향후 추진계획 ● 598

### 제5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 599

1. 개관 599
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OECD 및 APEC 국제회의 참석 ● 600

# Contents

## [ 제5장 ]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613

### 제1절 2008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 614

1. 평가 개요 • 614
2. 평가결과 총평 • 615
3. 항목별 평가결과 • 615

###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 618

1. 서론 • 618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 619
3. 2008년 규제개혁 과제 추진내용 및 평가 • 620
4. 결론 • 628

### 제3절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계획 • 630

1. 2009년 규제개혁 추진여건 • 630
2.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630
3.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 • 631

## 특별기고 • 635

###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실천전략 • 636

1. 십자로에 선 한국경제 • 636
2. 규제개혁이 경제회생의 열쇠 • 637
3. 규제개혁의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 638
4. 결어 • 640

### 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 641

- I. 행정조사와 표준비용 모형 • 641
- II. 행정조사 정비로 인한 감축효과 측정 • 652
- III. 감축효과 측정상의 한계 및 보완점 • 673

## 부록 • 677

###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 678

1. 행정규제기본법 • 678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691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701

###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 706

1. 규제개혁위원회 • 706
2. 경제분과위원회 • 708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714

##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 1 절    ➤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제 2 절    ➤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 3 절    ➤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 제1절 |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 1.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규제개혁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하므로 왜도난마와 같은 해결보다는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도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별도 비용없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광범위하게 규제개혁에 착수하였다. 2008년 3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립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역대 정부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던 규제에 대해 기업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대한 믿음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성장과 형평성의 이념하에 계속되어 온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저해했다는 판단 하에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넘겨주는 시장중심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1)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개혁일수록 이해관계집단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두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매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토지이용 효율화,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선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등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논의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제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소관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경제단체 의견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연내 완료대상 1,249건 중 908건의 규제개혁과제 추진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규제개혁 과제에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이명박 정부는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하나의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기업과 이해관계인을 폭 넓게 참여시키고 있다. 경제단체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받아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규제 개선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만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예산과 인력, 조직, 제도를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점검과 감사도 강화하였다.

**(3) 규제의 품질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분야를 비롯한 규제전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확대하였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알기 쉽게 개정하여 공무원이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충실하게 규제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가능한 한 부담이 적고, 실행이 용이한 규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정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규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다.

**(4)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

규제를 다루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없이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적으로 규제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2008년 중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항목 중 규제개혁으로 인한 성과의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의견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포상을 실시하였다.

## 제2절 | 규제개혁 추진체계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 (Tel. 02-2100-2275, woniroh@pmo.go.kr)

### 1. 추진체계 개요

#### (1) 추진체계의 변화

참여정부에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던 규제신고센터는 2008년 2월 폐지되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우선 순위를 두고,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 ('08.3월).

#### (2) 업무 추진체계

##### (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의 관리 및 평가, 규제 관련 제도의 운영 등을 담당한다.

##### (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설립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성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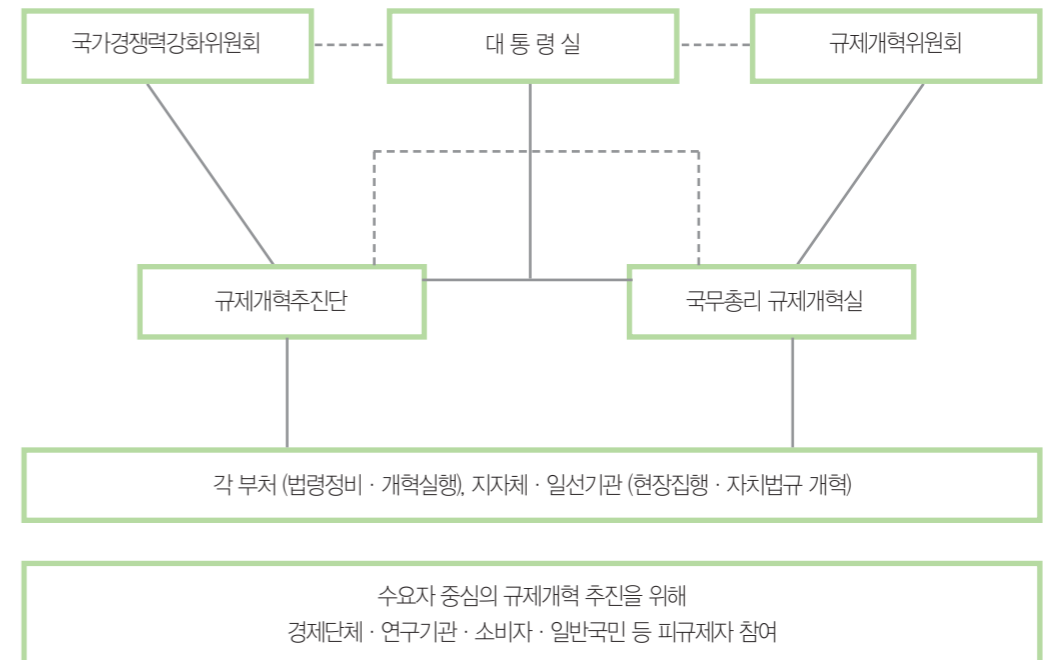
#### (다)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규제개혁추진체계도 ]



##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 (Tel. 2100-2276, hope002@pmo.go.kr)

### (1) 구성 및 기능

####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다)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

(2008년 9월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한 승 수 최 병 선	국무총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위원 (6)	강 만 수 원 세 훈 이 윤 호 조 중 표 백 용 호 이 석 연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구 분	성 명	현 직
민간위원 (17)	강 정 애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 병 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김 은 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김 유 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 정 호	자유기업원장
	노 형 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소장
	박 재 목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서 정 희	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
	송 보 경	서울여대 바름교육학부 교수
	심 영 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 상 현	영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장 지 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 진 승	KDI 국제대학원 교수
	정 우 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 운 열	서강대 부총장
	최 정 진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홍 은 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2) 회의운영

####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한다.

#### (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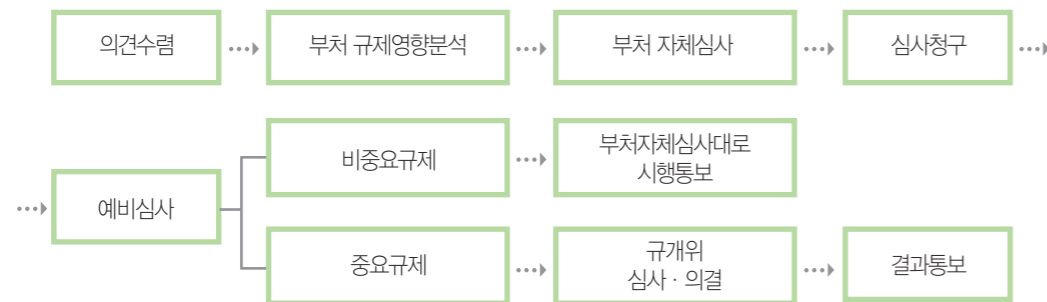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신설·강화규제 심사

①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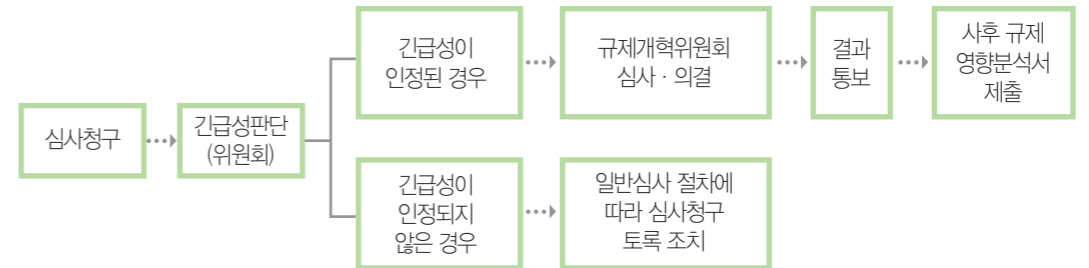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98.4.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나)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1·2분과위, 행정사회분과위로 3개 분과위로 운영하다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08. 4월부터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8~9인, 정부위원 4인 등 12~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과위원회 구성 ]

(2008년 9월 현재)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정진승(위원장) 강정애 김정호 서정희 심영섭 유상현 장지종 최운열 최정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물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17개 부처)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김병호(위원장) 김유환 김은미 노형민 박재묵 정우진 송보경 홍은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23개 부처)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2) 회의 운영

(가)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회의 출석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추진기구

(가) 규제심사위원회

①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나) 규제개혁 총괄부서

①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내 규제개혁 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구성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가)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나)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절 |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 (T. 2100-2276, hope002@pmo.go.kr)  
이승민 사무관 (T. 2100-2423, .....@opc.go.kr)

## 1. 규제등록제도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 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등록되는 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계획'을 수립('98.3.23)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99. 2.22 이후 인터넷(<http://www.rrc.go.kr>)에 규제등록 사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법령별로 분류된 통계와 함께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규제신고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검색 후 즉시 규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2. 등록대상 규제사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규제등록기준을 개편을 통해, 행위단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규제등록단위를 사업 단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규제의 내용·형식(근거법률)·주체·객체가 같은 일련의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의 목적이 동일하고 연관된 일련의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하여 주된 규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규제 등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합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 3. 규제사무의 등록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바, 등록된 규제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98.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고, 2007년 12월 말에 등록규제수는 총5,116건이었다. 2008년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개편된 조직에 따라 규제를 재등록하여 2008년 2월말 등록규제수는 총 5,247건이었고 이후 신설·폐지 등으로 총 61건이 감소하여 2008년 12월 현재 5,186건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 내역 ]

(단위 : 건, 2008.12.31 기준)

소관부처	'08.2월 등록규제수	규제수					증감 소계	'08.12월 등록규제수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합 계	5247건	59건	38건	61건	31건	188건	-61건	5,186건
국무총리실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공정거래위원회	125건	0건	0건	0건	0건	9건	-9건	116건
국민권익위원회	2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2건
방송통신위원회	35건	3건	0건	0건	0건	0건	3건	138건
금융위원회	757건	0건	0건	2건	0건	0건	2건	759건
법제처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국가보훈처	19건	0건	0건	0건	1건	2건	-3건	16건
기획재정부	120건	0건	2건	0건	2건	7건	-7건	113건

소관부처	'08.2월 등록규제수	규제수					증감 소계	'08.12월 등록규제수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통일부	18건	0건	2건	0건	0건	0건	2건	20건
외교통상부	18건	0건	0건	2건	0건	0건	2건	20건
법무부	70건	2건	0건	0건	0건	0건	2건	72건
국방부	7건	2건	0건	0건	0건	0건	2건	9건
행정안전부	149건	0건	0건	0건	3건	0건	-3건	146건
교육과학기술부	247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247건
보건복지가족부	605건	15건	9건	4건	3건	14건	11건	616건
문화체육관광부	157건	2건	1건	0건	0건	0건	3건	160건
여성부	12건	3건	2건	0건	0건	0건	5건	17건
지식경제부	292건	3건	0건	0건	0건	0건	3건	295건
환경부	368건	3건	3건	9건	1건	55건	-41건	327건
노동부	220건	0건	1건	1건	0건	1건	1건	221건
농림수산식품부	408건	7건	5건	3건	2건	5건	8건	416건
국토해양부	929건	5건	2건	0건	4건	3건	0건	929건
대검찰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국세청	9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9건
관세청	51건	0건	0건	0건	2건	13건	-15건	36건
조달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통계청	3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3건
병무청	6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6건
경찰청	97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97건
소방방재청	111건	12건	0건	14건	5건	24건	-3건	108건
농촌진흥청	6건	0건	0건	0건	1건	0건	-1건	5건
산림청	69건	0건	0건	0건	0건	2건	-2건	67건
기상청	8건	0건	0건	6건	0건	6건	0건	8건
중소기업청	37건	1건	0건	0건	3건	0건	-2건	35건
특허청	16건	1건	0건	0건	0건	0건	1건	17건
식품의약품안전청	109건	0건	7건	0건	3건	27건	-23건	86건
문화재청	29건	0건	4건	0건	0건	0건	4건	33건
해양경찰청	38건	0건	0건	20건	1건	20건	-1건	37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방위사업청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 4. 국제수준 비교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 (Tel. 2100-2292, smlee@pmo.go.kr)

### (1) OECD 규제관리시스템 지수

OECD 규제개혁 작업반은 회원국 규제관리시스템의 질적 수준 측정 및 향상을 위하여 '98년·'00년에 이어 '05년 세 번째로 규제지수(Regulatory Indicators) 작업을 추진하였다. '05~'06년에 걸쳐 각 회원국의 답변을 기초로 분류작업을 마치고,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21개 주제별 점수화와 비교하였다.

#### 【참고】 OECD 규제관리시스템 지수(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 각국의 규제신설 및 기존규제 관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규제정책·제도·품질관리 도구 등을 OECD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를 측정

- 21개 주제, 154개 세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회원국에 배포하고 각국이 작성한 답변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점수화·서열화한 결과는 아님
- 규제정책의 실행, 규제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각국의 규제 개혁 역량 확보 수단으로 활용 가능

### (2)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 평가

- 규제정책·과정·품질관리도구·규제성과평가 4개 분야에서 모두 OECD 지침에 따른 규제관리시스템을 매우 잘 갖추고 있으며, OECD가 제시한 규제관리시스템 항목의 95% 이상 실시중이다.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경우, 영국, 캐나다에 이어 가장 우수한 수준의 규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분야에서는 회원국 중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참고】 주요 선진국의 규제관리시스템 수준

- ◎ '98년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앙 규제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공공협의 과정을 보장하고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관리도구의 활용을 확산시키는 추세
- 의회의 규제관리, 규제정책의 성과평가 등은 전체적으로 아직 미흡
- ◎ 영국, 캐나다, 한국, 미국 등의 규제관리시스템은 OECD 규제원칙에 잘 부합하나, 일본, 프랑스 등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

### (3) 우리나라 규제관리시스템의 강·약점 분석

#### ① 규제 정책 (Regulatory Policy)

- 명시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채택하고, 장관급 책임자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등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OECD 원칙에 따라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규제개혁실의 풍부한 인적자원, 규제개혁 교육 실시 현황 등은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 그러나 의회 내에 제안된 법률(규제)안의 품질을 검토하는 상시 전담기구가 없고, 규제정책 요소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의회와 사법부의 역할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정부적 차원의 명시적 규제정책</li> <li>▷ 다른 정책과의 연계</li> <li>▷ 규제감독기구의 역할</li> <li>▷ 규제개혁 교육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와 사법부의 역할</li> <li>- 제안된 법률안의 품질검토</li> </ul>

② 규제 과정 (Regulatory Process)

- 입법계획이 공개되고 입법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규제입안 과정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협약이 이루어지는 등 전체적인 규제운영 과정이 투명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매우 우수한 편이다.
- 특히, 법률의 제·개정 계획 공개(법무부), 연간 규제정비계획의 공표(규제개혁위원회) 등은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캐나다, 미국 등과 함께 규제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영국·뉴질랜드(12주)·미국(8주)·캐나다·일본(4주) 등과 비교하여 상당히 짧은 것(20일)으로 지적된다.
- 또한, 공공협약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정부의 서면답변 의무가 없는 점, 협의과정의 품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위 법령의 입법계획 공개</li> <li>▷ 상·하위 법령의 입안절차 표준화</li> <li>▷ 누구나 공공협약에 참여 가능</li> <li>▷ 법률 및 규제 목록의 공표</li> <li>▷ '쉬운 용어' 사용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li> <li>▷ 공공협약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정부의 서면답변 의무</li> <li>▷ 공공협약 과정의 품질 모니터링</li> </ul>

③ 규제품질도구 (Regulatory Quality Tools)

- 규제영향분석, 단일창구를 통한 인허가 등 행정간소화, 행정부담 측정·감축, 규제의 검토 및 업데이트 등 규제품질관리 도구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를 통해 연간 약 30%의 규제초안을 수정한 것, 시장변화에 뒤처지는 규제 감축프로그램, 「중소기업법」 상의 승인간주 규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반면, 규제영향분석의 영향평가 범위를 위험 분석, 시장 개방·중소기업·특정사회집단 영향평가 등으로 확장하고, 규제의 누적부담을 측정하는 작업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위 법령안에 대한 RIA 실시</li> <li>- 비용편익 분석의 실시</li> <li>- RIA 결과의 공개</li> <li>- RIA가 규제안 수정에 미치는 효과평가</li> </ul> </li> <li>▷ 행정간소화 및 행정부담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적 목표 설정</li> <li>- 단일창구를 통한 인허가 발급</li> <li>- 국가차원의 인허가 수 파악·감축</li> </ul> </li> <li>▷ 규제검토 및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li> <li>- 주기적 검토 및 표준화된 평가</li> <li>- 규제일몰제도 활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평가, 시장개방·중소기업·특정사회집단 영향평가</li> </ul> </li> <li>▷ 행정간소화 및 행정부담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누적으로 인한 부담 측정</li> </ul> </li> </ul>

④ 성과평가 (Assessing Performance)

- 규제정책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규제의 성과측정에 있어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규제성과 평가에 있어서 가장 앞선 선진사례로 나타난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정책의 핵심요건 준수여부 평가</li> <li>▷ RIA 요건 준수여부 평가</li> <li>▷ 규제정책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평가</li> </ul>	

(4) 평가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규제과정, 규제품질관리도구, 규제성과평가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OECD 지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규제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회원국들의 진단결과와 비교할 때, 영국, 캐나다에 이어 가장 우수한 수준의 규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다만, 현재의 규제관리시스템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규제 검토에 있어서 의회 역할 강화, 상대적으로 짧은 입법예고 기간 연장, 정부의 서면답변 의무화 등은 지난해 OECD 모니터링 권고사항과도 중복되므로 중장기적인 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우리가 미흡한 분야로 나타난 '의회의 규제안 검토', '공공협약시 정부의 서면답변 의무화' 등의 경우, OECD 회원국 전체의 실행률도 20% 미만

○ 앞으로는 잘 구축된 규제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위험분석·시장개방영향평가·중소기업영향평가 등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분석, 비용의 계량화 등에 있어서 분석의 질을 제고해야하며, 규제과정에서 공공협의 과정의 제도화를 통해 행정재량을 축소하고, 협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공협회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 1 절    ▶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제 2 절    ▶ 국무총리실 자체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제1절 |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개선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 (Tel. 2100-2275, woniroh@pmo.go.kr)

## 1. 개요

새 정부 규제개혁방향을 반영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2008년 3월,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도 기존 규제의 정비는 중점관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중점관리과제는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 또는 단일부처 소관 규제라 하더라도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개혁 과제를 의미하고, 그 외 단일 부처 소관 과제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과제는 일반과제로 추진되었다.

과제발굴은 현장점검, 전경련 건의과제,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루어 졌다.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토록 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 된 대기업 · 금융규제 등 정책성 과제도 포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의 건수 보다는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친화적 규제대안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두어 규제를 발굴하였다.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파악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였는 바, 존치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폐지하되 부작용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품질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규제개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규제개혁 수혜자 단체와의 협조, 효과적인 교육 ·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월별로 추진상황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 가. 토지이용 분야

- ① 산업단지 개발시 2단계 계획절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는 등 개발절차를 간소화 (산업단지 특례법 제정)
- ② 공업지역에서의 준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현행 70%이하)을 80%이하로 상향조정
- ③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10km 이내로 축소 (15km → 10km)
  - 군사분계선 남방 25km 이외 지역도 보호구역 조정
- ④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장관승인절차 생략, 약 30여일 기간단축)(농지법시행령 개정)
- 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농지법시행령 개정)
- ⑥ “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없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립기간을 1~2년 정도 단축
- ⑦ 농지전용허가 권한위임 확대 (농지 전체면적 178만ha 중 50만ha 위임효과, 처리기간 30여일 단축)(농지법시행령 개정)
- ⑧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가공처리시설 면적확대 3천㎡ → 1만㎡, 농기계 보관 시설, 태양광발전설비 등 설치 허용 등)(농지법시행령 개정)
- ⑨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 적용 완화 (농지법시행령 개정)
- ⑩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발에 제한이 없는 산지 확대 (13만ha, 산지구분도 고시)

### 나. 창업 및 공장설립 분야

- ①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으로 공장설립기간 단축 (건축법시행규칙 개정(08.12.11))
- ② 시 · 군 · 구의 자의적 판단의 소지 있는 입지 관련 규정 삭제(공장입지기준 고시 개정(08.6.30))
- ③ 창투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 완화(50% →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 ④ 사업전환지원대상 업종 제한 폐지(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 허용업종 확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⑥ 공장등록시 구조안전진단 의무 완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⑦ 정책자금 지원체계 단순화(집행장구 일원화, 11개 → 1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 개정)
- ⑧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조사 개선(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다. 공정거래 분야**

- 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2조원 이상 → 5조원 이상) 상향조정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②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 상향 (자산·매출액 1,000억원 → 2,000억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③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④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적용 예외 인정(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라. 관광 등 서비스 분야**

- ①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화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등 22건의 과제 완료
- ② 골프장 입지·설립규제 개선
  - 사전환경성 검토시 산지 경사도 규제 완화 (골프장의 중점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산림·수림지 확보비율 및 시·도별 총 임야면적 대비 총 골프장 면적 비율 폐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③ 물놀이시설 (워터파크) 입지 지역 규제 완화 (건축법시행령 개정)
- ④ 관광극장식당업 지정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⑤ 기존 관광호텔 회원 모집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⑥ 한류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연예인 국내활동 제한 완화 (외국인체류 관리지침 개정)

**마. 환경 분야**

- ①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완화 (광역상수원 20km, 취수장 15km 이내 → 취수장 7km이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 ② 농공단지 입지 금지업종 완화 (61개 → 30개 업종)(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개정)
- ③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평가 지원 (6개월 내 산업단지 승인완료 지원)(산업단지 환경성 평가매뉴얼 보급 등)

- ④ 소규모 공장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계획관리지역내 5천㎡ 미만)(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
- ⑤ 자연공원 내 콘도 설치 허용 (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통보 완료)
- ⑥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제도 폐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바. 의료·보건 분야**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규제 특례 도입 (08. 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② 개량 신약의 건강보험 등 재절차를 간소화하여 약가 인하 및 건강보험 재정절감,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 활력 기대 (08. 12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 ③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제3자에 의한 수입 화장품의 국내 반입 (병행수입) 허용 (08. 12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④ 의약품 인·허가 프로세스 재설계로 고객 불만요인 중점관리

**사. 금융 분야**

- ① 금융규제 전수조사 및 존치필요성 여부 재검토 (08. 3~08. 7)
- ② 온라인 윈스탑 민원처리시스템 개통 (08. 7. 1)
- ③ 보험회사의 해외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08. 6)
  - \* 보험회사 전체 자회사 소유 주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
- ④ 금융투자업 진입 (인가, 등록 등) 단위 세분화 및 자본금요건 완화,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장외파생거래 제한 완화 등 영업활동 규제 완화 (자통법 시행령 제정, 08. 7)

**아. 노동 분야**

-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검정제도 개선 및 직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② 직장여성 출산휴가급여 지급 절차 개선 (고용보험법 개정)

### 자. 방송통신 분야

- ①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 사용 사업자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 완화 (3조원→10조원) (방송법 시행령 개정)
- ② 결합상품 출시에 따른 요금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결합상품 이용약관 심사 기준 및 절차 완화 (고시 및 지침 개정)
- ③ 이동통신사업자 변경시에도 동일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WCDMA USIM Lock 해제 (고시 개정)
- ④ 휴대용 무선국 개설 절차 간소화 (허가제 → 신고제) (전파법 시행령 개정)

### 차. 주택건축 분야

- ① 무허가 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지급 제한
  - 무허가 주거용 등에 입주한 세입자도 허가난 건축물 세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 ②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율을 장려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지원
- ③ 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 완화
  - 조성원가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자 등 혜택

### 카. 외국인투자 분야 및 기타

- ① 외국인 투자 이행조건 규제 완화
  - 입주계약시 사업계획 및 투자 이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08. 7. 23)
- ②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 ③ 지자체 경쟁 입찰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및 부담 완화
- ④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 타. 국민편의 제고

- ①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②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법 개정)
- ③ 민원구비서류 감축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
- ④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 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도 확대운영 방안 수립 시행)

## 제2절 | 국무총리실 자체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 (Tel. 2100-2275, woniroh@pmo.go.kr)

### 1. 개요

국무총리실은 2008년 중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건의 중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 (구)규제개혁 기획단 전략과제 중 이행이 지연되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2008년 중 국무총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과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규제개선방안, 소규모 건축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 총 8건이다.

### 2. 과제별 주요 내용

#### 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규제개선 방안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 (Tel. 2100-2320, kwjyjs@pmo.go.kr)

##### (1) 추진 개요

###### ① 추진 배경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1월 이상 출국 요건이 있어, 사업주는 인력활용상 제약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사정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재입국이 어려우며,
-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사업주의 행정불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 초래

##### ② 기본 방향

-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적정 외국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약 요건 완화

##### (2) 세부 개선과제

###### ①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1월 이상 출국 요건이 있어, 사업주는 인력활용상 제약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사정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재고용시 1월 이상 출국 요건을 생략하고,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 내에서 재고용 허용 (재고용은 1회만 허용)
  - 추진일정: 법률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 제출 ('08. 11. 3) 중

###### ② 근로계약기간 1년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각종 신고(고용연장·체류연장)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짧은 근로계약기간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일정 : 법률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 제출 ('08. 11. 3) 중

###### ③ 외국인근로자 도입기간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력 신청부터 사업장 배치까지의 소요기간이 사업주 불만 요인으로 지적

※ 해외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할 경우 평균 79일 ('07년)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법무부 노동부간 전산연계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 단축 (37~41일 → 21 ~ 30일)
- 추진일정 : '09년 1/4분기 중 프로그램(EPS) 개발 예정

④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산재 · 질병 · 부상 · 임신 · 출산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근로자 불만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업무상 재해 · 질병 · 부상 · 임신 · 출산 등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2개월 까지 출국을 유예
- 추진일정: 법률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 제출 ('08. 11. 3) 중

나. 소규모 건축 관련 규제개선 방안

집필자 : 정동혁 사무관 (Tel. 2100-2296, bapolok@pmo.go.kr)

(1) 추진 개요

① 추진 배경

-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절대 다수(89.4%)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관련 규제는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는 대표적 영역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② 기본 방향

- 소규모 건축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야기해온 절차의 간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2) 세부 개선과제

① 소규모 건축행위의 군부대 사전협의 개선 (국방부)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건축물의 개축 · 재축 · 대수선 등의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의 사전협의 생략 가능

※ 군부대 사전협의 생략범위(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① 기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 재축 · 대수선, ② 농림어업 · 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 건축물로서 1가구당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그 울타리의 설치, ③ 입목의 간벌 · 택벌 · 피해목 벌채 등

- 그러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인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군부대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사례 빈발

- 개선방안

- 건축법상 신고대상,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명문화

※ 건축신고 대상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등

※ 건축법 제16조 제2항 상의 경미한 신고사항 :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등

②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물을 설치·증설하는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등의 허가 필요
-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건축지연 발생

- 개선방안

-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지침」마련 등을 통해 경미한 건축행위는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위임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시 토지소유자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등 생략

③ 전면도로에 의한 건물높이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높이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피로티 높이가 건물 높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로구역내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전면도로에 의해 높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피로티 높이도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적용시에도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과 같이 피로티 부분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

④ 발코니 확장을 위한 동의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신청 하도록하고 있음
- 세입자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주민 갈등이 있는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가 어려워 불법

확장 및 이에 따른 이웃간 분쟁 발생 빈발

- 개선방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당해 동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기준 완화

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일정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등\* 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건축법 제23조) 건축신고시 배치도·평면도 등 기본적인 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규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과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등

- 그러나 관행상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허가에 비해 용역비용이 낮아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낮아 부실화되어 보안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가중

- 개선방안

- 건축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주의 신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⑥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 작성·제공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권자나 민원인들이 건축허가 관련기준 및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일반국민은 건축관련 법령정보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유의사항, 건축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개선방안

- 건축과정별 유의사항·관계법령·분쟁사례·서식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를 작성

- 건축행정편람을 확대개편하여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⑦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이 시공자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 개선방안

- 일반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용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

⑧ 소규모 건축물 녹화를 위한 권장설계도서 작성 및 보급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면적 1000㎡미만 중소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 사용 승인 후 조경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단속이 반복

- 개선방안

- 한정된 대지안의 조경보다 건축물의 옥상·발코니·측벽을 활용하여 조경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권장설계도서 작성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

⑨ 소규모 건축물의 표준설계도서 작성·보급 활성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일정 조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이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85㎡ 미만의 증·개축 또는 재축,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경우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등은 구조가 단순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손쉽게 건축할 필요가 있으나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개선방안

- 표준설계도서 대상건축물을 확대(농어업용 고정식온실)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표준설계도서’를 제정·보급하도록 독려

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개선 방안

집필자 : 박영두 서기관 (Tel. 2100-2279, mrrng@pmo.go.kr)

(1) 추진 개요

① 추진 배경 및 목적

- 민생경제 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경제 최대의 생산자이자,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 관련 규제를 재검토·합리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제활성화 도모

(2) 세부 개선과제

① 즉석판매 제조·가공 대상식품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법 관련법령에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대상 식품을 Positive 방식으로 제한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11)하여 총 15개 식품군에 대해 즉석판매 가능식품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매 금지
- 백화점 등의 영업소 내에서 제조·가공한 양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으나, 대상 식품이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다양한 제품개발을 저해

- 개선방안

- 증석판매 제조·가공대상 식품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확대하여 안전성 확보가 어렵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증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기존 Postive(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방식에서 Negative(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영업자들의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 취향에 적합한 제품 공급 가능

② 공인 중개업자 등의 교육이수 의무 완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공인중개사무소 개업을 위해서는 33시간(4일)의 실무교육 이수를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상당기간 경과 후 개업(개업율 27%)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서민 등 부동산 중개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및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개업 시점의 실무교육 필요
- 현행 교육이 강의위주의 이론수업, 집합교육으로 되어 있어 현장실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집합교육에 따른 불편 등의 지적이 제기

- 개선방안

- 우선 교육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교육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장기적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 검토
- 현행 집합강의식 교육을 보완하여 현장 실습과정, 인터넷 수강 등 교육품질 제고 및 교육자 부담 완화 추진
  - ▷ 강의수업 : 부동산 공법, 중개경영, 세법 등 관련법령과 사례중심으로 재편성
  - ▷ 현장실습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등 현장적응학습 실시
  - ▷ 인터넷강의 :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법 등 재택수업
- 부동산 경기에 따른 개업 및 휴·폐업율이 높아 중개사고 예방과 관련법령의 수시개정 등에 따른 교육수요로 교육자체의 폐지는 어려우므로 우선 최소한의 교육은 유지

- 기대효과

- 집합교육 축소(4일→2일)로 신규 개설자의 부담 경감, 불편 해소
  - ※ 교육생 부담 완화(추정) : 2일×130,000원(근로자 일당, 교통비 등) 23,000명(최근 3년 피교육자 평균) ≙ 60억원
- 현장실습과정을 통하여 전문 실무지식 및 경영 노하우 습득
  - ※ 개업 후 5년 이내인 공인중개사가 전체 공제사고의 50.9%

③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경신고제도 폐지 (보건복지가족부)

- 현황 및 문제점

-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개설 등록 등을 하고 근무하는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변동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에 따라 업소에 종사하는 안경사, 치과기공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개설자의 변경등록의 부담, 불편

- 개선방안

- 안경사 및 치과기공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개설자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케 하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
- 안경업소 등록 및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시 종사자 관련사항을 삭제

- 기대효과

-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개설자의 부담 완화, 시·군·구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④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도록하여 (농어촌정비법 73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가부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과 구별

- 농어촌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제 완화 필요

- 개선방안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지정제'에서, 사후적 규제인 '신고제'로 변경)

- 기대효과

- 신고제 도입시 농어촌민박사업 희망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행정부담 감축

※ 현행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7일, 신고제 전환시 즉시 처리

-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 효과

⑤ 연근해 어획실적 보고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 연근해어업의 어획실적 보고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이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토록 제도화(00. 1. 31)하고, 어업자원은 공공자원으로 TAC (총허용어획량제) 제도 운영 등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실적 보고제 운영

※ 규제완화차원에서 1999년 연안어획물의 위탁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 판매를 허용하여 어획실적보고 필요

-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무선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저학력의 영세 어업인이어서 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른 불편 초래 등으로 보고의무 면제 필요성 지속 제기

- 개선방안

- 5톤미만 연안어업 일부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어항별 조사요원 확충 등 수산과학원의 조사기능을 보강하여 장기적으로는 보고제도를 폐지

※ 5톤 미만 연근해 어선중 어획강도가 높거나, 어업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고의무 배제

※ 어업자원관리를 위해 정부의 능동적 자료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과학원의 조사범위와 기능 보강

- 기대효과

- 전체 보고대상 어선(6만4천여척)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어선(3만여척, 47%)에 대해 보고의무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영세, 고령 어업인의 불편 해소 기대

⑥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신청자격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신청 구비서류에 「공장입지 기준확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 연안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업체는 건축 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가 많아 공장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노후화된 500㎡미만 수산물가공업체 부지에 가공시설 사업을 희망할 경우 공장입지 확인서 발급이 곤란

- 개선방안

- 소규모 영세가공업체(건축연면적 500㎡미만)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장입지기준확인서」 제출사항을 개선토록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개정
- 현행 지침의 신청자격에 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 확보, 공장입지기준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연면적이 50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장입지기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09년도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기대효과

- 산지가공시설 신청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업체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참여 확대 및 신규사업 참여가 용이
- 산지가공시설사업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수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으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 향상



## 라. 그린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집필자 : 김기출 사무관 (Tel. 2100-2293, kmakkc@pmo.go.kr)

### (1) 추진 개요

#### ① 추진 배경

- 고유가 및 상용화 기술개발의 가속화로 전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07년말 현재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1차 에너지 대비 2.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동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② 기본 방향

-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공해가 배출되지 않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2) 세부 개선과제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지역 확대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 기준)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의 설치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전 국토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에도 신·재생 에너지 설치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08 하반기

#### - 기대효과

- 지자체,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입지규제 완화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지역이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기대

#### ② 신·재생에너지 산지전용 관련 규제 완화 (산림청)

#### - 현황 및 문제점

-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5부 능선 이하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풍향이 좋은 고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5부 능선 이하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사항으로 규제 완화 필요
- 경관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여건상 5부 능선 이상 산악지형에 설치가 필요한 풍력발전의 경우 동 규정에 대한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용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개정 : '08. 8

#### - 기대효과

- 풍속 등 사업 여건에 적합한 고산지역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풍력발전 사업의 발전 촉진

#### ③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개선 (국토해양부)

####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의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건축연면적 3천㎡ 이상 및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의 경우)
- 관리계획의 수립에서 장관 승인까지 1년 가량 소요되는데, 기존 건축물 상부(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형질 변경 등 구역훼손행위가 미약하므로 예외 인정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시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지침’ (국토해양부훈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동 시설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토록 하는 방안 추진 : '08 하반기

– 기대효과

-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

④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권자 :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신·재생 에너지 관련시설을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하도록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14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 '08 하반기

– 기대효과

-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의 적극 활용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비 징수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추진 가능

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규정 명확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전기공급시설’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전기공급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명확히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 마목 (전기공급시설) 규정 개정 : '08 하반기

– 기대효과

- 자치단체의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유권해석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⑥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수익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임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3년 제한에 대한 예외 필요
- 3년 초과시 추가연장을 해야 하나 추가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3년 이내'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국·공유재산 매각 등) 개정 : '08하반기

- 기대효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 3년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자유로운 임대계약이 가능
-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자는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

⑦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 풍력발전시설 및 조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조력발전사업의 사업기간이 30년 이상인 특성을 고려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10년으로 단축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해상풍력발전 및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3년 이상 장기간 또는 시설의 존치시까지 허가 허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의2(점·사용의 허가기간) 개정: '08 하반기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불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 개정 : '08 하반기

마.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 규제 개선

집필자 : 이정기 서기관 (Tel. 2100-2283, hansan@pmo.go.kr)

(1) 추진 개요

① 추진배경

- 토지 및 토지를 활용한 주택·건축 활동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우리나라는 한정된 좁은 국토에 비해 높은 인구밀도로 토지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국민들의 토지 이용 및 주택·건축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적기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국토의 85.9%가 산지·농지로서 주거용, 공업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도시용지는 국토면적의 6.4%에 불과

[ 한국의 토지이용 현황 ]

'07. 12현재

(단위 km<sup>2</sup>, %)

국토면적	농지	산지	도시용지				하천	기타
			소계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99,720	21,024	64,638	6,350	2,611	673	3,066	2,830	4,875
100.0	21.1	64.8	6.4	2.6	0.7	3.1	2.8	4.9

※ 도시용지는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 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용지

※ 기타는 주차장, 주유소, 염전, 광천지, 제방, 창고, 유원지, 체육용지, 잡종지 등

- 따라서 토지 및 이를 이용한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절차의 개선과 불편사항의 해소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토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 도모

② 기본방향

-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제의 최소화 및 현실 여건 반영으로 부담 최소화

(2) 세부 개선 과제

①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 의제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 공장 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 처리(동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동시처리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나,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건축계획서 등 11종으로 과다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1만㎡규모 공장 설립시 약 3개월)되어 실제로는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동시 의제처리 효과 감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공장설립 승인 신청(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계획서 등만 제출하고 실내마감도 등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 '08. 10

※ 개선시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마련 시간 : 종전 3개월(11종) → 1.5~2개월(7종)

[ 개선방안 시행시 제출 서류 비교 ]

구분	현행	개선방안
공장설립 승인 신청	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건축허가 신청 (공장설립승인 신청과 동시 신청의 경우)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
착공신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시방서,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 아울러 건축허가 의제처리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명칭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에서는 '설계도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기본설계도서'라고 호칭하는 등 용어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개정 : '08. 10

- 기대효과

- 건축허가 동시처리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감축함으로써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의 동시 처리를 촉진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는 등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

※ 착공시까지의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설계도서의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마련 시간 단축(종전 3개월 → 1.5~2개월) 및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7일) 단축

② 도로점용료 부과 방식 및 도로연결·점용허가 개선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규정상 주택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전액 면제

-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이 없어 점용료를 전액 부과

※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주로 상가 등)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대규모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4층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해당

※ '08. 7월 현재 전국 5층이상 아파트·상업 복합건물의 세대수는 총 203천여 세대

-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예를 들면, 도로에 주유소 등의 진입출로를 연결하기 위해 도로연결허가를 받고 도로 점용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도로법 시행령」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점용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예: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이 70%, 상가면적이 30%일 경우 70%) 만큼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개정 : '08. 12

-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연결허가를 일원화

☞ 「도로법」 제64조 개정 : '08. 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대효과

- 합리적 점용료 징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도로점용료 부과 방식 개선시 점용료 감면 사례(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강남구 논현동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면적이 114㎡이고, 주택과 상가의 비율이 7:3일 경우, 년 19,648천원 감면

〈현행〉 9,824천원(㎡당 개별 공시지가)×114㎡×0.025=년 27,998천원

〈개정〉 9,824천원(㎡당 개별 공시지가)×34㎡×0.025=년 8,350천원

※ 서울시 '08년도분 연간 도로점용료 : 1,200억원

- 도로연결허가 및 점용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③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방식 개선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그 보관시설의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대신 이동식 수거 용기를 설치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요인이 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공동주택 지상층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개정 : '08. 12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공동주택의 미관 개선과

악취 발생 감소 등 주거환경 향상 도모

④ 보전산지 안에서의 진입로 개설 허용 (산림청)

- 현황 및 문제점

- 보전산지 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병원 등의 진입로 개설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은 가능하나, 공장·병원 등의 부대시설로서의 진입로 개설은 산지전용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보전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시설면적의 일정한 범위(10~20%) 내에서 그 시설의 부대시설로 진입로 설치를 허용

☞ 「산지관리법」제12조 개정 : '08. 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대효과

-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산지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을 도모

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개선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공원 내의 우체통, 공중전화실, 쓰레기통 등의 소규모 공원시설도 도시관리계획인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반영한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1~2개월) 소요
- 도시공원내에서의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대상 및 기준이 지역 현실에 부적합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미만의 변경, 화장실·쓰레기통 등 33㎡이하의 시설설치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 : '08. 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녹지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개정 : '08. 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대효과

- 공원시설의 신속한 설치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실정 및 여건에 맞는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⑥ 축사 건축 관련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농가에서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축사 규모에 따라 건축법상 상주 감리를 의무화

※ 축사는 대부분 철제빔·압착판넬 등을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간결한 구조로 시공되나 일반 건축물과 같이 상주 감리 운용에 따른 감리비의 지출로 농가의 축사 건축비 부담이 가중

- 또한, 모든 축사의 건축시 건축사의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06. 5.8 이전)에는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건축시 허용되던 건축주의 직접 설계도 작성도 미 허용

※ 건축법시행령 개정전('06. 5. 8)에는 농가가 직접 설계도를 작성·신고 가능

-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축사 포함)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내 축사 건축이 곤란

※ 소 200두 또는 돼지 2,000두 사육시 2천㎡ 규모의 축사 필요

※ 농지에서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는 농지 확보는 어려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축사 건축은 비상주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 '08. 12

-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 '08. 12

- 농지내에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하는 규정 예외 인정 및 농지내에 설치된 기존 농로(3~4m)를 활용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 '08. 12

– 기대효과

- 농지 내 축사진입 완화 및 설계·부지확보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대상 예외 인정으로 설계비 절감

※ 400㎡의 축사 건축시 최대 5백만원(㎡당 12,000원×400㎡) 정도 절감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제완화로 농지내 축사건축이 보다 용이
- 비상주 감리 전환으로 5천㎡이상의 축사를 건축하는 농가의 축사건축비용 절감

※ 축사 5천㎡건축시 감리비 절감액(추정) : 6월(공사기간)×1명(상주 감리원)×월 300만원=1,800만원

바. 해양·레저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

집필자 : 정동혁 사무관 (Tel. 2100-2296, bapolok@pmo.go.kr)

(1) 추진 개요

① 추진 배경

– 요트·크루즈 등 레저선박 제조산업 등 해양레저산업은 가전·IT 등 여타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크고, 마리나 사업·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도 관련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 풍부

– 세계해양레저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서 적극 개척해야 할 분야이므로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비되어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

② 기본 방향

– 해양레저산업을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레저선박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등 공급확대, 레저인구 저변확산 등 수요확대를 동시 추진 필요

– 해양레저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등 범정부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

(2) 세부 개선과제

① 레저선박 제조·검사 기준 현실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레저용 선박에 맞는 별도 기준이 없고 일반 상선·어선위주의 제작기준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레저선박제작 곤란

- 개선방안

- 선박제작시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레저용 선박 (Pleasure Boat) 개념을 도입,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 (국제표준기준) 인증 수준으로 제작기준을 대폭 개선

※ 개정대상 기준 : ①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② 선박설비기준, ③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④ FRP선의 구조기준, ⑤ 선박기관기준

※ 개선 예 : ①선체의 늑골 (Frame) 간격 (현행 기준 : 500mm)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에 합격하면 인정 (FRP선의 선체구조기준), ②현재 2m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원실의 높이 기준을 비상시 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 (선박설비 기준)

②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선박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조검사시 선체선도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곤란

- 개선방안

- 12m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 선체선도 제출 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

※ 선체선도 : 선박의 층별 단면도로서 모두 합치면 선박의 전체 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외국 제조회사들의 경우 기업비밀로 분류하고 제품판매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바 추가비용 발생 및 검사절차에 차질 초래

③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유선장 등 부선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유통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됨

- 개선방안

- 유선장 등 부선위에 설치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상 등록· 등기대상에 포함

※ 부선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업계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유통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강에 추진 중인 '플로팅 아일랜드'처럼 향후 대형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절한 재산권 행사 방법 마련 필요

④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수면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비율의 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점· 사용료 = 점용면적 × 인근토지 공시지가 × 3%(간접점용의 경우는 0.5%)

- 개선방안

- 마리나 시설을 조성·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50/100 감면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⑤ 수상교통수단 옥외 상업광고 허용(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 육상교통수단은 상업광고가 허용되나, 유람선 등 수상교통수단은 자사광고외의 상업광고는 금지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자동차· 비행기· 도시철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람선과 같은 수상교통수단의 외벽 등에도 상업광고를 허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⑥ 자연공원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 허용 (환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유선장은 명시되어 있으나 요트계류장은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존재

※ 요트계류장이 유선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요트계류장 설치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는 것이 관행임

- 개선방안

- 공원시설에 요트계류장을 명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하여 자연공원에 요트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⑦ 공유수면 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면허권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매립면허) →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함
- 기본계획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바, 면허단계에서 협의한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임

※ 공유수면 매립 추진 절차 : 기본계획수립 → 매립면허 → 실시계획 승인 → 준공검사

- 개선방안

-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행하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여 해양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절차 간소화

⑧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 시가 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증가되고 있어 레저선박 구매의욕 저하

※ 현재 고급선박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10%를 취득세로 부과(일반 취득세율은 2%)하고 있는 바, 보급형 레저선박의 국내 가격이 1억원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고급선박 분류 기준은 비현실적

- 개선방안

- 취득세 증가여부의 기준이 되는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상향 조정(5천만원 → 1억원)하여 부과세범위 축소하여 레저선박 수요 진작

⑨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해양경찰청)

- 현황 및 문제점

-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이상) 수상레저활동시 해양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 개선방안

- 신고서 제출을 인터넷, 팩스전송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⑩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국가하천점용 허가권 일원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점용허가권자(시장·군수)와 부유식 요트 계류장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권자(지방국토관리청장)가 이원화되어 처분간 불일치 현상 발생

- 개선방안

- 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점용허가권자(시장·군수)와 부유식 요트 계류장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권자(지방국토관리청장)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허가권자간 처분내용 불일치 해소

### 사.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 환경 관련 규제 개선

집필자 : 이정기 서기관 (Tel. 2100-2283, hansan@pmo.go.kr)

#### (1) 추진 개요

##### ① 추진배경

- '08. 10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1,171천명에 달하여 전국 주민등록 인구 대비 2.37%를 차지, 이중 취업 등의 목적으로 90일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866천명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체류 여건 개선 필요

[ 체류 외국인 추이 ]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10	2008.10
체류외국인 (명)	269,641	491,324	747,467	910,149	1,045,336	1,171,220
-장기체류외국인	(110,028)	(210,249)	(485,154)	(631, 219)	(738,072)	(866,607)
인구대비(%)	0.60	1.07	1.55	1.88	2.04	2.37

- 정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 거주 및 활동 편의 증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04. 3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대책"을 수립·추진 중

- 이러한 외국인의 활동 편의 증진 및 투자유치 촉진 노력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도가 40% 수준에 머무는 등 개선 여지 상존

※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생활·경영환경 만족도(2008.7. KOTRA)

- ▷ 생활환경 만족도 ('08) : 만족(42.6%), 보통(42.0), 불만(12.2), 무응답(3.2)
- ('06) : 만족(37.4%), 보통(37.0), 불만(25.7), -

- ▷ 경영환경 만족도 ('08) : 만족(28.8%), 보통(39.5), 불만(23.5), 무응답(8.2)
- ('06) : 만족(23.6%), 보통(48.2), 불만(28.2), -

- 따라서 생활·기업 활동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국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② 기본방향

-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 및 절차 등을 개선

#### (2) 세부 개선 과제

##### ①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이동 출입국서비스 확대 (법무부)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심사·등록·체류업무 관리를 위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개 출장소를 운영
  - 외국인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해야만 가능

[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08. 9)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경북	충남	기타	계
258,916	30,204	49,144	257,846	49,592	35,683	34,947	38,369	854,701

\* 등록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현황 ]

출입국관리사무소 (16)	출장소 (18)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청주, 여수, 의정부, 광주, 마산, 전주, 춘천	도심공항, 김포, 세종로, 울산, 감천, 오산, 평택, 포항, 대산, 광양, 목포, 통영, 사천, 거제, 군산, 동해, 속초, 고성터미널

- 거주지와 직장 근무지가 떨어져 있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변경 등 각종 업무\* 처리에 불편 초래
  - \* 외국인 관련 업무 :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등록사항 변경 등

- 원거리 외국인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균 주 1회 서비스에 불과

**[ 이동 출입국서비스 현황 ]**

- ▷ 개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
- ▷ 시행지역 : 서울 용산, 경기 성남·용인·평택·광주·안산·고양,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북 구미, 광주 하남, 경남 김해·양산
- ▷ 처리실적 ('08. 1~10) : 총 395회 출장, 54,400여건 처리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현재 전국적으로 주 평균 1회 시행하고 있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제도를 확대·시행 ('09. 1~) : 현행 평균 주 1회 → 평균 주 2회~3회
- 기대효과
  - 찾아가는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체류 외국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 편의 증진

※ 시행횟수 확대시 연간 100천여건 이상 처리 예상

**②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가격 산출방식 개선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 부지매입 등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줄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임대전용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 ▷ 정의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입주율('08. 9) : 13개 지역 4,504천㎡, 입주율 70.8%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면적 이하의 범위내로 하며, 임대 부지의 가격을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부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입주기업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예 : 부산 지사단지의 경우 조성원가('05. 11)는 178천원/㎡ 이었으나, '07년 공시지가가 306천원/㎡으로 1.7배 상승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 적용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당해 지역에 100% 입주할 때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적용

☞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에 반영 : '08. 12

- 기대효과
  - 임대가격 산정기준 개선으로 외투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③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신청시 대리인 지정 명령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시 자료 확인 및 보완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한 것이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보험회사

설립시에도 강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외국인이 보험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 「보험업 감독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 '08. 12

- 기대효과

- 외국인(사실상 외국 금융회사)이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승인 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 감소 및 외국인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

④ 버스노선도·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표기 및 영어방송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시내버스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의 경우에도 한글로만 안내, 주요 건물, 관광명소 등 버스노선·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영문이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

\* 버스정보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및 운행 중 자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시내버스 안 및 정류장의 버스노선도(안내판)에 영문표기,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어 안내방송 추가 실시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 지침 시달 : '09. 1

※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계획 수립·시행

- 기대효과

- 외국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도모 및 생활 만족도 제고

⑤ 철도 승차권 영문 표기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승차권의 출발 및 도착역은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나, 열차정보(KTX·새마을 등) 및 좌석정보(열차번호·호차번호·좌석번호 등)는 한글로 표시, 철도 승차권의 주요 내용이 한글로 표기되어 외국인들의 이용에 불편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승차권 규격 변경시 철도 승차권 정보의 영문 병기

☞ 교통수단별 승차권 규격 분석 : '08. 5월 완료

☞ 철도승차권 규격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등 마련 : '08.12

☞ 철도승차권 규격 변경 및 영어병기 시행 : '09.3

- 기대효과

- 외국인의 철도 이용 시 편의성 증대 및 생활 만족도 제고

⑥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간소화 (법무부, 행정안전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 및 신고증이 필요하나,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거소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영주권자의 국내 주민등록 말소 누락 등으로 이중 등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

※ 국내거소 신고시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에서 편의 제공

※ 현재 국내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고소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접수·처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개정 : '09. 7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

※ 업무이관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행안부(시·군·구)가 협의하여 추진

- 기대효과

-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국내 활동의 편의성 증대

※ '07년간 재외국민 약 7,500명 국내거소 신고

아. 청소년 연령 일원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집필자 : 송인현 사무관 (Tel. 2100-2317, ihsong@pmo.go.kr)

(1) 추진 개요

① 추진 배경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연19세 미만)과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 연령(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이 서로 달라 청소년들 및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

※ 연(年)나이 : 연(年)나이 개념은 특정연도에서 본인의 출생연도를 뺀 숫자로서, 우리나라의 '집나이(~살)'에서 한살만 빼면 연나이가 됨. 2009년 현재 1991년생은 생일에 상관없이 모두 연18세로서 청소년에 해당됨.

② 기본 방향

- 복지부가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을 개정하여 매체물과 관련해서는 현행 '연19세 미만'을 문화부처럼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2) 세부 개선과제

① 매체물과 관련된 청소년 연령을 '만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의 연령 차이로 인해 청소년 및 관련 업소에서 청소년 여부에 대해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고 단속상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국민불편과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체물(영화·비디오·게임 등) 부분과 관련된 청소년 연령을 일원화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준비중이며 '09년 상반기에 개정하여 '10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청소년 연령이 서로 달라 적용되지 못한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규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 실효성 있는 조치 가능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분류한 음란·폭력 영화·비디오 등을 복지부 장관이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고시 가능

※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고시된 음란·폭력 비디오 등은 일반 비디오와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 등

### 3.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집필자 : 이정기 서기관 (Tel. 2100-2283, hansan@pmo.go.kr)

#### 가. 개요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전화건의·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08. 2.29)하고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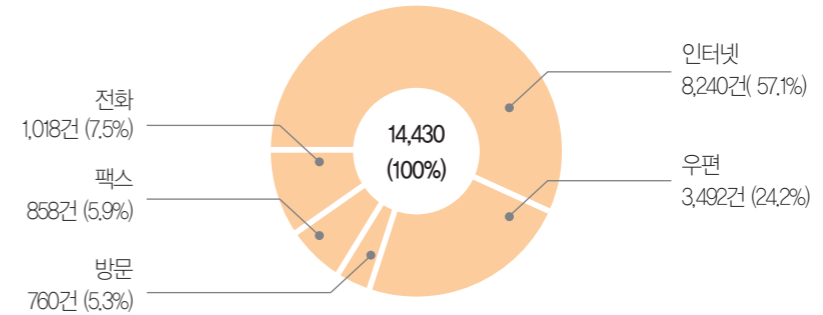
#### [ 행정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방법 ]

-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규제개혁실
- ▷ 전 화 : 02-2100-2283
- ▷ FAX : 02-2100-2289
- ▷ 인터넷 : <http://www.rrc.go.kr>

#### 나. 규제건의 처리상황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건의센터,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건의수렴 창구를 통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4,430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다. 그중 인터넷접수가 8,240건(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24.2%), 전화(7.5%), 팩스(5.9%), 방문접수(5.3%) 순이었으며, 특히 2008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건수의 93%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국민제안 비율이 갈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



2008년도에 접수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2,198건으로서 그중 2,071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127건은 처리중에 있다. 처리완료된 2,071건 중 67.8%에 해당되는 1,491건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개혁 의제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제도로써 일반화하기 어려운 580건은 정책참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 규제건의 처리실적 (08.1~12월) ]

접수건수	완 료			추진중	해소율
	계	해 소	정책참고		
2,198	2,071	1,491	580	127	67.8%

규제개혁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건의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된 1,491건 중 76%에 해당되는 1,137건은 법령 또는 제도개선으로, 16%에 해당되는 236건은 집행기관의 규제집행에 대한 시정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8%에 해당되는 118건은 단순 질의나 동일건의 성격의 건의사항으로 회신·처리하였다.

[ 규제건의 사항의 해소유형 (08.1~12월) ]

구 분	계	법·제도개선	집행개선	기타
건 수	1,491	1,137	236	118
비 율	100%	76%	16%	8%

규제건의 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 약 81%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규제건의 사항의 소관 부처별 분포 (08.1~12월) ]

구분	합계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타
건수	2,198	1,393	308	88	50	47	312
비율	100%	63.4%	14%	4%	2.3%	2.1%	14.2%

규제건의 사항은 일반 민원과 달리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의사항은 각 처리담당관들이 건의인의 입장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건의가 해소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08년도 건의건수의 89% 정도는 30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규제건의 사항의 처리기간 분석 (08.1~12월) ]

구분	합계	7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상
건수	2,198	566%	1,393	239
비율	100%	26%	63%	11%

다. 규제건의 주요 처리 사례

'08년도에 처리한 주요 건의 사례로서는 기본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강화 (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 포함 → 2/3이상 포함) 반대 건의는 동 강화 규정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시설이 차량에 설치되어 출고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격벽시설을 차량 출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지도사 업무대행범위와 관련,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동 도시락 용기를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주요 건의사항 처리사례 ]

건의내용	처리내용	소관 부처
기본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 소급 적용(주택법시행령 개정)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 소급 적용(주택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강화(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2/3이상) 반대	요건 강화 규정 철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알박기'방지책 마련	입주자 모집(현행: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가능)을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토록 요건완화(주택공급규칙 개정)	"
거실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까지의 이격거리(현행 최대 50m이하) 확대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장은 75m까지 확대(무인화 공장은 100m)(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
골프장이 호소·농업용 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 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에도 입지토록 완화	보존대상 판정기준을 현행 500m이내에서 300m 이내로 완화(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구역 중 지역현안사업 범위 확대(현행: 저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역현안사업의 부지로 입안된 지역은 모두 조정가능구역에 포함(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
시내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시설이 제작시 차량에 설치되어 출고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함	격벽시설을 차량 출고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중	"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내 2곳 이상 정해진 위치에 게시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택시운전자격증명은 현행대로 1곳에 게시하되, 뒷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하여 자동차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뒷좌석 부근에 부착토록 개선	"
선박의 선적증서와 검사증서에 선적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선적항 변경시 이증으로 건의를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음	선적항은 선박검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시 삭제 예정	"
투기지역내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기한 (현행 1년)연장 요청	처분조건부 대출의 대출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일 이전의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은행업 등 금융기관감독규정 개정 완료)	금융위원회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자금 대출 금지 폐지 요청	10.21 가계주거부담 완화 방침에 의거,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 기업자금 대출 금지 제도 폐지 (은행업 등 금융기관감독규정 개정 완료)	"

건의내용	처리내용	소관 부처
자녀 유학 관련 휴대폰 장기사용정지 신청시 출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동사의 행위 시정	현행 신청자 입증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동사 내부지침상의 사실증명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경영지도사 업무대행범위와 관련,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	향후 법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예정)	중소기업청
광해관리공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을 전산출력물로 인정하지 않고 수기발급만을 요구하는 것을 시정 요구	장애등급 변경시 기존 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수기발급을 요구해 왔으나, 이는 광해관리공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인키로 하고 전산출력물도 인정	지식경제부
농업보호구역 중 임야와 건물사이의 자투리 토지에 대한 농업보호구역 해제 요구	금년 법 개정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이 미미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완화 요구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책임제 활용제도로 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8.6.30)	환경부
공사장 건설소음 규제완화 또는 철회 요청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때는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 보정하는 것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중	"
육군 장교 보직 규정의 한의사 차별 조항 시정 *전문과의 치의는 전방 1년 근무후 교류 가능, 인턴만 마친 일반의와 한의사는 2년 근무후 교류 가능	개선안을 마련하여 '09.1.1부터 인사운영지침으로 시행하고, '09년 4월까지 육군규정 개정 추진	국방부
학교 급식의 직영전환 반대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경위 및 내용 설명	교육과학기술부

## 제3장 신설 · 강화규제의 심사

- 제 1 절 ➤ 개요
- 제 2 절 ➤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 제 3 절 ➤ 산업 · 에너지 분야
- 제 4 절 ➤ 국토 · 해양 분야
- 제 5 절 ➤ 농림수산식품 분야
- 제 6 절 ➤ 방송통신 분야
- 제 7 절 ➤ 노동 · 환경 분야
- 제 8 절 ➤ 교육 · 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 제 9 절 ➤ 보건복지가족 · 여성 분야
- 제 10 절 ➤ 통일 · 외교 및 국방 분야
- 제 11 절 ➤ 일반행정 분야



## 제2절 |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 1. 기획재정부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 (Tel. 2100-2292, smlee@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고철·철근의 매점매석금지 고시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유제품 매점매석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안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등, 강화 1건, 총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전체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쳤음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고철·철근의 매점매석금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8.3.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석유제품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 (1) 고철·철근의 매점매석금지 고시 개정안 (신설 1)

###### ■ 심사내용

- 고철 및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여 철근 가격급등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
  - ☞ 고철 및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여 철근 가격급등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이 2004년도 당시 같은 취지로 제정되었던 「고철및철근매점매석행위고시」의 규제수준과 동일하거나 업계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기준을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 심사내용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도 도입하되,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시 다른 제한경쟁사유(실적, 지역제한 등)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근거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여하게 하는 제한경쟁 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재 법령해석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여타 제한기준과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역중소업자 보호차원에서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경쟁사유에 의해 중복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석유제품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수송용 유류에 대해 고시시행일부터 '08.12.31일까지 석유정제업자, 수입업자의 반출량(수입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15%(석유정제업자간 반출하는 LPG의 경우 120%)를 넘지 않도록 함

- 석유판매업자가 동기간중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는 행위 및 판매기피 행위 금지

☞ 석유제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매점매석 행위시 물가 및 석유제품 유통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비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시행기간이 짧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량을 적용하는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2. 금융위원회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Tel. 2100-2292, smlee@pmo.go.kr)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등 2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8건, 강화 34건 등 총 7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2건 중 53건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으며, 17건은 개선권고, 2건은 철회권고 하였으며, 규제 개혁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친 금융위원회 2008년도 총 규제는 31건임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제345회 경제분과 (2008.3.6)	원안의결 2	강화 2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제346회 경제분과 (2008.4.17)	원안의결 1	신설 1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54회 경제분과 (2008.6.24)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3	신설 16 *중요 5, 비중요 11
선물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6.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제355회 경제분과 (2008.7.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비중요 1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제358회 경제분과 (2008.7.24)	원안의결 5 개선권고 2	신설 7 *비중요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08.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제363회 경제분과 (2008.9.4)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강화 2 *비중요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363회 경제분과 (2008.9.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366회 경제분과 (2008.9.25)	원안의결 2	신설 2
공중 등 협박목적에 의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8.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9.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68회 경제분과 (2008.10.9)	원안의결 1	신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368회 경제분과 (2008.10.9)	원안의결 1	신설 1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4)	원안의결 3	강화 1, 신설 2 *비중요 3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	예비심사 (2008.1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71회 경제분과 (2008.11.2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주택공사법시행령	제372회 경제분과 (2008.11.25)	개선권고 1	강화 1
보험업법 개정안	제374회 경제분과 (2008.1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5 철회권고 1	강화 5, 신설 2
은행법 개정안	제374회 경제분과 (2008.1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2,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 53, 개선 17, 철회 2	강화 32, 신설 40 중요 31, 비중요 41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08.4.1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할 예정이던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시행을 철회

☞ 국회('08.2.21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 종사자를 점포별로 2인(보험설계사 제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08.3.31까지) 규정을 삭제

☞ 국회('08.2.21 재경위)에서 시행령 개정(일몰조항 삭제)을 통해 모집종사자 2인 규제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2)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선물업자·투자자 등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자에 대하여 그 보유현황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개정('08.3.14 공포)됨에 따라

- 대량보유의 기준을 “선물거래의 종목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으로 정하고

\*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이 상장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종목별 대량보유 수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일반상품 대량보유자의 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규제를 신설

- ①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②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 ③ 대량보유의 시점, 가격, 수량 및 변동 내용
- ④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 ⑤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 동 사안은 선물거래법 개정(의원입법)에 따라 일반 선물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신설 됨에 따라 보고의 대상이 되는 대량보유의 기준과 보고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3)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08. 3. 14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유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해 자산·손익을 구분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등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규정하고,
    - ① 평균준비금 방식 : 보험계약별로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되,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 책임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
    - ② 투자연도 방식 : 보험계약별로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되,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손익을 자산 취득시 보험계약별로 조성된 자금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
    - ③ 자산구분 방식 : 보험계약별로 자산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귀속
- '자산구분 방식'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승인하도록 규제를 신설

☞ 보험업법 개정(의원입법)을 통해 유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해 자산·손익을 구분계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재량의 여지가 큰 방식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승인하도록 규정

- 피규제자 수가 소수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규제로 인한 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신설 16)

■ 심사내용

-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대부분 업무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
  - 예 : 부동산 특화 집합투자업 100억원 → 20억원, 증권 위탁매매업 30억원 → 10억원 등
- 다만, 현행법상 별도의 자기자본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거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기자본을 요구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일반+전문투자자) : 900억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전문투자자) : 450억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일반+전문투자자) : 100억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 50억
- ☞ 현행 자기자본 요건을 기준으로 인가·등록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을 가감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였으므로 원안동의
- 자기자본은 진입시의 70% 수준, 대주주 요건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대주주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완화된 요건을 규정

- 최대주주(진입 심사시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심사)에 대해서만 5억원 이상의 벌금형(진입 심사시에는 벌금형이 없을 것을 요구)이 없을 것을 요구

- 유지요건 위반시 업무정지, 위법행위 시정명령, 위법사실 공표명령, 기관경고·주의 및 인가·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

☞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 유지 규제 외에 NCR(Net Capital Ratio: 영업순자본비율)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으며, 자기자본 유지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국내외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

※ 해임·면직요구 5년간, 직무정지·정직요구 4년, 문책경고·감봉요구 3년

☞ 유사 법령에서 임원 자격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제 신설에 따른 임원 선임 비용 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법에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준법감시인 등 지배구조요건을 가중 적용토록 하고,

- 시행령에서는 통합법상 기능별 체제에 맞게 고유자산·운용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규정

-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집합투자재산 + 신탁재산 + 투자일임재산 + 투자자문계약금액) 6조원 이상인 경우

- 상근감사 임명 의무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1조원 이상인 경우

※ 감사위원회 설치 금융투자업자는 상근감사 설치면제 가능(법 27조)

-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 일임재산·자문계약금액 합계가 5천억원 이상인 투자일임·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 상근감사 선임의무 관련 개정안상 운용재산 기준을 1조원에서 상향 조정(예시 : 3조원)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문계약금액은 운용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상근감사 설치의무 부과에 따른 업계 충격을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 개선권고내용 반영시 상근감사 설치대상 집합투자업자는 22개사에서 13개사로 축소

○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부문, 교류금지 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내용 등을 규정

- 차단 대상 부문 :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중개/기업금융/집합투자·신탁업간 차단장치를 설치, 기업금융부문은 인수업, M&A 중개·조언업을 포함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간에는 통합하여 운용 가능

※ 자문·일임업은 고유재산운용업무와 기업금융업무를 제외하고 어느 부문에도 통합하여 운용가능

고유재산		
매매·중개	일임·	신탁
기업	자문	집합
금융		투자

\* 실선 : 정보교류차단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부문

- 교류금지 대상 정보 :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 집합투자재산 구성·운용내역, 미공개 중요정보 등

☞ 실제 운용과정에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매매·중개 업무간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금융투자업자에게 양 업무간 정보교류를 차단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매매·중개업을 통합하여 운영가능하게 허용하도록 개선권고

- ☞ ‘모집·매출 주선’ 및 ‘PEF 운용’ 업무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미공개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집·매출 주선’ 및 ‘PEF 운용’ 업무를 기존의 기업 금융 업무(‘인수’+‘M&A 중개·조인’)에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사항을 규정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에 관한 구조 및 성격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 금융투자 상품 설명은 투자상품 판매시 할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 의무 부과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불초청권유 금지, 재권유 금지, 거짓 또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시행령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함
  -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불초청권유를 금지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재권유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
- ※ 아울러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권유하는 행위,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등도 재권유 금지 규정 적용 배제대상으로 규정
- 금융투자업자에 금지되는 부당권유 행위에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추가

- ☞ 부당권유 금지의 대상을 위험성이 높은 상품인 장외파생상품에 국한하는 등 동 규제 부과에 따른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률에서는 신탁업자의 선행매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 수익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되,
  - 시행령에서는 금지되는 영업행위 중 수익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영업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
-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 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동 규제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① 국채, 지방채 외에 ②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③ ‘그밖에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 시행령에서는 ③의 위임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 국가·지자체가 금융위 협의를 거쳐 매출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던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용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면제대상에 포함
  - ※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법제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지하철 건설·운영 및 주택건설) 제출을 면제키로 함으로써 규제위 권고안을 수용
  - 다만, 지방공기업법상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용과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등”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대상을 명확화
- ☞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주택건설)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면제한 금융위안에 원안동의
- ※ 경제분과위 결과 (08.6.24)

- 동 규제에 대해서는 분과위 의결을 유보하되, 금융위로 하여금 2주 내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위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하고, 분과위 서면심사로 최종확정기로 하였음
-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현재 펀드판매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취득권유대행인 제도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투자권유대행인제도)
  - 시행령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협회가 시행하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로 규정
    -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권유인에게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의 금액 산출시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공모와 사모 금액을 모두 합산
  - 과거 6개월간 사모 대상자수가 50인 이상으로서 공모가 되는 경우 각각의 사모 금액(청약의 권유금액)의 합계를 과거 1년간 신고서 없이 이루어진 공모 금액에 합산
  - 현행 증권거래법상 공모와 사모 금액을 각각 합산토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시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
    - ☞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액공모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공개매수 적용대상 주식 등에 해당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의탁증권, 교환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을 추가
  - 현재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만이 적용 대상임
    - \*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매수 적용대상 주식 등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공개매수시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표시방법(광고, 서신, 기타 문서)과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오해가 없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
  -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공개매수시 발행인의 의견표명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서는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의견 변경시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 ☞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위해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 의견표명 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5%를 보고와 관련하여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한 경우 보고기한 5일의 기산점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 ※ 결제일 = 계약체결일 + 2일
    - ☞ 적대적 M&A 공격에 대한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 기산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규제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집합투자재산의 분산투자(동일종목 10% 한도)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도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는 등 분산투자 규제대상을 확대
  - 종전 : 주식, 채권, CD, CP
  - 변경 : 주식, 채권, CD, CP, 금전채권(대출채권), 예금, 상법상 합자회사등의 출자지분, ELS 등
    - ☞ 현재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30%인 점 등을 고려하여 ELS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예시 : 10 → 30%)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업계충격을 감안하여 분산투자 제한을 일정기간(예시 : 2년) 적용유예 하도록 개선권고

○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협회의 자율규제를 적용하도록 금융위가 준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동 제도는 일반적인 경우에 활용되기 보다는 주로 시장불안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5)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 선물거래법(08.4.15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08.4.30 시행)을 통해 일반상품선물의 대량 보유 보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감독규정에 위임된 대량보유 보고 및 변동보고 기준수량,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 상장된 금선물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10계약(1계약 3천만원)으로 설정

〈대량보유 보고 기준 수량〉

- '08.7월 상장을 추진\*중인 돈육선물에 대해서 대량보유 보고 기준 수량을 300계약으로 설정
- \* 국내 돈육시장의 생산액(3.6조원)은 농업 총생산액의 33%로 농축산물중 2위, 축산물중 1위를 차지하나, 가격변동성은 기상장된 선물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상품별 변동성('07년) : 돈육 27.2%, KOSPI 200 23.1%, 3년만기 국채 0.5% 등

대규모 양돈농가(연간 1만두 이상 사육)가 돼지 생육기간(6개월) 동안 헤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기준수량 산정

- ① 돈육 1만두에 대한 연간 헤지 수량 : 600~700계약  
\* 10,000(두수) × 60~70kg(평균 중량) / 1,000kg(1계약 규모) = 600~700계약
- ② 돼지 생육기간(6개월) 동안의 헤지 수량 : 300~350계약  
\* 600~700계약 / 2 = 300~350계약
- ③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 : 300계약 (계약금액 약 9억 2천만원)

〈변동 보고 기준 수량〉

-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시와 마찬가지로 선물상품에 대한 변동 보고 기준수량을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의 1/5 수준으로 산정

〈보고사항〉

- 대량보유 보고

- ①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 구분
  - 위탁자의 경우 해당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선물업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②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 및 종목
- ③ 해당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 변동 내용 보고 : 변동된 시점, 가격,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수량 등

〈보고방법〉

-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 장애 등의 경우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고, 보고시 매매보고서 기타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일반상품 선물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부과에 따른 피규제자 수 및 규제에 인한 연간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돈육선물의 대량보유 보고 기준수량(300계약 : 약 9억2천)을 대규모 양돈농가 (연간 1만두 이상 사육) 연간 헤지수요를 기준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의 보고 부담을 경감

(6)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예금자보호법 부칙상 2008.8.31일까지 규개위 심사를 거쳐 한도(현행 0.5%)를 다시 정하지 않을 경우 종전 한도로 환원되도록 규정 (일몰규정)

☞ 규제의 존속기한을 비교적 장기인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차등보험료율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보험료율을 공개하거나 홍보에 이용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규정 신설

☞ 보험료율이 높은 기관의 경우 차등보험료율 공개에 따른 자금의 급속한 이탈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율이 낮은 기관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 다만, 비밀보호유지의무 시행의 전제가 되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조속한 시행(예: 2~3년)을 부대권고

○ '09.3.23일 종료되는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의 법적 시한을 3년간 연장

☞ 기존에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개별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등 규제비용이 제한적임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판단

(7)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신설 7)

■ 심사내용

○ 금융투자업 인가 세부요건인 물적 · 사업계획 요건 구체화

- 물적요건: “전산설비”를 “침입방지 등 보안체계, 백업장치, 검증된 주전산기 등”으로 규정하는 등 세분화 · 구체화

- 사업계획요건: “수지전망의 타당 · 실현할 것”을 “추정 영업손익의 증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 것 등”으로 규정하는 등 세분화 · 구체화

- 인력요건은 현행 요건을 기본 적용하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 요건은 현행 수준으로 정하되, 집합투자업 중 펀드판매업의 경우 판매전문인력을 5인 이상 갖추도록 인력요건을 강화

☞ 펀드판매업자 중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전문인력수 요건을 완화(예시 : 5인 → 3인)하도록 개선권고

○ 신탁업자의 경우 취급하는 인가단위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기존의 5인(증권 전문인력)외에 3명(모든 신탁업 영위의 경우)의 부동산 전문인력을 추가로 요구

☞ 신탁업자가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갖추 수 있도록 유예기간(예시: 1년)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

○ 금융투자업규정정에서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기준, 정보제공기준 등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

-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 · 보호 : 투자자 신용정보 관리 · 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 · 남용 방지 등

- 자금세탁행위 방지체계 구축 · 운영 :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 절차 · 방법, 보고 책임자 및 전담직원 지정 등

- 민원 ·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 : 민원 ·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전담 조직 설치 등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대해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 · 보호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고,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

- 자본시장통합법률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경영실태평가를 의무화
  - 현재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대상이며, 선물회사 및 신탁회사가 신규로 적용됨
  - 금융투자업규정은 현재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4개 평가부문(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을 모든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
    - ※ 현재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5개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자본적정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적정성)
  - 다만, 전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대상에서 제외
    -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고, 비교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
  -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고, 비교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를 정함
  - 한도초과 이익제공 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위탁 금융투자업자 발행 주식의 매매 권유 행위, 과당매매 권유 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소유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투자권유 행위, 법상 금지된 매매 등 권유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한도초과 이익제공, 빈번한 투자권유 행위 등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관련 규제를 금융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 하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고, 비교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본시장통합법령은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투자광고 규제를 신설, 금융투자업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투자광고 포함사항 및 방법·절차 등을 추가로 정함
  - ☞ 실적배당상품인 펀드상품의 투자광고의 경우 부당한 투자광고로 인한 투자자피해는 사후 구제 보다는 사전규제를 통해 미리 방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규제영향 비용이 제한적인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고, 비교적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 자본시장통합법령에서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 기준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규정안에서는 기준지표의 요건,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기준, 성과보수 지급시기의 제한, 투자자별 최소투자금액 등을 정함(신설)
  - 기준지표 요건 : 증권시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지수, 펀드성적을 공정·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 검증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지수
  -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기준 : 성과보수 지급시 펀드 운용성적이 마이너스인 경우, 운용성적이 이전 성과보수 지급시점 중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 ※ 성과보수 지급시기 : 매년 1회, 투자자별 최소 투자금액 :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
  - ☞ 일정 수준이상의 위험부담능력이 있는 법인·개인에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한 투자 기회를 부여하도록 최소투자금액 기준(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을 50% 이하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강화 1)

■ 심사내용

- 상호금융기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외국환업무 등록 심사를 위한 자본규모 요건 및 재무구조 요건 기준을 마련
  - 자본규모 요건 : 해당 상호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최저 출자금 (조합 종류별로 0.1억원~5억원) 기준

구분	최저출자금
신협 (신협법 14조)	- 지역 : 특별시·광역시 3억원 / 시 2억원 / 읍·면 0.5억원 - 직장 : 0.4억원 - 단체 : 특별시·광역시 1억원 / 시 0.8억원 / 읍·면 0.5억원
농협 (농협법시행령 2조)	- 지역 : 5억원 - 품목 : 3억원
수협 (수협법 시행령 12조)	- 지구별 : 3억원 - 업종별 : 2억원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시행령 4조)	- 지역 : 1억원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 0.1억원 - 전문 : 1억원

- 재무구조 요건 : 동 규정 제12조의 경영지도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2% 이상) 기준

- ☞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07.12.17)으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종전 외화·여행자수표의 매입업무 외에 매도업무가 추가로 허용\*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의 본격적 취급이 가능하게 되어 동 기관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 \* 종전에는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외환의 매입만을 할 수 있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동 규정개정으로 외국환업무를 본격 취급할 계획임. 현재 은행 등 타금융권의 경우 외국환업무 등록 심사를 위한 자본규모 및 재무구조 요건을 각각 설립법상 최저 자본금 기준, 경영지도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판단

(9)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공인회계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위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법상 의무화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미이수시 등록 및 등록갱신을 거부

※ 현재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연수규정에서 개업 공인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재등록 또는 휴업 후 개업 공인회계사는 최소 20시간 이상의 연수의무 부과, 미이수자는 징계

- ①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자

※ 등록이 취소 또는 거부되더라도 공인회계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충족시 등록 가능 (등록번호 재부여)

- ☞ 동 사안은 '11년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록 관련 연수를 법상 의무화하고 미이수시 등록 및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 이수를 등록 및 등록갱신의 요건의 하나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공인회계사협회의 자율규정으로 교육이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이수시 협회의 제재조치가 주의, 경고 등에 불과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동 규제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점,
  -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관련 사항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가가 규율하고 있어, 협회의 자율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 및 의무대상 확대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 실무수습기간 1년 이상 → 3년 이상
  - 제1차 시험 면제자 : 면제 → 2년 이상의 실무수습 의무 부과
- ☞ 실무수습기간을 비교적 장기인 2년간 연장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합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공인회계사 시장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 외감법에서도 감사인(감사법인 및 감사반)에 소속되어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감사인에서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 공인회계사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간을 20~40 시간에서 90~12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실무수습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대학원 졸업생에게 수습기간을 면제(석사1년, 박사2년)해 주는 등 수습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정을 철회권고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자료제출권 등 법적 회계정보 통제권 부여
  - 현행 규정은 감사인의 회계정보 통제권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
- ☞ '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결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강화되는 점,
  - 호주,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도 지배회사 및 그 감사인에게 종속회사의 법적 회계정보 통제권을 부여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회계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회사에게 종속회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점,
- 적절한 통제수단 없이 종속회사의 회계분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지배회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지배회사 및 그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
- 일부 회사의 경우 지배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

-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 ☞ 동법에서 감사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내지 직무정지',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등 다른 수단으로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제를 철회권고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한 감사인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였던 해당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일정기간 감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

- 현행 규정상으로는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만 감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 증선위가 감사인에 소속한 특정 공인회계사가 외감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사인이 당해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 증선위의 조치로 감사인이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던 선의의 주권상장법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선위에 의한 조치로써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은 해당 공인회계사에 한정토록 개선권고

(1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설 2)

■ 심사내용

○ 여전사가 대출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 후 적절한 대출을 하도록 하고,

- 대출 후에는 대출자의 용도와 유용방지 등을 통해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 여신전문금융업법령(법 제53조의 3 및 시행령 제19조의14 제2호)에서 금융위가 대출채권의 운용기준 등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전사의 대출 자금의 적정성 관리의무를 기 부과하고 있는 점,

•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의 형태로 편법 운용되어 여전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점,

※ 여전사 가계대출의 경우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기업대출에 비해 강화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

• 은행 등 타금융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대출업무 운용원칙을 여전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점, 동 노력의무를 위반할 경우 여전사에 대한 주의·경고 등 실효성 있는 의무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안동의

○ POS단말기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회원 정보보호 관리의무 부과

☞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POS단말기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 등으로 인한 정보가 제3자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용카드 위조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POS단말기 가맹점을 통한 회원 정보유출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고 감독당국의 지도권 행사도 제한적이어서 동 규제 신설 외에 뚜렷한 대체수단이 없는 점,

※ POS단말기는 신용카드사가 아닌 VAN사가 지원해주거나 가맹점이 직접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업자에게 보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곤란 (VAN사는 현행 법령상 보완관리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정보보호 기능 강화로 위조카드에 대한 부정사용 축소 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가맹점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는 점,  
•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여전사에 대한 주의·경고 등 실효성 있는 의무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안동의

(1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 허가사유 및 절차를 명시

☞ UN이 안보리 결의(제1452호, '02년)를 통해 테러자금 동결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를 유사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 식료품비, 집세, 약값과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기본생활비,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

• 동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위법행위에 연루되어 신용도가 하락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현금 2천만원 이상의 칩스 교환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하도록 규정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 법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지침에 고객 및 금융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 시행령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도록 함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공시 이후 취득하더라도 최소한 공시 전에 매수주문을 제출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

☞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시, 합병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 증시 하락기에는 주식매수청구가격이 합병 등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세 차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합병 등이 공시된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단기적 무위험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차익거래 인정은 기업재편을 추진하는 상장법인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은 해당 주주가 공시 내용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불인정해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은 점 (공시이후 취득하더라도 공시전에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입증될 시 매수청구권을 인정) 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1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대부업법, 정기보고서 작성방법, 이자 계산방법 등의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율 의무화

☞ 동 규제 신설로 인해 대부업 관련 교육을 통해 대부업자의 불법영업행위 방지를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16)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강화 1, 신설 2)

■ 심사내용

○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사외이사제도를 법상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규정

※ 현행 임원임기만료시까지는 사외이사 1/2 이상 선임이 강제되지 아니함 (안 부칙 제2조)

☞ 추가로 늘어나는 규제비용이 없고, 타 법령(은행법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는만큼,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법상 사외이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산업은행에서는 합리적인 경영의 필요성으로 이미 사외이사(2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차대조표, 연결재무제표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후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타법령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지우는 만큼, 비중요규제로 판단

○ 산은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 및 산은의 자회사(산은지주의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

- 현재 산은이나 산은이 15%이상 지분을 보유하여 산은지주의 손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의 손자회사 제한규정(비금융회사가 아닐것등)을 배제해 주되, 이들이 지주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만은 적용을 인정

-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7)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 위탁업무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거래시, 펀드사장 승인 요구
  - 산업은행내 펀드위탁본부가 펀드를 대리하여 산업은행에 자금대여 등 자기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펀드사장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필요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은행 임직원에 수탁인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해상충의 위험이 없다고 펀드사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위탁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토록함.
  - ☞ 타 금융관련법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기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탁 업무수행상 필요한 최소조치인만큼, 비중요규제로 판단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농신보기금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로 한정된 금융위의 업무검사 대상기관을 관리기관으로 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까지 확대

-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 농신보 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 업무의 위탁범위내에서의 지도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조항이며, 유사법률(기술신용보증 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비중요규제로 판단

(19)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30%까지 확대
  - ※ 은행법에서는 자기자본의 15%, 금융위 요건 충족시 30% 초과출자 인정 (사전승인제 없음)
- ☞ 시중은행과의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자회사 출자한도를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하되,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지원을 위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고, 경쟁제한적인 요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20)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은행의 외화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외화예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은행이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법 제30조 1항)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부칙 제3항)하되, 특별기여금(법 제30조의3)은 외화예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시점부터 적용됨
- ☞ 예금자보호를 받는 타 외화표시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외화예금을 추가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외화유동성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재 은행의 원화예금 및 타 금융업권의 외화표시 금융상품(외화고객예탁금, 외화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임

(21)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및 분쟁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여수신 이율, 각종 수수료 등 상품내용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 수수료, 계약 해지·해제 등 투자 상품내용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기존 공시항목에 상품내용을 추가하는 만큼,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단위 농·수·산림조합 및 동 중앙회 상호금융사업의 업무보고서 제출근거와 중앙회의 회원 조합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근거 마련

-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의 건전성 감독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업무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지도·감독업무의 검사 근거를 명확히 함.

☞ 현재 금융당국은 감독부처 협조를 얻어 조합 및 동 중앙회의 업무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중앙회와 조합간의 신용사업 관련 지도업무 및 감독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감독기능의 법상 근거를 명확화·구체화하고, 금융감독의 사후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비중요규제로 판단

(2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제도도입

- 경영권 승인이후에도 대주주의 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배제하도록 함

① 자격미달시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을 부과

② 시정명령 미이행시 주식 처분명령

③ 매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배제함으로써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은행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개정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약관이 소비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변경명령의 근거를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및 분쟁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치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으며, 약관 심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제한적인 점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회사의 경영상에 부실을 초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

☞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전 금융권역(은행, 보험, 여전사)에서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부담,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23)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공시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공시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기본 부과율을 상향 조정

※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법정기본금액×법정부과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기본부과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20%(100%, 80%, 60% 등)차등됨

- 1년 이내 다시 공시위반시 : 기본부과율 2단계 상향 조정
- 2년 이내 다시 공시위반시 : 기본부과율 1단계 상향 조정

☞ 동 규정상의 다른 위반사항(내부거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 가중조치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상습 공시위반자에 대한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 · 유사한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상습적인 전력자에 대하여 조치를 가중함에 있어, 현행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은 최근 2년 이내에 전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유사한 불공정거래의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도 공시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자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2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신설 1)

■ 심사내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지배의 정의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배 · 종속관계의 판단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도록 함

☞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기관등은 대부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

○ (현행)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이 개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제출기한 보다 길어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용성 저하

※ 개별감사보고서(F/S) 제출기한 : 주총 1주전(주총 6주전)

※ 연결감사보고서(연결F/S)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2월이내), 다만 비상장회사 및 자산2조 미만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3월 이내)

→ (개선)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글로벌 기준과 같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개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제출기한과 일치시킴

※ 연결감사보고서(연결F/S) 제출기한

: (현행)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2월이내) → 주총1주전(주총4주전)

☞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종료후)60일로 단축함은 해외자회사가 있는 법인들 경우,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조정하는 문제와 외국환기준 재무제표를 원화기준으로 변동하는 문제 등으로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단축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제출과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사이에 3주간의 간격을 둔다는 점에서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60일에서 70일로 조정할 필요

적용회계 기준	사업 보고서 제출 여부	자산규모, 주권상장여부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연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시행법)연결재무제표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 기타 법인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국제 회계 기준	제출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2개월	정기총회 4주일 전	3개월	정기총회 1주일 전	90일
		자산 2조원 미만	기타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4개월		
	비제출	-		3개월				-
기타	제출	자산 2조원 이상	(사업연도 종료후)	60일-70일	90일	4개월	90일	90일
		자산 2조원 미만	3개월	90일				
	비제출	-		3개월				-

(25) 주택공사법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주택연금 가입시의 초기 보증요율과 대출금에 대한 보증요율을 이사회가 정함

- 가입자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요율의 탄력적 적용 가능(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초기보증료와 보증료의 징수구조를 다양화하여 초기보증료와 보증료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정요율인 보증요율을 이사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의 법령에서 정해진 보증료율에 비해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납부총액이 일정하도록 보증료율간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26) 보험업법 개정안 (강화 5, 신설 2)

■ 심사내용

○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전 신고상품”과 “판매후 제출상품”으로 구분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삼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상품개발 저해

- 제출상품을 자율상품으로 전환하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사전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내부검증절차만 거치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토록 개선하고 사후감독기능 강화

- ① 감독당국이 부실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매분기 선정하여 심사하는 집중심사제도 도입
- ② 내실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회사 내부에 보험상품 검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부실상품 개발을 방지
- ③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실상품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제재

☞ 회사내부의 내부검증시스템을 통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감독당국이 집중심사제도를

통해 부실우려가 큰 상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상품도입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다만, 자율상품전환에 따른 제도 변경 초기 운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사전에 당해 보험상품이 부실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심사요청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부대권고

○ 현행 positive 방식으로 운용대상 파생상품을 열거하고 있으나 유형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총액 한도를 6%에서 5%로 축소

☞ 보험사의 건전성, 보험계약자보호의 필요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전성,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은 여전히 필요하고, • '09년 4월부터 도입예정인 RBC(Risk based capital)제도와 연계하여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건전성감독이 강화될 때 총액한도 및 유형별 투자한도를 재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권고

○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중개사 등 판매자격 취득을 금지

☞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상습적인 위법자를 제재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처분전력 중 보험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 영구퇴출하는 등 그 범위의 대상을 축소하도록 개선권고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

①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신설

-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 보험계약의 청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주요과정을 안내
- ☞ 설명의무 방법이 획일화되어 있어, 일괄적인 정보·안내의 제공은 고객으로부터 스팸 등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개선권고

② 적합성의 원칙

- 보험상품 판매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소비자의 재산,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타 보험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
- ☞ 금융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금융상품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의 원칙이 필요하며, 변액보험 등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투자상품의 경우 가중된 설명의무가 필요
  - 다만, 보험은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권유 전 확인에서 보험계약 체결전 확인으로 완화하고 개인정보공개를 꺼리는 현실과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항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③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

※ 필수사항 : 계약전 상품설명서, 약관 읽을 것, 변액보험 관련 원본손실 가능성 및 기타 대통령령 위임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규정한 자본시장통합법과 규제체계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동 법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기준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④ 전환계약 금지

- 비교안내 기간을 확대(현행 3월 → 6월)하고, 청약일 전후 1월 이내 기존계약 소멸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별도 안내

-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간주

- ☞ 현행법에는 전환금지 대상인 보험상품의 범위와 금지행위내용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제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건보공단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

- 금융위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적발한 혐의자의 진료기록(질병내용, 입원기간, 병원 등)을 건보공단에 요청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제공

- ☞ 질병정보요청의 대상이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기정도가 상당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사실확인 만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보험조사 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질병정보 등에 관한 사실요청권을 인정할 필요성 있음

- 다만, 개인의 질병정보가 공유됨에 따른 정보유출가능성 등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만큼, 보험조사협회의 사실확인 대상자 및 범위선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상에 명문화하도록 개선권고

※ 구체적인 보험사기관련 자료요청 대상 범위 결정시, 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

(27) 은행법 개정안 (강화 2, 신설 1)

■ 심사내용

-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은행 등 금융기관 현 상임임원, 2년간 금융기관 상임임원이었던 자 포함

- 이사회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이사수의 50%에서 과반수로 상향조정
- ☞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최근 2년간 당해 은행의 상임임원이었던 자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 은행이 겸업·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은행업무와 구별하여 별도 장부 및 기록문서 보유토록 규정
-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겸업·부수업무(판매대행업, 신용카드업 등)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무를 완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과 같이 고객과의 거래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낮춘 후 거래하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동 거래를 하지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3.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 김기영 사무관 (Tel. 2100-2307, kky21@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등 총 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15건, 내용심사 5건 등 총 2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4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고, 2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안	제343회 경제분과 (2008.1.10)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신설 3, 강화 5 *중요 5, 비중요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43회 경제분과 (2008.1.10)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강화 2, 내용심사 5 *중요 2, 비중요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50회 경제분과 (2008.5.28)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61회 경제분과 (2008.8.2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94회 규제개혁위원회(2008.10.1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194회 규제개혁위원회(2008.10.1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28)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안 (신설 3, 강화 5)

○ 고시 적용 대상 확대 (강화)

- 매장면적 3,000㎡ 이상을 매장면적 3,000㎡ 이상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반품 예외기준 (강화)

-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약정만 하면 반품이 인정이 되던 것을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계절용품 등 특정기간(계절) 동안만 판매하는 상품을 정당한 기한 내에 반품하는 경우 또는 신·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 반품을 인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판촉비용 공동분담 (강화)

- 판촉비용 공동 분담 근거규정 없었으나, 판촉비용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로 인해 얻게 될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공동분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여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5:5로 하도록 함

☞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판촉비용 분담 예외규정은 두고 있으나, 판촉행사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의무는 부과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판촉행사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에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판촉행사에 대한 서면계약체결 의무를 배제하도록 개선권고

○ 판촉사원 파견 허용기준 (강화)

-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판매를 위한 경우에는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하던 것을 대규모 소매업자가 판촉사원 파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판촉사원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특정매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중요한 경우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금지 (신설)

- 납품업자가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예: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규모의 판매장려금)를 초과하여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서면계약시 필수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 (강화)

- 서면계약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판매장려금, 반품조건,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

☞ 판매장려금, 반품조건 등의 항목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며, 추후 분쟁가능성이 큰 사항이므로 사전에 서면계약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거래가 특정매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공통항목에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점포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금지 (신설)

- 점포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후 정당한 기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거래를 거절하거나 매장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점포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함

- ☞ 유통업체의 주도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하면서 점포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 유통업체도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보상 등이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규정한 부분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신설)

- 공정위에 신고 등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 ☞ 비중요 규제로 분류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5)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강화)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정보 및 가맹점 변동현황(개·폐점, 양수도 등)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 변동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함

-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내용심사)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 마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등록취소사항(중요사항),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으로 구분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

- ☞ 개정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요건불비, 허위·거짓자료 등으로 인한 등록이 거부된 경우 일정기간동안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모법에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가맹본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은 삭제하되,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재등록시 기재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개정안 제5조의2제2항의 심사기간을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1개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개월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가맹금 예치제 (내용심사)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

- 예치기관은 가맹사업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

-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보공개서의 제공 (내용심사)

- 현행 열람, 직접 전달, 인터넷 등으로 정보공개서 제공하던 것을 직접 전달, 인터넷, 자기 디스크, 전자우편으로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시에 주위 점포의 정보를 함께 제공

-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맹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 (내용심사)

- 종전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때 법상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파산, 화의, 강제집행, 부도 등으로 제한

-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지식재산권 유출, 교육 미준수, 계약해지 사유로 법령위반, 영업의무

위반, 형사처벌, 급박한 위해, 연속적 미영업으로 변경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 추가 및 보완 (강화)

- 절차하지는 부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하고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을 금지,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제공을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포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내용 및 공제조합 관련 절차 등 (내용심사)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이 갖추어야 할 요건 마련

- 보험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

-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비중요규제로 분류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신설)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당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최대 기업 1억원, 개인 1천만원)를 부과

☞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려는 차원에서 사전적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사후적 규제인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동의명령제도 도입 (신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행위로 조사대상이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당해행위 (고발사안은 제외)에 따른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한 사항을 담은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이후의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제출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동의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조항, 시정방안 등을 통지(또는 공고)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토록 함

- 동의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매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동의명령 제도 도입 · 운용을 통해 기업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일방적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조사 및 심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 서면(하도급계약서) 교부 및 서류 보존의무 (강화)

- 서면 기재사항으로 기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

- 보존해야 할 서류로 기규정된 사항 외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추가로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과징금 부과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벌점 부과 (강화)

-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입찰참가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입찰참가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누산벌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기존 CP 도입·운영시 15% 감경조항을 삭제하고, 감경등급 상향(BB → A) 및 감경비율을 축소(20~30% → 10~20%)하는 등 요건 강화
- 기존 CP 도입·운영시 적용하던 감경조항을 A등급 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시 '공표명령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요건 강화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3조 (고발의 면제)에서 규정하던 고발 면제조항을 삭제
- 적용대상을 기존 CP평가등급이 '우량'(안 BB~BBB등급에 해당)에서 A등급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신설)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됨
- 협의 거부·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법 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법 제25조의3),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부과 가능
-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계약자율의 원칙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원사업자의 조정협의 의무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하도급법 시행령(08.9.28 시행)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도입에 동의. 다만, 사적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면 추후에 구체적인 분담비율 등 인위적이고 세부적인 규제가 재생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자치에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며,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협의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제3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등 두 조항이 모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단서 조항을 두어 조문상 흠결이 없도록 법제처와 협의할 것

(7)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 범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여부 및 가중비율 결정기준으로 활용
  - 벌점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에 따라 산출하되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벌점만 반영

- 반복적 범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의 일환으로 과거 범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단, 당해행위가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과거 3년간 3회이상 범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누산벌점이 5점 이상인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간, 과거 범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하여 산정하여 반복적 범위반업체의 경우,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
  - 과거 3년간 3회이상 범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고 벌점누산 5점 이상 : 20% 이내
  - 과거 3년간 4회이상 범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고 벌점누산 7점 이상 : 40% 이내
  - 과거 3년간 5회이상 범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고 벌점누산 9점 이상 : 50% 이내

☞ 피규제자(33개 업체 추정)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강화 3)

○ 통신판매중개자 관리책임 (강화)

-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

- 중개의뢰자에 관한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 배상책임

☞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행위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과 피해발생시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사기성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강화)

- 간이과세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함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초기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강화)

- 1년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요건으로 사기성 거래 등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
- ☞ 현행은 시정조치를 거친 이후에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차단이 어려워 사기성 거래 등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확산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4. 관세청

집필자 : 김기출 사무관 (Tel. 2100-2293, kmakkc@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 중 2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하였음

[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343차 경제분과 (2008.1.1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96차 규개위 (2008.11.1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및 갱신요건 강화 (강화)
  - 신규특허 기본요건을 전년도의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 중 외국인의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이고,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규정
  - 특허기간 갱신요건은 당해 시내면세점의 최근 5년의 특허기간 동안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 중 외국인의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

- ☞ 신규특허 기본요건은 관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고시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원안동의 하되, 특허기간 갱신요건 중 시내면세점 외국인 이용자 수 비율을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 수준인 35%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외국인 매출액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치가 51% 수준임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설 1)

- 관세청장이 지정한 소고기 12개 부위의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 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양수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중량, 양도일자 등을 '수입 물품유통이력신고서'에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도록 규정 (신설)
- 12개 부위(뇌, 눈, 머리뼈, 척수, 등배신경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소머리, 혀, 내장, 등뼈(척추))에 대한 이력관리제도를 신설하면서, 규제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
- ☞ 수입 소고기의 생산·유통 및 판매자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관련 시스템(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피규제자에 대한 이중규제가 우려되므로 규제 존속기한을 '축산물가공처리법령(농림부)에 의한 유통경로 추적 관련 전산시스템 운용시까지'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 제3절 | 산업·에너지 분야

집필자 : 김기출 사무관 (Tel. 2100-2293, kmakkc@pmo.go.kr)

### 1. 지식경제부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총 4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7건, 강화 31건, 내용심사 32건 등 총 8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0건 중 7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7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수출입공고 개정안	제344차 경제분과 (2008.1.31)	원안의결 1	강화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48차 경제분과 (2008.5.20)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49차 경제분과 (2008.5.2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49차 경제분과 (2008.5.2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5	신설 3, 강화 3 내용심사 2, *비중요 5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5.2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5.22)	원안의결 6	강화 2, 내용심사 4 *비중요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5.29)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비심사 (2008.6.4)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6.4)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6.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6.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55차 경제분과 (2008.7.3)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강화 4, 내용심사 1 *비중요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7.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7.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전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7.31)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8.21)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8.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9.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66차 경제분과 (2008.9.25)	원안의결 1	강화 1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제366차 경제분과 (2008.9.25)	원안의결 1	강화 1
대외무역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예	예비심사 (2008.10.2)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계예비심사 (2008.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도시가스사업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68차 경제분과 (2008.10.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제368차 경제분과 (2008.10.9)	원안의결 1	신설 1
산업발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6)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70차 경제분과 (2008.11.13)	원안의결 1	강화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개정안	제198차 규개위 (2008.11.25)	원안의결 1	신설 1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73 개선권고 7	신설 17, 강화 31 내용심사 32, *비중요 65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출입공고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철강재 124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여 허위신고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철강수입 사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EU 등의 사례와 수입신고시 자동으로 수입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을 통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상세기준(순수기술적 사항)의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심의결과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규칙에는 중요사항(성능기준)만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 운용토록 이관
  - ☞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상세기준의 승인절차, 순수기술적 사항(상세기준) 및 중요사항(성능기준) 분리규정) 하는 사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완공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의 변경공사의 범위를 규정 (내용심사)
  -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용기집합설비 위치변경 또는 수량 증가 공사,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등
  - ☞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경미한 공사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용접절단기용 압력조정기를 포함 (강화)
  - 용접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와 차단기능형 밸브를 접속시 차단기능형 밸브 속 부속품을 변형 또는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규정하여 검사를 통해 표준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 ☞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이 제한적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정함 (신설)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5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기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카지노업 허가신청시 3억불을 기투자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
  - ☞ 카지노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외국인 투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억불 투자요건을 규정하는 원안에 동의하나, 원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허가신청시가 아닌 영업개시 신고시까지 3억불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 내 총 5억불을 투자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동일한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면적변경시 1년 이내에 변경한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요건 강화 (강화)
  -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자가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시사와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총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 면적변경, 총면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총면적의 10% 미만의 면적변경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소규모의 면적변경이 1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여 시도의 잦은 면적변경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로 인한 연간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 제한 (내용심사)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 수를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 방송채널 별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 동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3,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10만㎥ 저장시설'에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0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변경 (강화)

☞ 최소요건인 10만㎥ 저장시설 건설비용 또는 임차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요규제로 판단되고, 직수입자의 무분별한 직수입 방지 및 안정적 수급역량 확보를 위해 저장시설 용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나, 부칙 3조의 경과규정에서 '이 영 시행 후 새로 체결한 수입계약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 것을 '이 영 시행 후 새로 체결한 1년 이상 수입계약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여 1년 미만 계약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권고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 (신설)

- 가스시설의 고장 또는 파손, 직수입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한 예외 인정조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서 원안동의하되,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자가소비 가스제조시설, 배관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정명령을 현행 5가지 외에 3가지를 추가로 규정 (강화)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 수출입계획의 조정,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의 판매에 대한 조정

☞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 수출입계획의 조정'은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수출입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으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 수입계약 체결 전에 수입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는 방법 및 시기 규정 (신설)

- 계약체결 전 30일 이전에 연도별 수입계약서, 사용계획서 등 주요내용을 통보하되, 산업용 수요로서 1년 이하 단기계약인 경우 7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

☞ 1년 미만 단기계약의 경우, 수입업체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한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산업용으로서 1년 이하 단기계약인 경우 3일 전까지, 발전용의 경우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선권고

○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시설 이용료 및 가스제조시설 이용료,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시설이용요령을 정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규정 (신설)

-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신청서,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

☞ 피규제자 수 및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시 필요한 기준 추가 (강화)

- 기존 4가지 기준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시공자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공사계획이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 외에 동 공사가 가스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과 중복투자가 유발되지 않을 것 등 2가지 기준을 추가로 규정

☞ 피규제자 수 및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비용 등은 제한적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규제로 판단되며, 법제처 심사시 추가되는 2가지 기준이 기존 4가지 기준과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상세기준(순수기술적 사항)의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절차 등을 규정 (내용심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심의결과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규칙에는 중요사항(성능기준)만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 운용토록 이관

☞ 법률 규정사항을 구체화(상세기준의 승인절차, 순수기술적 사항(상세기준) 및 중요사항(성능기준) 분리규정) 하는 사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도입에 따른 업무절차 규정 (내용심사)

-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에 굴착공사 발주자 회사명, 굴착공사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굴착공사 지원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면 정보센터는 이를 도시가스사업자에 통보하여 매설배관의 유무 확인 및 결과를 정보센터에 통지토록 하고, 굴착지점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시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업무처리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5)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내용심사)

-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안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구체화

☞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및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차량 대상에 '06.5월부터 국내사용이 허용된 암모니아용 ISO탱크컨테이너에 대해 등록하도록 규정 (강화)

☞ 여타 고압가스 운반차량과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고, 규제 유발비용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상세기준(순수기술적 사항)의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절차 등을 규정 (내용심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심의결과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규칙에는 중요사항(성능기준)만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 운용토록 이관

- ☞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상세기준의 승인절차, 순수기술적 사항(상세기준) 및 중요사항(성능기준) 분리규정) 하는 사항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 소유 시설물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심사)
  - 보상금액을 허가·신고·사용신고관청과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 행정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자격 및 해촉조건 규정 (내용심사)
  - ☞ 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규정이라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압가스 수입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 (내용심사)
  - 면제대상으로 휴대용 라이터 등 300ml 미만의 소용량 고압가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를 규정
-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충전원에 대해 신규종사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1회 받도록 규정 (강화)
  - 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하는 사회적 규제로, 규제유발비용, 피규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징수절차와 가산금 이율 규정 (내용심사)
  - 과오납금 환급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에 신청하고, 과오납금 환급 및 과다환급금 징수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정함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존 부과금 뿐만 아니라 과오납금의 환급, 과다환급금의 징수, 가산금 관련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규제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석유제품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품질보정행위의 장소와 대상, 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송유관에서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 운반,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판매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해 현행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 ☞ 송유관에서 절취한 장물 유통행위 및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불복행위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석유판매업을 지속하게 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등록 취소라는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편성,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규정 (신설)

※ 한국석유관리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

☞ 비중요규제로 판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강화)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유사석유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 규정

☞ 비중요규제로 판단

- 특정한 행위의 금지(강화)

- 석유제품의 수급명령 및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위반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9조의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유통질서 저해행위

- 정량에 미달한 판매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 또는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제품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 기타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추가

☞ 비중요규제로 판단

### (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5)

#### ■ 심사내용

- 법률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과 취소사유를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과 취소사유를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과 취소사유를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및 경력관리를 위한 제출서류 및 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서 및 소프트웨어사업대장 등을 정해진 절차에 의거 신고하도록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의 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또는 정부가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신설)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유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기타 중대한 협약위반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률 또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 및 연간 규제유발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 (신설)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요건을 규정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신기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을 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을 거부한 경우, 신제품·신기술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의 목록 추가 및 효율기준 상향 (강화)

- 현재 19개 품목 외에 2개 품목(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을 추가하고, 9개 품목(김치냉장고, 선풍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드럼세탁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진공청소기, 전기냉온수기)의 효율기준을 상향

☞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에너지 수요관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차별 수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을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한국전력공사를 추가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효율관리기자재 목록을 일부 수정하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품별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을 규정 (내용심사)

- 효율관리기자재 목록에서 '발전설비 등 에너지공급설비'를 삭제하고, '삼상유도전동기'를 포함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기자재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보완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부적합한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1.컴퓨터, 2.모니터, 3.프린터, 4.복합기, 5.텔레비전수상기, 6.셋톱박스, 7.전자레인지, 8.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중 1~5호는 '08.8.28부터 적용하고 6~7호는 '09.7.1부터 적용

☞ 효율관리기자재 목록의 수정은 원안동의하되, 대기전력경고표지제도 적용은 동 제도에

대한 관련업체의 준비부담 완화를 위해 5호는 '08.8.28부터, 기타 1~4호, 6~7호는 '09.7.1부터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여부를 진단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개정 (강화)
  - 시행령에서 에너지진단내용의 '이행실태'를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내용'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에 '진단기관의 수행실적'을 추가
  - ☞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되, 시행규칙에서 보고를 명하는 주체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는 법률 미근거 규제이므로 삭제할 것을 부대권고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를 설치시 면제되던 계속사용검사를 검사대상에 포함 (강화)
  -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시 필요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 (강화)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연료·열/전기에 대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을 확대 (공공시설 : 5천TOE/2천만KWh 이상 → 2천5백TOE/1천만KWh이상, 민간시설 : 1만TOE/4천만KWh 이상 → 5천TOE/2천만KWh 이상)
  - ☞ 연간 규제유발비용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시 중요규제로 분류되며, '08~'12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 3,334천TOE/년 대비 521천TOE(열부문 431천TOE/년, 전기부문 415GWh/년)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온실가스는 '08~'12년간 총 발생량 2,088천TC/년 대비 326천TC/년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의 확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의거 이용·개발계획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하도록 규정 (내용심사)
  - ☞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법률에서 정한 특허신탁관리업 허가제의 세부사항을 규정 (내용심사)
  - 특허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등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받은 자는 특허신탁관리업무규정 또는 약관 변경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특허신탁관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특허신탁관리업무 관련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허신탁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특허권의 목록을 분기별로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 또는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 요청시 특허권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 법률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법률에서 규정한 전시사업자 등록요건 규정 (내용심사)

- 전시시설사업자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1억원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보유 등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기준으로 전시주최사업자는 5천만원 이상, 전시장차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는 3천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 전시장 운영실적 및 차년도 운영계획, 전시회 개최실적 및 차년도 개최계획, 기타 전시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사항 (단, 영업비밀상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한 전시사업자의 업종별 단체를 설립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및 운영·감독을 받도록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내용심사)

- 전시사업자단체에게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수 및 규모 관련사항, 기타 회원의 기술자격 및 변경등록요건 관련사항을 보고토록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전시회 인증제도 관련 세부사항 규정 (내용심사)

-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사업자단체에게 전시회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시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회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인증기관에 제출

☞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효과적인 정책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능형로봇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을 구체화 (신설)

- 지능형로봇의 생산·출하 및 재고 관련사항, 수출·수입 관련사항, 설비투자 관련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보장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구체화 (내용심사)

- 법률에서 규정한 지능형로봇제품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영업정지사유, 품질인증대상 및 기준을 규정

- 이를 위해 인증기관이 인증받은 지능형로봇 생산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미흡하게 된 경우 인증표시 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인증을 받은 지능형로봇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를 당해 로봇제품 가액 이내로 하고, 품질보장사업자 (자본제공제조업, 보험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게 품질보장사업 관련 재산과 기타재산의 구분회계 및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 비중요 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규정한 지능형로봇투자회사 운영 및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운영·감독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 (내용심사)

- 지능형로봇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관련사항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능형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 수탁기관의 요건을 규정
- 지능형로봇투자회사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보험 또는 공제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규정
- 또한, 지능형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로봇 제품, 부품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로봇기업에 출자·주식·지분 취득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에 대한 감독규정 구체화 (내용심사)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경비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사업종료 후 3월 이내에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 로봇전문연구원 지정시 연구개발실적,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의 구체화 (내용심사)
  -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이 규정한 5가지 유형별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외국인 임대주택용 건설용지의 확보 및 처분제한 관련규정을 신설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공급시 총 주택공급세대 수의 1~10%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해야 하고, 동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으며, 외국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임차인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승강기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연 1회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으로 현행 3가지 외에 '최근 3년간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에 합격하였을 것'을 추가 (강화)
  - ☞ 승강기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정밀안전검사 합격요건 추가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규제자 수 및 규제비용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승용자동차(LPG 자동차 및 경차 제외) 중 당해 회계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 '12년부터 적용할 기준평균연비 상향 (강화)

- 기준평균연비를 '배기량 1,600cc 이하는 12.4km/ℓ → 14.5km/ℓ 로, 배기량 1,600cc 초과는 9.6km/ℓ → 11.2km/ℓ'로 상향

☞ 개정 연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의 산출이 매우 어려우나, 제반 소요비용이 연간 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판단되고, 주요 선진국의 기준연비 강화추세와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 지속적인 고효율 자동차 개발 유도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원안동의

(2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필지분할기준 강화 (강화)

-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면적기준 없이 '최소분할면적을 1,650㎡ 이상'인 규정을 '10,000㎡ 이상의 산업용지에 대해 4필지 이상 분할을 금지하고, 최소분할면적은 최초분할 전 산업용지면적의 1/4로 제한'하도록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강화

☞ 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유발비용 및 피규제자 수(10,000㎡ 이상 159개 업체)는 제한적이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판단되고, 산업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조성목적과 취지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필지가 대규모 필지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필지로 분할 매각함으로써 산업용지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21) 대외무역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통상·해외진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자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무역·통상·해외진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신설)

-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및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자료(기업비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자료제출 대상, 자료제출 항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관련규정 강화 (강화)

-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의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후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가 국내 항만·공항을 경유하거나 옮겨 싣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물품에 대해 이동중지 협조요청시 발하는 이동중지명령제도 대신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물품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물품을 허가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위반자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교육명령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내용심사)

☞ 동 규정은 '9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것으로서 적절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 수 및 규제유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이 그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 또는 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 규정에, 사업개시 및 일정기간 중단 후 사업 재개시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 추가 (강화)

☞ 액화석유가스사업 개시(재개)에 필요한 사전 안전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해 법률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미납할시 법률규정에 따른 사업정지 등 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 (강화)

-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미납시 과징금 납입독촉을 고지하고, 독촉 이후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기간 사업중단 또는 폐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 가스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스공급자 소유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는 '수요자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가스설비 관리과정에서 사업주체간 분쟁 예방 (내용심사)

- '수요자 등'을 '수요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시공자'로 구체적으로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 재지정제도 도입 (강화)

- 현행 전문검사기관과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KOLAS 인정 유지비용이 검사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동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재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 피규제자가 62개 검사기관(전문검사기관 45, 공인검사기관 17)으로 파악되며,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실수요자 위주의 산업용지 공급 및 공급가격의 안정을 위해 분양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강화(강화)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시설구역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의 입주기업체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입주기업체’로 한정
  - 임대사업자가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공장설립완료(사업개시)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최대 10년 범위 내)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규정(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매수신청을 받아 다른 기업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양도)을 준용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완료(사업개시)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한 현 규정에 공장설립완료(사업개시)신고 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최대 10년 범위 내) 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완료(사업개시)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분할한 후, ‘지적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산업용지의 분할지분’을 처분시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
  - ☞ 동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산업용지 입주기업) 및 연간 규제비용은 제한적이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이해관계자의 이권이 존재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판단되고,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를 입주업체가 처분, 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대)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 이해관계자간 이권이 존재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필요성이 존재하여 중요규제로 판단되고, 동 규정은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신설(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신설 1)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이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을 지정하고, 건물관리자에게 냉난방 제한온도를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신설)

-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 지정대상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②에너지다소비업자(2,000TOE 이상)가 사용하는 건물, ③기타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 냉·난방 온도제한 위반시 또는 이행상황 점검이나 실태파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이해관계자간 이권이 존재하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규제로 판단되고, 거의 모든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고유가 상황 등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27) 산업발전법 개정안(신설 2)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을 위해 자원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규정 (신설)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 투자를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투자하도록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70조제1항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 제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투자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1호 및 2호를 목적으로 한 증권(지분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
4.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한 투자로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법률에서 규정한 자율안전확인제도와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강화)

-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시 신고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

- 법률 제8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 등'의 경우 인증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 인증표시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8의 단계적 행정처분기준에서 다음 단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1차 위반(개선명령) ⇒ 2차 위반(인증표시사용금지) ⇒ 3차 위반(인증취소)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율안전확인대상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 (강화)

- 시 · 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불법 · 불량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 · 파기 · 수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동 조치 만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 사실의 공표 및 교환 · 환불 · 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불법 · 불량 전기용품 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수입수량, 판매 · 대여수량, 판매처 · 대여처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동 검사나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 시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제도 관련규정 강화 (강화)

-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한 경우, 안전성조사 실시 중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해의 확산방지가 필요한 경우 제조 · 수입 · 판매 · 대여업자에게 제조 · 판매 등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판매금지 · 개선, 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자체, 안전인증기관,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방사성폐기물 발생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화 (내용심사)

-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공무원의 대상자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폐기물발생자가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폐기물발생자는 인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수의뢰 하도록 규정

- 또한, 방사성폐기물발생자 등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취한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관리시설의 이용제한 및 시설의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감안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실태조사 및 보고·자료요청, 방사성폐기물 인도절차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규정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대해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3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자기적합성사업자에 대해 자기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기적합성확인기관이 갖추어야 할 설비요건에 밀도캡, 비중병, 밀도 측정기 등 밀도측정 설비(장비)를 추가로 규정 (강화)

☞ 자기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규제로 판단되고, 자기적합성 확인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설비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자는 '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 부여 (신설)

- 피규제대상자 및 의무공급 비율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나, 피규제대상자는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의무공급비율은 3%로 할 계획임

☞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공급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RPS)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시장원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조달가격 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32)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하는 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물휴지(물티슈), 비비탄 총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 (강화)

- 현행 휴대용 예초기의 날의 재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여 절단날에 사용하는 재료를 STC85, STC75, STC70, STC65, STC60으로 규정
- 물휴지(물티슈)의 부직포 조성 및 혼용률을 표시하도록 의무 강화
- 비비탄총에 대한 현행 낙하강도 시험기준을 낙하시 기구부 파손이 없어야 하는 기준을 안전장치의 풀림, 파손여부, 탄환의 발사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33)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디지털도어록, 이륜자전거, 휴대용 레이저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 (강화)
  -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에 대해 고온방치시험, 온도사이클시험, 고온단락시험, 열노출 시험, 압착시험, 과전류충전시험 등 6개 항목을 신설하고
  - 디지털도어록의 경우 적용범위에 램치볼트타입을 추가하고, 온도센서식 디지털도어록의 외부 열충격시험과 온도센서 동작시험을 추가
  - 이륜자전거의 경우 적용범위에 기어구동식을 추가하고 접이식 자전거의 핸들경첩 및 차체 경첩의 고정강도가 시험시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변경
  -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경우 A종 레이저제품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하던 것을 14세 미만 어린이용은 1급 레이저제품으로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중소기업청

집필자 : 김기영 사무관 (Tel. 2100-2307, kky21@pmo.go.kr)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2건 등 총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중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제636회 경제분과 (2008.9.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9.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신설 1)

○ 간이 영업양수도 제도 도입 (신설)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이 영업양수도 제도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규정보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용이한 영업양수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상호거래가 금지되는 대상조합 확대 (강화)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거래금지대상에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추가

☞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조합간 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 수(한국벤처투자조합 24개)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결성규모 확대 (강화)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중 출자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분할출자시 최초 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상향조정

☞ 동 사안은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시 출자금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특허청

집필자 : 김기영 사무관 (Tel. 2100-2307, kky21@pmo.go.kr)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중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제360회 경제분과 (2008.8.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	제360회 경제분과 (2008.8.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60회 경제분과 (2008.8.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내용심사)

- 의무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그 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내용심사)

- 의무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그 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내용심사)

- 의무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그 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4절 | 국토·해양 분야

건설분야 집필자 : 정동혁 사무관 (Tel. 2100-2296, bapolok@pmo.go.kr)  
 교통·해양분야 집필자 : 정해빈 사무관 (Tel. 2100-2297, havin@pmo.go.kr)

### 1. 국토해양부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항공법 개정안 등 총 64개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신설 62건, 강화 47건, 내용심사 15건)
- 심사대상 124건 중 7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하고, 6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하였으며, 나머지 1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함

[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344회 경제분과 (2008.1.3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46회 경제분과 (2008.4.17)	원안의결 7 철회권고 3	신설 3, 강화 7 *중요 3, 비중요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46회 경제분과 (2008.4.1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도로법 시행규칙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46회 경제분과 (2008.4.1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8회 경제분과 (2008.5.20)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349회 경제분과 (2008.5.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49회 경제분과 (2008.5.2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선법 개정안	제350회 경제분과 (2008.5.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0회 경제분과 (2008.5.2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1, 신설 1 *비중요 2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50회 경제분과 (2008.5.2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1, 신설 1 *비중요 2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	제351회 경제분과 (2008.6.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제351회 경제분과 (2008.6.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52회 경제분과 (2008.6.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측량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54회 경제분과 (2008.6.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 기준 제정안	제354회 경제분과 (2008.6.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제357회 경제분과 (2008.7.17)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4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57회 경제분과 (2008.7.17)	원안의결 7	신설 4,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7회 경제분과 (2008.7.17)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7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제359회 경제분과 (2008.7.3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59회 경제분과 (2008.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9회 경제분과 (2008.7.31)	원안의결 4	내용심사 3, 강화 1 *비중요 4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제360회 경제분과 (2008.8.14)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0회 경제분과 (2008.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칙 개정안	제361회 경제분과 (2008.8.2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1회 경제분과 (2008.8.2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1, 강화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61회 경제분과 (2008.8.21)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362회 경제분과 (2008.8.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제362회 경제분과 (2008.8.27)	원안의결 3	내용심사 2, 신설 1 *비중요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5회 경제분과 (2008.9.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제194회 본위원회 (2008.10.16)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신항만·신공항 개발 촉진법 제정안	예비심사 (2008.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9회 경제분과 (2008.11.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196회 본위원회 (2008.11.13)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196회 본위원회 (2008.11.13)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2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항공법 개정안	제198회 본위원회 (2008.11.25)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3	신설 8, 강화 8 *중요 4, 비중요 12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00회 본위원회 (2008.12.18)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8.12.2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건설 분야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건설업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요건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존속기한(08.6.8)을 삭제 (강화)
  - ☞ 새롭게 건설시장에 진입하려는 선량한 소규모 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외국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되나 현 상황에서 사무실요건을 삭제할 경우 악의적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난립할 소지가 크므로 사무실 구비 의무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되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면적기준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2)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1)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신설)
  -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분양전환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증서를 추가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임대사업자가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할 사유(부도, 파산)가 발생한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그 사유에 '모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를 추가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1)

- 온돌설비를 온수온돌과 구들온돌로 나누어 규정하고 온수온돌은 단열·방수조치를 하고 방열관은 부식과 열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구들온돌은 가스배출 및 공기 흡입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토록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 온돌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보일러 및 온돌난방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창 및 문의 열관류율 체계 및 기준을 공동주택과 기타로 구분하여 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1)

- 지하수법 개정(08.2월)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사후관리 불이행·허위신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불이행'의 경우는 400만원으로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명의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100만원으로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서식을 정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5)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내용심사 1)

- 허가가 필요한 개발구역내 행위(건축물의 건축 등,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체적으로 정의하고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추가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일정 서류(자금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 바, 시행령에서 보상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추가로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 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승인신청서 및 공제규정 제출의무, 9개

공제사업 범위 등 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60㎡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하도록 함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측량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측량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제정안 (신설 1)

- 피난규칙 개정안은 기둥 및 보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

- 관리기준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측정을 관리대상 콘크리트가 사용된 기둥·보 (시험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약 3시간 동안 시험체를 가열로 안에서 가열하여 주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 최고 649℃이하일 것을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2, 내용심사 1)

-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타인명의로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거나 건설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품질관리자에게도 건설기술자에 관한 규정(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금지, 업무정지, 벌칙 및 과태료)을 준용하도록 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시(총사업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총사업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해당공사의 설계량이 레미콘 1,000m<sup>3</sup> 또는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는 KS규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품질이 확인(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감리·감독의 품질검사)된 건설자재만 사용토록 의무화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제4조의 4)의 업무정지처분 한도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고의·중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하고 5년간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원시데이터와 함께 보존토록 의무화(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률개정으로 인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유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사유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현행 5년)도 진단결과에 따라 차등(A는 6년, B·C는 5년, D·E는 4년)을 두도록 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안전점검은 토목분야·건축분야로, 정밀안전진단은 교량 및 터널분야·수리시설 분야·항만 분야·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등록된 분야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등록할 수 있는 4개 분야(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 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외에 이들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분야를 추가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등록하는 분야 수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변경신고사항(현행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을 추가 (기술인력, 장비)하여 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주택거래신고 의무를 중개업자가 이행하도록 법률이 개정('08.6.13)됨에 따라 계약당사자·거래가액 등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매수인의 협조의를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거래 신고가격의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08.6.13)됨에 따라, 통장사본 등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구체적으로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사고발생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장금액을 상향조정 (강화)

※ 법인 : 1억원이상→2억원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이상→1억원이상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거래대금증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사업제안, 개발계획 수립, 조합설립 등)에서 '지분 쪼개기'가 도시개발사업의 제안과정 등 주민공람 이전 절차에서 주로 발생함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동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람공고 이전에 공유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자 수를 1인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조합원 결의권도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게만 인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칙 개정안 (신설 3)

-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의 인력과 장비 요건을 동 규정에 상향입법하고 인정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법인 등기부등본, 기관의 인정업무 수행인력 조직도, 평가원의 인적사항·기술자격증 사본·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인정 업무 수행가능 장비보유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동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 (신설)

☞ CCTV설치가 실제 범죄예방에 일정효과가 있다 할 것이나,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으로서 CCTV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에도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CCTV 설치를 장려하는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들을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요건을 규정에 상향입법하고 지정절차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기반시설의 적정배치를 위해 최소 10만㎡이상이 되도록하고 연접개발 예상지역은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며 구역경계는 도로·하천 등으로 명백히 구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시 구역내 납부의무자들이 부담할 총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토해양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당해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기준면적의 3배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바,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면적의 10%에서 300%사이로 명확히 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2)

- 분양광고시 그 내용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분양광고에 앞서 유인시설에 대해 우선

공개모집한 경우 그 업종·건축물 내 위치·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분양 면적비율 등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 '거주자 우선분양에 관한 사항', '전매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분의 20% 범위 내에서 당해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는 바, 그 대상지역을 수도권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인구 50만 이상)로 규정하고 1인 1실을 원칙으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도권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매 또는 그 알선을 금지토록 함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2, 신설 1)

-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식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사업시행자 중 민간기업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등급(BBB이상)인 기업으로서 아래 항목 중 ①호 또는 ②호 중 하나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 (내용심사)

- ①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 ②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 ③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 ④ 최근 3년간 계속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발생
- ⑤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퍼센트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보상계획서’ 등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신설)

☞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3 이상 또는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 이상’을 삭제 (강화)

☞ 동 개정안은 주차공간 부족, 일조권 미확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이 정작 필요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고, 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는 주민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철회권고

(20)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신설)

☞ 건설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가 우리 건설시장에 만연해 있음을 감안할 때 불법대여시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6월이내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강화)

☞ 현행 과징금 상한액인 5천만원은 1984년에 정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불공정 행위의 범위에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특약의 내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타 법에서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함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가 포함됨을 명시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주택거래 신고대상을 주택거래신고지역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주택거래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① 자금의 조달계획, ②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이하 ‘입주계획’)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은 거래가액에 관계 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강화)

☞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강화안으로 판단되므로 철회권고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09년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타시험기관 성적(TOEIC 등)으로 대체하도록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을 개정('07년)하면서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고 규정한 바,

- 감정평가사 시험공고가 매년 5월경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험공고전 2년 5개월 전의 성적까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나 TOEIC 등 시험기관은 시험성적으로 2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성적확인 등 시험관리에 곤란이 예상되어 타 자격시험과의 균형 및 시험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영어시험 인정기간을 2년으로 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 택지비 가산비 구성항목 중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는 국가·주공·지방공사·「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중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관이 산정하도록 해왔으나 향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택지비 가산비 산정기관을 선정하도록 개정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당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바, 에너지 성능등급의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이하 민간택지)의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감정평가 신청에 의해 시·군·구청장은 우수감정평가업자(14개 업체) 중 2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바, 1인은 반드시 전국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있고 자산규모, 매출액 등이 국토해양부 고시를 충족하는 업자(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한국감정원을 필수적인 민간택지비 산정기관으로 선정토록 한 동 규칙 제10조 제2항 후단의 존속기한이 2008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1년 더 연장 (강화)

☞ 현재 분양가 상한제 존폐여부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철회권고

교통·해양분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2)

○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내용심사)

- 운영위원 중 조합원 및 연합회장 등 내부위원의 수는 1/2미만으로 제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금고 이상 등 위원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위원에서 배제하고, 지급여력비율(100분의 100) 등 재무건전성 준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 마련 (내용심사)

-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직접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사업정지(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세부처분기준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2)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7)

○ 운항증명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 <별표2>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액 중 안전규정 위반행위 (항공기·항공기운항)에 항공기 안전·보고요구·사고발생 등을 신설 추가하여 별도로 <별표1의 3>에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계획 승인 (강화)

-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제출시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법 제23조제3항의 비행자격증명이 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에서 유인자유기구, 패러플레인으로 확대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기 승무원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 및 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강화)

- 자가용 조종사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 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신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운영개시일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변경시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비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강화)

- 회전익항공기 운항시 계기비행뿐만 아니라 시계비행시에도 1개 이상의 교체헬기장을 지정하도록 요건을 강화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처분기준 등 (신설)

-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 및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 기준, 공항개발사업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비행장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 정기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공항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강화)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경우 국내선을 1년 이상 1만편 이상을 사망사고 없이 운항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시 국내운항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점, 항공안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항공운항증명(AOC), 안전관리 시스템(SMS)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국내 운항경험이 국제선 운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분석결과가 부족한 점, 대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할 뿐 선진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회권고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강화)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국 국내선(국제선은 6개월)을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로 운항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함

☞ 위와 동일한 사유로 철회권고

- ICAO 조약 제23조상의 항공기내 구비·탑재서류 10종을 명문화하고, 처분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 개정예 따라 위반사항별 처분기준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3) 도로법 시행규칙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 연장 및 변경 허가 신청 서식 마련 (강화)

-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신청서 서식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서식 변경 (강화)

- 현행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 설계업무 대행자의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와 설계대행금액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로연결로의 공동사용 허가 (신설)

-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구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공동사용 연결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동사용에 따른 연결로 등의 시설비 분담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도로연결로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 행위제한 (신설)

-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에서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및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시행자 지정 등 (신설)

- 박람회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5) 도선법 개정안 (신설 2)

○ 도선사에 대한 정기신체검사 의무화 (신설)

- 도선사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조선소 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 (신설)

-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승무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6)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 (신설 1)

○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소집명령 및 교육·훈련 (신설)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소집명령을 받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 의무보험 만기사실 통지 (강화)

- 보험사업자 등은 의무보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던 것을,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강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의 내용을 법에 명문화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 대하여 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해당 환자 및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금지 (신설)

-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내용심사)

- 보험사업자 등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한 계약의 건별로 해당계약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신설 2)

○ 자동차의 운행제한 (신설)



-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통행량 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수송분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중형화물의 운송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기간·도시 및 지역 교통물류 권역으로 구분하고, 해당권역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 또는 감축하려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경우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점, 여객·화물의 수송분담률 또한 자동차에 편중되어 있는 점, 국제적으로도 영국의 자동차 교통량 감축제도(Road Traffic Reduction Act) 및 LEZ제도(Low Emission Zone) 등 자동차 통행량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사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한 입법례 또한 국내외 다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자동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한 요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행제한 요건을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정도 등을 고려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자동차 운행제한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과태료 (신설)

-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9)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1)

○ 사전진단서 작성·제출 등 (신설)

- 항행민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여

처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진단대행자의 등록기준, 진단대행자의 결격사유, 진단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안전관리체제 운영 (강화)

-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인원수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취소사유 등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면비행선박(WIG선) 등화표시 (신설)

- 수면비행선박이 비행하는 경우(이륙 및 착륙 포함) 일반선박의 등화 외에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고강도 적색섬광등 1개를 표시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해상교통관제통신 청취 (신설)

-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선박별 무선통신을 청취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신설 2)

○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 (신설)

-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기금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함 (추가기금협약 가입국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피해액이 국제기금 보상한도액(2억3백만SDR)을 초과하는 경우 체약국의 유류수령인이 유류수량에 따라 분담금을 부담하게 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대한 보장계약 체결강제 등 (신설)

- 1,000톤 초과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은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내항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체결 등 관련정보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인·면허 (신설)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신설)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이행강제금 (신설)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1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시설 등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신항만·신공항 개발 촉진법 제정안 (신설 1)

○ 신항만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신설)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항만배후단지내 토지·시설을 분양·임대·양도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 재취업 운전자에 대한 신규 운전정밀검사 (강화)

- 신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중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한해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만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및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 게시 (강화)

- 회사명·자동차 번호·운전자 성명·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안에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안 2곳 이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함

☞ 동 규제의 주목적이 택시이용자의 안전 확보인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뒷좌석 부근에 택시운전증명을 추가 게시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고, 게시하더라도 훼손, 망실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으므로 택시운전증명은 현행대로 게시하되, 뒷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하여 회사명, 자동차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스티커를 뒷좌석 부근(우측문 등)에 부착할 것을 개선권고

○ 어린이통학 전세버스 요건 (강화)

-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황색도장, 어린이용 안전벨트, 승강구 발판, 어린이보호표지, 보험가입, 보호인 동승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 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 통보의무 (강화)

- 항공·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항공·철도의 운영자, 승무원, 관제사, 항공철도사고 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등에게 사고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신설 5)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 대행 (신설)

- 전문인력 및 평가수행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 하여금 공공교통 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준수사항,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복합환승센터 및 시행자에 대한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신설)

-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합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및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복합환승센터 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한 (신설)

-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복합 환승센터 사업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 업체 또는 한국토지공사,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신설)

- 복합환승센터사업시행자에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신설)

- 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항공법 개정안 (신설 8, 강화 8)

○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 (강화)

- 수리·개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음치에 변동이 발생 할 경우에도 해당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초경량 비행장치 (강화)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에게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번호를 동

장치에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비행제한구역(500ft이상)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안전비행 및 사고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위치표시기 또는 휴대형단말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량항공기 (신설)

-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신설)

-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17세, 사업용 부조종사는 18세가 되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강화)

-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부적합하게 발급한 경우 및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비행경험 (강화)

-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승객좌석 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운항승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행경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 포함)을 충족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안전 의무보고 (신설)

-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인지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사항·보고방법·시기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조종사 운항자격 (강화)

-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승객좌석 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운항관리사 (강화)

-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신설)

- 비행장설치에 대한 고시 후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내·국제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신설)

- 현행 면허체계를 정기·부정기에서 국내·국제 및 소형으로 개편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에 한하여 면허기준에 운항경험 등의 안전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1961년 항공운송사업 도입 후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예외로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최근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부정기 사업면허를 취득한 뒤 정기 사업자와 거의 유사한 운항을 하는 정기성 부정기 취항이 증가하는 등 정기·부정기간 사업영역이 불분명해 지고 있는 점,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수요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기준이 높아 시장형성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면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 세계적으로 볼 때 국내선과 국제선의 구성비는 70:30으로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2배 이상 높은 데 반해, 사고율은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제선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제선의 경우 면허기준에 국내 운항경험을 추가함은 경쟁제한적인 시장진입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국제선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수단인 점, 국제선과 국내선의 면허기준을 차등화 할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국제선의 안전기준만을 특별히 강화할 경우 국내선에 대한 차별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도입하지 않은 제도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과 면허기준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동조항을 철회권고하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의 검사기준을 강화(항공기 규모 및 운항형태별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 항공운수권 배분 (신설)

- 외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된 항공기 운항회수 이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운수권")를 배분할 경우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정하고, 배분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신청자에 대한 평가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폐지된 노선의 운수권, 운수권을 배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않은 경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내부지침(국제항공운수권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되던 배분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제한된 운수권을 다수의 항공사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배분기준 및 절차가 필요한 점, 위 지침은 국토해양부 업무처리방침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수권에 대한 배분기준 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118조제2항에 규정된 배분원칙은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수정(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신설)

- 외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된 외국과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 이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공통과 이용권”)를 신청에 의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영공통과 이용권이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배분된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 영공통과 이용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동안 영공통과 이용권을 정부에서 배분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케 한 결과 특정 항공사에서 독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항공사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영공통과 이용권은 제한되어 있는 점, 향후 러시아 외 특정 국가에서도 자국의 영공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경우 영공통과 이용권을 확보해야 함) 등을 감안할 때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배분기준 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118조의2 제2항은 수정된 제118조제2항의 내용을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 항공기 운항 일시정지 등(강화)

- 항공기(자가용)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항행안전시설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강화)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동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기준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1)

○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신설)

-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기준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신설)

-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에 품질인증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품질인증시험장의 위치·시설이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예인선항해검사(강화)

-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예인능력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평수구역에서만 유행하는 경우와 최초검사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4)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허가 등 (신설)

- 대한민국 국민이 관할해역 내에서 해양유전자원의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동의를, 외국인·국제조직 또는 외국인과의 계약·위임 등을 통해 해양생명자원 관련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할해역내에서 해양유전자원의 연구·개발·생산·상업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운영 (신설)

- 해양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과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분양승인 (신설)

-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에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분양제한 사유 및 분양승인 취소사유 등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외반출승인 (신설)

-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신고)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외반출승인 취소사유 등을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2. 해양경찰청

집필자 : 정해빈 사무관 (Tel. 2100-2297, havin@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총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대상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

####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9회 경제분과 (2008.5.22)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3)

#####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내용심사)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별로 책임 운영자 1인 및 시험관 2인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시험장별로 책임 운영자 1인 및 시험관 4인 이상을 갖추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 응시원서의 제출 등 (내용심사)

-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 시험대행기관 시험장별 시설기준 (내용심사)

- 시험장별로 시험용 수상레저기구(3대 이상, 요트는 2대 이상), 안전교육장(60㎡ 이상), 행정실(20㎡ 이상), 감독실(10㎡ 이상), 화장실과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갖추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5절 | 농림수산물 분야

집필자 : 김기영 사무관 (Tel. 2100-2307, kky21@pmo.go.kr)

### 1. 농림수산물부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수의사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4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4건, 강화 36건 내용심사 24건 등 총 7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4건 중 철회권고와 개선권고가 각 2건이고 나머지 70건은 원안대로 의결

[ 농림수산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7회 경제분과 (2008.5.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제347회 경제분과 (2008.5.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47회 경제분과 (2008.5.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7회 경제분과 (2008.5.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49회 경제분과 (2008.5.22)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50회 경제분과 (2008.5.29)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1
한국산 생과실 대만수출 검역 고시 개정안	제350회 경제분과 (2008.5.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1회 경제분과 (2008.6.4)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4회 경제분과 (2008.6.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7회 경제분과 (2008.7.17)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357회 경제분과 (2008.7.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58회 경제분과 (2008.7.24)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제365회 경제분과 (2008.9.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65회 경제분과 (2008.9.1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5회 경제분과 (2008.9.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67회 경제분과 (2008.10.2)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67회 경제분과 (2008.10.2)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수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8)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3 *비중요 5
수의사법 개정안	제369회 경제분과 (2008.11.6)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6)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양곡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2)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8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3 *비중요 3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2)	원안의결 2	강화 1 *비중요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370회 경제분과 (2008.11.13)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9)	원안의결 1 철회권고 2	신설 2 *비중요 2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제373회 경제분과 (2008.12.4)	원안의결 1	강화 3 *중요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73회 경제분과 (2008.12.4)	원안의결 3	내용심사 1 *비중요 1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 지리적 표시 등록 후 변경신청 절차 (신설)

-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후, 대상지역·자체품질기준·품질 관리계획·지리적 표시 등록과 관련된 법인의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후, 등록내용변경 필요성이 발생해도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강화 1)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강화)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사용어구의 규모 등 승인내역을 위반한 경우 승인을 철회하고, 승인 철회후 1년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어업에 대해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
-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의 규모에 추가하여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근해형망어업, 연안조망 어업, 연안선인망어업은 '수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산 동식물만을 포획·채취하도록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루묵, 쥐노래미의 포획·채취 금지체장 조정
  - 도루묵 : 10 → 11센티미터
  - 쥐노래미 : 18 → 20센티미터

☞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강화 2)

○ 재해보험 사업 약정 체결 방법 (강화)

-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체결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손해평가인의 자격 및 손해평가방법 (강화)

- 보험사고시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규정 (수산질병관리사, 5년 이상

양식 경력이 있는 어업인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재해보험대상물별 손해평가방법 규정

- 양식수산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류별 성장률, 잔존율, 실제 어체중 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 양식시설물 : 각 시설물별 신품가격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의 시가 체감율을 감안하여 산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설정 (강화)

- 위해관리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마다 1년이 경과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영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지정을 취소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5)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5)

○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 등 (강화)

-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제수가의 게시 (강화)

- 방제업체가 수출입식물의 방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제수가를 영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규정

- '수출입 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청산(HCN) 소독에 필요한 가스검지기, 방독마스크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 방제질서 확립을 위해 방제수가를 게시하도록 하고, 청산(HCN) 방제 종사자 보호 및 완전한 방제작업을 위해 소독 및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약의 표시 (강화)

- 농약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진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 (강화)

- 미생물농약 등록기준에 발효조, 배양조, 광학현미경 등 시설 및 장비를 추가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 (강화)

- 농약영업 등록자에 대해 위반행위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규정

- 유통농약에 대한 주성분 미달 또는 초과 검사기준에 상·하한치 허용범위를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6)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2)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내용심사)

- 농어업인의 참여범위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요건
  -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수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등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 및 변경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규정

- 체험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위생교육 실시기준 규정

-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한 사업자의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및 기록·관리

☞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입법화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내용심사)

-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요건

-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도농교류 지원활동 수행실적 또는 성과

-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하되 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시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을 부대권고

(7) 한국산 생과실 대만수출 검역고시 개정안 (강화 1)

○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강화)

- 수출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선과장에 제공하여 대만 방역관의 한국 방문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와 협의하여 사과는 수확 15일 전, 복숭아는 10일 전에 관할 식물검역원지원·사무소에 재배지 검사를 신청해야 함

- 선과장이 대만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된 후 선과장 구비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원·사무소장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되지 않으면 선과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선과장은 선과기간 중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기록·보관해야 함

- 선과장은 수출농가로부터 방제기록, 전담지도사로부터 예찰기록, 지원·사무소로부터 재배지 검사결과를 제공받아 보관해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3)

○ 식품명인 지정서 반납 및 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내용심사)

-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명인활동보고서를 매년 1.31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명인지정서를 농림수산물

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식품산업 동향 등 분석결과 보고 (내용심사)

- 통계분석전문기관은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내용심사)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신청서에 최근 6개월 동안의 해당제품, 생산·판매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유기식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에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 전통식품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제품 생산실적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되, 정기심사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1회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 신청서를 유기식품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우수식품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심사원을 업무 범위별 각 3인 이상 보유할 것
-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 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인증 대상 품목 및 인증신청자의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인증기관의 장은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 및 취소현황,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취소현황,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취소현황, 승계신고 수리현황,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실적 등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인증기관은 그 명칭·소재지 그 밖에 식품인증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조사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당해 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의 자료를 5년간 비치·보존해야 함

- 인증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 제조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관한 자료
- 원재료, 첨가물, 포장재 등의 사용기록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에 관한 자료
- 기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관리에 관한 자료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정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우수식품인증승계신고서에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에 한함),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승계 받은 우수식품인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전통식품 및 유기가공식품의 품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다만 우수식품 인증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5년간 관련 문서를 비치·보관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년으로 단축

(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원산지 등의 표시대상 및 방법 (강화)
  -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함
  - 원산지 표시대상을 쌀, 김치류, 축산물로 함
  - 원산지 표시방법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공개(가정통신문, 인터넷, 취사장 비치 등)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는 일괄 표시할 수 있음
  - ☞ 원산지 등의 표시대상과 품목별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인 영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원산지등 표시대상 영업자 중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과 게시판을 모두 설치토록 하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원산지 등 표시

방법(별표 4의2) 중 제1호 가목에 '다만,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급식소의 경우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뷔페의 경우처럼 풋말을 사용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할 수 있는 바,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방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호 나목을,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풋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령」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령」간 규제대상 품목과 대상업소가 상이하고,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중복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바,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규제를 일원화해야 하나 이를 추진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식품위생법령」과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의 규제 내용 및 수준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한편, 피규제자에 대한 중복조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부처(복지부, 농림부)가 협의하여 합동조사 등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부대권고

○ 원산지 등 표시 위반시 과태료 (내용심사)

-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300만원, 쇠고기 종류 표시: 100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 ☞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4)

-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조사·점검의 주기 (내용심사)
  -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조사·점검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조사·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 또는 외국요구기준에 정하여 있거나 요구하는 조사·점검 기준을 반영 할 수 있음
  -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내용심사)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 포함)는 등록신청서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단계별 관리계획서,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함

-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포함)에는 당해 수산물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 등 (내용심사)

- 친환경수산물의 인증대상품목 및 인증기준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및 인증기준으로 함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인증신청서에 인증품 생산계획서, 양식장(가공공장) 주변도, 인증신청 대상 양식장 주변의 조류도, 양식장 환경 인정신청서(인정신청 대상 양식장의 수질 및 해저퇴적물에 대한 제3자(공인기관)의 검사자료로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 첨부), 생산,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

- 친환경수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친환경 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규정 (내용심사)

☞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강화 1)

○ 공제사업의 감독 (강화)

-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2)

○ 비료수입업의 신고 (내용심사)

-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

영업장 소재지, 제조 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비율을 기재한 신고서에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폐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중 해당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각각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처분기준 등 (내용 심사)

-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 등록·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한 경우 및 변경·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고시 (강화)

-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재배시험성적표 제출 (강화)

- 비료생산업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제조원료 변경 및 비료명칭 추가의 경우) 및 비료수입업 신고시 재배시험성적표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에 한함)를 제출해야 함

☞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하여 제조한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에 한하여 작물의 재배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강화 1)

○ 마주등록 취소 (강화)

- 마주등록 취소사유에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마주등록을 한 때'를 추가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준 및 방법 등 (내용심사)

-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규정
  - 농산물 및 수산물 종류별로 시료의 채취량을 정함
  - 시료수거는 출하되어 상장경매 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음
  -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분석)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분석)방법에 따라 실시
  - 개설자가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안전성 검사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최근 1년이내에 1회 적발시 1개월간, 2회 적발시 3개월간, 3회 적발시 6개월간 출하제한

☞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축산업의 등록 (강화)

- 등록대상 축산업종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면적을 '300제곱미터 초과'에서 '50제곱미터 초과'로 강화
-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 등록기준 마련
- 수입 신고하는 종축에 오리 추가

☞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5)

○ 소의 출생 등의 신고 (내용심사)

-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 등 신고서(기존소 신고, 출생신고, 수출입 신고, 양수도 신고, 폐사신고, 쇠고기포장 처리신고)를 제출하여 신고
  -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는 30일 이내, 수입·수출 신고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육우 등과 같이 출생직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 도축업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5일 이내
- 소의 소유자 등은 출생 등의 신고 후 신고착오 등으로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신고하여야 할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
  - 도축업 영업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축산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중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 직전 연도의 축산물가공품의 연간생산량이 500톤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의 신고를 희망하는 업체는 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 신청하고, 등급판정소장은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귀표 부착 의무 등 (내용심사)

- 귀표의 부착 기한 및 방법
  -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는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 수입 소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소의 소유자 등이 고령 등으로 귀표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요청하고 대행 기관에서는 30일(도서지역 90일) 이내에 부착
  - 목줄을 이용하여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는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거나, 귀의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로 하고, 이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의 장에게 귀표부착 방법 변경을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함
- 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의 금지
  - 귀표가 없거나 훼손되어도 양도·양수·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농촌관광·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육중인 소,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탈락되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인식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
  - 소의 소유자 등이 귀표 부착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표 미부착 등 신청서'를 해당지역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개체식별번호 표시 의무 (내용심사)

-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도 도축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출생 등의 신고 후 개체식별대장에 등록하기 전 부상 등으로 즉시 도살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귀표가 탈락되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검사관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 도축업자는 분할 도체에 라벨을 1개씩 부착하고 도축업자가 소에 부착된 귀표를 수거·소각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축장에서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동일하게 표시하되 라벨의 규격은 업체 자율
- 식육판매업자 표시방법은 매입처에서 표시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부분육 또는 식육판매 표시판에 표시하되 라벨의 규격은 업체 자율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의 묶음번호 표시방법은 서로 다른 다수의 개체식별 쇠고기를 포장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묶음번호는 동일한 소의 종류와 등급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구성 개체수는 20마리 이하로 제한하되, 갈비 등은 제품의 특성상 50마리 이하까지 허용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도축 및 포장처리실적의 장부기록 및 거래내역 기록 보관의무 (내용심사)

- 도축업자는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날짜별로 구분, 관리
- 포장처리실적 신고의무가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 관리하고 포장처리된 쇠고기를 판매 또는 반출한 경우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전자적 처리를 포함)에 날짜별로 기재하여 보관
- 포장처리실적 신고의무가 없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과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을 각각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재(전자적 처리를 포함)하고 날짜별로 구분, 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전자적 처리를 포함)하여 날짜별로 구분, 관리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내용심사)

- 소의 출생 등의 신고, 귀표 부착의무,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및 허위표시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4)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내용심사)

-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에 대하여 6개월간 양식시설을 폐쇄하거나, 양식대상 수산동물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안에서 양식제한 조치
-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업자에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하여 4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조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수산동물의 소유자는 수산동물 및 오염물건을 살처분·소각·매몰하고 오염방지 조치
- 매몰한 수산동물의 사체 등을 허가를 받고 발굴하는 때에는 발굴한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동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 방류수산동물이 살처분대상의 수산동물전염병(잉어봄바이러스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수산동물을 살처분

- 수산동물양식자 및 고용된 자, 수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 목적의 시설을 갖춘 수산동물 전시·판매업자 및 고용된 자, 낚시업 허가 받은 자 및 고용된 자, 농림부장관 등이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동물 저장시설 소유자 및 고용된 자에 대해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의무 부과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출입 수산동물 검역 등 (내용심사)

-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 또는 수입금지 수산물건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진료·예방용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허가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
-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 또는 수입금지 수산물건의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조치명령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하며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
- 지정검역물(여행자 휴대품 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신청서를 수산물품질 검사원지원장에게 제출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지정된 수입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하고, 지정된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장소 등을 기재하여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외국과의 협약 및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역이 필요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신청서를 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장에게 제출
-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보관관리기준 규정
-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내용심사)

- 수산동물체내의 잔류를 통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발생과 수질 또는 수중생태계의 오염 등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및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사용 제한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 (내용심사)

-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투약명령 및 지정검역물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수산업법 개정안 (강화 1)

○ 면허어업의 방법 등 제한 (강화)

- 양식어장에서의 분뇨처리시설 등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 추가

☞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및 보관 안전관리 (강화)

- 수입중인 식물검역대상 물품을 수송하거나 국내 경유중인 식물검역대상 물품을 보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부과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식물검역대상 물품의 수입제한금지 및 검사 (강화)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보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 횟수에 따라 10~500만원 과태료 부과)
-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 격리재배종자를 검사종료 전에 지정된 격리 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킨 자 (500→1,000만원)
  - 경유 물품의 도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500만원)
  - 방제명령 또는 식물방역관의 조치명령 위반자 (200→1,000만원)
- 농업유전자용으로 수입금지식물을 수입할 경우,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발행한 확인서를 첨부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입식물 검사장소의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검사장소에 검사실 설치 및 검사장소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 검사장소의 관리기준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내지 지정취소 기준 마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및 열처리업에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여 식물검역원장에게 신청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운영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내지 등록취소 기준 마련

☞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수의사법 개정안 (신설 2)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등 (신설)

- 동물 질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동물병원은 농림수산물부령에서 정한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와 방사선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관리를 의무화
- 신고 미이행, 책임자 미선임, 정기검사 미실시 또는 종사자피폭관리 미실시한 경우 시정 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중인 동물병원이 현재 2,300여 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수의사가 2,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한 방어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종사자와 동물병원 이용자가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방사선의 과다노출시 불임, 탈모, 기형아 출산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검사 및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관리를 의무화함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등록 등 (신설)

-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하여 MRI, CT 같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동물병원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는 동시에 동물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의무화

☞ 피규제자 수와 규제 영향비용이 많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로서 논란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강화 4)

○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강화)

-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 신청
-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추진시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취소된 후 2년 이내 재지정 불가
- 우수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의 우수농산물 생산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취소 후 1년 미경과자 및 우수농산물 인증표시·사후관리 관련 벌금 이상 형 확정후 1년 미경과자는 신청 불가
- 우수농산물 생산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2년 이내 해당품목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년생농산물 등은 농림부령으로 별도규정) 계속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2년마다 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 신청토록 함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및 우수농산물 관리기준 미준수시 생산자 지정을 취소
-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기간 만료전에 재지정 신청토록 함
-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이 업무정지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 후 1년미경과자 재지정 불가
-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생산자, 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망, 권리·의무의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필요시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관리시설운영자, 생산자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산물이력 추적관리 제도 (강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를 생산·유통하는 자로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자 관리기준(입고·출고, 관리내용기록보관 등) 준수 의무자를 생산·단순가공·포장·저장·판매하는 자로 규정
-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3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등록
-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필요시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 지정 신청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6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 규정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
  -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 그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하는 경우 (취소)
- 지정취소 후 1년 이내는 재지정 불가

☞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산물 검사기관지정 등 (강화)

- 농산물 검사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추가

☞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양곡관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양곡가공업의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신설)

- 현행 등록제와 신고제로 되어 있는 양곡가공업을 모두 신고제로 개정하면서,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등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변경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영업소의 폐쇄조치 (강화)

- 양곡가공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폐쇄조치

-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신설 4, 강화 3, 내용심사 1)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내용심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②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는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수립 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입지 제한 (신설)

-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입지 제한거리를 수계상 상류 방향 유효거리 5km 이내로 제한

☞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고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함에 따라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한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 등 (신설)

- 농어촌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마을조합설립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타법(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의 규제수준과 동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승인 (강화)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범위가 민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등을 위해 승인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빈집철거 명령 (강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안에 위치하여 있는 빈집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개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빈집 소유자는 이를 60일 이내 이행하고 미이행시 직권으로 철거

☞ 농어촌빈집은 경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 (신설)

-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받은 자는 해당 용도대로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 (위반시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택지조성과 주택건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의 범위가 민간인으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부보조지원을 받아 택지조성 후, 주택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택지가격 상승 후 전매 등의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어촌관광휴양지 및 민박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제한 (강화)

- 농어촌관광휴양지 및 민박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간판의 사업표시물 제거,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사업에 필수 불가결한 기구 시설물 봉인(봉인조치를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6개월 동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없음

☞ 농어촌관광휴양지 및 농어촌민박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이며 타법(공중위생관리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무단 점용·사용시 점용료 징수 및 시설물 철거 (신설)

-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용·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음

☞ 농업기반시설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밀접한 재해 대비기능을 가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공익시설로서 무단 사용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강화 3)

○ 조합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위법행위를 한 조합의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변상 추가
- 중징계를 요구받은 임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의무화

☞ 위법행위의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적 제재(정직, 감봉, 직무정지) 뿐만 아니라 금전적 제재(변상)를 추가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강화)

-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를 조합의 필연적 취소사유로 추가

☞ 피규제자가 적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조합원 등의 자격 제한 등 (강화)

-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 제한기간을 선거실시 전 180일에서 1년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로 강화

- 지역농협은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같은 구역 안에서 지역농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농협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 대의원은 당해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포함)의 임직원 겸직 금지

-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지역농협의 임직원 금지

☞ 조합원, 대의원 및 임직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합원 선거권 행사 및 가입제한은 조합선택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이고 대의원 또는 임직원의 겸직금지는 당해 조합직무에 전념하게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의무지를 축산물수입판매업자에서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판매업자로 확대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에게 식육의 종류, 원산지, 개체식별번호(소의 경우에 한함)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 식육판매업자 등의 표시의무 강화

- 식육판매업자 : 식육의 종류, 원산지뿐만 아니라 개체식별번호(소의 경우에 한함) 표시 추가
- 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식육부산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 추가

☞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호와 쇠고기 원산지 이력제 시행 및 축산물 원산지 표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경로과약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피규제자 및 규제비용이 제한적인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6)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신설 2)

○ 어선원의 전원(轉院)요양 신청 (신설)

- 요양 어선원이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협중앙회에 신청하여 전원(轉院)승인을 받도록 함

☞ 요양어선원의 전원요양 승인제도는 요양어선원이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 보험 위탁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어선원의 요양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요양기간 연장 등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일시중지 (신설)

- 요양중인 어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 요양중인 어선원이 수협중앙회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수협중앙회가 요양 중인 어선원의 상위의 입장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므로 본문의



“지시”를 적절한 용어(예: 결정)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27)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조성토지 공급 등 (신설)

- 용도별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은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용도별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로 규정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봄
-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 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 타 입법례(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입지개발법, 항만개발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기업도시개발법 등)를 준용하여 일반적인 민간투자자의 사업자격요건, 사업승인신청, 시장군수 허가사항, 준공검사 서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농업기반시설 보호·관리 (신설)

- 특별관리지역 지정 요건
  -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 유해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한국농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 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새만금호 용수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표시 및 안전시설의 설치

☞ 특별관리지역지정요건은 타 입법례(환경정책기본법)를 준용한 것이며, 농업기반시설 등의 기능과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재해사전예방과 시설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강화 1)

○ 농업기계 안전관리 (강화)

-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중인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및 임의개조·변경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장치 변경 확인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용가지원대상이 아닌 현금으로 판매되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농업기계는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부착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강화 3)

○ 가축의 도살 및 처리기준 (강화)

- 부상·난산·산욕마비·급창고창증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도축장 밖에서 긴급 도살 금지
- ☞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고 기립불능증상 소를 도축·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위생·안전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닭·오리고기에 대해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경우 도축장 밖에서 도축을 금지
- ☞ 조리 판매를 위한 닭·오리의 자가도축을 금지한다 할지라도 도계장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여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근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업계의 추가비용(수송 및 도계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토종닭 생산자·유통업자·가든식당 영업자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실제 상거래 관행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은 철회권고

○ 도축업 등의 영업허가 (강화)

- 축산물 중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판매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는 허가 업종으로 하고 판매업 및 수입업은 신고업종으로 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영업의 기준과 상반되며, 유사한 축산물인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신고제인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아니한 점, 현행 쇠고기 수입시 수입업자는 검역원장에게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당해 축산물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전에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수입 위생조건과 검역절차에 따라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에서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점,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더라도 허가는 쇠고기 수입판매행위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수입될 쇠고기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본적인 장치가 될 수 없는 점, 개정안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에서 종전에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신고한 자는 쇠고기 수입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기존진출 사업자들은 보호하는 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억제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공히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쇠고기 판매업중 수입쇠고기에 대하여만 그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 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수입판매업은 현행대로 신고제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은 철회권고

○ 축산물의 취급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의무 (강화)

-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 및 자체검사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및 자체검사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됨. 또한 현행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상 영업자에 대해 이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아 교육주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법률규정을 유지하고 하위법령에서 교육주기를 2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은 철회권고

(3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허가어업의 종류별 부대조건 부여 (내용심사)

- 안간망어업, 자망어업 및 통발어업의 어구위치 표시시설 설치 일몰(2008.12.31)규정 삭제

☞ 당초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을 전제로 당초 일몰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반영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1)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 축제식 낚시터의 관리기준 설정 (신설)

- 축제식 양식장에 대하여도 정하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춘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낚시터로 활용을 가능토록 하되, 전체 양식어업 시설면적의 30% 미만으로 1만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안전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관리선 및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 현행 유어장의 지정대상이 아닌 축제식 양식어업의 시설 일부에 대해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가두리낚시터와 동일한 수준에서 필요한 시설 및 안전기준,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6절 | 방송통신 분야

집필자 : 김기영 사무관 (Tel. 2100-2307, kky21@pmo.go.kr)

### 1. 방송통신위원회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1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2건, 강화 15건, 내용심사 23건 등 총 4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8건 중 1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4건은 원안대로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353회 경제분과 (2008.6.20)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	제354회 경제분과 (2008.6.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제356회 경제분과 (2008.7.1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7	내용심사 10 *중요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57회 경제분과 (2008.7.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 제정안	제361회 경제분과 (2008.8.2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2 *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 기준 제정안	제361회 경제분과 (2008.8.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 기준 제정안	제361회 경제분과 (2008.8.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62회 경제분과 (2008.8.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보편적 업무 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제363회 경제분과 (2008.9.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무선설비규칙(고시) 개정안	제363회 경제분과 (2008.9.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71회 경제분과 (2008.11.20)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신설 4, 강화 4 *중요 1, 비중요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71회 경제분과 (2008.11.20)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중요 1, 비중요 2
전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17)	원안의결 7	신설 4,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74회 경제분과 (2008.12.18)	원안의결 4	강화 1, 내용심사 3 *중요 1, 비중요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74회 경제분과 (2008.12.1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신설 1, 강화 3 *중요 3, 비중요 1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2)

○ 연도별 시행계획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 (내용심사)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익광고, 자막광고, 자막방송 및 별도의 프로그램 제작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 수가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동 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다만, 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의 범위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시행령안 제5조제3항을 삭제토록 함

○ 과태료의 부과 (내용심사)

-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지 않거나 디지털튜너에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능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절차를 명시

- ☞ 비중요규제로 분류.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안) 제1호, 제2호는 법률 제17조 제2항의 위반정도, 위반기간, 위반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으로는 불명확하므로 피규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재작성할 필요가 있고, 영 제15조제1항단서에서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거나, 고시 등에 위임한다는 근거 추가 필요

(2)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 (강화 1)

○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부과 (강화)

-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부과규모를 연간 매출액의 1%를 부과

- ☞ 그간 법령상 징수유예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징수유예를 해 오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1%의 기금 징수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한국디지털방송 1개이고, '07년도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1% 기금 징수시 부과금이 35억 4,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10)

○ IPTV 방송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내용심사)

- IPTV 제공사업 허가시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인의 정관, 법인의 등기부등본, 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심사기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해당 심사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심사사항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되,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에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 ☞ IPTV 제공사업자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출서류는 시행령에 위임한 바, 시행령(안) 제3조1항제5호(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에서 다시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은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지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규정(예:5. 사업운영실적서 및 허가증 사본(재허가에 한한다))하면 되므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5호는 삭제토록 개선 권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시에는 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
- ☞ 최초 허가시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에게 경쟁제한 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타 입법례가 없으므로 시행령(안) 제4조 단서는 삭제토록 개선 권고
- 특정 사업자의 전국서비스 개시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허가를 하면서 허가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전기통신설비의 구축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2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국서비스 실시기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능력 및 설비 구축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간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것은 전국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배치되므로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

○ IPTV 방송사업 겸영금지 기준 (내용심사)

- 신문, 뉴스통신 경영 법인의 IPTV 제공사업자 주식소유 제한(49%) 규제 특수 관계자 범위 규정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IPTV 콘텐츠사업자의 소유/겸영이 금지되는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
- ☞ 선진국은 방송 미디어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규제 대신 사후적인 시청자 점유율 규제를 하는 추세이나,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에는 송출할 수 없는 IPTV에 국한된 종합 편성·보도 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콘텐츠 투자 확대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 추후 시행령 개정시 관련시장이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하거나 시청자 점유율 규제 등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부대 권고

○ IPTV 방송사업자의 공정경쟁 (내용심사)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
- ☞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IPTV 방송사업에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계분리 의무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경쟁상황 평가, 시장점유율 제한, 전기통신설비동등

제공, 금지행위, 직접사용채널 운용금지 등 다른 규제수단이 존재하고 있고, 향후 현행 규제수단만으로 공정경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강한 규제수단(영업 분리 등)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지배력의 전이 방지 수단으로 회계분리 의무규제에 원안동의 하되 IPTV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을 고시할 경우 명확한 원가산정 등을 위해 현행 통신사업 회계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토록 부대권고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의무 (내용심사)

- 필수통신설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거부·제한되어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시행령(안)은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견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은 고시로 정할 예정이므로 원안동의

- 설비제공의 거절 사유

-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 또는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 당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접근·이용에 관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비 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 필수설비의 중단·제한 사유

- 천재·지변, 사업의 휴지·폐지 및 기술적 장애 등

☞ 설비제공 거절 및 중단·제한사유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므로 원안동의

- 필수설비 제공 절차

-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요청설비의 구간, 장소, 종류, 규격,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를 해당 설비를 보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필수설비 제공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 설비의 제공가능여부, 제공가능시기 등을 요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필수설비 제공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설비를 제공하여야 함

☞ 필수설비 제공과 관련하여 설비제공자와 설비제공 요청자간 설비제공 요청 후, 제공 가능 여부 통보시기(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시기(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해당설비 제공시기(방통위가 정하는 기간 이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설비 제공시기는 방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제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 (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개선권고

- 설비이용 대가는 제공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 설비 이용대가는 원가(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되, 사업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안동의. 다만, 전기통신설비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되 향후 분쟁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분쟁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송법 제35조의3에 의거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방송법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개정사항)할 것을 부대권고

○ IPTV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내용심사)

-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 기준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 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규정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때,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임

- 금지행위의 유형 및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으므로 규제위 사무국, 법제처, 방통위, 공정위, 기재부가 협의하여 조정토록 부대권고

○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신고 · 등록 · 승인 (내용심사)

-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및 승인 대상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 ·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보도 · 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송신 또는

제공하는 콘텐츠를 편성의 변경이 없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임

-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규정

☞ 방송법 및 전기 통신 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승인 받은 기존의 방송콘텐츠 제공업자에 대해 IPTV법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간주조항을 신설할 것을 부대 권고

-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승인 절차를 규정

☞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변경승인사항을 ‘방송콘텐츠 공급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경 승인 사항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화가 필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등을 취득해 당해 사업자의 최대액 출자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변경승인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제17조제1항 각호 중 제3호 콘텐츠 공급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신고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령안 제18조제3항의 승인처리기한, 변경 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 콘텐츠 동등접근 (내용심사)

-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기준으로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공익성,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또는 거래의 거절 · 중단 · 제한으로 인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로 함

☞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프로그램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보 및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다만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토록 개선권고하되 모법에 콘텐츠

동등접근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제 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향후 법률 개정시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동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IPTV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내용심사)

- 방송광고 사전 심의 :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 전체 운용채널수 : 70개 이상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공채널 및 선교목적 채널 :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
- 전문편성 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 :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간광고 허용 : 방송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6회까지 차등 적용
- 어린이 대상 광고시간 :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
- 협찬고지 : 공익캠페인 및 공익행사에 대한 협찬고지
- 보편적 시청권 보장 조치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밖의 주요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확보
- 재송신 :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제출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범위 :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의 100분의 20 이내
- ☞ IPTV의 방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방송법상의 관련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다만, 2008.6.26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사전심의(방송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시행령(안) 제20조제1항 중 '제21조의2 각호 이외의 부분'은 삭제토록 개선 권고 (향후 법률 개정시 법률 제21조제2항 중 '제32조' 삭제)

○ IPTV 제공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출연 (내용심사)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 출연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자의 재정상태 · 가입자수 및



이용요금과 사업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라 산정

- 출연금의 징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함

☞ IPTV 방송사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IPTV 제공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되, IPTV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허가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출연금 징수 기준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타 방송사업자는 법률(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기준(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을 추후 입법시 법률에 상향 입법토록 하고 방송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방송발전기금이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IPTV 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내용심사)

- 행정처분 기준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취소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 제10조제2항(법 제8조의 겸영금지 규정의 위반 및 법 제9조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규정의 위반)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사업정지 6개월
- 제13조제2항(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위반)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사업정지 3개월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5억원 이하
- 제10조제2항(법 제8조의 겸영금지 규정의 위반 및 법 제9조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규정의 위반)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매출액의 1000분의 15이하
- 제13조제2항(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위반)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24조를 준용

☞ 모범은 제28조제1항 각호의 위반사항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에도 각 호별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지 않아 규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28조제1항 각호별로 구체적인 과태료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개선권고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위치정보사업 등의 허가 및 신고 (내용심사)

-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인가 심사기준으로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3개 기준을 제시

- 시행령안 제8조의2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시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소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비중요규제로 분류. 다만,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기준을 법률(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합병·분할이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시 양수 및 합병·분할 인가 심사기준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법률 개정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부대권고

(5)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 제정안 (내용심사 2)

○ IPTV 제공사업 허가·재허가 (내용심사)

- (신규허가) 허가신청 방법,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계획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을 규정하고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득한 경우에 허가 (60일 이내에 통보)

- (재허가) 신규허가의 경우를 준용하여 규정하되,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
- (변경허가) 합병·분할, 주식 취득, 제공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사업권역의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허가 신청 및 처리
- (허가신청) IPTV 제공사업의 최초 허가신청은 '08.8.28~8.29까지로 하되 '08. 10.1일부터는 수시로 신청·접수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초 허가기간(3년)이 삭제되어 허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확보 및 허가조건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장기간 부재하고, 방송사업의 진입은 완화하되, 퇴출은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허가 심사기준을 강화 (허가 :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득한 경우에 허가 ⇒ 재허가 :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득한 경우에 재허가) 그러나, 허가이후 방송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허가 심사사항으로 '이전 허가 당시 사업계획,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 사항의 이행여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용·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가 추가되었다는 점, 재허가 기준을 허가 기준보다 강화하는 사례가 없고, IPTV 방송사업의 재허가 불허시 방송사업자보다 오히려 사업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IPTV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재허가)은 동법시행령 제3조(허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허가절차 뿐만 아니라 허가시 심사기준(심사사항별 최소점수 및 총점 최소점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심사기준을 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하도록 개선권고

○ IPTV 콘텐츠 제공사업의 신고·등록·승인 (내용심사)

- 사업자명, 서비스명, 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요시설의 소재지 변경 시 변경 신고 (7일 이내)

-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확보계획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30일 이내 처리)하고 대표자명, 서비스명, 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요시설의 소재지 변경 및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변경 시 변경등록 (30일 이내)

- 승인신청법인은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득한 경우에 신규 승인(60일 이내 통보)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승인심사시 승인신청서(약식) 및 서류(3개)를 간소화하고 콘텐츠공급 분야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방송채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인 심사기준을 강화(입법예고안 :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 득한 경우에 승인 ⇒ 최종안 :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득한 경우에 승인).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방송채널사업은 다른 오락, 영화 등의 방송채널사업과 대비하여 공적책임과 공공성이 보다 중요하여 법률에서 진입규제인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존 보도·홈쇼핑 채널은 3년 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나, IPTV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승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승인이후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신규 승인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승인기준을 강화한 원안에 동의하되, 심사승인 기준이 주로 비계량요소로 구성되어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 기준 제정안 (내용심사 1)

○ IPTV 방송사업자의 공정경쟁 (내용심사)

- 사업자의 영업활동 인건비 산정시 세부적으로 회계처리 조치
  - 업무분석기간을 매분기 단위로 하고, 개인별·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포함한 세부 업무분장표 작성
  - 업무별 시간투입 비중을 1/100단위로 표시 (전기통신설비 회계분리기준 1/10)

- 타 사업 인력 투입시 내부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IPTV 관련 영업비용으로 처리

- 유형자산 등 관리를 위해 유형자산 관리지침서 작성 및 유지
- 산업재산권은 콘텐츠 산업재산권과 이외의 산업재산권, 개발비는 콘텐츠 개발비와 이외의 개발비로 세분화
- 제공사업자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규정하고 융합설비의 내용연수를 정함
- 콘텐츠 구입비 및 개발비를 영업비용 중 하나로 분류
- IPTV 서비스와 그 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 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
- 융합기능설비를 가입자망(광, 동 및 광동축), 접속망, 백본망 및 프리미엄망으로 구분
-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 기준과 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 배부 원칙, 미사용 공통자산 등의 분류 원칙 등을 규정
- IPTV 서비스의 비용 및 자산에 대한 형태별·기능별 분류를 바탕으로 최종 단계인 사업별 회계분리 원칙을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사업자에게 영업보고서 내용 검증을 위한 회계분리 지침서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음
- IPTV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영업보고서 작성
- IPTV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영업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
- ☞ IPTV 제공사업의 회계분리 기준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 기준 제정안 (내용심사 1)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의무 (내용심사)

- 필수설비 대상 중 선로기반설비는 전주, 관로, 통신구, 인공(Manhole), 수공(Handhole), 배관, 배선반, 국사상면이며 가입자선로공용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xDSL, FTTH), 광동축혼합망(HFC)임
-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음
- 설비사업자는 필수설비 제공을 위한 자료조사에 협조하고 이용사업자는 설비제공 요청구간, 설비의 종류, 규격, 수량, 제공희망일 등을 설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제공
-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공 불가
- 제공대상설비의 최소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용사업자는 설비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연장 요청
- 제공된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설비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 설비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설비의 이전 요구와 비용부담(사업자간 협의)을 규정
-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설비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산정

- 이용대가는 관련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함
- 감가상각비와 운영비용 관련 해당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산정방법은 회계분리기준에 따름
-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세전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세전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보수율과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함
- 상시적 점유구간은 사업자별 대역폭이 차지하는 비율로 원가를 배분하고 비상시적 점유구간은 제공사업자의 가입자 수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
- 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설비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 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되,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이용대가는 매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정산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
- ☞ IPTV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구체적인 필수설비 대상 및 방법을 마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1)

○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 (내용심사)

- 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이 '12년 종료됨에 따라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을 위한 대상제품, 광고내용, 부착방법 등을 규정
  - 대상제품은 텔레비전수상기(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제품) 및 모니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수신기능이 있는 PC모니터)
  - 안내문은 제품의 전면에 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부착
  - 안내문 부착시기는 제조업자는 제조일 기준, 수입업자는 통관일 기준

- ☞ 동 사안은 '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부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및 피규제자 수 (제조 및 수입업체 16개)가 제한적이고,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편적 업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강화 1)

○ 보편적 역무 서비스 사업자 지정 (강화)

- 요금감면 이동 통신 서비스 범위에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외에 IMT-2000 서비스 추가
- 소득층 이동 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통신요금 감면비율 확대

- ☞ 저소득층의 통신이용료 감면이라는 규제 취지 및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다만, 지속적인 통신요금 안정이 가능하도록 통신 이용요금 승인규제의 폐지·개선을 통한 업계의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방안과 보편적서비스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후 1년 이내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10) 무선설비규칙(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내용심사)

- 위성DMB 비주얼라디오 서비스 도입 관련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오디오 서비스에서 보조 영상신호 및 보조 데이터신호의 비트율 및 정합표준 등 세부사항 규정
  - 오디오서비스 최대 비트율은 256kbps
  - 오디오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2kbps

-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이하
-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신호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 부합하고, 보조 영상신호는 초당 1프레임 이하

☞ 위성DMB 비주얼라디오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관련 서비스 도입을 위해 '08.5월부터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전파연구소 주관 기술기준개정연구반 회의를 통해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해 관계자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신설 1)

○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제도 참여시 준수사항 (신설)

- 번호이동성 제도의 대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긴급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신청서 허위 작성, 허위 신청서 제출, 번호이동 강요,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음
-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서를 관리센터에 제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번호이동 관련 가입자정보,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시간 내에 관리센터로 회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인에게 긴급통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관리센터와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강화 4)

○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의무 (강화)

-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
- 정보보호 안전진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진단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정보보호심사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안전진단수행기관은 자신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안전진단 업무를 양수하거나 안전진단수행기관과 합병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위의 이전 승인을 받도록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공구조기관에 위치정보 제공 확대 (강화)

-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외에 경찰도 특수전화번호(112)로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유괴·납치 등 범죄행위로 인한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경찰관서는 범죄 현장에의 출동을 요청한 자가 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개인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시 통지 의무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내부자 소행 등으로 인해 분실·도난·유출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사항은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도용 피해방지 조치 의무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서비스이용 계약 체결 또는 부정 회원가입 사실 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피도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이용자 저장정보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장·관리하는 글·그림·동영상 등을 보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정보 보관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30일 간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저장정보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와의 보증보험계약 또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공제조합 또는 공제단체와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미고지자, 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부수적인 광고수익 증가 등에 따른 혜택이 수반되므로, 갑작스런 서비스중단에 대비한 정보이용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원안동의

○ 인터넷 제공서비스의 신뢰 확보 (신설)

- 누구든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결과를 조작하여서는 안 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검색결과 중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누구든지 온라인광고주의 온라인광고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온라인광고사업자는 부당하게 증가된 온라인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및 부정 클릭 행위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제처 심사시 보완 조치

○ 권리침해 정보의 임시조치 등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 기존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등 임시조치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추가

☞ 안 제117조제2항은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시 삭제 또는 게시글의 블라인드 처리 등 임시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포털사업자가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단서조항(예: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추가. 게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기간은 규정이 없어 임시조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 조치기한을 설정토록 개선권고. 안 제117조제5항중 '제4항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재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규정 의도는 제2항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임에도 제4항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임시조치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주므로 본문 내용중 '제4항의 임시조치'를 '제2항의 임시조치'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 광고성 정보전송 위탁자의 책임 (강화)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탁하는 자는 전송자의 신원, 전송방법 · 조건, 준수사항 등을 서면으로 계약하여 관리 · 감독하여야 함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설)

- 도메인이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이를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정보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그 도메인이름 등을 말소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란, 비속어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용어를 도메인이름 후보어로 정하여 공시하며, 인터넷주소기관 등은 해당 후보어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됨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명칭을 해당기관 외의 자는 등록하여서는 안됨

- 실명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유보어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법률개정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수정(동 법 제13조 수정)하고 유보어 설정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을 개선권고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금지 (강화)

- 부당한 이득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 · 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 보유 · 사용을 금지하고, 등록말소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사명칭 사용금지 (신설)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전파법 개정안 (신설 4, 강화 2, 내용심사 1)

○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신청시 보증금 납부 (신설)

- 기존의 주파수 대가할당 외에 가격경쟁(경매)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 경쟁가격을 설정하고, 최소 경쟁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 주파수의 헐값 낙찰방지, 경매참가자의 진실성 담보 등을 위해 기존 대가할당과 동일하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기능을 통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명령 제도 (내용심사)

- 방통위는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환경친화적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무선국 무선설비에 대한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 제도 (강화)

- 적합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각각의 취소사유를 반영하여 인증 및 등록 취소사유 규정
-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현행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기기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고의 및 과실의 정도와 위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유를 규정
  - 시험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추가
- 방통위는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 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방송통신기기에

대하여 전자파 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 측정·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방송통신기기의 인증·등록 취소사유 규정, 시험기관의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으로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및 취소사유를 구분하여 사유 규정, 불필요한 전자파로부터 기기, 통신망, 인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체적 적합등록시 서류비치 의무화 (신설)

- 적합등록시 자체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구비서류를 자체 보관하면서 등록 신청서만 제출함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제조·수입·판매자)는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등)를 보관토록 의무화
- ☞ 방송통신기기의 적합등록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면서 보완장치로서 검사성적서 등 구비서류를 비치하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송통신기기의 잠정인증제도 (신설)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역·수량·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기의 제조·수입·판매 허용 (잠정인증)
-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된 때에는 일정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이 소멸됨
- ☞ 방송통신기기의 제품 생명주기가 짧아 시장 선점이 중요함에도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될 때(약 6개월~1년)까지 수입이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도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수량'은 제외함을 전제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방송통신기기의 부적합 정보 보고 (신설)

-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제품의 결함을 보고한 제조 또는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수거, 환급,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합한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무선국 재검사 제도 (강화)

- 무선국 준공검사에 불합격한 후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 2008.6.13. 전파법 개정시 준공신고 이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선국 허가 취소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허가취소를 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을 보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3)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 (내용심사)

- 포털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5만 명 이상,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는 사업자 범위에 대해 방통위안(일일평균 이용자 수 포털 5만 명, 전자상거래·게임·기타 1만 명 이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가 5,000명 이상인 각 유형별 인터넷사업자의 70~80%가 포함되고 이용자의 96~99%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30%(약 350개 업체)의 사업자(소규모 사업자)는

향후 제도의 시행경과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비용(시스템 전환비용 포함 최대 천만원 소요 추정)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정보통신제공자의 범위를 방통위안보다 확대하는 방안(일일평균 이용자 수 포털 1만 명, 전자상거래·게임·기타 5천 명 이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증기관의 인증능력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충분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규제 준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방통위안 대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동의 하되, 제도 시행 2년 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규제 준수를 추후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다만, 개정안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매년도 10~12월)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자를 공시하여 다음연도 4월부터 적용되므로, 전년도초에 개시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일일 이용자가 만명 이상(게임, 전자상거래의 경우)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최대 15개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비점이 있고 회원가입시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경우가 상존하므로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①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 ②주민등록번호외 본인확인 - i-pin, 공인인증서 등, ③본인 확인정보 불필요 - ID/PW만 입력)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부대권고.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한 기존 이용자의 경우 여전히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금융결제시스템과 연동되는 게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외한 포털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협회가 공동으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 다른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을 부대권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본인확인무조치자 범위 (강화)

- 본인확인정보를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간 보관
-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사업자 확대(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 포털, 일일평균 이용자 수 20만명 이상의 전문손수제작물(UCC)매개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에서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본인확인제는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 달리 1회의 본인확인으로 계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실명이 아닌 ID나 별명 등을 사용하여 글의 게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본인확인을 통한 게시자의 글 내용에 대한 사전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사후구제를 위한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하되, 정보통신제공 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에 관계없이 본인확인 대상사업자를 모두 정보통신제공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시행 1년간의 현황을 분석하여 규제위에 보고한 후 사업자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외에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할 때 게시판 글의 본인확인제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외에 i-pin 등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토록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외에 다른 본인확인 방법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부대권고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내용심사)

- 내부관리계획 수립, 불법접근 차단,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안전한 개인정보 저장·전송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

☞ 구 시행령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방통위 고시상의 상세기준을 시행령에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내용심사)

-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함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중단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및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훼손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함

☞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 시행령상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3)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인가 (강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주식취득 인가대상으로 추가

- 인가조건을 위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공동주식 보유형태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규정 흠결의 문제가 있고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타법에서도 최대주주 등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식인수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

- 현행 별정사업자에게만 부과된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범위에서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되, 재무구조, 이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범위 설정 근거 마련

- 보증보험 미가입시 벌칙조항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국제전화카드,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에 대해 별정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07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이 별정통신사업자의 발행총액을 초과하고 있어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필요함. 그러나 손배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금액을 현행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발행총액(시행령)으로 하고 있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법 문구상 발행총액 기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음. 이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발행총액으로 하고 있어 피해규모(발행총액 대비 0.6%=피해액/발행총액=14억/2465억)를 고려시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므로 발행총액이 아닌 그 동안의 피해액을 감안하여 사업자별로 차등하여 일정액 이상(시행령에 규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다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 제공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 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재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허용(도매제공)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협정체결후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협정 변경·폐지시 신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
-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협정체결 요청받은 후 90일 이내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후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협정 변경·폐지시 인가 (5항)
- ☞ 기간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 부과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도매제공 의무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도매의무 부과는 통신시장에서 경쟁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경쟁이 활성화되는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33조의8제2항에 단서를 두는 동시에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반영할 것을 개선권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추가 (강화)

- 도매제공 협정체결시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타사업자의 정보유용행위, 부당하게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도매제공의 대가 등을 다른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불공정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 통신기기제조업자,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2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거부·제한이나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 전기통신서비스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나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2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부당하게 묶어서 제공하는 행위
-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3개월 이내로 한정)
- ☞ 금지행위 위반시 이용자의 신규모집을 3개월 이내에서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사요건을 안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9호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및 시정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 제7절 | 노동·환경 분야

### 1. 노동부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 (Tel. 02-2100-2320, kwyjks@pmo.go.kr)

#### 가. 2008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8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2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강화 26건, 내용심사 11건 등 총 45건에 대해 규제심사(중요 9건, 비중요 36건)
- 심사대상 45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철회권고, 4건에 대해서 개선권고하고, 40건은 원안의결하였음

[ 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2차 경제2분과 (2008.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9차 경제2분과 (2008.4.24)	원안의결 7	강화 1, 내용심사 6 *비중요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19차 경제2분과 (2008.4.2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9차 경제2분과 (2008.4.24)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제371차 행정사회 분과(2008.5.15)	원안의결 2	신설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 분과(2008.6.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 분과(2008.6.19)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1, 강화1, 내용심사3 *중요 2, 비중요 3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 분과(2008.6.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377차 행정사회 분과(2008.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 분과(2008.8.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 분과(2008.8.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제382차 행정사회 분과(2008.9.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3차 행정사회 분과(2008.9.1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384차 행정사회 분과(2008.9.1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3
	제192차 본회의 (2008.9.18)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384차 행정사회 분과(2008.9.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제387차 행정사회 분과(2008.10.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제389차 행정사회 분과(2008.10.22)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195차 본회의 (2008.10.30)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내용심사 2 *중요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0~1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391차 행정사회 분과(2008.11.2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2
계		원안의결 40 철회권고 1 개선권고 4	신설 8, 강화 26, 내용심사 11 *중요 9, 비중요 36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신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7.27, 의원입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함
  - 화장실, 음수대, 식당 및 탈의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 샤워실 및 휴게실 :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 공사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음수대, 탈의실 : 100만원
  - 화장실, 식당, 휴게실 : 200만원
  - 샤워실 : 300만원

☞ 건설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편의시설은 근로자가 일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이를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 추가비용 보다는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 규제수준이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건설공사범위 확대 (강화)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이상인 공사'를 '5억 이상인 공사'로 확대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 법인 (당해 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 이상)도 추가

☞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과의 균형을 맞추어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공제제도 가입 비용은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반영하여 주기 때문에 공공공사의 경우 민간의 비용 증가가 없다는 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6)

■ 심사내용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내용심사)

- 부과기준

- 보험급여 허위증명 :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1.5배
- 진료비 거짓·부정 청구 : 진료제한 조치를 할 경우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1.5배에서 3배까지 부과
-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비 부당청구 : 월평균 부당금액 × 진료제한 해당 월수 × 2

☞ 4,904개 산재보험 의료기관중 진료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연간 40개 정도이며, 이중 과징금 부과를 선택할 기관이 50%정도로 예상되므로 피규제자수가 소수(20개)이고, 20개 기관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327백만원 정도로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인 병원협회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진료계획 제출 준수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심사)

- 진료계획의 기재사항 및 절차 규정

※ 진료계획 기재사항 : 요양기간 동안의 상병경과 및 현재상태,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예정기간 등

※ 절차 : 요양기간 종료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 진료계획 심사 및 변경조치

※ 심사 :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음

※ 변경조치 내용 : 치료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 변경, 기타 진료계획의 변경 조치 등

- 과태료 : 미제출 건당 5만원

☞ 종전 재해 근로자가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제출하는 제도로 변경한 바, 직접적인 피규제자는 4,904개(산재보험 의료기관)로 소수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계획 제출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부담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여 협의완료 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대상·방법 및 기준 (내용심사)

- 평가대상

- 산재보험 의료기관 전부, 다만, 의료법에 따라 평가받는 의료기관은 제외하되, 산재 요양의 질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인력,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의로서비스 수준, 만족도,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진료실적 등
- 평가방법 : 현지평가, 서면평가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 평가대상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전체(의료법상 피평가 기관 제외)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평가할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바,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연간 규제비용도 크지 않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시기·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애급여 지급방법 및 재판정 신청 방법 (내용심사)

- 재판정 대상자

- 장애연금을 받는자 중 정신·신경장애, 척추 신경근장해, 관절기능 장애, 진폐 장애가 포함된 자로 하고, 재판정 대상 장애와 비대상 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재판정 대상 장애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비대상 장애 때문에 최종 등급이 변경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

- 재판정 시기 : 장애보상연금 지급결정 2년후~3년전

- 재판정에 따른 장애급여 지급

- 연금 지급시 :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변경 지급
- 일시금 지급시 :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피규제자인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4,884여 명 정도로 소수이고,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비용으로 약 17억 8천만원이며, 피규제자의 불편 정도는 정량화가 곤란하나, 법에서 재판정 회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비해 그 불편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거주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의 신고사항·신고방법 (내용심사)

- 신고사항 : 생존여부, 국적 변동 사항, 혼인 여부, 친족관계 변동,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 등

- 신고방법

- 첨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내용
- 신고 시기 : 매년 5.1~6.30

☞ 피규제자수가 소수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었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등의 조치 기준 (강화)

- 진료비 부정·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에 대한 부정·부당청구 금액의 비율과 부정·부당청구 금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제시

- 허위증명, 의료법 위반, 진료제한 등의 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 또는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달리 정함

☞ 피규제자수가 전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보면 4,904개소(07.12월 현재)이나, 지정취소, 진료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의 수가 '07년 기준 78개소(지정취소 8, 진료제한 41, 개선명령 29)로 소수이고, 종전에도 근로복지공단 규정으로 유사한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법령상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내용심사)

- 적용 대상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콘크리트믹서트럭소유운전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 골프장 캐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  
 •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

☞ 4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06.10.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에서 확정한 바 있고,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노동부 자체 규제심사시 노사 양측 단체 대표가 합의(07.1.29) 한 사항이며, 규개위(경제2분과위)에도 보고(07.3.8)된 바 있는 사항임. 4개 직종의 종사자는 48만여 명이며, 해당 사업체는 1,200여 개이나, 해당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동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는 약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만, '08.8월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병행하여 모집할 수 있는 교차보험설계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바, 산재보험료 부담주체 및 산재발생시 산재처리회사 선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시행전 위와 같은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강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동의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내용심사)

- 산재보험료 신고·납부는 통상의 산재보험료 납부 방식과 동일  
 -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이 정정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4개 직종의 종사자는 48만여 명이며, 해당 사업체는 1,200여 개이나, 해당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동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는 약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었으나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함이 인정되고, 법 개정시 중요규제로 심사를 받았던 사항에 대한 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절차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육아휴직에 준함
  - 신청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변경신청 :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는 당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으로 변경신청 가능
  - 신청 철회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신청 방법 등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의 신청절차와 동일하고, 피규제자수가 소수(07년 기준 육아휴직자수 21,185명)이고 추가비용이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 (강화)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법개정(07.12.21)시 새로 도입됨에 따라 보존 대상 서류에 관련 서류를 추가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서류

☞ 법 개정(07.12.21)시 새로 도입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194,000명이나 추가비용이 크지 않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법개정시 신설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로 정함
- ☞ 법 개정(07.12.21)시 신설된 조항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크지 않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파견근로자는 제외)

- 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은 그 사업기간에 사용한 총 연인원 수를 그 기간의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

☞ 현행 노동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동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가 기존과 동일하고, 추가 규제비용이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내용심사)

-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 /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일수)

☞ 법 개정시 건설현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특례를 둬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32,169개소)이고, 추가로 부담할 비용도 하도급 계약체결시 주 40시간 근로를 감안하여 인건비에 계산되어 상쇄되므로 미미한 수준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강화)

- 노출기준 강화 (29종)

- 디아지논, 목재분진(단단한 나무, 부드러운 나무), 베릴륨 및 그 화합물, n-부틸글리시딜에테르, 벤조트리클로라이드, n-부틸아크릴레이트, p-부틸톨루엔(제3), 불화수소, 브롬, 브롬화비닐, 비닐클로헥센디옥사이드, 비닐아세테이트, 삼수소화비소, 시클로나이트, 아스팔트 흙, 알릴프로필디설파이드, 에틸렌글리콜(증기 및 미스트), 이피엔(흡입성), n-초산아밀, 초산 제2아밀, 카올린, 클로르피리포스, 2,4,6-트리니트로톨루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페닐말캡탄, 포레이트, 흑연(천연, 합성)

- 노출기준 신설 (13종)

- 곡물분진, 금속가공유, 내화성세라믹섬유, 디클로로아세트산, 메틸삼차부틸에테르, 곡물분진, 벤조일클로라이드, 벤조트리클로라이드, N-비닐-2-피롤리돈(NVP), 스티론티움크로메이트, 운모(호흡성), 케로젠, 크롬산 연(as CR, as Pb)

☞ 노출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국정감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최근 기존의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도 건강장해가 발생하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위험정보를 반영하는 것임. 동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가 소수(약 790개소)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3,160백만 원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선정 등 (내용심사)

- 의무 안전인증 대상 :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등 28종

- 28종중 24종은 종전 검사·검정대상이며, 4종(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 전동식 호흡보호구)을 추가

- 안전인증 신청·확인 절차

-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종류(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인증 당시의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매년 확인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2,000개소)이고, 인증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인증 취소 및 표시사용금지 기준 등이 유사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선정 등 (내용심사)

- 자율안전확인 대상 : 로울러기, 산업용로봇안전매트, 안전모(낙하 방지용) 등 14종
- 11종은 종전 검정 대상이었으며, 3종(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은 추가 지정

- 자율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성능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신고 업무 위탁기관에 신청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

-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자율안전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

☞ 종전 검사·검정 대상 11종에 대해서는 동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으며, 추가 3종의 경우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200개소)이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13억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 기계 선정 등 (내용심사)

-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안전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요건
  - 검사원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와 관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기준 충족하여야 함
- 자율안전프로그램 인정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15일 이내 통보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
  - 지정요건 :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 준수
  - 지정취소 사유 : 검사관련 서류 허위작성,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업무 대행 거부,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 미준수 등
- ☞ 기존의 자체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 대상으로 변경된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프레스, 전단기 등과 같이 설비결함이 안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기계라고 보기 어렵고,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장해 예방을 위해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노출기준 초과시 시설개선)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 의거 월1회 이상 관리감독자의 점검 의무가 있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근로자 안전 보호라는 정책목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모든 국소배기장치(관련 사업장 약 27,000개)에 대하여 안전검사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직업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국소배기장치로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국소배기장치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여, 향후 법 개정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함
- 또한, 안전검사 주기가 기계·기구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향후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함

○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및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신설)

- 허용기준 지정 대상 유해인자 및 기준을 정하고, 허용기준 위반시 과태료(1,000만원) 부과
- ☞ 발암성 물질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직업병 발병 사례도 많았던 물질별 허용기준을 정하면서,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규제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07.6월 개정된 노출기준 수준과 동일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벤젠의 경우 단시간 허용기준(STEL) 도입과 관련된 이견이 있는 바, 벤젠의 단시간 허용기준(STEL)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08년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규제수준을 정한 후 조속히 재개정토록 하되, 금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 위험장소 확대 (강화)

-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 위험장소 확대
  - 인화성 물질에 근접하여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 현재도 대부분 도급사업주가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만, '인화성 물질에 근접하여'는 해석이 모호하므로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삭제할 것을 부대권고

(8)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리프트 제작·안전·검사 기준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제작·안전·검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 제작기준

- 구조부분의 사용재질, 강재·용접부 등의 강도 규정
- 사용 중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기준을 정함
- 사다리 붐·턴테이블·아웃트리거·운반구 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등을 정함
- 동력전달장치·윈치·드럼·와이어로프·조작장치 등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함

- 안전기준

- 비상정지·권과방지·과부하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정함
- 운반구·도르래·와이어로프·전기장치 등이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함

- 검사기준

- 설계·설치·사용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검사기준을 정함

☞ 차량탑재형 고공시설장비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다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해당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임. 동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가 소수(제작업체 8개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7,500대)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1,174백만원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산재보험 적용대상 (강화)

- 법의 적용제외사업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에 관한 공사 (기존 330제곱미터 이하)
- ☞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제외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되는 피규제자수가 소수(신규 산재보험 사업장 약 2,200개소)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3,267백만 원(신규 사업장에 대한 '09년 보험료 추계)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등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허위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법률에 명확히 하면서, 동포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되는 피규제자수가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고용보험 적용범위 (강화)

- 법의 적용제외사업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에 관한 공사 (기존 330제곱미터 이하)

☞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제외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미 확대된 산재보험 적용범위(09.11 시행 예정)와 일치시키는 것이고,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심의(08.6.24)를 거쳤으며,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되는 피규제자수가 소수(신규 산재보험 사업장 약 2,200개소, 적용근로자 수 6,445명)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1,066백만 원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수급자격의 제한기준 (강화)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현행	개정안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경미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였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심의(08.6.24)를 거쳤고,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되는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38,052명, '07년 기준)이며, 추가 규제비용이 약 47억원이나, 노동시장에서 불필요한 이탈을 방지하며, 구직급여의 재취업 촉진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동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2%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국가 및 지자체 : 3% 이상, 공공기관 : 2% 이상

☞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100개소)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적으며(약 33억 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강화)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봄

☞ 현행 기사등급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이에 준하는 학·경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3년제 대학 졸업자(통상 120학점)는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에도 실무경력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학점으로 전환하여 기사시험에 응시하는 편법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07년 기준 118명)이며,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검정 (강화)

-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및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종목을 동일직무분야로 한정
  - 1년 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기술자격 종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으로 한정
  -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 면제는 해당 응시자의 기술훈련과정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기술자격 종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1개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한함

-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규정 삭제

☞ 교육훈련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격취득 등으로 자격의 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특정 4개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검정과목을 면제하여 상호주의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972명)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가기술자격 종목 (강화)

-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5개 종목) :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철도 운송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자격 종목 추가 (1개 종목) : 화학분석기사

☞ 자격제도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분석기사를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1,108명)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3)

■ 심사내용

○ 석면 해체·제거 시 안전·보건 조치 (신설)

- 사전조사 의무
  - 건축물·설비를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 제품의 위치·면적 등을 조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제거하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지도·교육을 할 수 있음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를 준용함
- 해체·제거 작업시 준수사항
  -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시설물 철거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해야 함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를 준용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 평가기준·방법 및 공표방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 등 철거·해체지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됨
- 감독상의 조치
-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에 출입·조사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사전조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 대수선 정비 등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네거티브 방식), 위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건립시기 등으로 조사가 가능하거나, 이미 유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의무 위탁은 현재도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철거·해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기준 준수여부를 모두 점검할 수 있는 행정력이 담보되기 어렵고, 석면관리에 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시행 후 3년 내에 범정부적인 석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 의무조항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
  -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체 위탁범위를 정할 때 석면의 고형화 정도, 비산정도, 해체작업의 난이도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문업체 의무 위탁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건축주 등이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함

○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공표 (강화)

-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 ☞ '06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결과 진단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조기진단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130개소)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역학조사 (강화)

-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법 제43조의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근로자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 최근 업무상질병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의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전·현직 근로자 등의 개인 건강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4개소)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누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강화)

-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가 의결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 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존(2년) 하지 않은 경우

☞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규정(과태료 포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법에서 정하면서 이행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고용보험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 (강화)

-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최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가입자들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손실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중 추가징수의 한도를 현행 부정수급액 상당액에서 부정수급액의 5배 상당액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556명(07년 기준)이며, 추가 규제비용이 약 42억 원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기준 (강화)

- 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 연말 적립금이 당해연도의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 실업급여 계정 : 연말 적립금이 당해연도의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 규제 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약 1,100만 명으로 중요규제에 해당되나,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여간 논의를 거쳐 합의하였으며,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서 의결(08.6.24)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 강화 (강화)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55세 이전 퇴직시 퇴직연금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노후재원을 보존 (예외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피규제자가 약 6백만 명이나, 추가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퇴직연금 실무위원회 8회, 퇴직연금 정책포럼 2회 등)를 거쳤고, 경영계·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절차 등 명문화 (신설)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상회여부를 검증하여 사용자에게 통지
- 최소적립금 이하 시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액을 해소

☞ 피규제자가 504,210개소이고, 규제 비용이 거의 없으며(법적 미비사항 해소 차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에 따른 재진입 제한 (강화)

-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음

- 퇴직연금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함.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잦은 진입 및 탈퇴로 인한 연금가입자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시에 재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타 금융업의 등록취소 또는 말소에 따른 재진입 제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 사업 포기시 일정한 기간 재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고, 경영계 및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신설)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함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금융기관이 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을 준용함

-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05.8.30)에서 고액 상속채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4대 보험공단의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토록 하였고, 동 방안에 따라 「사회보험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심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원안의결 한 바 있으며, 조세체납 등 다른 법률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고, 취득정보 누설시 처벌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용자관련 서류보존 의무 등 (강화)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용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 포함)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용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 비용지원·용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라는 점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고,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었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위탁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야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사업주단체들에게 위탁훈련의 실시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사업주 자체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반환명령, 추가징수, 지원제한)되어 있는 반면,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미비사항 보완에 해당되고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9)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 등 (내용심사)

-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과태료 부과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영세사업주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별로 차등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시정명령 내용 추가 (내용심사)

- 법 제4조의7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의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란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말함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3.21)시 노동부령에 위임한 시정명령 내용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전보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법 개정 시 재검토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철회할 것을 권고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강화1)

■ 심사내용

○ 과태료 추가 (강화)

-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동 개정안은 제38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의(08.10.9) 시 원안의결한 사안이나, 법제처 법안심사 시 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두도록 함에 따라, 제재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임. 법체계상 실효성확보를 위해 제재규정이 필요하고, 유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기준과 비교해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간, 재지정 금지기간 규정 (신설)

-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본인 과실로 인해 지정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것은 지정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문제가 있는 일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 산재보험 의료기관(5,286개소, '08.9월)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을 정하고 기간 도래 시 모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기관에게까지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시 검토요건 강화, 지정취소 요건 확대, 산재의료기관 평가 등 종전 규제를 활용토록하고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2회 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강화)

- 근로복지공단은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장애보상연금·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1일의 각 보험급여 합계액이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별표2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金的 지급일수(329일)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현재 산재보험급여도 근로자 피해의 전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노동계의 이견이 있으나, 산재보험 급여가 근로능력 상실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바, 현재 장애 1등급 보상을 최대 보상으로 본다면 그보다 가벼운 산재가 중첩되어 1등급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근로능력 상실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급여의 상한선이 없을 경우 재직시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안의결

## 2. 환경부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 (Tel.2100-2320, kwyjks@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취급제한·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수도법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개정안,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등 총 37개 법령 등에 대해 신설 4건, 강화 49건, 내용심사 18건 등 총 71건의 규제를 심사 (중요 13건, 비중요 58건)
- 심사대상 거건 중 2건은 철회권고, 5건은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64건은 원안의결하였음

[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13차 경제2분과 (2008.1.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14차 경제2분과 (2008.1.2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4차 경제2분과 (2008.1.23)	원안의결 7	강화 6, 내용심사 1 *비중요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4차, 경제2분과 (2008.1.2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제317차, 경제2분과 (2008.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8차 경제2분과 (2008.4.10)	원안의결 7	강화 4, 내용심사 3 *비중요 7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 분과(2008.5.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70차 행정사회 분과(2008.5.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2차 행정사회 분과(2008.5.2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중요 3, 비중요 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 분과(2008.6.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7차 행정사회 분과(2008.6.2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7차 행정사회 분과(2008.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378차 행정사회 분과(2008.7.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 분과(2008.8.21)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하수도법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 분과(2008.8.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 분과(2008.8.2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수도법 개정안	제381차 행정사회 분과(2008.8.29)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1차 행정사회 분과(2008.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제381차 행정사회 분과(2008.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82차 행정사회 분과(2008.9.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3차 행정사회 분과(2008.9.11)	원안의결 6	강화 3, 내용심사 3 *비중요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3차 행정사회 분과(2008.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385차 행정사회 분과(2008.9.25)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6차 행정사회 분과(2008.10.2)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7차 행정사회 분과(2008.10.9)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 3
	제388차 행정사회 분과(2008.10.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2~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95차 본회의 (2008.10.30)	개선권고 2	강화 1, 신설 1 *중요 2
	제196차 본회의 (2008.11.1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99차 본회의 (2008.12.4)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중요 2, 비중요 1
	제200차 본회의 (2008.12.18)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8.12.8~12.16)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17~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개선권고	신설 4, 강화 49, 내용심사 18 *중요 13, 비중요 58

### 나. 2008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 ■ 심사내용

##### ○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 침수나 지표수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
-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에 침수나 지표수 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일반 상부보호공 대신 지하수 관정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는 “밀폐형 상부보호공”을 설치토록 강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자이며, 규제비용은 연간 16억 원 가량이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종류 (강화)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아래 시설을 추가
  - 지하수 보전구역 외에 설치된 ‘석유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시설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지하수 오염관측정 설치
  - 해당시설의 관리자는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
  - 수질측정 주기 : 연 2회
  - 수질측정 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측정
- ☞ 피규제자는 전국 8천여 개 주유소 중 토양기준을 초과한 주유소이며(매년 230여개소), 규제비용은 연간 7.15억 원 가량이고,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주유소 외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기 해당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안으로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2)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 ■ 심사내용

#####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 신설 및 조정
  - 신설 : 브롬산염(0.01mg/L), 스트론튬(4mg/L)
  - 조정 : 경도(1,200mg/L)
- ☞ 브롬산염은 오존처리시 발생하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는 오존처리를 금지하여 브롬산염의 생성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스트론튬은 미국의 2개 주에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해양심층수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도 수질기준이 없음
- 그러나, 양 물질 모두 해수에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점, 브롬산염의 경우 국제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점, 스트론튬은 경도 기준 설정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 브롬산염 및 스트론튬의 수질기준은 한시적으로(시행일부터 3년간) 설정·운영하되, 환경부에서 시한만료 전에 그간의 분석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준설정의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개선권고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6, 내용심사 1)

##### ■ 심사내용

##### ○ 배출가스 전문정비내역 발급 및 전산화 (강화)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비·점검내용을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정비·점검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2년간 보관

-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전문정비·점검확인서는 전산화일로 보관할 수 있음

☞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정비·점검을 실시한 경우, 현행 수기로 작성하는 정비·점검 결과를 전산화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일부 전문정비업자(503개소 중 전산화를 미실시하고 있는 321개소)이며, 규제비용은 2.9억 원 가량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강화)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 이외의 자가 전문정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비·점검확인서에 정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등의 업무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장비 등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전문정비업자 503개소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의 개선결과 보고주체 변경 (내용심사)

- 확인검사대행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표 1부를 발급하고 1부는 1년간 보관
  -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에서 확인검사 대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확인검사업무 대행자 573개소이며, 확인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확인검사 대행자로 규정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3항과 규제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밀검사사업자 준수사항 보완 (강화)

-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정밀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교통안전공단 및 정밀검사 대행 지정사업자(497개소)이며, 규제대상이 한정되어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징금 현실화 (강화)

- 법 제67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

☞ 피규제자는 교통안전진흥공단 및 정밀검사대행 지정사업자(497개)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과징금 산정기준은 업무정지 기간 중 예상 수익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무정지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소규모 검사(월 360대 이하)의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보완 (강화)

-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추가

☞ 피규제자는 503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자동차 정비업자 중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기존 정비인력을 활용하면 되고, 교정용 표준가스 등은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 확인검사대행자가 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규의 실효성 확보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규모미만 시설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 강화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을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유출수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당해 시설에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20퍼센트 미만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고형물 유출율 기준(20퍼센트 미만)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기준에 적합한 기기 개발 등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제도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아울러 처리효율에 적합한 처리기기에 대한 인증 또는 표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구입·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생산업체, 효율검증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08. 7월말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부대권고함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내용심사 3, )

■ 심사내용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대상과 관련한 법의 위임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내용심사)

- 종전 : 소량(연간 100kg 이하) 및 시약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면제

- 개정 : 법에서 명시한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취급제한물질만 수입허가 면제

☞ 소량의 취급제한물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입허가를 면제함으로써 수입실태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선하고, 취급금지물질은 법 제정 당초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 개정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영업허가 면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 (내용심사)

☞ 법 개정(07.12.27)시 이미 비중요규제로 심사 받았던(07.3.8)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소수(현재 24개 업체)이고 추가비용(약 312천 원)이 거의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시 제출한 자료의 보호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제한함 (강화)

- 현행 : 자료보호기간 5년 단위로 연장 (연장횟수 제한 없음)

- 개정 : 5년 단위로 2회까지만 연장 가능

☞ 현행 규정이 신청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조정하는 것이고, 외국의 사례(유럽(12년), 일본(3년, 화학물질명은 공개하지 않고 성분만 공개) 등을 검토해 볼 때 규제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해성 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 (강화)

- 현행 :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 개정 : 현행 6개의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추가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신규화학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해성 심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수준이 OECD의 최소요구수준(13개)에도 못 미치는 점 등을 볼 때 규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30개 업체)이고 추가비용(8억 원)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 (내용심사)

☞ 시험기관의 부실방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법 개정(07.12.27)으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소수(07년 기준 11개 기관)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등록(허가)의 대상을 확대 (강화)

- 현행 : 보관·저장·운반업 또는 제조·사용업에 한하여 50%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 개정 : 모든 업종에 대하여 시설의 경우에는 50% 증감, 제조·사용량의 경우에는 50% 증가시 변경등록

☞ 현행 규제 대상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유독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여타 업종의 취급시설 및 취급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대상 확정 등 효율적인 영업 관리를 위한 것이며, 제조·사용량 기준에 있어 종전에는 감소한 경우도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100개 업체)이고 추가비용(90만 원)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이 유독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독물 취급자나 담당 공무원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독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이미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기 때문에 피규제자(07년 기준 4,055개 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118백만 원)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저수조 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수도법」이 개정(07.12.27)됨에 따라 그 변경 신고사항으로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으로 함(내용심사)

☞ 종전 규정은 변경신고 대상이 모호하여 행정상 혼선과 이로 인한 저수조 청소업자의 불만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고 동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는 1,636개(저수조청소업체)로 소수이고, 규제비용도 미미(약 8백만 원)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취급제한물질 중 '납'의 제한내용 확대 (강화)

- 현행 :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 포함), 사용 등을 금지

- 개정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 및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

○ 취급제한물질 추가 지정 (규정안 제3조 별표2)

화학물질의 명칭	제한내용
카드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방청도료로서 물탱크에 대한 사용 등을 금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및 취급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 유해물질로 인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해성이 인정된 물질을 취급제한 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가 총 660개소로 소수이며, 사용제한에 따른 대체물질이 존재하고, 추가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사업장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내용심사)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운반시 서류 휴대, 휴·폐업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할 사업장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 및 절차, 휴대하여야 할 서류 등을 규정

☞ 종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던 것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통한 처리방법을 도입하면서 처리방법을 통일한 것으로 종전 종이서류로 처리하던 것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함으로써 처리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및 처리 (내용심사)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유해폐기물의 국내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폐기물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및 국제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시 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 등을 정함

☞ 수출입 폐기물을 현행 사업장폐기물에 준하여 신고대상 및 관리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제도도입의 취지나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규제수준을 현행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제수준과 비교할 때, 수출입 폐기물의 변경신고 대상중 '30% 이상 증감'을 '30% 이상 증가(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신고한 폐기물의 수량이 50%이상 증가)'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내용심사)

- 재활용 신고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치 폐기물 발생 등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어,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을 명시

- 특히,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을 다량 소각하고 있으나,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어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과 재생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량, 처리방법의 적정성 등이 사회문제가 된 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적정 관리대책의 하나로 보고 의무를 규정

☞ 동 규제는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특정 업종(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민·관 협의회에서 관련 시멘트 소성로 관련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최종 대책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책마련 및 종합적인 법령 개정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의 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멘트 소성로의 원료·연료 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관리를 제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추가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약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약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취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설치·관리기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상 애로가 있었던 바,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폐기물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신설)

- 일련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함 (건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을 금지)

☞ 동 규제는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전주, 폐근가 등으로 생산한 골재는 천연골재 수준으로 품질이 우수하여 재생근가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 될 수 있는 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함으로써 낮은 등급의 재생골재로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폐기물 재활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폐콘크리트와 폐전주의 구성성분이 비슷하고 절단·파쇄 등 처리방법과 도구가 유사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한다고 해서 낮은 등급의 재생골재로만 재생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현재 한국전력의 불용자재 처리업체 선정계약\*에 의해 사실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배제된 상황에서도 고부가가치의 재생근가로 재활용되는 실적이 9%에 불과(재생골재로 재활용 91%)한 점, 고부가가치의 재생근가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신규 진입을 규제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재생근가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

\* 한전의 선정기준은 폐전주 처리실적만을 기존 실적으로 인정하여 사실상 신규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왔던 바, 감사원으로부터 '07.9월 제도개선 통보를 받은 바 있음

(9)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강화)

-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종전 사업면적 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강화

☞ 현행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는 1만㎡, 공익용외 산지는 5만㎡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1만㎡)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되어 왔던 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 수가 소수이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내용심사)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의 의무운행 기간을 구조변경 검사일로 부터 2년으로 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이미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외 지역에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정하는 것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특정경유차의 관리 등 (강화)

- 특정경유차 검사 면제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를 통해 배출가스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확인이 가능한 차량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월 전후 1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함

- 특정경유차 소유자의 관리의무로 적정연료 (황함유량 30ppm 이하) 사용,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의 무단탈착 금지, 저감장치에 부착된 자기진단장치의 알람 결과에 따른 필터의 점검·정비 등으로 함

- 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감효율을 현행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70%에서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로 강화함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착한 저감장치

등을 반납한 경우 지원된 경비를 차등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경유차 검사면제 대상 조정 및 관리의무 부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저감장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저감장치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저감효율 상향(70%→80%)'은 선진국 수준 및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됨. '지원경비의 회수'는 현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촉매제에 대한 제조, 공급 및 판매 중지 (강화)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게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촉매제 관리에 대해서 이미 제305회 경제2분과위원회('07.11.14)에서 촉매제의 정의, 기준,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등에 대한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현행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와 관리체계를 통일하면서 촉매제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규제심사임. 피규제자수가 소수(제조 2개사, 공급 및 판매 4개사)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촉매제의 제조·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연료·첨가제와 비교하여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 조정 (내용심사)

-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및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샘물 : 4,150원/㎥

※ 현행 : 평균판매가격의 6.75% (7,342원/㎥)

-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 1,300원/㎥

※ 현행 : 수돗물 평균요금 +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695원/톤)

※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음료수·주류 등) 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종전 제품사용량에서 취수량으로 변경됨(먹는물 관리법 개정, '08.3.21)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부담금액과 대상을 정하면서, 현행보다 부담금액이 먹는샘물은 감소(76%)되도록 하고, 기타 샘물은 증가(8.3배) 되도록 함

☞ 피규제자수가 소수(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 약 81개소)이고, 규제 추가비용이 먹는샘물 및 수입샘물은 연간 43.6억 원 감소하고, 기타 샘물은 연간 51억 원 증가하나,

구분	현행 징수액	개정시 징수액	부담금 증감액	총매출액
먹는샘물·수입샘물	178	136	△43.6	2,666
기타샘물	7	58	+51	34,687

'수질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05.9~'06.3)' 결과를 바탕으로, 수 등을 고려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07.7.18, 기획예산처)의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고,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

구분	현행(원/톤)	개선안(원/톤)	
		1단계	2단계*
먹는샘물	7,340	4,150	2,500
기타샘물	695	1,300	2,500

\* 2단계는 시장여건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07.8.29)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은바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만,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제품 사용량에서 취수량으로 변경한 기본 취지(지하수 자원보호,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의 형평성)와, 변화된 업계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2단계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 부담금운용심의회가 기타 샘물업체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1단계 개정안 적용시 일부 먹는샘물(18.9L)의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도 발생

○ 샘물 취수량 제출, 샘물 취수량 등의 조사·보고 (강화)

- 샘물 개발자는 샘물 취수량 보고서에 취수정, 계측기별 일일 취수량 및 월별 누적취수량(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실적 보고서에 수입신고서)을 첨부하여 사본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샘물 취수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음

☞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먹는물관리법이 개정(08.3.21)됨에 따라, 제출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가 소수(약 116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70개, 기타샘물 제조업체 11개, 수입 먹는샘물관매업자 35개)이고, 규제 추가비용이 크지 않으므로(기존에 평균판매단가 보고와 판매실적 등을 조사하였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 먹는샘물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등 (강화)

- 종전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서 정하던 것 중 먹는샘물의 제조방법,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먹는샘물 고유의 특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수의 성상에 변화를 주는 역삼투막을 이용한 제조 방법 제한과, 수처리제중 과산화수소에 대한 제조업 시설기준을 추가

- 먹는샘물 관련 영업자 및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불법 먹는샘물 유통 방지를 위해 부담금 증명표지가 인쇄된 병마개의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81개소)이고,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부담금 납부증명표지와 관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이 판매량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금 납부증명표지가 이중 규제'라는 이견(부담금 납부증명표지는 종전 판매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때 판매량 산정 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부담금 증명표지 표시의무제도는 먹는샘물의 경우 다른 음료류에 비해 불법·무허가 제조·유통 가능성이 높아 증명표지를 통해 이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므로 규제 존속의 타당성이 인정됨

(14) 하수도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배수설비 등의 검사 등 (강화)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한 결과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유지·관리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대체·철거·수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행 하수도법 제31조가 배수설비나 제해시설 등의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제는 검사결과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및 제해시설의 유지·관리자에 대해 개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되는 피규제자수가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 (내용심사)

- '08.3.21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 부여를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기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 우수한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내용심사)

- '08.3.21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환경교육프로그램 세부 인증기준을 정하여, 국민들에게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보급·확대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수도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강화)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 포함)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시설의 개·보수, 청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환경부령으로 정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법 제16조제2항)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 절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결과의 신고 의무화, 관리상태 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이행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177개소)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설기준 등 (강화)

- 취수·저수·도수를 제외한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함)되어 있는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적합등록의 대상·방법·절차·적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환경부 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등록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적합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통한 유해물질의 용출로 인한 수돗물 2차 오염\*의 직접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을 규정('06.6)하였으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의 적합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 생산자가 적합등록을 받고 이를 제품에 표시 및 이행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1,300개소)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26억 원이나 수돗물의

위생적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인한 편익이 크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2007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의무대상 건축물 수질분석 결과 철, 구리, 납, 아연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 2차 오염발생

\*\* 납, 수은, 구리, 페놀류 등 44개 항목('09.6월 시행)

○ 공장 입지의 제한 (신설)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또는 취수장의 상·하류 일정구역을 고시\*로 정할 수 있음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08.1.4) 제36조

-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 고시('산업입지 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로 운영중인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규제 내용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저공해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강화)

- '09.1.1일부터 적용할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2종 저공해 자동차 : 휘발유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차기기준인 SULEV, 경유차는 유럽 차기기준인

EURO-6 수준으로 설정, 경유 하이브리드차는 입자상 물질을 EURO-6(0.01→0.0045g/km)로 강화(나머지는 EURO-5 수준으로 완화)

※ 3종 저공해 자동차 : 휘발유 및 가스로 이원화된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휘발유·가스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가스는 NOX 기준만 강화(0.033→0.025g/km) 하고, 휘발유차는 ULEV 수준으로 완화, 경유차는 EURO-5수준으로 완화하되, 입자상 물질만 EURO-6(0.01→0.0045g/km)로 강화

☞ 현행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06.1.1일 설정된 것인 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09.1.1일부터 일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일부 강화·시행될 예정이므로, 보다 강화된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미미('09~13년까지 연평균 15억 정도) 하고, 피규제자인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18)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강화)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추가 지정

(단위: 종)

내역	종별	계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계		822	1	76	319	426
현재		528	1	47	139	341
추가		309	-	30	180	99
해제*		△15	-	△1	-	△14

\* 어류 1종(섬진강자갈사리), 식물 14종(푸른구상, 검은구상, 붉은구상, 작은황새풀, 검은도루박이, 큰솔나리, 톱바위취, 매화오리, 둥근미선, 상아미선, 분홍미선, 푸른미선, 구름송이풀, 오리나무더부살이)

☞ 생물다양성 협약(92.6) 및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02.4)에서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05.1)」에 따른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체계 및 국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금번 개정안에서 승인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세분화(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자재)하고, 인체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강화하였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기준으로 톨루엔을 추가한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약 7,181개소)이고, 추가 비용이 약 12.3억 원(향후 5년간 약 36.7억 원)이나 실내공기질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크고(향후 5년간 약 328억 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강화)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현행 (단위 : mg/m<sup>2</sup> · h)

오염물질	구분	접착제	일반자재
폼알데하이드		40이상	1,250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0이상	40이상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함

- 개정안 (단위 : mg/m<sup>2</sup> · h)

구분	물질종류	폼알데 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2010년까지	2011년부터		
	접착제	0.5	0.12	2.0	0.08
	페인트	0.5	0.12	2.5	0.08
	실란트	0.5	0.12	1.5	0.08
	퍼티	0.5	0.12	20.0	0.08
	일반자재	0.5	0.12	4.0	0.08

☞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국제규격(ISO)에 맞게 자재 종류별로

(2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내용 심사 3.)

■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강화)

-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대기환경분야에 온실가스를 추가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함으로써 관련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강화)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1만kW 이상)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

☞ 현재 1만kW 이상의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면서도, 집단에너지 시설의 경우 그동안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등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별도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기존 택지·산단 등에 집단에너지 시설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07년의 경우 10건의 집단에너지시설이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은 통상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종전에도 택지, 산단 등을 평가하면서 집단에너지 시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왔던바, 대상 사업 추가로 인한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음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절차 (내용심사)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평가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심의기간,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정함

☞ 법 개정(08.3.28)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 결정(Scoping)제도에 관한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동 제도는 이미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인정하되, 추가 절차로 인한 사업자 불편요인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3년간 일몰제로 도입

• 스코핑을 위한 준비서류 및 절차는 임의 절차로 규정한 종전 규정보다 완화하거나, 사업자의 자율적 운영 여지를 확대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한 사안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주민의견 재수렴의 범위 (내용심사)

- 법 개정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을 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유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함

\* 평가대상 사업규모의 30% 이상 증가, 최소 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 평가서 초안 공람 후 5년 이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등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과 동일하고, 피규제자가 소수(연 10건 내외)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약 35백만 원)하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판단기준 (내용심사)

- 허위작성 판단 기준으로 무단복제, 실제 실시하지 않는 환경영향조사 사항 기재, 고의·중대 과실로 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누락한 경우 등으로 하고, 부실 판단 기준으로 평가서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통상의 평가서 보완으로는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함

☞ 평가서의 허위·부실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평가서의 허위·부실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던 바, 허위·부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불필요한 논란 및 소송남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최대 1천만원→2천만원)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공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미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 법 개정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 폐지됨으로써 약화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이며, 나머지 사항은 현행 규정상 위반 시 바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등 (강화)

-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 6종 신규지정(41종→47종) :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클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 특정수질유해물질 추가 지정

- 5종 신규지정(19종→24종) :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클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추가 지정

(단위: mg/l)

물질명	배출허용 기준	비고
셀레늄 및 그 화합물	• 청정지역: 0.1, 기타지역: 1	먹는물기준 0.01
사염화탄소	• 청정지역: 0.004, 기타지역: 0.04	먹는물기준 0.002
1, 1-디클로로에틸렌	• 청정지역: 0.03, 기타지역: 0.3	먹는물기준 0.03
1, 2-디클로로에탄	• 청정지역: 0.03, 기타지역: 0.3	수질환경기준 0.03
클로로포름	• 청정지역: 0.08, 기타지역: 0.8	먹는물기준 0.08

※ 기타지역(가, 나, 특례지역)은 청정지역 10배의 희석을 적용

☞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수립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항목을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2015년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EU 수준으로 확대(19종(07)→25종(10)→35종(15))하기로 함에 따라,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인체 유해성, 국내외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검토하여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추가지정하고, 5종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셀레늄을 제외하면 추가되는 규제기준을 현재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추가 비용부담도 미미한 수준임

- 다만, 셀레늄의 경우 특정업체에서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규제의 편익, 외국의 규제수준, 업체의 수용능력, 업체의 준비를 고려한 유예기간, 업계 의견 반영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적절한 규제수준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셀레늄은 인체 노출시 복통, 피부염증, 폐염증 유발우려가 있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암성이 일부 관찰. 일본: 수질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0.1mg/l, LS Nikko 매출액 약 5조원, 영업이익 약3천억원, 2011.1.1부터 적용, 입법예고안 0.01mg/l 보다 10배 완화

(2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강화 7)

■ 심사내용

○ 평균배출량 기준 미달성 제작차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징금 처분 (강화)

- 평균배출량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사는 해당연도 평균배출량 기준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매년 2월까지 전년도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환경부장관은 평균 배출량 기준 초과시 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상환을 명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는 초과분 상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상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매출액의 3% 범위내 과징금을 부과

※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 동일한 차종에 대하여 다양한 배출기준이 허용되기 때문에 동일차종에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모델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모델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제작사의 배출기준 대응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

☞ 제작차 차기 배출기준 및 평균배출량 기준 도입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이미 규제심사를 완료(07.10, 원안의결)한 사안으로, 평균배출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균배출량 기준 미준수시 상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적정관리의무 부여 등 (강화)

- 시·도지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운행하는 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도 조례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관련 부품 교체,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저감장치 부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 운행기간을 둘 수 있음
- 저공해 엔진이나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련 부품 등을 제조·공급·판매 또는 교체하는 자는 개조 또는 관련 부품을 교체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를 통하여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저공해 엔진이나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련 부품 등을 개조·부착 또는 교체한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유지확인을 받아야 하며,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경우 3년간 운행자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함
- ☞ 현재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로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휘발유 자동차 까지 확대하는 것임. 규제 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약 17,635대)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을 전부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원하므로 추가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약 22억 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운행차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등 (강화)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 ☞ 현행 규정은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5~50만 원)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배출을 기준 이내로 줄이기보다 임시적인 조치 후 확인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확인검사의 실효성이 미흡한 바, 수시점검 결과 위반시 배출가스 초과원인에 대한 정비·점검을 반드시 실시한 후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되,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수시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것임. 동규제로 인한 피규제자 수가 소수(07년 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21,793대)이고, 규제비용이 약 29억 원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관리 (강화)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자(제64조제2항) 및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제66조제2항)에 대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
- ☞ 현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하고, 종전 전문정비사업자의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배제할 수 있

는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305회 경제분과위원회('07.11.14)에서 심사완료한 바 있고, 동규제로 인한 피규제자가 소수(688개소, '08.2 기준)이고, 새로이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화)

- 악취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됨에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악취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야 함

☞ 현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현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8개 시·도 19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중)이나, '05년 이후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423건('04)→470건('06)→1,426건('06)→1,508건('07))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 이미지 등을 사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실질적인 악취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유도하여 악취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이 92.8억 원이나 편익이 216.4억 원으로 크고, 동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이 92.8억 원이나 편익이 216.4억 원으로 크고, 동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동규제는 제305회 경제2분과위원회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①악취관리지역밖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학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사업장에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등이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현행 악취관리는 악취 다량 발생원이 밀집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집중하는 제도이나, 악취피해 민원이 악취관리지역 내(359건) 보다 악취관리지역 밖(1,426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단위 규제외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별도 관리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규제 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수가 소수(503개소)이고, 규제비용이 약 48억 원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대기배출시설의 직권허가 취소 (강화)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철거한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부도, 개인사정 등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직권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가 소수(42,608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동규제는 제305회 경제2분과위원회('07.11.14)에서 이미 심사완료한 것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 (강화)

- 현행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에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또는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현행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신설),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설공사(해당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신설)를 추가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자갈, 모래) 사용시 자원절약과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활용실적이 미흡(순환골재 생산량(38,270천톤) 중 천연골재 대체용도 사용 비율은 18%(7,047천톤))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순환골재가 천연골재에 비해 가격도 싸고(천연골재 가격의 30~70% 수준), 품질도 떨어지지 않으며(품질확보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를 운영 중), 순환골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피규제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강화(강화)

-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여야 함.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아스팔트(기름성분) 성분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페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성·복토용으로 쓰여 토양오염을 초래하는등 문제가 제기되어 분리배출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은데 비해(9.5억 원),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페아스팔트를 분리 배출·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아스팔트로의 재활용을 촉진(페아스팔 1톤당 11,016원 정도의 아스팔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가격은 일반 가격의 85% 수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이 큰 점(322억 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강화(강화)

-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중 자본금 규모 강화

- 5천만 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 1억 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억 원 이상)

☞ 동 규제는 일부 영세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저가로 건설폐기물을 수수한 후 단순성·복토용으로만 처리하여 고품질 순환골재로의 이용촉진을 저해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건설폐기물만 우선 처리하고,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혼합폐기물들은 다량 적체한 후 도산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저자본금 기준은 법인(또는 회사)이 위험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부도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의 폐지 또는 완화가 일반적인 추세이며, 자본금 강화가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활성화 및 부도시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보증보험 가입 등 별도의 제도가 있으며,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보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철회할 것을 권고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 3)

■ 심사내용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강화)

- 현행 의무사용 대상품목은 순환골재에 한정되어 있으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써 재생아스콘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추가

- 의무사용자의 범위에 현행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추가

-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인 경우, 발주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착공 후 3개월 이내)토록 함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의무 부과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아스콘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 절약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가격은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의 85% 수준이고, 품질인증도 받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사용 실적이 현저히 낮음 (일본 71%, 독일 60%, 벨기에 36%이나, 우리나라는 1.7%에 불과)

-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을 국가, 지자체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SOC시설의 조기확충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확대(SOC 민간투자 비중 : '96년 1.2% → '06년 17.4%)함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대상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점을 감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경우 공사에 소요된 자금은 주무관청에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형태로 보전되는 등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동 규제의 당초 취지를 고려할 때 민투법 사업시행자도 의무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규제요인으로 보여지므로 원안의결
- 사용용도 및 사용량 등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사용은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하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후 제재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 다른 법률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전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 대상 확대 (강화)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기관으로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 기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추가

☞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다른 건설공사와 일괄발주할 경우 하도급 관례상 폐기물 처리업체에게는 적정한 처리비용이 지급되지 않아(적정처리 비용의 56%), 분리발주를 통해 적정한 처리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기물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SOC시설의 조기확충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분리발주 의무 대상이 축소됨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경우 공사에 소요된 자금은 주무관청에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형태로 보전되는 등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강화)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 현재 법에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미이행 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여타 이행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규제수준이 적정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 시멘트 소성시설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10년부터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

구분	황화수소 (H <sub>2</sub> S)	암모니아 (NH <sub>3</sub> )	불소화합물 (F)	비소화합물 (As)	카드뮴화합물 (Cd)	납화합물 (Pb)	크롬화합물 (Cr)	
'09년	소각로	2 (12)	100	2 (12)	0.5 (12)	0.02 (12)	0.2 (12)	0.5 (12)
	소성로	10	100	3	3	1	5	1
'10년	소각로	2 (12)	30 (12)	2 (12)	0.5 (12)	0.02 (12)	0.2 (12)	0.5 (12)
	소성로	2 (13)	30 (13)	2 (13)	0.5 (13)	0.02 (13)	0.3 (13)	0.5 (13)

※ ( )은 표준산소농도(O<sub>2</sub> 백분율)임

☞ 소성시설이 폐기물소각시설과 유사함에도 상대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과 소성시설 지역주민의 우려 등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 방지시설만으로도 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규제에 의한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국내·외 사례조사와 민관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6)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중수도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등 (강화)

- 중수도시설 설치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개발 사업을 추가
- 중수도시설 설치기준으로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설치·시공하게 하여야

하며, 중수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시설의 안전성 및 수질 등에 대해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수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 중수도 설치의무는 중수도 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사업 중 정부·지자체·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신설)

-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함
- 재이용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이용수의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또는 시설운영관리자의 자격,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 ☞ 동 제정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종전 시장·군수에서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해당하며, 물이용이라는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재이용수의 적정 수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이용사업계획에대한 인가는 기본적인 절차로 판단되므로 동의함

- 다만, 재이용시설 설치·시공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을 정하는 것 외, 등록자격을 일부 업종에만 한정하는 것은 경쟁제한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재이용수 요금은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27)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 제정안 (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전략환경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등 (강화)

-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종전 임의규정이던 평가준비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요구 등 요건 성립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평가협의 완료 이전에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재 실시
- ☞ 동 제정안에서 전략환경평가시 평가준비서 작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청회 개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시 의견수렴 재 실시 등의 일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상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하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각각 실시(2회)하던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을 상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1회만 실시하도록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른 보완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신설)

- 환경영향평가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자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 취소, 정지 등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 현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수질·대기·폐기물 등 분야별 기술자격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20여 개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분석·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고, 국토공간계획 및 환경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평가서 작성을 종합적 관점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신규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쳤고,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평가대행업 등록기준의 일부 변경이 있으나, 새로운 업종 신설은 아니므로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서 부실작성 및 객관성 결여, 평가서의 잦은 보완으로 인한 협의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 (강화)

-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자격을 보호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개발계획·사업의 건강영향 평가 대상 지정 (내용심사)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1)에 해당하여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 발전소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대상사업의 범위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가)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나)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다)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2)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동 규제는 '08.3.21 제정·공포된 「환경보건법」 제12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계획·사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일몰제(3년)로 시행되고, 대상 선정기준이 합리적(해외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업, 언론보도·분쟁발생 등 건강피해 우려가 큰 사업, 공공사업 우선 실시 등)이고,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최소화한 점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관리 (내용심사)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관리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 등을 정함

☞ 동 규제는 '08.3.21 제정·공포된 「환경보건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평가대상 공간을 정하고, 환경부령으로 보고 및 검사 대상과 개선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편익이 크고, 관련법안 및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대상을 최소한으로 지정한 점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내용심사)

-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고 수락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관련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동 규제는 '08.3.21 제정·공포된 「환경보건법」 제24조에서 환경부장관이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유사입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5조, 29조 등), 소비자기본법(37조, 49조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수락 절차, 공표 대상 및 내용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확대 (강화)

- 사용용도 :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추가

- 의무 사용량 : 골재 사용량의 10% 이상 → 15% 이상

☞ 시행령 개정(07.12.28)시 추가된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대한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자원절약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10%→15%)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였고, 의무사용 예외 규정으로 피규제자(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8절 |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 1. 교육과학기술부

집필자 : 방진아 사무관 (02-2100-2316, passb@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법 제정안,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2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5건, 강화 6건, 내용심사 41건 등 총 6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12건, 비중요규제 50건)
- 심사대상 중요규제 12건 중 9건에 대해 개선권고하고,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총 신설규제는 15건임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1차 행정사회 분과(2008.1.17)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367차 행정사회 분과(2008.4.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안	제367차 행정사회 분과(2008.4.1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 분과(2008.5.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내용심사 6 *중요 2, 비중요 4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 분과(2008.5.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 분과(2008.5.1)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70차 행정사회 분과(2008.5.7)	원안의결 9	내용심사 9 *비중요 9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373차 행정사회 분과(2008.5.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77차 행정사회 분과(2008.6.2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7차 행정사회 분과(2008.6.2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법 제정안	제378차 행정사회 분과(2008.7.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 분과(2008.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 분과(2008.7.3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 분과(2008.7.3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 분과(2008.7.31)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2차 행정사회 분과(2008.9.4)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2차 행정사회 분과(2008.9.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3차 행정사회 분과(2008.9.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386차 행정사회 분과(2008.10.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내용심사 3 *중요 2, 비중요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390차 행정사회 분과(2008.10.30)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5~11.1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200차 본회의 (2008.12.1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1 *중요 1,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53 개선권고 9	신설 15, 강화 6 내용심사 41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기준 (내용심사)

-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인 이상인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 정규직원 20인 미만인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인 이상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인 이상

☞ 평생교육기관이라면 최소 1인의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점, 미배치시 제재조항이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큰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내용심사)

-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평생교육시설이 인가취소·등록말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 ☞ 학습비 반환요구 등의 이유로 제기된 학습자 측의 민원해소와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비 반환사유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학원 등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과정 입학대상자 제한 (강화)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1년 3학기제)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만 16세를 초과한 자
  - 고등학교 입학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 1년 3학기제(2년제 졸업) 학력인정시설 고교과정의 제도도입 취지는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인 바,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학령기 학생(만 15세)을 제외한 만 16세를 초과한 자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현재 청소년 대상 1년 3학기제 운영학교 5개교에 대해 경과규정을 마련(공포 후 3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 학력인정시설 승계, 폐쇄 절차 (신설)

-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피승계자는 그 사유, 승계연월일, 승계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승계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인계인수서,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

- ☞ 학력인정시설 설치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워 학교를 폐쇄할 경우, 재학생의 처리방안과 학습권 보호, 교직원의 고용승계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설립자의 승계제도 신설의 타당성 및 시·도교육감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법률에서 학력인정시설의 무단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의 인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인가를 받도록 변경한 사안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 (신설)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명칭, 목적 등을 기재한 지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함
-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 상기 교원, 시설·설비 등의 세부기준
  -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인 이상을 두고, 중학교 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함(한 학급의 규모는 초·중학교과정 모두 30인을 초과해서는 안됨)
  - 학습시설
    - 가. 수업실 1실 이상 (수업실의 최소 기준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하고 동시학습자 1인당 0.5제곱미터씩 추가)
    -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 교사연구실 1실 이상
- 교육감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력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지정 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교육 과정 이수내역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학력인정서를 받도록 함

- 초·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그 과정을 수료하면 초등학교학력 또는 중학교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수자가 해당 학교급별 학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지정절차, 설치 및 지정기준, 지정취소의 절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및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학사관리 등의 운영방법 (신설)

-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영 공포 당시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되며, 학교법인에 한함
- 교사 및 교원은 사내대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서를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설치계획서의 명칭에는 해당학교의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칙 규정을 준용함
-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사내대학을 준용하고, 수업료, 재무회계는 원격대학을 준용하며,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고등교육법령상의 전문대학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

☞ 개정된 평생교육법(2008.2.15 시행) 부칙 제4조에서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범시행 당시 전공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등기술학교(4개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사안으로,

-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학교법인 외에 비영리 재단법인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학교법인이 아니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맞게 학교법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 전공과 설치·운영 고등기술학교 4개교에서 시행령안의 설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기를 건의한 바 있으나, 시행령안의 설치기준은 전문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사내대학, 정규 전문대학의 설치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기존의 전문대학과 동일한 전문대학학력을 인정 받는 만큼 기존의 전문대학과의 형평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2)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내용심사)

-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기존 학교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정
  - 절대정화구역 : 학교설립예정지 예정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기존의 학교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 (내용심사)

-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 사업의 개요, 평가항목별 조사자료 및 현황,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발급한 의견서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그 밖에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사항
-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공공시설 등
- 평가서 작성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른 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평가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10년) 동안 보존할 것,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함
  1. 사업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또는 학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제반 평가결과에 의하여 학교입지의 변경이 수반되어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어 교육감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용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교육감은 평가서의 적합여부 등을 결정하여 학교용지 선정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학교용지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함

-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교용지 선정자에게 통보해야 함

- ☞ 학교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2008.4.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작성서류, 평가항목별 기준, 평가서 작성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사안이며, 평가항목별 기준은 각 항목별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소음진동법 등의 환경 관련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비구역내 학교의 학습환경 조사 (내용심사)

-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인접 건축물로 인한 학교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해야 함

- ☞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2008.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학교 주변의 정비사업으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사할 때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형평성에 논란이 없을 것이므로 조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사항목 및 그 기준은 이미 생활환경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 (내용심사 6)

■ 심사내용

○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등 (내용심사)

-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

※ 설립주체, 설립목적, 명칭,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학사운영계획,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 학교 명칭에는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칙에는 원격수업과 출석수업 등의 비율을 명시해야 함

- 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계획서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을 첨부하여 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 명칭, 전환목적, 발전계획, 설립주체 및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교원 현황 및 확보계획, 학사운영 현황 및 계획, 콘텐츠 운영실적,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등을 기재

-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로 사이버대학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2007.10.17)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의해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의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절차 등 인가과정을 알리는 제도적 마련은 필요한 사항이며, 사이버대학 전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내용심사)

- 사이버대학에 특수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설치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1. 특수대학원의 명칭·설립목적·위치·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원의 현황 및 확보계획
  5. 특수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특수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 재정운영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특수대학원 발전계획
  11.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설치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제출서류 중 제11호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지며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내용심사)

- 교사(校舍)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상을 인가장소에 확보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교육설비 세부기준에 따라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함
  - \* 기준면적(입학정원 기준)
    - 1,000명 미만(990제곱미터), 1,000명~2,000명 미만(1,485제곱미터) 2,000명~3,000명

미만(1,980제곱미터), 3,000명 이상(2,475제곱미터)

-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사이버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사이버대학의 교사 기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보다는 강화되었으나, 원격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보다는 많이 완화된 수준이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중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제정안에 기반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내용심사)

- 사이버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되, 의료 및 사범계열 등 국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학과(전공)와 실험실습을 위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원격 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과(전공)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교원은 학과(전공)별 학생 수 200명당 1명의 교원을 확보해야 함.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교원 1인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겸임교원은 교원 정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함
- ☞ 사이버대학의 교원 기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보다는 강화된 수준이나, 원격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보다는 많이 완화된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일반대학의 학과 설치 및 폐쇄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대학자율화 1단계 추진 계획(08.4.16)에서도 대학에 두는 조직을 학과 및 학부로 제한하던 것을 대학 자율로 결정토록 개선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이버대학에게만 조직을 제한하고, 그에 설치할 수 있는 전공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제1항을 "사이버 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 등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사이버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내용심사)

- 학교법인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35억 원 이상이어야 함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25억 원 이상)

-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사이버대학 설립기준 및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한 것은 안정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중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제정안에 기반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평가·보고 및 공표사항 (내용심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이버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감,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함

- 사이버대학의 장은 교사 및 설비, 조직 및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학교현장을 공표해야 함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사이버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 보고 등을 통해 사이버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과 설치 제한 (내용심사)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의료 및 사범계열 등 국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학과(전공)와 실험실습을 위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원격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과(전공)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이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총정원 내에서 학과 설치 및 폐쇄가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일반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두는 조직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로 결정토록 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과(전공) 제한 규정은 적절하지 아니함

• 다만, 사이버대학은 학생수 200명당 1명의 교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조직에 1명만의 교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그 조직이 학과 또는 학부를 넘어 계열이나 단과대학 규모로 커지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항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평가 (내용심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감,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상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평생교육법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2007.10.17 평생교육법 개정),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은 해당기관의 교육의 질 제고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출연 또는 기부재산의 기준액 (내용심사)

- 법률에서 학교법인 설립 이후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설립 · 운영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 사이버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존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의 제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출연 또는 기부자에 한해 정관 기재)을 둬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연 또는 기부자의 무분별한 정관 기재를 막을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기준 (내용심사)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설립 · 운영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이버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존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의 기준(수익용 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에 대해 회계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가능)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부정행위시 조속한 문제해소 및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내용심사)

- 현재 대학 · 산업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는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상에 사이버대학을 추가

☞ 사이버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존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의 기준(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고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내용심사)

- 법률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 대상 항목\*에 사이버 대학 관련 내용을 추가

- \* 1.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 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 2. 학교법인이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차입금 합계액 200억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차입금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사이버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존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교의 재정적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이버대학은 기본재산이 통상적으로 전문대학보다 작음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 수준으로 고려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9)

■ 심사내용

○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 (내용심사)

-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의 취소사유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장애학생의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이미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내용심사)

-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학교·특수학급 등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특수교육기관 등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4. 특수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한 인사·조직·행정의 현황과 그 지원 실태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의 현황과 그 지원 실태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졸업 후의 삶의 실태
  7.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8.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전문직 종사자, 장애대학생 등의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사항

- 실태조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실시함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이미 실태조사 사항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이며, 대학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2년 주기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실태를 조사하여 왔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내용심사)

-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세부 기준을 규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대학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해야 함

☞ 법률에서 정한 장애유형별(1~10호)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이미 선정기준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대한 이의 (내용심사)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그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 일반학교의 경우 재적 중인 학생의 수가 학년별 학생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로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이미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수교육 담당인력의 업무 및 자격 (내용심사)



-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의 작성과 실행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보호자와 협력해야 하며, 영아가 30개월이 되기 전에 유치원 과정으로의 전이지원계획을 세워야 함.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특수교육(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은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직업재활 전공 이수자,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이어야 함
-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인력은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이상이어야 함
-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교사 자격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자로서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보육사 · 보육교사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 5인당 1인 이상(시각 ·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7인당 1인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해야 함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수교육 담당인력의 업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 내용을 마련하였고, 주요쟁점이 없으며, 피규제자의 수도 중요규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계획 수립 (내용심사)
  -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공과의 수업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 각급 학교의 장은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 ·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작성 · 운영해야 함

- 각급 학교의 장은 매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별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야 함.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함. 각급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해 교육해야 하며, 매학기별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함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직업교육계획 수립,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계획 작성,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계획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고, 피규제자 수도 중요규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수교육에 필요한 관련서비스 제공 (내용심사)
  - 각급학교의 장이 제공하여야 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의 종류를 명시
    - 1. 일상생활지원 보조기구, 2. 의사소통지원 보조기구, 3. 착석 및 자세유지지원 보조기구 4. 이동지원 보조기구, 5. 학습지원 보조기구, 6. 여가생활지원 보조기구, 7.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구
  - 각급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필요한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학교정보 제공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는 점자 또는 음성지원을 제공하는 등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 ☞ 법률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에 대해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를 제공 · 대여하고, 통학차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요 쟁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내용심사)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그 기능 수행 가능). 위원회 자격·구성·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학칙에서 정함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에서 그 업무 담당 가능).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피규제자 수도 중요규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 (내용심사)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대상이 한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학교도서관 시설·자료 등의 기준 (내용심사)

- 면적은 학교 교실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단,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 자료는 1교당 1,000종 이상으로 하고, 연간 자료 증가량은 1교당 100종 이상으로 함

☞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2008.6.15 시행)되어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 수가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9)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시간제등록생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제한 (내용심사)

-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 분야에 대하여는 시간제등록을 제한

-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로 변경

-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는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제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기존 제도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을 포함하여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제한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방법 및 등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교원 및 의료인 양성분야는 기존의 제한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인원 기준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서 총 입학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주말 집중수업, 통신수업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기존 시설·설비와 인력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모집의 가능성이 크므로 모집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점,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다른 전공 이수기준 강화 (내용심사)

- 다른 전공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 기준을 현행 35학점 이상에서 학사 학위 48학점, 전문학사학위 36학점(3년제는 42학점) 이상으로 변경
- 상기 학점 중 18학점 이상을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이수해야 함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및 학점인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학점인정원을 자격취득, 독학사시험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격취득 등만으로 다른 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학습자등록 및 수수료 징수 (내용심사)

- 최초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습자등록을 해야 함. 학습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기타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 학습자의 학력, 성명, 생년월일 등의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고유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학습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습자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학습자등록 및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일부 미흡하여 이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서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법 제정안 (신설 4)

■ 심사내용

○ 원료물질등의 유통업 등록 등 (신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채광·수출입·판매하는 자 또는 발생시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유통업자는 원료물질 등의 취득, 발생, 보관, 판매, 처분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료물질 등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등록된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며,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고, 원료물질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유통업자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등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을 기록·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로 규제대상이 한정된다는 점, 등록·기록·보고·신고와 같은 행정적 절차를 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원료물질 등 취급 및 가공제품 제조기준 등 (신설)

-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야 함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제조업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유통업자·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등 또는 가공제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이행방법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원료물질 등을 화재, 침수, 비산 등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관리할 것
  - 취급하는 원료물질 등의 취득, 발생, 판매, 보관, 처분현황 등을 관리할 것
  - 가공제품의 제조, 취득, 판매현황 등을 관리할 것
  - 원료물질 등의 취급 또는 가공제품 제조 공정 중에서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료물질 등과 가공제품의 취급 및 국내외 유통현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유통업자·제조업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공정부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 ☞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중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 등 취급기준, 가공제품 제조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생활용품으로부터의 방사선 과다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급·제조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산업체 의견과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당초 제품승인(사전적 규제)에서 제조기준 위반시 시정조치(사후적 규제)로 수정한 점,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국제권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받아들여 대량의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료물질 등 또는 가공제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제조업자가 원료물질 등 또는 가공제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에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작업종사자의 방사선안전을 위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관리감독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제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설의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검사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질문하거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음. 유통업자·제조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입항만에 방사선·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항만운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시기 설치에 협조해야 함
  - 고철취급자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능이 생활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항만운영자 및 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방사능 농도 초과 의심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발생시킨 유통업자·제조업자 또는 고철취급자에게 반송·수거처리 등의 안전조치를 명해야 함
  - 유통업자·제조업자 또는 고철취급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신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료물질 등과 가공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전산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하며, 유통업자·제조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 ☞ 유통업자·제조업자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제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요건 및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 수출입항만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항만운영자는 감시기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항만운영자는 감시기에서 방사능 농도 초과 의심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항만의 감시기 운영주체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의 증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같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기준

- 시정명령 위반 : 3,000만 원 이하
- 원료물질 취급기준 및 가공제품 제조기준 위반, 제조기준 부적합사실 공개·시정·  
 수거·폐기 미조치 : 2,000만 원 이하
- 보고·신고·기록의 미이행 또는 허위이행 : 1,000만 원 이하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에의 미참여 : 300만 원 이하

☞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한 것으로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유통업자, 제조업자만으로 규제대상이 한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비영리 장학법인의 정보 공시 의무 (신설)

- 학자금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영리 장학법인은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당해 법인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학자금 지원체계가 정부·지자체·민간기관 등에서 각각 운영함에 따라 통합서비스시스템  
 부재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된 바, 국가에서 종합시스템(국가장학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성이 있고, 재단에서는 민간 비영리 장학법인의 학자금 정보를  
 국가장학정보시스템에 연결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민간 장학법인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강화한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3)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참여제한 (내용심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음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5.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7. 그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단체 등이 연구개발과제를 법령에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연구기관에 참여 제한이 필요하며, 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을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명기함으로써 법적 투명성 및 안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자체평가 실시 대상 및 시기 (내용심사)

- 학교의 장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내용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당해 기관의 교육연구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함. 단, 인정기관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 사항을 교과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실시 대상 및 시기를 정하는 사안으로, 자체평가의 대상과 관련하여 필수항목을 대학정보공시내용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대학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 자체평가는 2년 이내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선권고

○ 자체평가 결과 공시 (내용심사)

-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 ☞ 고등교육법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교과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시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준수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평가·인증 결과 공시 (내용심사)

- 학교의 장은 인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함

- ☞ 학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인증 결과는 공개되어야 학생·학부모가 대학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학과 선택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로 하여금 평가·인증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신청한 학교로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수 있으므로 규제준수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내용심사)

-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서 첨부서류 :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평가·인증 및 그에 준하는 활동실적, 사업 계획 및 예산내역,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기준, 평가·인증 방법·절차 및 주기에 관한 규정, 타 업무 수행시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기재자료 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으로 지정 (인정기관에 대한 인정기간은 5년 이내)
  -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할 것
  - 인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것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그밖에 평가·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평가·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학평가의 신뢰성과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인정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도 우리나라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평가·인증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규제자의 수가 한정되고, 관련기관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인정기관의 자료제출 등 (내용심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 정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인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고,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이 인정기관 지정 당시와 달리 변경되었다면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인정기관 지정목적의 위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피규제자수가 한정되고,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강화)

- 대학의 장은 지원받은 연구비를 교육경비 등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른 회계와는 분리된 별도의 회계(연구비회계)로 관리해야 함
- 대학 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각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 다만, 대학의 장은 연구과제별 별도 계정을 연구비회계 안에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
- ☞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한 것으로서, 이제까지 대부분의 대학이 주로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비를 사용·관리하여 대학의 전체 연구비의 사용 흐름 등이 파악되기 어려웠는 바, 별도의 연구비회계로 기관 책임하에 전체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연구자는 연구비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 등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와 대학 등이 연구비의 집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연구비회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이제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자 또는 대학에 대한 감독권 등을 통해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해 왔으나,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자 및 대학 등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 등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연구비 지급중지 등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해야 함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결과 제출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2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가 환수된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연구비의 지급중지, 지급된 연구비의 환수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례와 학계의 견해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한 것으로서, 연구비의 지급중지, 환수, 연구 신청 및 참여 제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신설)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연구비회계를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항에 의한 연구비회계에 대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1조제1항에 의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25조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로 한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기준 (내용심사)

-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함
  -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 단체 등이 그 구성원 및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의 접수
- 한인회, 기업체 등 단체에서 모금한 금품의 접수

-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함

- 학교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 학교운영비 부족비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공동명의로 조성 · 운용해야 함

-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별도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학교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고,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함

-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 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9.22 시행)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재외 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미흡하고, 현지 한인단체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발전기금 명의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공동명의로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검토결과를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자 지정 (신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의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좌 및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할 연구실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 및 기업(연)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자 지정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전문성 저하, 연구실 단위의 지휘·통솔의 한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대 연구실 사고 보고 (신설)

-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중대 연구실 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사고조사 실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고시 보고규정이 없어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사고정보 공개를 기피함에 따라 유사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대 연구실사고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초·중등학교 공시기간 연장 (내용심사)

- 초·중등학교의 장은 공시일부터 최근 3년 전까지의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초·중등학교 전체가 규제대상이 되나, 최근 3년 전까지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고등교육기관과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점,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추가 (내용심사)

- 정보공시항목별로 정보의 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에 대해 규정

- 초·중등학교의 장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법률에서 규정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항목(15개)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보공시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정보공시항목은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 다만, 정보공시항목 중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 교과별 교원현황'은 법률의 위임범위(직위·자격별 교원 현황)를 넘어선 것이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시에 따른 학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권고

○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 항목 추가 (내용심사)

- 정보공시항목별로 정보의 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에 대해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항목(13개)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보공시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정보공시항목은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 다만, 정보공시항목 중 '교원급여 현황'은 대학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육의

- 질과도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시에 따른 학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권고

(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학교용지·시설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강화)

-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다음의 가액으로 공급해야 함
  - 현행 - 2천가구 이상 (초중학교: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 조성원가의 70%)  
2천가구 미만 (조성원가)
  - 개정안 - 2천가구 이상 (무상)  
2천가구 미만 (초중학교: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 조성원가의 50%)
- 2천가구 이상 공영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조정·녹지율을 1%(학교용지 면적의 35% 수준) 내외 하향 조정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확보되는 토지를 유상 가치분하고 얻는 수익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 공급해야 함
- ☞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학교설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교육청은 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인허가를 요청하면서 학교설립 기피 및 건축허가 부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임
-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시설 무상공급 및 공급가액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은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그만큼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증가하고, 이는 분양가격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일부 부담을 통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학교의 적기 개교라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손실액 최소화라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편익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안의결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강화)

-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현행 - 공동주택: 분양가의 0.4%, 단독주택 택지: 분양가의 0.7%
  - 개정안 - 공동주택: 분양가의 0.6%, 단독주택 택지: 분양가의 1.05%
- ☞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분양가격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학교의 적기 개교라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클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로 인한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안의결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내용심사)

- 현재 운영중인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 수업연한, 학위과정 운영, 입시전형 및 평가에 관한 근거 마련
  - 수업연한 4년 이상 (전문석사학위과정)
  - 학부 성적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 ☞ 그동안 일반 전문대학원 체제내에서 추진되어 온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그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 수가 제한적이고, 법적 안정성 확보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학교(유치원) 규칙의 공개 (신설)

- 외국인학교(유치원)의 장은 학교(유치원) 규칙을 학교(유치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 ☞ 현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모든 학교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외국인 학교는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일반 학교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특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바, 특례법보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강화)

- 외국인학교에 입학·재입학·편입학·재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학칙으로 정함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의 자녀
  -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
- ☞ 내국인의 입학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교의 설립취지 등을 감안시, 내국인 입학비율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하되, 시·도별로 2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외국인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의 30% 이내로 하되, 시·도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입학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외국인의 자녀 및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도 내국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내국인 입학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학력인정학교 지정 (신설)

- 교육감은 외국인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수준, 교원 확보방안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를 지정할 수 있음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과 중 국어와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해야 함
- 교육감은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의 내용 및 수준, 교과용 도서·교재, 교사확보 상황 등과 관련하여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해야 함
- ☞ 현재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인정 규정이 없어 대학 진학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며, 피규제자 수와 규제 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외국인학교 교원 자격 (신설)

- 학력인정학교에서 국내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국어·사회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단, 국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교원 중 제1호,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음

-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 ☞ 외국어학교의 교원 자격을 규정한 사항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2. 문화체육관광부

집필자 : 방진아 사무관 (02-2100-2316, passb@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등 총 1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4건, 강화 8건, 내용심사 8건 등 총 3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5건, 비중요규제 25건)
- 심사대상 중요규제 5건 중 4건에 대해 개선권고하고, 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도 총 신설규제는 14건임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베팅·배당을 주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정안	제361차 행정사회 분과(2008.1.1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 분과(2008.5.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 분과(2008.5.1)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제373차 행정사회 분과(2008.5.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 분과(2008.6.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 분과(2008.6.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4, 내용심사 1 *중요 3, 비중요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 분과(2008.8.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84차 행정사회 분과(2008.9.18)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194차 본회의 (2008.10.1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저작권법 개정안	제391차 행정사회 분과(2008.11.2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1 *중요 3
계	-	원안의결 26 개선권고 4	신설 14, 강화 8 내용심사 8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베팅·배당을 주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 심의대상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및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관광진흥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 다만, 슬롯머신류(릴, 파친코, 룰렛 등 모사게임)와 레이스류(경마, 경륜, 경정 등 모사게임)는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사행성 전자식 유키기구 해당여부를 관할부처(경찰청)에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의
- 비경품게임물 세부적용기준
  - 이용요금액과 단위점수 1대 1 대응
  - 시간당 최대투입금액 1만 원
  - 1회 게임 최소시간 30초 이상
  - 자동진행 금지, 신체접촉 없는 버튼 작동 금지, 네트워크 기능 통한 진행 금지 등

- 운영정보 표시

- 투입금액 및 이용점수, 당첨점수 표시(시간당, 일별, 월별 조회 가능)
- 누적 당첨확률 조회 가능
- 최소 1년간 게임기 내 데이터 저장의무 등

-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행성과 관련한 게임물의 등급거부사유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규제·처벌대상인 행위 또는 기기,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거나, 경마·경륜·경정·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으로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게임으로 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심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사행성유키기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급심사를 거쳐 등급분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안)은 법률에는 없는 “비경품게임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게임운영방식 등 다양한 절차 및 규제를 하위 규정에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됨
- 우선 사행성유키기구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안별로 경찰청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으나, 경찰청에 등급거부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게임법 및 사특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 시간당 최대투입금액, 1회 게임의 최소시간 등 게임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운영정보 표시 의무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경품이 나오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음
- 또한 동 규정이 우려하고 있는 경품이 지급되지 않는 사행행위 모사 게임물이 심의 후 위·변조되는 것은, 게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술심의’를 통해 기기의 개·변조 가능성을 철저히 심의하여 해결하거나,
- 금전적인 기대이익 없이는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는 경우는, 현행 심의규정 제18조의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로 등급거부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종적으로는, 위·변조 사행성 게임물이 불법 유통되는 단계에서 검찰 및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막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경품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거나, 경마·경륜·경정·카지노를 모사한 게임물(이른바 ‘비경품게임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의견수렴 등 적절한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게임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불법 개·변조 등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

(2)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심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안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가중보다는 감경하여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피규제자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내용심사)

- 태권도 공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원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변경 사유서, 당초 승인된 개발계획서 및 실시계획서에 변경 내용을 표시한 자료

- ☞ 법률에서 위임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절차를 정하는 사안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휘장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료 징수 (내용심사)

- 태권도공원·태권도진흥재단·국기원을 상징하는 휘장(표지·도안·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료를 내야 함
- ☞ 법률에서 위임된 휘장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사용료 징수 절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 (내용심사)

- 법 제24조에서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
- ☞ 법 제2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사안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 전담부서 인정 및 취소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력 제고를 위해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창작 연구소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은 창조성이나 창작영역은 개인역량으로 간주되어 기업자체적으로 창작개발력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기업이 창작개발 부서를 독립 운영함으로써 창작 개발력이 산업내부에 축적되고 기업이 창작개발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규제자 수가 특성상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를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가치평가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가 아닌 무형자산인 콘텐츠를 담보로 투·융자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 가치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신뢰성 있는 콘텐츠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규제자 수가 특성상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우수 문화프로젝트 지정 및 취소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작성을 지니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는 문화 상품을 우수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문화기술개발사업자이거나 미래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수 문화산업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우수한 문화상품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며 글로벌 성공작 창출에 의한 우리 문화산업의 세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가 특성상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 (강화)

- 정보통신망상의 프로그램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및 배타적 발행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전송자 정보의 제공 청구가 있는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한미 FTA 합의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복제·전송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나 권리자가 침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소송비용을 감소시키는 편익 효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되며,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4,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음

- ☞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의료관광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통해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여행계약 사항 정비 (강화)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서, 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안전정보제공, 일정변경(선택관광 포함) 사전고지 등 여행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

- ☞ 여행계약 체결사항, 안전정보제공,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 고지의무 등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권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여행계약 체결 사항 구체화는 기존 여행계약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명문화한 것인 점, 여행계약 체결사항 명시를 통해 사후 분쟁 발생시 피해보상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우수 숙박업자의 지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중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우수 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숙박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관광공사 및 지자체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지정호텔제도'를 도입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한 사안으로,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 명 방문시 약 10만 실 정도의 관광호텔이 필요(관광호텔 약 72,000실 확보 예상, 부족분 28,000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간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우수 숙박시설 지정 등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객실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추가 (강화)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으나 통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경우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규정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중사제 도입 (신설)

- 여행업체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음



- ☞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여 무자격 가이드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책임있는 관광안내로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는 의무고용제와 달리 상시채용 의무가 없으므로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크지 않은 점,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과도기적 수급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다만,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1년이 경과한 후 관광통역안내사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통역안내사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 관광지등 조성사업 준공검사(신설)
  -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시 공공시설 귀속 및 국공유 시설 관리·운영 주체 설정 등을 위해 준공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사안으로, 관광지 등 개발사업 종료후 준공처리 절차 규정이 없어 공공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의 양도·양수 곤란,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불명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기시설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근거 마련(내용심사)
  - 시·군·구청장은 안전성검사 통지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개선보완사항을 조치토록 지시할 수 있음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자에게 사용중지 및 개선보완사항을 조치토록 하는 사안으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는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제가 없어 부적합한 유기기구의 계속 운행이나 개선지연의 우려가 있고,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준미달의 유기시설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 피규제자 수가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추가(강화)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 유원시설업자는 비정규직 운영요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4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유원시설업자는 행정청의 처분을 주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함
  -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의 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함
- ☞ 유원시설업자의 안전관련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유기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안전점검일지의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하는 것이고, 기타 유원시설업자는 이미 안전점검기록부를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년의 보관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 운영요원의 신규채용시 사전교육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교육시간 2시간은 비정규직 운영요원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 행정청의 처분이 실효성을 갖도록 행정청의 처분을 주어진 기간내에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의 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을 부여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강화)
  - 안전관리자는 최초 신입시 안전교육을 받은 그 다음연도부터 2년에 1회 이상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 ·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최초 신입시에만 받던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외에 2년에 1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안으로, 피규제자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고, 최소한의 보수교육으로 유기시설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심사)

- 법률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부과 ·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안으로, 위반행위의 정도 ·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강화 1)

■ 심사내용

○ 게임이용정보의 제공 등 (신설)

- 게임서비스업자는 친권자 등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일정시간 이상 계속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의 문구를 게시해야 함

- ☞ 게임이용의 부작용인 과몰입 등을 예방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모 등의 관리감독권 강화로 게임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게임물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물 사업자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율준수지침의 제정
-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이용자의 피해에 관한 신속 · 공정한 처리
- 이용자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 게임물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 이외에 이용자에게 공표하는 운영규정 또는 운영정책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게임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게임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운영규정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해야 함

- 게임서비스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함

- 게임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청약의 철회
-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해제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 게임서비스의 중지 · 장애발생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게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게임서비스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게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과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정권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등급분류거부 개선 및 신청반려제도 도입 (신설)

-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음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이 되는 기기 또는 행위의 객체
  - 사행성게임물
-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기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게임장용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 등급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연령확인수단이 미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위해 요청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등급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 장치 등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베팅을 하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를 모사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 게임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되는 결과물을 지급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 기존의 등급분류 거부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이 등급분류 신청 반려제도를 도입하는 사안으로, 게임물의 내용상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없으나 이를 구현하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사행화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사행화영업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피규제자의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등급관리책임자 신설 (신설)

- 등급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게임물사업자는 등급분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과적인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급연령에 따른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를 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등급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등급위원회 또는 자율심의기구는 등급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절차, 사후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등급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담직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게임사업자가 등급관리책임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 지정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기검사의 강화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게임장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게임물을 구현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음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되는 결과물을 지급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게임물

- 게임장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기검사에 합격해야 함

☞ 현재 경품이 지급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기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유원시설의 기기가 게임물로 유통되고 있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기기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규제자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강화)

-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현행 2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 시행령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경과규정)

☞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등 가족 2명만을 대상으로 객실을 분양(매각)하여 개인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관광숙박시설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 하고, 피분양자들이 향후 입게 될 지도 모르는 대규모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현행 법령을 신뢰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신뢰이익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대해 승인한 것이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음'으로써 확정되므로 동 개정안의 신뢰이익 보호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정기간행물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및 방법 (내용심사)

-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영업을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및 도서관법에 따른 납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법률에서 정기간행물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하는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정기간행물의 영업 승계 신고 (내용심사)

-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 법률에 영업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하는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11) 저작권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이 경우 해당 복제·전송자의 다른 계정도 포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해야 함
- ☞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개인계정 정지조항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외의 모든 저작물에 확대 적용하는 사안으로,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며, 계정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복제·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예고안에 있던 '계정 정지 또는 해지'를 '1년 이내의 계정 정지'로 수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계정정지 사실 통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해야 함
- ☞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규제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시판'에 대한 제재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며,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하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예고안에 있던 '게시판 폐지'를 '1년 이내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로 수정하고, 게시판 '전부'를 게시판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반복적인 불법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의 경우 '복제 · 전송자'에게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게시판 관리 · 운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줄 것을 개선권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의 거부 · 정지 또는 제한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복제 ·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 해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하는 경우
  -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10일 전에 해당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함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필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복제 ·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담보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동 규제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제내용을 특정 · 제한하여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한 후 추진할 것을 개선권고

### 3. 문화재청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 (Tel. 02- 2100-2312, hsg36@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12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비중요규제 19건)
- 심사대상 1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 분과(2008.8.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1)	원안의결 5	강화 4, 내용심사 1 *비중요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1)	원안의결 11	신설 4, 강화 7 *비중요 11
계		원안의결 19	신설 5, 강화 12, 내용심사 2 *비중요 19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 심사내용

######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시 및 기·예능 공개 의무 (내용심사)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 또는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에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대학·연구기관에서 연수 등을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 정함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사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08.3.28 공포, 2008.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규제대상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193명) 및 보유단체(57개)로 한정되는 점, 규제준수비용의 상당부분이 국고로 지원되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2)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강화 4, 내용심사 1)

###### ■ 심사내용

###### ○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강화)

-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나 관리자는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

- ※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시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 <개정>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할 수 없는 대상에 소유자, 관리자 외에 일반 국민을 포함
- ☞ 규제대상이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일반국민으로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내용심사)
  - <현행> 허가 취소사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 제100조(허가 취소시 청문) 및 허가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명기)를 근거로 허가 취소
  - <개정> 허가 취소사유\* 규정, 착수신고 없이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
    - \*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사항에 관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고, 규제대상이 현상변경 허가(연간 2,520여건)를 받은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정적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상황 변동신고 (강화)
  -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은 소유자·관리자 변경, 문화재 훼손·멸실, 문화재 현상변경 착수 또는 완료 등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 <개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 또는 완료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 현행 법령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건설공사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행위는 허가가 필요

- ☞ 피규제자의 수\*가 많지 않고, 전자적인 신고 등으로 규제비용 또한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수('07) : 1,300건
- 문화재 소유자 등에 대한 행위금지·제한 등 기타 필요조치 (강화)
  -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 금지·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등의 필요조치 명령 가능
  - <개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위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 추가
    - ※ 명령 불이행시 대집행 가능
  - ☞ 규제대상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불법으로 건설행위를 한 자로서 그 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 현행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공사를 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임
- 등록문화재 관련 변동신고 (강화)
  - <현행> 등록문화재소유자·관리자 등은 소유자·관리자 변경, 문화재 훼손·멸실 등의 경우에 신고
  - <개정> 소재지 지번 등 변경, 보관장소 변경, 문화재 현상변경 착수 또는 완료 등의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추가
  - ☞ 규제대상이 극소수(연 30여명)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1, 강화 1)

※ <17대 국회 폐기법안> '06.12.28, 제31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률 제정

■ 심사내용

○ 지표조사 건설시공자 의무 (강화)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위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제31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6.12.28) 심사시 개선권고(지표조사 협의완료 전 관련공사 인허가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한 사항은 기반영 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당시 심사안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 (신설)

- 법률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 조사전문법인, 문화재 관련 국·공립 발굴기관 및 박물관,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을 하여야 문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

-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

•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속임수로 조사기관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은 3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

☞ 제31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6.12.28) 심사시 개선권고(조사등록 취소사유 중 불확정 규정 삭제 등)한 사항은 기반영\*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당시 심사안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고의·중과실로 조사보고서 허위작성시를 위와 같이 수정하여 개선권고 내용 반영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4, 강화 7)

※ <17대 국회 폐기법안> '07.1.31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에서 심사완료,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률제정

■ 심사내용

○ 문화재수리의 시행 (강화)

- 실측설계업자가 조정분야 실측설계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계획과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부실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개선권고("필요시"를 구체화)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수리업자에게 수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 수리보고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현행 : 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만 제출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시 개선권고(‘필요시’를 구체화)한 사항은 기반영 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당시 심사안과 동일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의무감리제 시행 (강화)

- 발주자는 수리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현행 임의감리)

- 수리업자·감리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화재청장은 감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격·학력·경력을 가진자를 감리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수리기술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감리기술자 인정 취소후 2년 미경과자는 감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문화재수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는 감리규정이 필요하며, 수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 등의 관계일 경우 감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도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자들의 결격사유 (강화)

- 다음 해당자는 수리업자 등이 될 수 없음

○ 법인 임원 중 제1호~제5호\* 해당자가 있는 법인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건축사법 등 위반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종료·집행면제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등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문화재수리의 적정성 및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법인의 수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 (신설)

-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문화재수리업 등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수리업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문화재수리업 등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함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법안을 입안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 보수교육 (신설)

-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는 기술·자질향상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용자는 교육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수리·감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경비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장 등은 시정 명령이 가능하며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가능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문화재 원형보존 등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피규제자수(200명) 및 교육 경비(4천만 원) 등도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처분 후의 통지 (신설)

-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

-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음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수리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도급계약 해지를 가능토록 한 것은 수리업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측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 입법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정명령 (신설)

-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도급대장, 실측설계 도급대장 또는 감리 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보수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시 개선권고(‘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시’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삭제)한 사항은 기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당시 심사안과 동일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안과 동일내용으로, 금번에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것이며, 규제대상이 소수(응시생 2,700명)이고 건축사법 등 유사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취소 등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자격취소나 2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자격취소시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자격정지시에는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함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안과 동일내용으로, 금번에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것이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관계법령 위반시 등록제도 및 자격제도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등록제도를 폐지(규제완화)하고 자격제도만 운용함에 따라 나타난 제도상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 자격정지, 자격취소) 규제대상이 소수(5,600명)이고 건축사법 등 유사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1절 | 개요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 (T. 2100-2276, hope002@pmo.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2008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974건(비중요 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중 125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위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 '08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8년도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기획재정부	3	3	3			
금융위원회	27	72	41	2	17	12
공정거래위원회	8	27	17		4	6
관세청	2	2			2	2
지식경제부	45	80	65		7	8
중소기업청	2	3	3			
특허청	3	3	3			
국토해양부	64	124	108	7	6	3
해양경찰청	2	3	3			
농림수산식품부	43	74	66	2	2	4
방송통신위원회	17	50	28		14	8
노동부	28	45	36	1	4	4
환경부	37	71	58	2	5	6
기상청	1	3	1			2
교육과학기술부	26	62	50		9	3
문화체육관광부	13	30	25		4	1
문화재청	4	19	19			1
보건복지가족부	58	197	138	2	27	30
식품의약품안전청	27	27	25		1	1
여성부	4	9	8			1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8년도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통일부	1	4	4			
외교통상부	1	1	1			
국가보훈처	2	2	2			
행정안전부	6	21	11		4	6
소방방재청	13	26	22	1	2	1
경찰청	2	2	1			1
법무부	4	11	5			6
국무총리실	1	3	3			
계	444	974	746	17	108	106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 (강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하도급을 한 종합수리업자는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50/10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전문수리업자는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재하도급 할 수 없음
- 하도급에 관한 하수급인의 지위, 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의무,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안과 동일내용으로, 금번에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것이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도급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는 등 입법불비 상태가 지속되나, 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입법례 수준으로 도급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강화)

- 다음 해당자에게는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 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경우
  -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 제3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1.31) 심사안과 동일내용으로, 금번에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것이며, 당초 심사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으나, 금번 심사안은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임.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달라지는 도급계약 규정 등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금액도 과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9절 | 보건복지가족·여성 분야

집필자 : 송인현 사무관 (Tel. 02-2100-2317, ihsong10@pmo.go.kr)

### 1. 보건복지가족부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 기준(고시)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총 58개의 법령 등에 대해 총 197건(신설 48건, 강화 73건, 내용심사 7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7건 중 168건은 원안의결, 27건은 개선권고, 2건은 철회권고하였고 2008년에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복지부 소관 신설규제는 총 48건임

####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0차 행정사회분과 (2008. 1.10)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62차 행정사회분과 (2008. 1.31)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 중요 4, 비중요 1
한약도매업무 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안	제189차 본회의 (2008. 2.14)	원안의결 1	신설 1 * 중요 1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 등 고시 제정안	제365차 행정사회분과 (2008. 3. 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 개정안	제366차 행정사회분과 (2008. 4. 3)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 1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66차 행정사회분과 (2008. 4. 3)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1, 내용심사 2, * 중요 2, 비중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6차 행정사회분과 (2008. 4. 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내용심사 4 * 중요 2, 비중요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68차 행정사회분과 (2008. 4.17)	원안의결 9 개선권고 3	강화 4, 내용심사 9 * 중요 4, 비중요 9
장애인생산물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고시) 제정안	제370차 행정사회분과 (2008. 5. 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71차 행정사회분과 (2008. 5.15)	원안의결 9 개선권고 2	신설 1, 내용심사 10 * 중요 5, 비중요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2차 행정사회분과 (2008. 5.22)	개선권고 2	내용심사 2, * 중요 2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72차 행정사회분과 (2008. 5.22)	철회권고 1	신설 1 * 중요 1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2차 행정사회분과 (2008. 5.22)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강화 5, 내용심사 3 * 중요 2, 비중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분과 (2008. 6. 5)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요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분과 (2008. 6. 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중요 1, 비중요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9)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2, 강화 4 * 중요 3, 비중요 3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9)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 중요 1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377차 행정사회분과 (2008. 6.26)	원안의결 2	강화 2 * 비중요 2
복지옹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77차 행정사회분과 (2008. 6.26)	원안의결 3	신설 3 * 비중요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78차 행정사회분과 (2008. 7. 3)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1 * 중요 1, 비중요 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분과 (2008. 7.31)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분과 (2008. 8.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 산정기준(고시) 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분과 (2008. 8.21)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고시) 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분과 (2008. 7.31) 제380차 행정사회분과 (2008. 8.2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78차 행정사회분과 (2008. 7. 3) 제191차 본회의 (2008. 8.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81차 행정사회분과 (2008. 8.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2차 행정사회분과 (2008. 9. 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382차 행정사회분과 (2008. 9. 4)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3차 행정사회분과 (2008. 9.11)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의료법 개정안	제383차 행정사회분과 (2008. 9.1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중요 3, 비중요 1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고시) 제정안	제384차 행정사회분과 (2008. 9.18)	개선권고 2	내용심사 2 *중요 2
결핵예방법 개정안	제385차 행정사회분과 (2008. 9.2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의료기기법 개정안	제386차 행정사회분과 (2008. 10. 2)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약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0.8~10.15)	원안의결 11	신설 3, 강화 8 *비중요 1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8~10.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검역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2) 제389차 행정사회분과 (2008. 10.22)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15~10.22) 제389차 행정사회분과 (2008. 10.2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0.22~10.2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8. 10.22~10.29)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8. 10.29~11. 5)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08. 10.29~11. 5)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식품위생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0.29~11. 5) 제196차 본회의 (2008. 11.13)	원안의결 6 개선권고 3	신설 4, 강화 4 *중요 6, 비중요 2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0.29~11. 5) 제196차 본회의 (2008. 11.13)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 2, 비중요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12~11.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의료급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12~11.19)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4 *비중요 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0.22~10.29) 제197차 본회의 (2008. 11.20)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중요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0.22~10.29) 제197차 본회의 (2008. 11.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 5~11.12) 제197차 본회의 (2008. 11.20)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 5~11.12) 제391차 행정사회분과 (2008. 11.20)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중요 1, 비중요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 5~11.12) 제391차 행정사회분과 (2008. 11.20)	개선권고 2	내용심사 2 *중요 2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19~11.26)	원안의결 9	신설 3, 강화 6 * 비중요 9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12~11.19) 제199차 본회의 (2008. 12. 4)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26~12. 3) 제393차 행정사회분과 (2008. 12.1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3
아동복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26~12.3) 제393차 행정사회분과 (2008. 12.11)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4 *중요 1, 비중요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2. 3~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암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2. 3~12.10)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2.10~12.17)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계	총 197건	원안의결 168 개선권고 27 철회권고 2	신설 48 강화 73 내용심사 76 *중요 59, 비중요 138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장애인보장구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급여신청 전에 보장구 처방전을 첨부한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여부, 보험급여 기준 부합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함 (강화)

☞ 건강보험제도 내의 특례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여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제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서 규제대상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수준에 못미치고, 타 법령에 유사사례가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사용자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정함 (내용심사)

☞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직무와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에서 내용의 대강 및 원칙을 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내용심사)

☞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또한 민간 교육기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2013년 이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학생 지원부서와 담당자 관련 규정 및 법에서 규정한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이외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도 법적 위임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 공공기관, 법인, 교육기관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동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규정 (내용심사)

☞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도 대강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동 시행령에서는 구체화하는 수준이므로 법 규정 감안시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내용심사)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법적 취지를 감안시,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적용대상을 전반적인 문화·예술단체로 하고, 구체적인 편의내용을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일반 공연장 및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300석 미만 영화상영관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등 문화·예술단체는 적용시기를 2015년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제공 이외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정 취지 감안시,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3) 한약도매업무 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한약도매상에 두어야 하는 업무관리자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이어야 함
  - ☞ 한약도매업관련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대학(3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13개 대학)이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대학간 형평성과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원안의결

(4)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 등 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정 (내용심사)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 ‘영역별 원점수’ 산출
  - ‘영역별 원점수’를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별표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 인정점수 산출
  -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8개 서비스 군별로 산출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신청인 개별 요양 인정점수 산정
  - ☞ 시범사업 및 시범사업평가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복지계, 간호계,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및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내용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하므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절차를 효율화 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현재 43개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초 인정후 3년 마다 기관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하여 인정기준 충족시 재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평가방식이 신규 우수병원의 진입을 막고 있어 변경 추진 (강화)

- 3년마다 신청한 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 인정기준 중 의료인 수도 강화
- 의사 :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 이상
  - 간호사 : 1일 입원환자 2.5인당 1인 이상
  - 의사 :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 간호사 :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 기존의 개별평가에서 일괄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 신설 우수 병원들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여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평가기준 중 의료인 수 강화 조치도 의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며 내용도 적정함. 다만, ‘상대평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아 ‘평가’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6)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신고서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강화)

-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관리 및 기타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 기준서를 작성·운영하고 안전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는 그밖에 적정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할 경우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동 시행규칙 시행당시의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식약청장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신고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를 신고하는 자는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한약제,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외에 체외 진단용 의약품과 혈액제제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안 제42조의21항 5호」(그밖에 적정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약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동 항목을 삭제해도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규제 적용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동 항목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고용 준비기간 3개월은 너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과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 할 것을 개선권고

- 안전관리책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의무를 부과받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고수수료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동 조항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의약품 대중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아야 함 (내용심사)

- 의약품의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의약품 대중광고를 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사실을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심의 받은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를 해당 심의기관에 납부해야 함
- ☞ 의약품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고, 사후 치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이 공평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인사를 보강할 것을 부대권고
- 또한, 심의기관의 장은 10만원 이하의 광고심의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약사법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심의기관의장의 광고심의 수수료 부과는 타당성이 없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가족계획용 의약품과 호르몬제를 함유하는 피임제 중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 금지 (내용심사)

※ 사후피임제 등이 이에 해당

- ☞ 다른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가능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심의(07.12.31)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4.05%로 정함 (내용심사)

- ☞ 보험료율 결정은 각 단체 대표자와의 사전협의(07.10~12월) 및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시 전원합의(07.12.31)를 거쳤다는 점, 합리적인 요율결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아, 그 승인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내용심사)

- ☞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따라서, 기초수급권자 등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개정할 것을 개선 권고

○ 장기요양기관은 성명, 급여의 종류, 비용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전자 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건보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내용심사)

- ☞ 피규제자의 수가 소수로 한정되고 청구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장기요양급여 신청 · 안내 · 계약 등 이용절차 구체화 (내용심사)

-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가족요양비의 구체적 이용절차 마련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가 정지된 날부터 5년간 기록을 보존토록 함

- 수급자가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연간 180일로 정함
-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구체적 절차만 규정한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규제준수비용이 미미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내용심사 8)

■ 심사내용

- 화장시 환경오염방지 및 화장로 오작동방지를 위해 관 속에 부장품을 넣을 수 없음 (강화)
  - 다만,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연소와 화장설비의 가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예외
  -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개장시 종전의 분묘는 주변환경에 조화되도록 수목·화초·잔디 등을 식재하여야 함.
  -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부장품은 관속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장품을 규정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하고, 또한 조문을 원칙적 금지(파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적 허용(네거티브) 방식, 즉, 관 속에 넣을 수 없는 부장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개선권고
    - 개장시 사후조치로서 수목, 화초, 잔디 등을 식재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당 조정 공사비가 1만원 정도 드는데다 개장시 종전 분묘에 수목·화초·잔디 등을 식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자연장을 묻는 방법으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도록 하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도록 함 (내용심사)

-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이외에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자연장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를 초과해서는 안됨
- ☞ 피규제자수와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 유족대기실은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고 화장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 피규제자수와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내용심사)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하, 면적은 3㎡ 이하로 정함.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를 초과할 수 없음.
- ☞ 국민의 이용 편의증진, 관리·운영의 합리화, 보건위생적 관리 등을 위해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대상제한도 특정 종교단체가 신도 이외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성 확보가 곤란하고, 주변지역 주민민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시 신고해야 할 사항을,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내용심사)
  - 종중·문중,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조성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조성변경 신고사항과 허가시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사설 자연장지 신고·허가 후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고인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설자연장지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 면적은 150cm<sup>2</sup> 이하, 공동표지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내용심사)
  -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급경사지로 분류되는 기준이 21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수목장림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산림에 자연장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간시의 기준(21도)을 그대로 준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골 유실원인이 경사도 뿐만 아니라, 지형·배수·토양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경사도만 일률적으로 21도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지형·배수·토양 뿐만 아니라 경사도도 함께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토록 하되, 급경사지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21도 부분은 삭제)을 개선권고
- 상수도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은 10m<sup>2</sup> 미만, 자연장지는 20m<sup>2</sup> 미만으로 정함 (내용심사)
  - 문화재보호구역내 및 기존 종교단체의 자연장지 허용범위는 5천m<sup>2</sup> 미만으로 정함

- ☞ 피규제자 수가 소수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은 거의 없고, 관계부처(환경부, 문화재청) 및 이해관계단체(조계종 등)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재해대비 관리금 적립대상시설은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종교단체(500구 이상)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기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로 정함 (내용심사)
  - 관리금의 적립은 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법인 등이 관리금을 사용할 경우 관할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관리금을 사용할 때 관할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장례식장안의 시체 보관시 위생적 관리 (강화)
  - 현행 시체실 외에 염습실에도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도록 추가
  - 시체실·염습실·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 위생복 및 보호구 착용에 따른 비용은 현재도 대부분 소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구입 비용은 크지 않음.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한국장례업협회와 사전협의(07. 12.27)),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분류
- 종중·문중 및 종교단체, 법인의 사설장사시설(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설치·조성 신청시 첨부서류 변경 (강화)
  - 현행 '신청대상 토지·건물이 종중·문중·종교단체·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삭제

- 사설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폐지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 등에 제출토록 함
- ☞ 장사시설 사용을 승낙했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장사시설을 이미 설치한 자와 새로운 소유자간의 분쟁이 잦았기에, 오직 토지·건물이 종중·문중·종교단체·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장사시설을 설치토록 변경함으로써, 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피규제자가 소수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함 (내용심사)
- ☞ 사설자연장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대상(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에 사설 자연장지를 추가한 것으로서, 자연장지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설 자연장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당한 규제요로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요로 분류함
- 종교단체·법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화장 또는 봉안, 자연장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해야 함(내용심사)
- ☞ 사설 자연장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에 사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의 보고의무를 추가한 것으로서, 사설 장사시설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설 자연장지 등의 과태료 (내용심사)
  -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를 았고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과태료 300만원)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과태료 300만원) 등

☞ 자연장지 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의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9) 장애인 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내용심사)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의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 마련 등 4개 항목은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야 함

- 자체 품질관리, 품질유지 및 정보제공, 품질관리 사후체계 등 3개 항목은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가 되어야 함

- 작업장 환경, 최저임금 지급여부, 판매확대, 교육훈련, 품질인증 획득 등 5개 항목은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가 되어야 함

☞ 3개 분야 12개 항목별로 구체적인인증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장애인생산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제품판매 증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규제내용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부도·폐업 등으로 인증품목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품에 인증상징 표시를 사용한 경우, 사회적 물의,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의 경우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취소함 (내용심사)

☞ 명확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증취소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의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내용심사 10)

■ 심사내용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내용심사)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변경신고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제 도입(법률)에 따른 신고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구체화하여, 국내결혼중개업자들의 영업상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 (내용심사)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교육을 받았을 것,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것, 법인인 경우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법인인 국제결혼중개업소(약 500개소)의 경우 상법을 준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상법이 개정되어 최저자본금 규정(5천만원)이 폐지될 경우, 시행령상의 동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동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신고필증·등록증의 재교부 및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내용심사)

-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는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휴업·폐업·재개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혼중개업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규제에 인한 비용이 거의 없는 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고필증 등의 게시·반납 및 장부 등의 비치 의무 (내용심사)

- 신고필증 등과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를 부착, 제시 등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토록 함
- 결혼중개업자는 중개하는 상대방의 모국어로 된 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을 제공하고 3년 동안 보존토록 함
- 결혼중개업자는 종사자 명부,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비치해야 함
- ☞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합법성, 비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여부 등을 사전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개업소를 선택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고·등록 증빙자료, 수수료·회비, 보증보험 가입서류 등을 알기쉽게 게시할 필요가 있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결혼중개업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아래의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후 중개행위 때마다 그 신상정보를 중개하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신설)

- 이용자의 혼인경력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유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죄경력
- ☞ 동규정은 법률에 그 위임근거가 없고(규제법정주의 위반), 또한 중개업소 이용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동 규제는 상위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고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다만,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소 이용자가 상대방의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필요

성은 인정되므로, 시행령안 제6조를 삭제하는 대신, 시행령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의한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그 이용자에게 민법 제816조에 의한 혼인취소의 사유 등을 포함하여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의 범위 (내용심사)

-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광고(4개 항목) 등
  - 신고·등록사항과 다를 경우, “최고”, “성혼율 100%”, “유일” “베스트” 등의 표현으로 현혹 등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가 1,500개소로 추산되고 연간 규제준수비용이 없는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내용심사)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국내 :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 ☞ 법률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국내) 또는 등록취소(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법률 개정시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폐쇄조치를 할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권고

○ 신고·등록 수수료 액수 (내용심사)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3만원, 변경신고 2만원, 신고필증 재교부 5천원
- 국제결혼중개업 영업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등록증 재교부 5천원
- ☞ 결혼중개업자의 신고 및 등록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수가 소수(1,500개소)로 한정되고, 규제준수비용이 약 1억원으로 미미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교육 (내용심사)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를, 천재지변,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으로 정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4개 과목을 1시간씩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교재의 편찬비·현장 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필요한 실비 징수 가능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방법·시간·과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피규제자수가 소수(1,000명)로 한정되고, 연간 규제준수 비용이 미미한 점, 경쟁제한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증보험의 가입·변경 및 보험금 지급 (내용심사)

- 보증보험 가입 및 예치금 예치 액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 이상,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금액을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신청·등록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예치금 예치시에는 신청·등록기관의 장과 결혼중개업자 공동명의로 해야 함

☞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부담으로 인한 영세한 결혼 중개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손해 배상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심사)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직업소개사업·근로자파견사업·해외이주 알선업을 겸업한 경우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보고 보다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2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개선권고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 (내용심사)

☞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은 연면적 5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선 대합실을 철도역사 대합실과 여객터미널 대합실(2천㎡ 이상)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여객선 대합실의 경우도 2천㎡ 로 낮출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원칙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면적'보다는 '이용자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적기준에 '이용자가 전체 평균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시설'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등 관리의무 (내용심사)

☞ 개설자 등이 자동제세동기 설치 7일 전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응급장비 '관리'를 위해 신고 (처벌규정 없음)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치 후' 30일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자동제세동기를 구비 또는 사용한 자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즉시 응급의료정보 센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제세동기의 설치한 자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 '개설자등이 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시키는 경우 30일 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는 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시행규칙안 제38조의5 제3항은 '관리책임자는 점검, 교육, 서류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책임자의 의무보다는 개설자나 관리자의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설자 등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아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12)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심의·의결·회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안됨 (신설)

☞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의료법, 약사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으로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철회권고

(13)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5,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강화)

☞ 표시방법 특례에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확인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향후 단속시에도 논란을 제공할 소지가 커서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뉴판 및 게시판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일부 음식점 업자들은 메뉴판·게시판 교체비용을 주장하나, 기존 메뉴판·게시판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기재해도 되도록 하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또한 쌀은 혼합한 경우 모두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를 '혼합한 경우 모두 원산지를 표시(수입산인 경우 수입국 별로 표시)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및 위탁급식업소(구내식당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도록 식품위생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부대권고

○ 원산지 표시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내용심사)

☞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인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으로 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쇠고기와 비교했을 때 4개 품목의 행정처분은 다소 완화되어 있으며,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표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달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도 인정됨. 피규제자 수는 약 12만여 개소로 추산되고, 규제준수 비용이 미미한 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 (내용심사)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위반시 과태료(100~500만원)과 비교해 볼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 수가 약 12만여개소로 추산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함

○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금지를 위반한 때 (내용심사)

- 1차 : 영업정지 1월, 2차 : 영업정지 2월, 3차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개정법률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시 처벌하도록 추가함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피규제자 수가 약 4만5천 개소로 추산되고,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영업신고 대상에 신선편의식품을 추가 (강화)

☞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영업신고대상에 추가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이견이나 논란이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영양표시 대상에 식용유지류 추가 (강화)

☞ 트랜스지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식용유지류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적은 것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준수비용이 없는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자가품질검사 강화 (강화)

- 신선편의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주일에 1회 이상 하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회수하여야 하는 기준에 추가

-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기준

- 1차 : 영업정지 5일, 2차 : 영업정지 15일, 3차 : 영업정지 1월

☞ 자가품질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과하게 지우는 것으로 보이고, 판매용 김밥 등이 1개월에 1회 검사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신선편의식품의 자가검사 주기를 1개월에 1회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간에는, 자가품질검사주기를 '6개월에 1회'는 '1개월에 1회'로, '1개월에 1회'는 '1주일에 1회'로 강화할 것을 부대권고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식품 수입시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결과를 확인 후에 수입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함 (강화)

-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 최근 2년 내에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등

☞ 위해정보 등에 대해 검사 중이거나, 수입신고조건 위반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확인 후에야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및 금융기관 등의 정보제공 (내용심사)

☞ 혜택의 직접 당사자인 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그 부양의무자에게까지 이러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자칫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거부로 인해 수급권자가 수급자가 되지 못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제출동의서를 받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할 것을 개선권고

(1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이용업 미신고자가 이용업소 표시등 설치시 과태료를 70만원으로 정함 (내용심사)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없이 소액의 과태료 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법률 개정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부대권고

○ 위생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소양교육(친절,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 교육, 기타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과목 등으로 함 (내용심사)

☞ 위생교육 관련 조항들의 내용들은 종전 조항들과 대동소이하므로 경쟁제한 요소가 없는 점, 이해관계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16)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4)

■ 심사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에 외래진료실에 진료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 시키지 않도록 추가함 (강화)

☞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시 대기환자를 진료실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누설, 감염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및 한방요양병원\*에는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를 두도록 함 (강화)

\* (현행)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는 약사를 둠

☞ 한방병원 및 한방요양병원에는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한약사 또는 한약 조제약사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조제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구체화할 것을 부대권고

○ 의사의 국가시험 과목·방법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강화)

- 의사 국가시험에 현행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 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함

- 실기시험 과목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로 함

☞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한 것은 추후 신뢰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합격기준을 정할 것을 개선권고

○ 탕전실 시설기준 및 규격 (신설)

☞ 조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동안 탕전실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없어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의 탕전실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병원 장례식장 설치근거 및 기준 (신설)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영안실, 분향소, 분향객실, 분향객접대실 등

- 종합병원의 장례시설 바닥면적은 3천㎡,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은 1천㎡를 각각 초과하지 못함

- 동 시행규칙 공포 전에 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은 그 바닥면적이 종합병원은 5천㎡ 미만 (다만,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의 장례시설은 2만㎡ 미만),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1천㎡ 미만의 범위 내에서 동 규칙에 따라 설치된 장례시설로 봄

☞ 시행규칙 부칙에서 기존의주거지역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장례식장 총 272개 중 264개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5천㎡, 2만㎡, 1천㎡로 면적기준을 따로 정하여 8개의 병원이 기준을 초과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규제로 보임. 따라서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병원의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 없이 모두 현재 면적 대로 인정 (증설 불가)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하는데 있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대권고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진료과목 또는 종류 변동,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동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 50만원

- 의료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 30만원

☞ 법 제90조(벌칙)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므로 삭제할 것을 철회권고

(17)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재비·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로부터 4만원을 징수하고, 그 나머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음 (내용심사)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18) 모자보건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임신부 또는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함 (강화)

☞ 규제대상이 한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분명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하게 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변경 (강화)

- ☞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 후 운영하는 업종이므로 관리상 책임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묻는 것이 타당,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 복지용구 연 한도액 및 급여기준 (신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08.7.1)됨에 따라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등을 구체화한 점,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 ☞ 복지용구 대여시 기본적인 배송 및 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히 보전하기 위한 최소 대여기간의 기준을 정한 점, 의료기관 입원시의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방법 및 통지절차 (신설)

- ☞ 복지용구급여의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그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특수성을 감안, 기본적인 규격 적합성 확인을 위해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기를 복지용구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요양기관에 그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내용심사)

- ☞ 공표대상 요양기관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소명기간을 도과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일로 연장할 것을 개선권고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게 될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강화)

- 양도·합병계약 성립 전에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된 경우 : 해당 계약 성립시까지 통지

- 양도·합병계약 성립 후에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통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함)

- ☞ 양도인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경쟁 제한적 요소가 없는 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할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설)

☞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 ·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화장품을 선택함에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증진되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나아가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국내 화장품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에 건강기능식품 인정서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서 구비서류 추가 (강화)
-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08.9.22 시행)으로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의 출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별도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안전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진열 · 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 무표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유통기한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세분화 및 일부 강화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 ☞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전부를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무표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처벌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제품 공급 및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또한 유통기한 변조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 및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23)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고시) 제정안 (신설 1,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 과태료 100만원 (내용심사)
  - ☞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의약품 거래시 관행처럼 해오던 무자료거래, 할인 · 할증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는 판독기로 인식이 가능하고 다른 제품으로 오인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의약품 바코드 관리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수입자로 하여금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내용심사)
  - ☞ 바코드 오류가 너무 많아(오류율 20~40%) 물류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의약품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바코드 기재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품정보 보고서 제출은 바코드 시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미 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정해 업체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의약품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받을 수 있음 (신설)

☞ 정보제공에 소요된 최소한의 실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통해 생산시점별 생산량 조절과 최적 재고관리,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시장분석·영업관리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내용심사)

- 입원실은 3개이고 병상당 6.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실 4인 이하일 것
-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간호사실, 진료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 인력기준은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2인당 1인, 사회복지사는 상근 1인 이상일 것

-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할 것

☞ 급성기 환자 병상(1실 6인 이하) 등과의 형평성,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나친 면이 인정되므로, '1실 5인 이하'로 개선권고

-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제도를 '04년부터 도입·양성 중(08년 현재 93명 배출)에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여 말기암환자에게 품질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인력수급 및 환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상근 인력기준 설정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2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담배갑 앞·뒷면에 발암성물질표기 추가 (내용심사)

☞ 개정 법률에서 정한 발암성물질 표기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흡연에 대한 경고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감안, 원안의결

-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법률 시행('08.12.15) 6개월 전('08.6.15)까지 복지부에서 고시를 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아울러, 중복규제문제 관련, 현재 흡연경고문구를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3개 법률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중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부대권고

(2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사무실, 상담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 등의 인력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함 (내용심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08.9.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인력기준, 지정절차, 관련서류 등 정하는 것으로 시설·인력기준은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안내('06년 제정)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2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기준 (내용심사)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08.9.29 시행)으로 징역·벌금조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임.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내용심사)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08.9.22시행)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품질인증의 기준 (내용심사)

- ☞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심사에 필요한 기준 항목, 신청 및 재교부 신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내용심사)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시 유지하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제공과정에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00분의 50 이상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것

- ☞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요건 (내용심사)

- ☞ 피규제자수가 27개 이상이고, 연간준수비용이 거의 없는 점 (기존 인증기관이 신청),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2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함 (내용심사)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찬성하고 오히려 교육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점, 동 협회와 긴밀한 협의(07.4~5)를 통해 교육시간, 면제절차 등을 마련한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등의 학점기준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마련 (강화)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한 점, 현행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의 기준을 준용한 점, 특별한 반대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30) 의료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을 현행 7개 이상(100~299병상인 경우) 또는 9개 이상(300병상 이상인 경우)에서 9개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목을 20개 이상(500병상 이상인 경우) 설치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3년 마다 평가 및 재지정을 규정하고,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등을 복지부령에 위임
  - ☞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가산 30% 적용 등 혜택이 있으므로, 3년 마다 평가 및 재지정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특수기능병원(특화병원, 취약지거점병원)의 지정근거 및 지정요건을 설정함. 3년마다 평가 및 재지정을 규정하고, 지정·재지정 기준·절차등을 복지부령에 위임 (신설)
  - ☞ 특수기능병원 지정은 신청에 의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이외의 진료비용을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범위 내 징수토록 함 (신설)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용 재산출연 규모는 의료업 재산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신설)
  - ☞ 부대사업이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한정하는 의료법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1)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료기간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인정 기준 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국가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다음과 같음 (내용심사)
  - 의사·치과의사 : 면허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 약사·간호사 : 면허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등
  - ☞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 중 '5년 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5년 또는 3년 이상'을 삭제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정수준 유지'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내용심사)
  -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매년 2년 단위로 재허가함
  - ☞ 의료법상 국내 의사·약사는 재허가 제도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며, 동 규제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면허소지자 유치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점, 외국인 의사는 의료법인과의 고용관계 해지로 관리가 가능하고, 외국인 약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제주도 조례를 통해 관계규정 위반시 2년간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 재허가 규제는 외국의료인에게 지나친 규제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32) 결핵예방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강화)

※ 현행 “7일 이내 신고”를 “지체 없이 신고”로 강화하는 것임

- 1.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2. 결핵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 결핵의 급속한 전염성을 감안할 때 현행 “7일 이내 신고”를 “지체 없이 신고”로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준수비용이 크지 않은 점, 관계부처 및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결핵등록관리사업 관련 자료제출 협조 의무 (신설)

☞ 규제준수비용이 크지 않은 점, 관계부처 및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결핵의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집단생활시설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신설)

☞ 피규제자수는 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로 약 443개소로 추정되고, 규제준수비용이 크지 않은 점, 관계부처 및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33) 의료기기법 개정안 (강화 3)

■ 심사내용

○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 법적 위임 없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사항을 지정제로 전환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 (강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06.11.30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규제심사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한 사항이며, 또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규정은 지정제도 도입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의료기기에 안전성·유효성의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강화)

-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규제자수가 약 2,500여 개로서 중요규제 수준에 못미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를 표시하도록 함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위해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추가 규제비용이 없고 피규제자수는 2,500여 개소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4) 약사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8)

■ 심사내용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에서 이미 규제심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
- 의약품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하는 경우에도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의무화 (강화)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며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근거를 법으로 상위입법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신설)
  - 비임상·임상·생동성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과 동일하며 원안의결
  - ※ 다만, 분과위 심사 이후 변경된 부분은 금번 예비심사에서 원안의결
- 현행 임상시험에 추가하여 생동성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도 식약청장에게 계획서를 승인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강화)
  - 임상시험 및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 현행 시행규칙 및 고시를 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피규제자는 약 519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신설)
  - 다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의 치료용으로 사용가능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며,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약 또는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에 대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강화)
  - 다만, 기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면제
  - 등록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며,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로 신고(변경신고 포함)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신설)
  - 다만, 2년 이내 동일 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면제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며,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현행 제조업자에 추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도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그밖에 생산관리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강화)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며, 비중요규제로 분류. 의약품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07.10.17)에 따라 생산관리업무 대상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추가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현행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함 (강화)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며,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약품 검사기관 지정 (강화)
  -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 동일하며 원안의결

※ 다만, 분과위 심사 이후 변경된 부분은 금번 예비심사에서 원안의결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강화)

-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자는 5천만원으로 유지

☞ 피규제자는 전체 3,627개소 중 약 8개소이고, 규제비용은 4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는 등 종전의 영업자 지위 승계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 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 (강화)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06.12.19) 심사안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만, 분과위 심사 이후 변경된 부분은 금번 예비심사에서 원안의결

(3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현재 약16만개소)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시설',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약 147개소)을 추가 (강화)

☞ 피규제자는 약 17만6천명으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은 약 2억원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6) 검역법 개정안 (강화 2)

※ 제33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07.7.26)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

■ 심사내용

○ 검역조사대상 감염병에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2개를 추가 (강화)

※ 현행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 제337차 행정사회분과위(07.7.26)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검역조치의 명확화·과학화로 국제공중보건 향상 및 국민건강보호 (강화)

- 검역조사 사항에 '도보 출입국자' 추가 등

☞ 제337차 행정사회분과위(07.7.26) 심사안(원안의결)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2)

■ 심사내용

○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을 요양급여비용 최초 청구시 심평원에 신고하며 신고 내용 변경시 15일 이내 신고 (신설)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를 법률에 규정한 것임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피규제자는 전체 요양기관 약 7만3천 개소이며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심사평가원은 의학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신설)

※ 현행 시행규칙 제21조를 법률에 규정

☞ 피규제자는 전체 요양기관 약 7만3천 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대상을 현행 “거짓보고를 한 때”에서 “거짓보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때”로 변경 (강화)

☞ 피규제자는 전체 요양기관 약 7만3천 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징금 체납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피규제자는 전체 요양기관 약 7만3천 개소 중 과징금을 체납 중인 약 128개소로 피규제자가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위탁제조 판매업자, 수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는 요양급여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 속임수 또는 그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거나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신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위반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의 위반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거부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동법에서 요양기관의 동일한 부당행위에 대해 이미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부당이득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제약회사들의 부당행위 실태, 적발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분과 위에 보고해 줄 것을 부대권고

(38)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80%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함” (강화) “재직의사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의 범위 안에서”로 변경 (강화)

1. 면허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를 말함

1. 임상진료의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 장기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인해 부재중인 자

-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두어야 함

-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개정, 현재 환자가 진료과목당 1명의 선택진료의사를 적도록 하던 것을, 주진료과목과 진료지원과목으로 나누고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1~3명까지 선택진료의사를 적도록 변경

☞ 환자가 진료지원과(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의사까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1~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권고

(39)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한약규격품(총 546품목) 중 수입한약재에 대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한 품목을 현행 255개에 110개 추가한 365개로 확대 (강화)
  - ☞ 피규제자는 한약도매업소약 840개소이고, 규제비용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약 5천만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한약규격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한약규격품 중 '별표2'의 중독우려품목에 대해서는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표기해야 함 (강화)
  - ☞ 피규제자는 한약제조업소(230개) 및 한약도매업소(840개)로 약 1,070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4)

■ 심사내용

-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의 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연금법이 정한 급여 수급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신청을하여야 함 (신설)
  1.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각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연계신청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연계신청을 할 수 없음
- ☞ 피규제자는 연금제도간 연계신청 대상자로서 약 5만명으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연계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지급함 (신설)
  -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 ☞ 피규제자는 연계급여 수급 대상자로서 약 4천명으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적용함 (신설)
  - ※ 재직 중 연금 지급정지, 일정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연금 감액지급
  - 급여액의 조정, 급여의 지급제한, 수급권의 정지·소멸, 권리의 보호, 비용부담 등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각 연금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함
  - ☞ 피규제자는 연계급여 수급 대상자로서 약 4천명으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해야 함 (신설)
  - ☞ 피규제자는 연계급여 수급권자 중 사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 약 140명으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내용심사)
  -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어 해당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임

-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해당 검사를 의뢰해야 함
- 사업자는 검사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 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식품 등을 지체없이 회수해야 함
- ☞ 피규제자는 검사명령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제조 · 가공 · 수입 · 판매업자 등으로서 약 1,40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은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의뢰비용 및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따른 손실로서 약 12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식품 등의 생산 · 구입 · 판매과정 기록 · 보관 (내용심사)
  - ☞ 피규제자는 식품 등의 생산 · 구입 · 판매과정을 기록 · 보관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약 28만 개소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식품 등의 회수 (내용심사)
  - 회수기간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함
  - 식품 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텔레비전 방송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해야 함
  - ☞ 피규제자는 위해식품 등을 회수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약 42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은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2)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 제정안 (내용심사 5)

■ 심사내용

-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 보고 (내용심사)
  - ☞ 피규제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서 2명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해야 함 (내용심사)
  - ☞ 피규제자는 한국조리사회중앙회장, 대한영양사협회장 등 2명이며, 교재편찬에 따른 규제비용은 연간 약 1억4천만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음 (내용심사)
  - ☞ 피규제자는 교육대상자인 조리사 및 영양사로 약 46,000명이고, 규제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납부하는 수강료로서 연간 약 6억9천만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교육실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야 함 (내용심사)
  - ☞ 피규제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서 2명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 · 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교육 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내용심사)

☞ 피규제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서 2명이며,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3) 식품위생법 개정안 (신설 4, 강화 4)

■ 심사내용

-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함 (강화)
  - ☞ 이미 시행중인 농산물품질관리법(08.7 시행)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다만, 향후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식약청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해당식품 등에 대해 생산·판매등을 해서는 안됨 (신설)
  - ☞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식품업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경우'를 '위해발생 우려에 대한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을 개선권고
- 식약청장은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 해당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강화)
  - 식약청장은 해당 식품의 수입을 금지 제조업소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나 해당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그 수입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 수입금지 대상범위를 수출국 제조업소 해당식품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한정할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수입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수출국 제조업소 해당식품'을 '해당식품'으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식약청장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식품업소로 등록할 수 있음.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설)
  - ☞ 수입자가 실시하는 위생점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정한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함
-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약청장이 정한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위생점검 등을 받아야 함 (신설)
  - ☞ 시행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소비자 단체의 위생점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의무조항)를 "위생점검을 받을 수 있다"(임의조항)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HACCP 지정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해서는 안됨 (강화)
  - ☞ 피규제자는 HACCP 지정업소 424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기준의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 소매가격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신설)
  - ☞ 원재료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보관의무 시간을 현행 72시간 → 144시간으로 확대 (강화)

☞ 피규제자는 집단급식소 약 31,804개소이고, 규제비용은 보관시간 확대에 따른 냉동시설 등 시설보완 비용으로 약 29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4)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약사 또는 한약사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신설)

☞ 현재 의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금지 규정이 있으나, 약사·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의결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강화)

☞ 현행 규정에서 리베이트 제공금지 대상 및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벌금 액수에 따라 자격정지 5개월~12개월(8등급)에서 자격정지 9개월로 변경 (강화)

☞ 피규제자는 약사 및 한약사로 약 31,514명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 (내용심사)

- 1차 : 자격정지 3개월, 2차 : 자격정지 6개월, 3차 : 자격정지 9개월, 4차 : 자격정지 12개월

☞ 피규제자는 약사 및 한약사로 약 31,514명이고, 규제비용은 위반행위 적발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따른 손실로서 약 5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4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음 (강화)

※ 현행은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제319차 행정사회분과위(07.3.22)에서 비중요규제로 심사완료한 바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영업자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진열해서는 안 됨 (강화)

☞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로서 약 51,060명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6) 의료급여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4)

■ 심사내용

○ 이재민, 입양 아동, 의상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 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부처에서 명단을 통보받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신설)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3종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신청조항’이 있으나, 차상위계층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신청조항’이 없어 입법불비 상태였던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의료급여 신규 신청자중 차상위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약 1만명으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료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평가해야 하며, 급여비용 심사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강화)

☞ 최근 규제심사를 완료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를 의료급여법에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전체 의료급여 기관 약 7만3천 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대상을 현행 “거짓보고를 한 때”에서 “거짓보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때”로 변경 (강화)

☞ 거짓보고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 최근 규제심사를 완료한 국민건강보험법처럼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약 7만3천 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징금 체납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전체 의료급여 기관

약 7만3천 개소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은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속임수 그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에 손실을 가하거나 의료급여 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신설)

- 위반시 그 위반행위로 기금 및 수급권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명령, 관계 서류 검사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거부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과징금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 약 2,399개소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료급여 기관이 제11조의3\*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강화)

\* 수급권자의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급여비용 심사기관에서 의료급여 기관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약 7만3천 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시장·군수·구청장, 급여비용 심사기관 및 급여비용 지급기관은 국가·지자체·의료급여 기관 그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약 7만3천 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4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검진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철회 지정내역 변경 (내용심사)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에서는 하루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아도 됨

☞ 의원급 기관의 국가건강검진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검진기관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선에 있는 의원들의 국가건강검진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다만, 방사선사 등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관련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대권고

○ 검진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 (내용심사)

☞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검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내용심사)

1.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를 행하지 않고 검진비용을 고의로 허위청구한 때
2. 국가건강검진임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실시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실시를 거부한 때 등

☞ '99년 검진기관 인정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검진기관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검진을 실시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고,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4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강화)

※ 현재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대상으로 '협상 당시의 예상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등 8호까지 규정, 이번 개정안에 4개 항목 추가

- ①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된 경우
- ②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된 약제
- ③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
- ④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건강유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

☞ 의약품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한정된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 사용량에 따른 약가조정(약가인하)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다만, 향후 고시 제정시, 약 사용량 증가시 약가인하 협상 대상기준을 좀 더 축소할 것을 부대권고
- 또한 향후 고시 제정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도 좀더 구체화하여 직권납용의 우려를 감소시킬 것을 부대권고

○ 약제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별표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설)

-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되어 조정신청을 하게 된 날에 결정신청한 것으로 보고 상한금액을 재산정

-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약제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인지한 시점에서 결정신청된 것으로 보고 상한금액을 재산정
- ☞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등 이미 산정된 약가의 변경사유가 발생해도 신고(조정신청)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자가 계속 최고가를 받는 등 건보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약가 변동사유 발생시 신고토록 하는 규정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49)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추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내용심사)
- 실시주기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아동실종 발생현황, 장소·상황별 실종·유괴 예방지침, 유괴·유인시 대처방법, 유괴·유인 목격시 신고요령 및 절차
- 교육방법 : 전문가 강의,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시청각 교육, 실종사례 분석 등
- ☞ 최근 아동에 대한 실종·유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실종·유괴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 관련 연구결과 실종·유괴 예방교육 실시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기관의 장 1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 및 상담원 6인이상을 배치하는 것을 추가 (강화)
- ☞ 현행 시행규칙(제16조)상의 지정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을 추가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약 33개소이고, 규제비용은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배치에 따른 비용으로 약 7억원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4)

■ 심사내용

-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제공자로부터 평생 3회를 초과하여 난자를 채취해서는 안됨 (내용심사)
-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난자채취일 후 6개월이 지나야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할 수 있음
- 위반시 행정처분 : 1차 - 업무정지 1월, 2차 - 업무정지 6월, 3차 - 취소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과학계 및 윤리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으로써 규제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제공자에 대해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별표 3의2 항목\*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내용심사)
- \* 혈액형 검사, 총혈구 검사, 일반 소변검사, 혈당검사 등
- 위반시 행정처분 : 1차 - 업무정지 1월, 2차 - 업무정지 6월, 3차 - 취소
- ☞ 피규제자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 약 142개소이고, 규제비용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5천만원으로 추정되어 규제비용이 미미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 평가기준 및 위원 교육 (내용심사)
- 기관위원회에 대한 평가의 범위는 기관위원회 심의수준,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기관위원회위원 교육실적 등으로 함

- 기관위원회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

☞ 피규제자는 기관위원회 및 교육실시기관으로 약 509개소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유전자은행 관계자 준수사항 (내용심사)

- 유전정보 등의 보관·관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 유전정보 등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표준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정보 등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 피규제자는 유전자 은행으로 약 25개소이고, 규제비용은 유전정보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6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5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보건교육사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내용심사)

☞ 등급별로 반드시 단계적(3급 → 2급 → 1급)으로 거치게 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이므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도 곧바로 1급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내용심사)

☞ 미국처럼 일정 학위 소지자가 바로 1급 시험을 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도 곧바로 1급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52)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6)

■ 심사내용

※ 제333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07.6.28)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

○ 의사 등의 신고 및 기타 신고의무자 (강화)

☞ 제333차 행정사회분과위(07.6.28)에서 심사완료한 규제심사안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각종 협조의무 (신설)

- 관계행정기관이나 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333차 행정사회분과위(07.6.28)에서 심사완료한 규제심사안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 의심되어 부검을 하지 아니하고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검을 명할 수 있음 (신설)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속칭 '인간광우병') 등은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므로 이처럼 부검을 실시해야만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감염병의 경우 부검을 명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조항에 의한 부검은 연간 10건 이하가 실시될 것으로 추정되며 부검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 고위험 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반입허가, 안전관리 등 안정성 확보 (강화)

☞ 제333차 행정사회분과위(07.6.28)에서 심사완료한 규제심사안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강화)

- 예방접종 검사자료 제출요청 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을 추가하고 예방접종 실시 대상에 미접종 유치원생 및 보육시설원생을 추가

☞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홍역 등 전염병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유치원(8,294개소), 보육시설(30,856개소) 등 4만 개소이고 미접종 아동은 약 26만명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문제는 보건소에서 무료실시로 실시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예방 시설 설치 (강화)

☞ 제333차 행정사회분과위(07.6.28)에서 심사완료한 규제심사안과 동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역학조사 확대, 감염병환자 입소거부 금지관리, 강제처분, 방역조치, 예방조치 (강화)

☞ 제333차 행정사회분과위(07.6.28)에서 심사완료한 규제심사안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07년 규제위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강제처분대상을 완화 ('07년 규제심사시는 '모든 감염병'이 었으나, 이번에 범위를 축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감염병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계약을 할 수 있으며, 「약사법」상 허가 등의 조치없이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음 (신설)

☞ 제333차 행정사회분과위(07.6.28) 심사안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소독업소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및 불법영업시 조치 (강화)

☞ 제333차 행정사회분과위(07.6.28)에서 심사완료한 규제심사안과 동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07년 규제위 심사결과 개선권고사항 반영 (멸실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 → 6개월 이상인 경우)

(53) 노인복지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거나 그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에게 분양·임대·양도하여야 함 (강화)

※ (현행) 건설업자 등이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제한  
입소자격자 : 60세 이상의 노인(단,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하거나 또는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부자격자에게 양도·임대할 수 없음

※ (현행) 분양받은 자, 임차한 자에게만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임대를 제한

☞ 감사원 지적사항(06.8.23)을 반영한 것으로서 언론보도(08.6.26) 및 서울시 노원구청의 법률 개정건의(08.7.17)를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 법 제33조의2 제4항 “상속에 의해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임대할 수 없다”라는 규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다만 노인복지주택 전반에 대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향후 규제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5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 주류의 광고물에 경고문구 표기 (강화)

-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 및 주류의 광고물(추가)에 대하여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TV, 신문, 포스터 등 주류광고시 대부분 주류용기의 앞면만 보여주고 있어 뒷면에 표시된 경고문구가 안보이고, 용기 앞면에 넣자니 너무 작아 식별이 어려운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주류용기 밖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가규제비용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금주시설 지정 및 주류판매·음주 금지 (신설)

- 금주시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3. 의료법 3조에 의한 의료기관 (단, 의료기관 내 장례식장은 제외)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금주시설에서는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됨

- 금주시설에서는 누구든지 음주를 해서는 안됨

- 금주시설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금주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중이용시설 중 학교, 병원 및 그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류판매·음주 금지 시설(금주시설)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그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관계부처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다음의 1,2호를 보건교육사 자격 결격사유로 추가함 (강화)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건교육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현행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정신질환자 및 마약 등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한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약 300명으로 추정되고, 규제준수비용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신설)

-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현행 의료법 등에서 정한 응시자격 제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피규제자 수는 약 330명으로 추정되고, 규제준수비용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55) 아동복지법 개정안 (신설 4, 강화 4)

■ 심사내용

○ 아동·청소년 보호명령 청구 (신설)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 검사와 친족은 아동학대행위를 알았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아동·청소년 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보호명령 청구는 피해 아동·청소년도 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 외의 자가 청구를 할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 피규제자(민간인)는 친족, 피해 아동·청소년 등으로서, 약 6만여명으로 규제 준수비용은 미미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자에 현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검사와 친족을 추가 (강화)

☞ 피규제자는 학대 아동의 친족으로서 약 5만5천여명으로 규제 준수비용은 미미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강화)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신설)

- 현행 교사 등에 기관의 장 및 의료기사, 보육시설의 장 등 추가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무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최근 아동학대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피해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보육시설의 장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한 것도 현재 유치원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며, 기타 추가한 내용도 적절하고, 의료기사를 추가한 것도 의료기사가 학대아동을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되므로 판단되는 등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 격리 및 업무방해 금지 (강화)

☞ 현행 시행령상의 격리기간 '3일'을 법률로 올려 규정한 것(72시간이되, 48시간 이내 연장 가능)으로, 피규제자의 수는 6,350명이고 규제준수비용은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만15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경우 매년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위한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대상자의 개인별 추진실적 및 자료를 관리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신설)

☞ 피규제자의 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전담기관으로 약 3,488개 기관 및 시설 종사자 약 12,000명으로 규제준수비용은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아동·청소년 종합운영기관, 전담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신설)

☞ 피규제자수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3,591개소이며, 비용은 개소당 평균 약 50만원이 소요(총 18억원)되나,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76조에 따라 그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지원하고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아동·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에게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의 거주지·고용장소 또는 아동학대 등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강화)

☞ 현행 규정(조사·질문)에 보고명령과 관련 서류제출 명령을 추가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수는 특정할 수 없으며, 규제준수비용도 미미하고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해당기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설)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시정요구를 추가한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3,591개소이고, 규제준수비용은 해당 없으며,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9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4.78%로 함 (강화)

※ '08년(7~12월) 보험료율 : 4.05%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규모가 '08년 4,872억원(하반기 6개월분)에서 '09년 1조 2,382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것이며, 피규제자는 2,850만명, 규제비용은 1,882억원이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5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결정 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57) 암관리법 개정안 (신설 5)

■ 심사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설)

1.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수행하지 아니할 때

☞ 현재 지정규정은 있으나, 지정취소규정이 없어 암통계의 품질유지를 위해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중앙암등록본부 1개소 지역암등록본부 8개소이고 규제비용은 없으며 특별한 의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하며, 의사는 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암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암 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해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함 (신설)

☞ 피규제자수는 말기암환자 진료 의료인 약 5,400명이고 규제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한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음 (신설)

1. 배우자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 한함)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 말기암환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완화의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피규제자수는 완화의료를 희망하는 말기암환자 약 6,000명이고, 규제 준수비용은 없으며, 임종이 얼마남지 않은 말기암환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완화의료기관 평가 (신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완화의료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 피규제자수는 약 10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준수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완화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 피규제자수는 완화의료기관으로서 약 10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준수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5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내용심사)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신원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대리헌혈에 따른 혈액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혈액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채혈업무 담당자 약 1,000명이며 규제비용은 없고 특별한 의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혈액관리업무 분류 (강화)

☞ 모든 혈액관리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상의 혈액관리업무에 품질관리업무를 추가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업무규정을 준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피규제자수는 혈액원 품질관리 담당자 약 300명이고, 규제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식품의약품안전청

\* 집필자 : 송인현 사무관 (Tel. 02-2100-2317, ihsong10@pmo..go.kr)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등 27개의 고시에 대해 총 27건 (강화 26건, 내용심사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26건은 원안대로 의결,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62차 행정사회분과 (2008. 1.3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화장품의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63차 행정사회분과 (2008. 2. 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제366차 행정사회분과 (2008. 4. 3)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제368차 행정사회분과 (2008. 4.17)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	제368차 행정사회분과 (2008. 4.17)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분과 (2008. 5. 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약품 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	제371차 행정사회분과 (2008. 5.1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분과 (2008. 6. 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분과 (2008. 6. 5)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제375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2)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75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2)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약품 등의 안전성정보 관리 규정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9)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9)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분과 (2008. 7.3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분과 (2008. 7.3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제384차 행정사회분과 (2008. 9.18)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90차 행정사회분과 (2008. 10.30)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2~10.29)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2~10.29)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2~11.19)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9~11.2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2008.10.29~11. 5) 제391회 행정사회분과 (2008.11.20)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1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08.12. 3~12.1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 3~12.10)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10~12.17)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17~12.24)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17~12.24)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26 개선권고 1	강화 26 내용심사 1 * 중요 2 * 비중요 25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키토산 등 4품목 중금속 규격 (강화)

☞ 중금속 모니터링 및 과학적 재평가 등을 통한 규제강화의 근거가 명확하며, 관련 산업체 등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공전개선위원회” 구성 등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규제비용 및 규제대상이 중요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화장품의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화장품의 원료 지정 (강화)

- 화장품 원료기준에서 디에탄올아민을 삭제하고 배합금지원료로 수재

- 배합금지원료에 57개 성분 신설

☞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문제되어 배합금지 하였거나 배합한도를 정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한 규제로 제조업체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화장품제도 개선실무 T/F를 구성하여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화장품법상 기구인 화장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규제대상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수준에 못미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생약의 잔류농약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공전을 적용하는 품목을 기존 26품목 외에 5개 품목(산약, 미삼, 복분자, 임자, 흑두) 추가 (강화)

☞ 검사기준의 혼돈과 용도전환(생약을 식품으로 수입하여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방지하고, 생약의 안전성 확보한다는 점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련단체(협회, 소비자단체)와 이해관계자간 충실한 협의('06.11~ '07.10)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강화)

- 1단계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 : 2008.12.1부터

- 2단계 :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 2010.12.1부터

- 3단계 :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 2012.12.1부터

- 4단계 :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수 5인 이하 : 2014.12.1부터

☞ 김치의 HACCP 의무적용 근거가 이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06.10)되었고, 배추김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김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며, 적용시기를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4단계별로 차등 시행하여 김치제조업소의 준비기간이 충분히 고려하였고 1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는 대부분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증임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5)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감사원 지적('07.3월)에 따라 선진국들의 기준을 반영하여, 동물시험으로도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가능하던 것을 불허용(단서 삭제)하고, 서방성(徐放性) 제제에 대해서는 공복시험 외에 식후시험을 추가함 (강화)

☞ 한·미 FTA 타결 등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시대에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생동성시험 기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고, 국내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미국, EU 등 선진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피규제자 수가 소수로 한정('07년 기준 37개소)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연간 300~500만원) 미미한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또한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6)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의료기기 중 의료용 끓임소독기 등 59개 1등급(신고) 품목을 2~3등급(허가) 품목으로 변경 (115개 품목을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

- 1등급(신고) 59개 품목을 2등급(허가)으로 114개, 3등급(허가)으로 1개로 재분류

- 80개 품목은 2등급(허가)에서 1등급(신고)로 변경

※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06.6)에서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국제화(GHTF 규정 준용 등)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진

- 약품 냉장고, 진료용 장갑, 혈액응고시간 측정검사지 등 3개 품목을 의료기기로 추가지정

☞ 동 건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핵심정책과제로 추진('06.6)되었고, '15년까지 세계 5위 의료기기 강국 실현과 수출증대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의 등급분류를 GHTF 등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 수가 소수로 한정(209개소) 되고, 추가적인 규제준수비용이 연간 약 18억원으로 추산\*되는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또한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용역연구('06.8~12), 의료기기 산업계 포함 '의료기기 분류체계 국제조화 TF' 구성, 품목분류작업 추진('07.1~)

(7) 의약품 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약품 성분(504종)에 3종을 추가 (강화)

- '암로디핀 및 그 염류'의 이성체, '시부트라민 및 그 염류', '클로피도그렐 및 그 염류'를 추가

☞ 오리지널 신약의 염 변경 또는 이성체 제품 허가시에는 비교임상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를 다시 복제할 때도 생동성시험(현재는 비교용출시험으로 가능)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국민보건 향상, 건보재정 절감효과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피규제자 수는 약 30개 기업, 생동성 시험 실시에 따른 추가 규제비용은 약 15~30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첨가물로 수소를 신규지정, 젤라틴의 성분규격에 납, 일반 세균수 및 살모넬라 등 3개 항목을 추가, 기지정되어 있던 파라옥시안식향산 프로필을 지정 취소함 (강화)

☞ 수소는 마가린 제조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젤라틴은 안전성이 논란이 되어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은 EU에서도 지정을 취소할 예정인 바, 지정을 취소하여 사용금지토록 한 것으로서, 규제신설·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가 소수로 한정(14개 업체)되고, 연간 규제준수비용이 약 2억원으로 미미한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또한 WTO 의견 접수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08.4.23)을 거친 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9)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강화)

- 제품 주표시면의 상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15×15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고,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동시에 표시해야 함, 포장면적이 150cm<sup>2</sup> 이하인 경우에는 도안크기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음

-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의 건강기능식품에도 비타민 및 무기질을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영양정보에 해당 영양소의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 %를 표시토록 함

☞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도안과 문구 모두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표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과다복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영업자 대상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한 점, WTO 입안예고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10)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병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표시를 의무화, 동 고시는 2009.1.1부터 시행함. 다만, 종이 재질의 투브형·원뿔형 제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1.1부터 시행함 (강화)

- ☞ 현재 병과류 식품 제조연월 표시가 유통단위별 용기·박스 등에 표시되고 있어, 주로 개별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제조연월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별제품에 제조연월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류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 하였고(07.12월), 시행시기도 함께 맞추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함
- 피규제자 수는 약 58개소, 연간규제준수비용이 17억원으로 추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였고,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1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류를 추가로 지정 (강화)
  - 실테나필, 타다라필, 바테나필, 유데나필, 미로테나필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호모실테나필 등)

- ☞ 발기부전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최근 중국 등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포함한 상품이 수입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가 소수로 150여 개소로 추정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미미한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12) 의약품 등의 안전성정보 관리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의약품들의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강화)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약물감시 의무
  - 제조업자 등은 약물감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기준서 및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제조업자 등은 수집된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약물감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약품의 유해사례 수집, 식약청장의 보고, 수집된 유해사례의 분석 및 평가, 새로운 안전성 정보 전파 및 약물감시에 대한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 의무
  - 의약품 제조업자등은 제6조제1항의 수집대상 정보 중 제9조에 따라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정보는, 매년 수집된 다음해 2월까지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식약청장이 약물감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관련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 선진국은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정기보고 등을 통해 연간 수십만 건의 유해사례 보고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각종 예방적 안전조치들을 펴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보고건수가 수천 건에 불과하여 의약품 안전조치의 근거를 주로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도입을 통해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를 활성화하여 국민 보건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는 등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13)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강화)

-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조사자로 하여금 시판 후 조사 중 중대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함
- 안전관리책임자는 시판 후 조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시판 후 조사업무 총괄 등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최근 시판 후 조사가 제약회사의 편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판촉수단으로 변질·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신약 등의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시판 후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판초기 안전성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는 등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 '06.6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결과제임

(1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 식품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조항 신설
  - 개별동물에 대한 국내·국제 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이 없을 시 유사축종의 잔류허용 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을 준용
- 당뇨병치료제, 비만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관한 조항 신설
  -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 물질 :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 젓갈류에 대장균 규격 신설
  -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액젓, 조미액젓은 제외)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추가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5종 농약(싸이 플루에토펜 등)의 기준 신설 및 81종 농약 기준 추가
  -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10종(부프로페진 등)의 기준 신설 및 3종 농약의 기준 추가
- 식품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 식품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4종(아미트라즈 등) 신설
-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및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품질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최근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비만 치료제가 포함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부정식품의 수입·제조 및 불법유통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일부 젓갈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젓갈에 대한 대장균 규격을 신설할 필요성도 인정됨
- 최근 농촌진흥청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개정(07.5)되어, 115종의 농약이 추가로 등록되고, 식약청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식약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07.12.10, '08.3.3~10)를 거쳐 99종의 농약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추가한 것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그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됨
-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4종을 신설한 것도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일부 이견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일부 수용한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15)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강화)
  -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 관리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적재·관리하여야 함 (반제품 추가)
  - 부적합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식을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반제품 추가)
- ☞ 최근 새우깡의 쥐, 참치캔의 칼날 등 이물 발생사례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의 이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HACCP 선행요건 관리기준에 이물관리계획 수립·준수 및 필요시 장비 설치를 추가하고, 또한 반제품을 명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규제강화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다만, HACCP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행요건 관리기준 중 중요한 기준은 필수 기준으로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16)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전자민원, 방문 및 우편민원의 수수료 (강화)

☞ '8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인상하고, 기존의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등의 수수료 종목을 24개에서 33개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현재의 수수료는 국·내외 다른 수수료와 비교할 때 비현실적 수준이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 인상을 위한 원가분석(연구용역 :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을 실시(07. 4~11)하여 인상하고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 관련 협회(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와 수수료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교환('06.11.20) 등 총 5회 실시

(1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신설
  - 포도주(포도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알콜함량 15% 미만인 제품에 한하며, 다른 과실 등이 첨가된 포도주는 제외) : 30 $\mu$ g/kg 이하



- 과자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
  -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 1g 당 10,000 이하 (밀봉제품에 한하며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
  -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 (유산균 함유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에 한함)

- 수족관물 관리기준 개정
  - 수족관물의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추가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싸이플루쓰린 등 3종 농약의 기준을 추가
  -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싸이플루쓰린 기준 신설

- ☞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신설은 최근 포도주(와인) 등 주류제품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물질(2A)로 분류한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어 이슈화되자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주류수입협회, EU,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와인 수출국들에서 형평성(청주, 탁주 등 타 주류에서도 검출됨), 타당성 등을 들어 에틸카바메이트 규제기준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신설은 타 주류와의 형평성문제, 연구결과와 신뢰성 문제 등 논란이 있으므로 좀더 충분한 연구를 거친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과자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 수족관물 관리기준 개정,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은 어린이 먹거리, 농산물·수산물의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한다는 면에서 그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8)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인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강화)

- ☞ 피규제자 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56개 업체, 수입업체 3,263개 업체이고 연간 규제 비용이 8백만원으로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19)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기준 (강화)

- 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유형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 인정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유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수용도식품, 주류, 분유류, 조제유류 등은 제외함

- ☞ 피규제자 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356개소, 수입업체 3,263개소이고 규제비용이 연간 8백만원으로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0)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현재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현행 185개 품목에 90개 품목을 추가 (강화)

- ※ 한약재의 안전관리 및 유통선진화를 위하여 향후 5년간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0년에는 전품목을 정밀검사하도록 함

- ☞ 피규제자수는 한약재 수입업소 167개소, 연간 규제비용이 약 1,400만원, 업소당 규제비용은 8만원으로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1)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강화)

- 납 기준 강화

-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도금용 주석은 납을 0.1%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됨
-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리할 경우에는 납을 0.1% 이상 또는 안티몬을 5% 이상 함유하는 금속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음료캔, 통조림, 조리기구 등에 사용되는 납이 식품으로 옮겨갈 위험이 높아, 현행 납 재질규격 10% (도금용 주석은 5%)을 일본의 기준(0.1%)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것임

- 메틸렌디아미닐린\* 용출규격 신설

\* 플라스틱(나일론 재질) 주걱이나 국자 등에 착색료로 사용되는 원인물질인데 발암추정물질로서 식품 조리과정에서 식품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어 용출규격 신설

- 비스페놀A\* 용출규격 강화

\* 폴리카보네이트 젓병에 포함된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EU의 용출규격 (0.6 ppm)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니켈, 크롬 등 용출규격 신설

\* 중국산 금속제에서 니켈, 크롬 등 중금속 검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것임

-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용기류의 용출규격 강화

\* 우수한 광택을 얻기 위해 납, 카드뮴 등의 산화금속 화합물이 착색제로 사용됨에 따라 미국, EU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피규제자 수는 총 538개 업체이고, 연간규제비용(검사비용 등)이 1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함

(22)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강화)

- 세포치료제 범위 확대 (고시안 제2조 13호)

- (현행) 세포치료제\* 범위를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형시킨 경우로 한정
- (개정) 세포치료제 범위를 세포의 물리적·화학적 조작\*\* 범주까지 확대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당해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세포치료제”란 살아있는 자가·동종·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지방세포 성형수술, 자가유래활성화 림프구 항암치료제 등)  
\*\* 물리적(세척, 원심분리, 냉동, 해동), 화학적(효소처리) 조작 범주까지 확대할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세포를 조작하고자 하는 자는 우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

- 희귀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중 품질에 관한 자료 구체화

- ‘국제공통기술문서’에 따른 자료 제출

- 의약품 제조방법 중 동물유래성분사용 상세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세포치료제 중 허가 후 임상자료 제출대상 구체화 (고시안 별표2)

- ☞ 현재 일부 성형외과에서 자가지방 세포를 뽑거나 가슴에 이식하는 시술할 때 대부분 지방 세포를 외부의 바이오벤처회사 등에 위탁하여 분리·세척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세포를 물리적·화학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까지 세포치료제(의약품의 일종)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밖에서 세포를 조작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약사법에 따른 무균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제조업허가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도록 하여 세포치료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포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포치료제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조작하는 범주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사의 의료행위 보장을 위한 단서조항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23)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내용심사)

- 희소의료기기 지정기준 설정

- 희소의료기기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2. 국내에 적절한 치료방법 또는 진단방법이 없거나, 대체할 의료기기, 의약품이 없는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자 증례수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기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장은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음

-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제출자료

- 희소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 희소의료기기 지정취소

☞ 희소병 관련 의료기기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증례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산업화가 미흡하여 생산이 잘 되지 않음. 이에 따라 희소의료 기기로 지정되면 허가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주고 시판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해줌으로써 희소병 관련 의료기기가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피규제자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자로서 1~2개소로 추정됨 (희소의료기기 지정건수 연간 1~2건 예상). 규제준수비용은 없으며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강화)

- 파라옥시안식향산 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 이소부틸 및 파라옥신안식향산 이소프로필\* 지정취소

\* 간장, 돈가스, 와인 등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보존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08.6.24 식품첨가물에서 지정취소한 파라옥시안식향산 프로필보다 내분비 및 생식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정취소 추진

※ 미국, EU, 호주, 캐나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향신료가공품\*에 카르민, 수용성 안나토 및 안나토\*\* 색소 사용금지

\*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 다대기

\*\* 불량 고추·고춧가루를 사용한 비위생적 향신료가공품(다대기 등에 빛깔 등을 좋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착색료로서,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위해 사용금지 추진

☞ 피규제자 수는 총 97개 업체이고, 연간규제비용(국내판매 수입)이 약 7억원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현재 이식형 심장충격기 등 8개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과 심장충격기 등 2개 품목을 추가 (강화)
  - ☞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운영 중(제조·수입·판매자 및 의사 등은 기록·관리해야 함)이며, 피규제자는 2개 품목의 수입·판매업소 16개소 및 종합 병원급 의료기관 310여 개소이고 규제비용은 미미하며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26)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현행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세프메타졸나트륨(항생물질 성분) 등 10개 성분 추가 (NO. 114~123) (강화)
  - \* IMF 외환위기 이후 수입이 급증한 중국·인도 등 저가·불량 원료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시 제조소 시설내역, 불순물, 안정성 시험자료 등 제조 및 품질관리 제반에 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현재 등록제로 변경 추진 중)
  - ☞ 피규제자는 10개 품목의 20~30개 제조·수입업소이고 규제비용은 미미하며 이견도 없는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27)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검사설비 및 기계·기구 기준 (강화)

- 수입식품 등 검사기관 : 현행 총 57종에서 초순수 제조장치 등 4종을 신설하고, 11종을 삭제하여 총 50종으로 변경
-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현행 총 28종에서 진공펌프 등 12종을 신설하고 6종을 삭제하여 총 35종으로 변경
- 한우 확인시험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을 신설
- ☞ 멜라민, 벤조피렌 등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우 진위 문제가 제기되고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빈발함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검사장비 강화 관련 전체식품위생검사기관 총 68개소 중 45개소이고 규제비용은 검사장비 구입비용이 연간 약 3억원이며 식약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08.7.24~8.4)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3. 여성부

집필자 : 송인현 사무관 (Tel. 02-2100-2317, ihsong10@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령에 총 9건 (신설 2건, 강화 1건, 내용심사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여성부의 2008년도 신설 규제는 총 2건임

[ 여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분과 (2008. 8.2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0차 행정사회분과 (2008. 8.2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0.15~10.22)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8. 11. 5~11.12) 제197차 본회의 (2008. 11.20)	원안의결 3	신설2 내용심사1 * 중요 1 *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9	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6 * 중요 1 * 비중요 8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2)

###### ■ 심사내용

##### ○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 점검 및 부실기관에 대한 조치 (내용심사)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처리 공식창구 마련,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법령, 처리절차, 고충상담, 구제절차, 징계 등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08.9.14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 내용과 부실기관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 제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등도 모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분류함

#####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기준 (내용심사)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 인력개발시설,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기타 문화활동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관련시설, 관장·취업상담자 등 인력기준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취소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지정기준의 경우 여성부 훈령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규칙' (01.5 제정)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지정신청시 제출서류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도 노동부 소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지정작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조치기준)을 참고한 것으로서, 그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 관장의 자격만 5년 이상(훈령) → 3년이상(시행령안)으로 완화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등 (강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2~6호의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함
  -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초등학생은 제외)에 대하여도 연 1회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행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는 여성발전기본법령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교육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종사자(공무원, 교원, 군인 등), 학생(초등학생 제외)에 대해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적정성도 인정되며, 그밖에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결과 제출시기 등도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3)

■ 심사내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내용심사)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함
-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 단,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할 수 있음

☞ 피규제자는 지원센터 지정 예정기관으로 약 50~10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장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보고 등 (내용심사)

-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여성부·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여성부·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피규제자는 지원센터 지정 예정기관으로 약 50~10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내용심사)

-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 센터장 1명, 상담 전담자 3명 이상 등 인력기준 및 상담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시설기준

- 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 센터장 및 직원

☞ 피규제자는 지원센터 지정 예정기관으로 약 50~10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신설)

☞ 현행 시행규칙(제7조)을 법률에 그대로 똑같이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으로 약 70명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신설)

- 종사자 교육은 신규로 채용된 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하며,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를 위한 신규교육과 기존 종사자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구분함

☞ 현행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을 채용자 및 채용예정자 신규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원 등 종사자는 관련 법률·제도 및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한 안내를 위해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정부 예산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므로 본인 부담이 없음.

○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내용심사)

※ 현행 '상담소·보호시설'에 '긴급전화'를 추가

☞ 피규제자는 긴급전화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자와 긴급전화 장의 요청에 따라 치료 보호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약 47,000개소로 추정되고,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10절 |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 (Tel. 02-2100-2312, hsg36@pmo.go.kr)

### 1. 통일부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규제 4건)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75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1)	원안의결 4	신설 3
	제381차 행정사회분과 (2008. 8.28)		강화 1 * 비중요규제 4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 비중요규제 4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 심사내용

##### ○ 방문승인, 반출·반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취소 (신설)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발급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출·반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문승인, 반출·반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취소조항 및 취소사유를 신설한 것으로서, 연간 규제준수 비용이 미미한 점,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 승인 등의 경우 조건 및 유효기간 설정 (신설)

- 방문증명서 발급시, 북한주민 주민접촉 수리시, 수송장비 운행 승인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반출·반입 승인시, 협력사업 승인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수리·승인 법 조항을 통일하여 일원화하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내용으로, 연간 규제준수 비용이 미미한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 교역·협력사업에 대해 허위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강화)



- 교역·협력사업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허위보고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연간 규제준수 비용이 미미한 점,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분류

○ 지도·감독 및 조사권 마련 (신설)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을 하는 자,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위법한 사실 발견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법에 협력사업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조사권을 신설하고, 관련사실 위반시 현행 승인취소하는 규정만 있는 것을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의 협력사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2. 외교통상부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 (Tel. 02-2100-2312, hsg36@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해외이주법 개정안에 대해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비중요규제 1건)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해외이주법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분과 (2008. 6.19)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규제 1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해외이주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등록취소 요건 추가 (강화)

- 기존 불명확하던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국위손상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이주상대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손상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기타 업무질서 문란 행위 → 허위 또는 과장광고, 허위정보 또는 허위 사실 제공, 부당한 알선료·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질서 문란 행위) 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 기존에 불명확하던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에 규정된 변경 등록 및 신고의무 등의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피규제 대상이 소수이고 규제의 타당성이 명확하며,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규정하는 점,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3. 국가보훈처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 (Tel. 02-2100-2320, kwjyks@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개 법령에 대해 강화 1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보훈처의 2008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82회 행정사회분과위 (2008. 9. 4)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제382회 행정사회분과위 (2008. 9. 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계	-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생업지원 공공기관의 범위 지정(강화)

-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으로 확대
- ☞ 생업지원과 관련된 유사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이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때 적절성이 인정되고,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가 소수(공공기관 305개)이며,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생업지원 공공기관의 범위 등 지정 (내용심사)

- 생업지원 공공단체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지원하는 매점 등의 규모

- 33제곱미터 이하

☞ 공공기관의 범위와 지원하는 매점 등의 규모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동일하고, 생업지원 관련 타법과의 형평성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 것으로 적절성이 인정되며,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가 소수(305개 공공기관)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11절 | 일반행정분야

집필자 : 방진아 사무관 (02-2100-2316, passb@pmo.go.kr)

### 1. 행정안전부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온천법 개정안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1건, 강화 9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2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10건, 비중요 규제 11건)
- 심사대상 중요규제 10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총 신설규제는 11건임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68차 행정사회분과 (2008.4.1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분과 (2008.6.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378차 행정사회분과 (2008.7.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제196차 본회의 (2008.11.13)	원안의결 5 개선권고 4	신설 9 *중요 9
온천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17 ~ 11.21)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2.1~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개 법령	-	원안의결 17 개선권고 4	신설 11 강화 9 내용심사 1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

■ 심사내용

○ 허가대상 광고물 추가 지정 (강화)

- 허가대상 광고물에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추가

☞ 가로형 간판의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만 허가의 대상이었으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도시의 미관 및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가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신도시 등에 건물별 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 (신설)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기타 신도시 등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업소별·대상광고물별' 규제방식이 아닌 '건물별'로 광고물에 대한 제한 없이 전체 광고물 면적만 규제

- 다만,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광고물관리를 위한 기본적·절차적인 규제 등은 현행대로 존치

☞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과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이외에는 모든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Negative System 적용)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옥외광고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점,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고 불법 광고물 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점, 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시 규제 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안전도 검사 대상 확대 (강화)

- 안전도 검사의 대상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추가

☞ 최근 자연재해(태풍, 강풍, 지진 등)의 발생빈도 증가로 인해 간판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심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가 소수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 (강화)

-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 전주 및 가로등주를 추가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전주 및 가로등주 표시방법을 삭제

☞ 전주 및 가로등주에 불법적으로 표시한 광고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연간 24억원) 및 불법 광고물 철거 비용(연간 9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쳤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의 부과 (강화)

- 법률에서 불법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종전 금액의 평균 1.66배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추가
  -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등록 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07.12.21)시 과태료 금액 상한의 조정(300만원 → 5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및 광고물 실명제 신설에 따라 관련 위반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사안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며,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 제출 (내용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 법률에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신설 9)

■ 심사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 기준, 동의를 받는 방법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수집·이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필수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의 제공 거부 등 불이익 제공을 금지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① 법률규정이나 법령상 의무이행, ②공공기관 소관사무 이행, ③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목적외 이용·제공 허용
- 목적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는 각각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계약체결이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의할 사항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야 함
-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파기 기준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OECD 등 국제기준과 국내 유사입법례를 통해 이미 정립된 바 있는 내용으로 규제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점, 사업자의 고객정보 무단제공 · 판매 등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 제공에 따른 오 · 남용 피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있음

-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 동의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됨
-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
  - ▶ “공공기관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서 “소관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 ▶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우를 추가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집 · 이용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
-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직접마케팅인지 간접마케팅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직접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의 경우에 있어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별도 검토할 것을 부대 권고

○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신설)

-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그 처리를 금함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고 그 처리를 금함
-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위해 본인을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조 · 유출 ·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의하고 차별화된 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와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규제내용이 명확한 점을 감안하면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 의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한 (신설)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법령, 범죄예방 ·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출입통제, 교통단속 등 특정한 목적 외로는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외에는 안내판 설치 등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술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가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그 의미가 '공개된 장소' 표현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업무위탁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공개 및 고지의무 (신설)

- 업무위탁으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하며, 텔레마케팅 등 재화·서비스 직접 홍보·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하여야 함
-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 이전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함
  -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치 않을 경우의 조치방법 및 절차

☞ 업무위탁 및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 이전시 공개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안으로, 제3자에게 업무 위탁 및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철회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확보 및 관리 책임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함

-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업무·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사항 등을 통지해야 함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이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조치를 확고히 해야 하는 점, 기업도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 기업이미지 저하 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있으며,

-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신속히 알려 사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회사 이미지 실추, 금전적 비용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공개 또는 통지하지 않고 있어 후속피해의 방지 및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의무의 규제신설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다만,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되면 추후 재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요구에 응해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열람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열람, 정정·삭제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열람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기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예외적으로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을 “타인”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금지행위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 거짓 그밖에 부정확한 수단·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
- 정당한 권한 없는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 소속 직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사안으로, 소속 직원 등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 피싱·보이스 피싱(전화사기) 등과 같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범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수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안 제49조(금지행위)를 제49조(기타 금지행위)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선권고, 조사, 시정조치 등 (신설)

- 행안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로 판단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침해행위 중지, 일시정지, 기타 보호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법사항의 발견이나 혐의 포착, 침해신고나 민원접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규정한 사안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 유도 및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권한의 범위, 결과공표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 (신설)

- 법규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의 우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 인식제고 등 계도만으로는 법규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점, 정보통신방법 등 개별법상 제재수준과 균형있게 조정할 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5) 온천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4)

■ 심사내용

○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등 (강화)

-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함

-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행정심판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로부터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효력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 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개발사업의 시행 (신설)

-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지 굴착허가 등 (강화)

- 토지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온천발견의 신고 등 (강화)

-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를 취소해야 하며,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해야 함
  - 발견 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현행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개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에 3개 항목을 추가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 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온천종사자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강화)

-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그동안 온천종사자는 '온천법'의 온천종사자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교육을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동 온천법 개정안에서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은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교육을 면제하는 대신, 온천법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교육 미이행시 과태료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사안으로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의무 부과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에 10개 업종\*을 준용사업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준용사업자에 14개 업종\*\*을 추가

\* 여행업·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체인사업

\*\*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사업, 부동산 중개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대여업, 결혼 중개업, 의료업,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 대여점, 서점, 영화상영관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을, 그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까지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다량 취급 업종을 선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규제심사시 이미 검토된 사항이며, 피규제자 수와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소방방재청

집필자 : 김원연 사무관 (Tel.02-2100-2320, kwyjks@pmo.go.kr)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13개 법령 및 고시에 대하여 신설 4건, 강화 7건, 내용심사 15건 등 총 2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 4건, 비중요 22건)
- 심사대상 26건 중 1건은 철회권고, 2건은 개선권고, 23건은 원안의결하였음

[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366차 행정사회분과 (2008.4.3)	원안의결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소방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 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제366차 행정사회분과 (2008.4.3)	원안의결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분과 (2008.6.19)	원안의결7 개선권고2	내용심사9 중요2, 비중요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분과 (2008.7.31)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81차 행정사회분과 (2008.8.28)	원안의결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 2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8.10.8~10.15)	원안의결3	신설 3 *비중요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8.10.22~29)	원안의결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8.11.5~11.12)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92차 행정사회분과 (2008.12.4)	원안의결5	강화5 *중요1, 비중요4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제392차 행정사회분과 (2008.12.4)	철회권고1	신설 1 *중요 1
계	-	원안의결23 철회권고1 개선권고2	신설4, 강화7, 내용심사15 *중요4, 비중요22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성능시험 대상품목 지정 (내용심사)

- 성능시험 대상품목

- 분기배관
- 포소화약제의혼합장치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 시각경보장치
-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 자동폐쇄장치

☞ 6개 설비·제품은 지금까지 성능시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자체기준에 따른 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2) 소방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 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응시자격 중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범위 설정 (내용심사)

-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 방법론, 교육철학

-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 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 응급처치학, 응급환자 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수과목(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구체적인 교과목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9)

■ 심사내용

○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내용심사)

- 급경사지관리기관은 재해위험도평가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함

- 붕괴위험지역의 지정범위
-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사항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한 서식을 정함

☞ 법률로서 도입된 붕괴위험지역 지정제도의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붕괴위험지역의 계측·자료관리 (내용심사)

- 관리기관 또는 계측업자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 시방서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하여야 함

- 관리기관 또는 계측업자 및 시·군·구본부장은 계측자료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해당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함

☞ 붕괴위험지역 계측·자료관리의 절차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나, 계측자료의 보존·관리 기한을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해당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로 규정, 붕괴위험의 해소 시점이 모호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해당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를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내용심사)

-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함

- 안전점검의 결과
-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 방법

- 안전조치 실시기한
- 시·군·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식

- 안전조치 명령서 및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 서식을 정함

☞ 안전조치 명령 및 그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내용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응급조치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응급조치에 응한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응급조치 명령서 및 응급조치 확인서 서식을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증표의 서식을 정함

☞ 응급조치 명령 및 토지 등의 일시사용의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토질조사 자료의 제출대상 공사 규모, 준공도서 등의 자료 제출 (내용심사)

- 시·군·구본부장이 관할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공사의 규모는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전국단위 기반재해위험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음
- 준공도서: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준공현황도면, 준공사진
  - 급경사지 현황자료: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현황사진
- 자료의 제출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 ☞ 토질조사자료 제출대상 공사규모의 경우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로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유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 규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 제4호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전국단위 기반재해위험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사 규모를 정하는 것도 아니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계측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내용심사)
- 계측업 등록기준, 변경등록 사유 및 지위 승계 신고시 첨부서류를 정함
  - 계측업 등록(폐지, 휴지,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 법률에서 위임된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내용심사)

-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기준, 변경등록 사유,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서식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급경사지 계측업과 성능검사 대행자는 겸업할 수 없음
  - ☞ 법률에서 위임된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계측 전문인력의 실무교육 훈련과정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 (내용심사)
-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음
    - 기본교육: 계측업 및 성능검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교육
    - 전문교육: 계측업 및 성능검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가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매 5년 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 실무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함
  - 소방방재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교육 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지정요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2월말까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전문기술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함
  -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를 정함
  - ☞ 법률에서 위임한 계측업 및 성능검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 훈련과정과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의 부과·징수 (내용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2)

■ 심사내용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내용심사)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 인증업무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10여개 업체 전망)가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및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재개신고 (내용심사)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의 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의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 대행자 등록증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의 대행자는 업무를 휴지·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자 업무휴지·폐지 또는 재개신고서를 소방 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률에서 위임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및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100여개 업체 전망)가 한정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5)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등 (강화)

-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 또는 인정하는 손해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다만,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함

- 대상시설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대상시설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실시 또는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함

☞ 피규제자수(696명)가 미미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조건 등 (내용심사)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조건을 정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피규제자수(480여개 업체 전망)가 한정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의무 (신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조치할 사항을 정하고,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할 대상 시설과 방법을 정함
-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을 정함

☞ 피규제자수는 제한적(재난관리책임기관 61개)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신설)

-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 피규제자수가 소수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및 관리 (신설)

-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시설 및 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지진계측자료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정함

☞ 피규제자수가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350여개 소로 규제비용은 35억원이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기술기준 구체화 (내용심사)

- 지하탱크 본체의 두께기준을 현행 규정은 “3.2mm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탱크의 용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 직경과 철근 배치 간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규제자수는 50기로 한정되며, 규제비용은 7천5백만원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8)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방법 (강화)

- 현행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제1차 시험·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 피규제자는 700여명 정도로 예상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5)

■ 심사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강화)

-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의 경우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위험도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부과 (강화)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대상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
  - 방염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미비한 경우에 대해 입법미비사항 보완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정소방대상물(문화재시설) 방화관리 의무 (강화)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을 추가
  - 지정문화재로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것

☞ 규제대상이 32개소이고, 규제비용이 57,600천원으로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정소방대상물(문화재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강화)

-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문화재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건축물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함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는 옥외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함

☞ 규제비용이 4,152,291천원이나 민간의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규제대상이 143개소로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교육 (강화)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함

☞ 현재 특정소방시설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업 영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동 조항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600㎡ 이하, 약 55만개)의 관계인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임

- 동 조항은 소방관서의 장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고, 교육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10)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신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문제는 찬·반 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으로 국토부, 건설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있는 전기공사·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정부 내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02.6.28)한 바 있으나, 이를 번복할 만한 실증자료가 부족하고, 입법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추후 검토토록 하고, 동 개정안의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은 철회 권고

3. 경찰청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 (Tel. 02-2100-2312, hsg36@pmo.go.kr)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건, 비중요규제 1건)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제369차 행정사회분과 (2008. 5. 1)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규제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	제376차 행정사회분과 (2008. 6. 19)	원안의결 1	강화 1 * 중요규제 1
계	-	원안의결 2	강화 2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의 장에 치료감호소장 추가 (강화)

-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보기관의 장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

☞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의 장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 지정하여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등이 치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부적격자를 자동차 운전에서 배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 피규제자의 수가 소수로 한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영향 비용이 미미한 점,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강화 1)

■ 심사내용

○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강화)

- 구간 : 양재IC~오산IC (37.9km)

※ 양재IC~한남대교 남단 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으로 서울시에서 고시 개정

- 시간 : 06:00 ~ 22:00

구분	평일	토요일·공휴일	설날·추석연휴
현행	미시행	09:00 ~ 21:00 (공휴일 상행선 23:00)	연휴 전일 12:00 ~ 말일 24:00
개정	06:00 ~ 22:00	09:00 ~ 22:00	전일(평일 06:00, 토요일 09:00) ~ 말일 24:00

- 통행가능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에 한함)

- 시행 일자 : 2008.7.1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 연휴(양재IC~신탄진 IC)에만 하던 것을 평일(양재IC~오산IC)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자의 통행시간을 절약하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한국교통연구원, '08.5.15)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라 서울 방향의 경우 평균 통행시간이 일반차로는 4.5분 증가하나, 버스전용차로는 11.9분 단축되며, 일일 총통행비용은 버스전용차로제 미시행시 약 23.9억원인데 비해, 시행시에는 약 22억원으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시 일일 총 통행비용이 약 1.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행구간은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오산IC~한남대교 남단」으로 하는 것이 총통행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양재IC~한남대교 남단 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으로 서울시에서 고시 개정 추진중) 오산을 시점으로 할 경우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가 가능함 (현재 동탄신도시(1기)의 입주(약 5만 가구)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제2기 동탄신도시(약 10만 가구), 송산그린시티 등이 완료될 계획이며, 또한 오산~기흥간은 많은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 인구가 많아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대중교통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운영시간은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보다 「전일제」 운영하는 것이 총통행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정체 발생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도 나타남을 감안할 때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초기에는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다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수단전환\*이 나타남으로써 일반차로의 통행 속도도 이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분석됨
- \* 교통연구원의 분석결과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지하철의 이용은 각각 9.7%, 7.5% 감소하고, 버스 이용은 17.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버스전용차로 시행 3개월 후에는 일반차로 속도도 전용차로 미시행시의 평균속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이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인결. 다만, 충분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시범운영(단속유예)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4. 법무부

집필자 : 방진아 사무관 (Tel. 02-2100-2316, passb@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8년도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강화 1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6건, 비중요규제 5건)
- 심사대상 중요규제 6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8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제373차 행정사회분과 (2008.5.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제374차 행정사회분과 (2008.6.5)	원안의결 6	신설 6 *중요 4, 비중요 2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분과 (2008.7.31)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공증인법 제정안	제379차 행정사회분과 (2008.7.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1	신설 9 강화 1 내용심사 1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1)

##### ■ 심사내용

##### ○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등 (내용심사)

#####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요건

-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 법교육 실시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1인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해야 함

☞ ‘법교육지원법’이 제정(2008.6.29 시행)되어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2)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신설 6)

##### ■ 심사내용

##### ○ 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인가·등록 및 운영기준 (신설)

-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인 「외국법자문사무소」는 대표자인 외국법자문사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대한변협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일정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대표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내 3년 이상을 포함, 총 7년 이상의 법률사무 취급 직무경력이 필요하며,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법자문사무소는 수입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국내에 별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아세안(ASEAN)과의 FTA 등 타결된 통상협상에서 약속한 국내 법률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국내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계획 중 제1단계 조치라는 점, 소비자 보호 측면, 선진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등록 및 신고 (신설)

-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후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하고, 수형자·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직무경력이 있어야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고, 자격승인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요구 가능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또는 자격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의 징계(업무정지명령 포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일시 휴업 및 근무지 변경시 대한변협에 신고해야 함

☞ 기 타결된 통상협상에서 약속한 국내 법률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제도를 도입, 제한적 면허(limited licensing) 방식의 일정한 전문직 자격을 창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격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국내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조치 중 1단계 조치라는 점, 소비자 보호 측면,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외국법자문사의 국내체류·비밀유지 및 감독순응 의무 (신설)

- 외국법자문사는 연중 180일 이상 국내 체류가 필요하고,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및 감독기관(법무부장관·대한변협)의 감독에 순응할 의무 부과

☞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법자문사의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피규제자의 수가 특성상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점, 외국에서 채택한 국제적 기준을 도입한 점,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무자격자의 명칭 및 표시사용 제한 (신설)

-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당한 전문직 자격을 가진 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무자격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안으로, 무자격자가 전문직자격 표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선진국에서 채택한 제한기준을 도입한 점, 피규제자가 특성상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의 공식적 이견이 없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변호사 등과의 고용·동업 금지 (신설)

-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의 고용·동업·제휴 관계 금지

☞ 국내 법률서비스업의 단계적 개방 의무 중 1단계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면서 변호사 등과의 동업·고용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향후 법률개정 작업을 통한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점, 한미FTA 협정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행사항이고, 기존 법규(변호사법

제34조 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법률시장 개방 초기의 혼란과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변호사업계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겸직 제한 (신설)

-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겸유하는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려면 변호사업을 휴·폐업해야 함. 즉, 외국법자문사무소(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변호사'가 아니라 '외국법 자문사'로서만 채용될 수 있음 (국내로펌은 변호사로 채용가능)

☞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금지 등 통상협상의 합의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변호사는 영리기업 취업이 제한된다는 같은 취지의 규제(변호사법 제38조)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점, 국내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계획 중 제1단계 조치와 관련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신설)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 기존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병행 실시하고,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7년 2차·3차시험을 시행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 자격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2007.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라는 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신설)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횟수에 산입함

☞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적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응시횟수 제한정도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다만, 사법시험을 병행실시(2012~2016년)하는 기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은 예측 가능성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내 결정·예고하도록 부대권고

(4) 공증인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강화)

-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이하 “법조경력자”)로 하고, 공증인이 75세에 이른 때에는 정년으로 퇴직함

-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이어야 하고, 임명공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법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중인 자, 75세 이상인 자, 신체 또는 정신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자는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음

☞ 풍부한 법조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법조인이 공증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증사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공증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공증인의 준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공증인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인 공증인이라도 공증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점, 현재 개업한 변호사중 75세 이상인 자가 250명을 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년연령 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공증인가 및 인가 취소 (신설)

- 법무법인 등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함
-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공증인에 대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1명만 남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이 없는 자를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현행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법무법인 등에 자동적으로 공증 취급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나, 공증업무 수입단계에서의 규정 위반사례, 공증업무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실처리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가기준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규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가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5. 국무총리실

집필자 : 강희석 사무관 (Tel. 02-2100-2312, hsg36@pmo.go.kr)

### 가.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8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규제 3건)
- 심사대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무총리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382차 행정사회분과 (2008. 9. 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비중요규제 3

### 나. 2008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 심사내용

○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 (현행)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시설 설치행위는 제한되며, 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생활하수 발생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 (개정) 행위제한 대상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확대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06.4.12)하여 폐수배출 시설을 포함하여 지하수보전지구 안에서의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행위제한을 위한 조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의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온천 굴착허가 제한 (신설)

-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 굴착 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 제312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제29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등급 지역
- 그밖에 온천 및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 온천과 일반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과도한 온천 개발은 지하수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에서 온천 굴착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규제자의 수가 한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과태료 (신설)

-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도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의 수가 한정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 제4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 1 절   ▶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

제 2 절   ▶ 규제심사체계 개선

제 3 절   ▶ 행정조사제도 운영

제 4 절   ▶ 규제정보화 추진

제 5 절   ▶ 규제개혁 국제협력



## 제1절 |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

집필자 : 박영두 사무관 (Tel. 2100-2279, mrng@pmo.go.kr)

###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개요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①항 5호)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시 규제 및 비규제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을 망라하여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토록 하여 합리적 규제 의사결정(regulatory decision-making)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1)」, 「경제법령 사전심사제도(1995 ~ 1997)」 등에서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심의 등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1998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영향 분석제도는 법적 근거를 가진 규제개혁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6년 7월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항목·요소를 단순화하고 대국민 공표의무를 강화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와 대안검토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 2.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

2006년 개정된 법령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분석요소간 중복 및 다양한 대안검토의 부재로 인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피규제자·이해관계자 확인·의견 청취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규제심사 안건의 일부로 규제영향분석서가 포함되어 각 부처 담당자의 중복된 자료 작성에 따른 행정부담과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 부실 등의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지적이 일부 존재하였다.

### 3.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

#### (1) 규제영향분석 관련 협의 및 활용 강화

피규제집단과 이해관계인 등의 현황, 규모 등을 파악·기술토록 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하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전문을 규제위와 중기청·공정위에 송부토록 하여 관련업계·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노력을 강화토록하였다.

또한 규제심사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규제심사시 착안 및 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하여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력 낭비 예방과 충실한 분석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에서 심사안건 자료를 중복 작성치 않고 영향분석서 원문을 활용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 (2) 평가요소의 조정

기존 요소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대안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항목에 ‘대안검토’ 요소를 추가하여 복수의 대안을 상정·검토토록 하고, 대안 선택시 비교·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규제의 강도·방식, 시장경쟁제한여부, 기업규모 차이에 따른 영향 반영 등을 제시토록 하였다.

기존 (3개 항목 8개 요소)	개정 (3개 항목 7개 요소)
<b>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b> 1-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1-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b>1. 규제의 필요성</b> 1- 가. 문제정의 1- 나. 정책목표 및 규제의 필요성
<b>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b>	<b>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b> 2- 가. 대안검토 2-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b>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b> 3-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나. 규제의 명료성 3- 다. 이해관계자 협의 3-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b>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b> 3- 가. 규제의 적정성 3- 나. 이해관계자 협의 3-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3) 기타

관련 지침 개정시 충분한 예시와 사례를 제시하여 각 부처 담당자들의 내실있는 규제영향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 제2절 | 규제심사체계 개선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 (Tel. 02-2100-2276, hope002@pmo.go.kr)

### 1. 규제심사제도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이러한 규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각 부처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기간동안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체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통해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제위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비중요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행정규제기본법) ]



## 2.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2007년 4월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 세미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와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위해서는 비중있는 안전만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요 현안 입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제도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입법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심사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3. 규제심사체계 효율화 방안

### (1) 규제심사의 신속성 제고

부처 심사안전 접수이후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중요규제 여부 판단을 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중요규제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비중있는 규제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부담을 줄이고 부처가 신속히 규제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 [ 중요규제 판단기준 ]

- ①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④ 국제기준에 비취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⑤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2) 비중요 규제의 심사 간소화

그간 비중요 규제 여부는 분과위를 개최하여 예비심사를 통해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규제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처의 규제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비중요 규제여부를 사무국에서 판단하고 비중요 규제인 경우에는 분과위 서면심사를 통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서면예비심사 결과는 분과위원장에게 보고 후 즉시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여 비중요 규제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3) 위원회 규제심사의 전문성 제고

경제·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규제의 내용도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해 짐에 따라 규제심사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무국에서는 상임 전문위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 건설, 환경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직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임 전문위원의 수를 늘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전문위원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노동·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의 17명의 규제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규제심사 및 안전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제3절 | 행정조사제도 운영

집필자 : 이진수 사무관 (Tel. 2100-2280, ljs1024@pmo.go.kr)

### 1.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행정조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를 맞아 처음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2008년도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계획에는 조사종류, 조사근거 및 목적, 조사방법, 조사주체 및 대상,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예년에 비해 행정조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또한,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방지 등의 기본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및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2개 부처에서 총 419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노동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계청 60건,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각 51건, 국토해양부가 30건의 순이었다.

### 2. 행정조사 정비 추진

#### 가. 추진 배경

국민의 권익침해 방지 및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점검

#### 나. 행정조사 정비 기준

##### (1)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및 조사기준 완화

-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만 존치시키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 폐지

-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조사의 횟수, 주기 등을 조정
-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
- 기술발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on-line 등에 의한 방향으로 행정조사 방법 개선

##### (2) 공동조사 실시 및 대상 발굴

- 동일·유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간 공동조사 실시
- 기업 및 사업자 단체·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 행정조사를 자체 발굴

##### (3) 자율관리체제 전환

- 행정조사 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신고하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로 갈음하는 기업의 자율준수 program의 도입을 확대·활성화

##### (4) 행정조사 근거법령의 정비

- 행정조사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상 명확한 위임 없이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지침, 계획 등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금지
- 개별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

#### 다. 행정조사 정비 내용

전체 419건의 행정조사 중 80건(19%)의 행정조사를 정비하고, 다수의 관련 개별규정들을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주요 정비내용으로 산업·제조업 분야 통계조사 등 14건의 행정조사를 통합·폐지하고, 보훈대상자 고용현황 조사서 감축 등 40건의 조사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비임상(동물) 시험기관 실태 합동조사 등 8건의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양오염

방지시설 점검을 자율점검 보고서로 대체하는 등 18건을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 3. 행정조사 정비효과 측정

#### 가. 목적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행정부담을 조사하여 정비 전·후의 감축분을 비교·측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행정조사 정비를 촉진

#### 나. 측정 방법

자료제출,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수검 등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 및 노력 등을 계량화 하여 산출

※ 해당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기업 등 조사 대상자가 통상적으로 투입하는 '단위 노동비용'에 '전체 조사대상'과 '연간 조사횟수'를 곱하여 행정부담 산출

#### 다. 추진 경과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2008년도 행정조사 정비내용 중 폐지, 기준완화(대상축소, 횡수완화, 기간 단축), 공동조사, 자율관리체제 전환 등 정비유형별로 각 1개씩 총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정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요령」 마련·시달

#### 라. 향후 추진계획

각 부처별로 연도별 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감축효과를 측정하여 제출하고 연말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행정조사 정비 촉진에 기여

## 제4절 | 규제정보화 추진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 (Tel. 02-2100-2276, hope002@pmo.go.kr)

### 1. 추진배경 및 경과

이명박 정부들어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관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규제와 관련된 정보나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했고, 필요한 규제 정보의 검색도 어려웠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관련 정보의 전산화와 규제등록관리, 규제심사 등 규제개혁업무 전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08. 3월 규제개혁 차관회의시 국무 총리실에서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08.4)하여 규제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 7월에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ISP사업을 발주하여 11월까지 4개월 동안 ISP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 2.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내용

#### (1) 규제정보관리 및 검색기능 강화

기존의 규제등록시스템이 단순한 규제등록 정보를 부처별, 법령별로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구축될 규제정보화 시스템은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생성·변동·소멸과정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이를 검색어 입력을 통해 규제내용, 규제심사결과, 규제성격, 외국사례 등 다양한 검색기능과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에 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등록된 규제의 카타고리화, 부수규제 관리기능을 구현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등록이 누락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별로 규제를 관리하는 기능도 부여할 계획이다.

(2) 규제개혁 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매년 부처에서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라 발굴하여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 경제5단체 건의과제 등 각종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등 과제의 종류별, 완료 시기별 등으로 실적관리·이행상태 점검·과제관련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관리와 규제 등록·규제심사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규제심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부처의 안전 제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전 접수, 예비심사 진행, 검토보고서 작성, 안전상정 등 규제심사업무 프로세스를 온라인화하여 규제심사시 문서작성 부담을 줄이고, 규제심사 안전·검토 보고서 등 그간의 규제심사관련 자료를 DB화하여 과거의 심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계획

'08년 수행한 ISP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09년에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09년 2월에 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4개월간 시스템 구축후 2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8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10년에는 규제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와 각 부처 자체규제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등 규제정보화 시스템의 부처 확산, 부처와 연계한 규제정보화 포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스템 시범구축 등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5절 | 규제개혁 국제협력

집필자 : 이승민 사무관(Tel. 2100- 2292, smlee@pmo.go.kr)

1. 개 관

규제개혁 국제협력의 가장 큰 부분은 OECD 규제개혁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와 규제정책그룹회의(Group on Regulatory Policy)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추진성과와 현황을 정확히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그 외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APEC회의 참석과 개발도상국과의 대외 협력업무가 있다.

OECD회의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작업반회의 2회('08.4월, 10월)와 규제정책그룹회의('08.12월)가 있었으며, 6월과 8월 호주에서 개최된 APEC 구조개혁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구조 개혁 성과와 규제개혁을 적극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ECD 규제개혁작업반회의에서 프랑스의 Mr.Charles- Henri Montin이 Bureau Member를 사직함에 따라 공식이 된 Bureau member로 길홍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이 신규로 선출되었고, Mr.Redling(캐나다)의장이 사퇴하고, Mr.Nijland 네델란드 경제국장이 새로운 작업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Bureau member는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으 비롯해, Alexander Hunt(미국), Caroline Roy(프랑스), Redling(캐나다) 등 총 4명이다.

규제개혁관련 대외협력도 강화되었다. 4월 영국과 태국의 규제개혁관계자가 방문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과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우리나라 규제개혁 제도와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OECD 및 APEC 국제회의 참석

### 가. OECD 규제개혁작업반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and Management, '08.4.7~8, 프랑스 파리)

'08. 4.7~8 OECD 규제개혁작업반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개혁작업반회의에서는 규제품질지수, 위험과 규제, 전자정부, 예산, 규제개혁 등 6개 분야의 '2009-2010 향후 사업계획' 및 규제지수관련 국가간비교, 행정내부규제, 규제영향분석, 민관협력 등 기타 향후 작업계획이 논의되었다.

#### (1) Draft Programme of Work 2009~2010

- 사무국의 Sallard 국장은 전자정부, 예산, 규제개혁 등 6개 분야의 '2009-2010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몇가지 활동들은 공공관리위원회의 세 가지 주요 주제(즉 공공서비스 전달의 혁신, 개혁 관리, 개혁 결과의 평가)중 하나에 기여할 것이며 규제정책 분야 역시 규제정책그룹(GRP)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정책그룹(GRP), 공공관리위원회, 각 보조기관들은 2008년까지 평가(self-evaluation과 in depth evaluation)를 받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09년말 이들 기관이 만료되기 전에 임무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사무국의 Gorge Reidling 의장과 Konvits과장은 규제관리 정책의 이슈와 트렌드는 Evidence-based 의사결정, 정부 신뢰, 경쟁력과 효율성에 관한 것이며, 각국 정부는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규제의 복잡성(complexity), 규제의 결함성(coherence), 규제의 신뢰성(credibility) 등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회원국은 행정내부규제, 행정간소화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개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사무국은 4.21까지 Written Comment를 받기로 하였다.
  - 덴마크는 규제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행정내부규제·행정간소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process indicator와 output indicator 산출시 data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덴마크에서 활용되지 않는 규제대안에 대해 OECD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일본과 벨기에는 행정간소화와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터키는 비회원국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 (2) EU 15개국의 규제역량에 대한 평가

- OECD 사무국(Caroline Valey)은 EU 15개국의 규제 역량에 대한 평가의 리뷰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 평가는 ▲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정책·제도적 틀, 역량, 투명성 및 협의와 의사소통 ▲ 신설규제 관리를 위한 수단과 절차 ▲ 행정부담 감축과 간소화 ▲ 정부내부규제의 적절성 ▲ 규제관리역량에 대한 평가 및 측정 등 각 국가들의 규제관리 이슈들의 발전 범위에 대해 전략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회원국들은 규제관리 이슈, 평가의 틀 등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고, 스웨덴은 2차 평가에 포함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TUAC은 규제를 부담으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규제를 안해서 생기는 위험 내지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정부내부규제(Regulation inside Government)

- OECD 사무국(Olsen)은 정부내부규제에 대한 개념틀, 분야별·국가별 사례 연구 결과, 통제 수단과 관련된 행정부담의 평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잠정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의 핵심목적은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찾아냄으로써 내부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정부내부규제의 통제메카니즘 파악, 규제수단과 순응비용간 관계, 규제레짐의 효과성 측정 등을 통해 일부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되었다.
    - 임용의 경우, 통제수단과 보고의무라는 행정부담과 긴밀한 관련성(감시가 많을수록 보고의무 증가)을 보여주었으며, 프로세스규제는 통제수단과의 관련성이 불분명
    - 조달은 주로 감시를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며 동시에 프로세스규제를 사용하는 바, 이런 프로세스규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복잡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노력함
    - 국가별로 다양한 통제수단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편차가 큰 부분은

임용에서 아시아국가의 규제가 보다 공식적이라는 점으로, 이는 조직문화·국가전통이 규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이 점만을 과대 평가할 수는 없음

- 감시와 행정부담간에 긍정적 관계가 일정부분 입증은 되었으나, 다른 수단과의 관계는 확인하기는 곤란
- 프로세스규제와 이에 따른 행정부담의 관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규제 자체가 행정부담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RIG 연구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내부규제의 개념적 틀에 부합하는 사례 선택이 필요하며, 통제수단별 분석과 함께 투입·산출·성과 등 정책과정별 사례분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포르투갈 규제개혁 심사

○ 포르투갈측은 행정 간소화와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통합한 “The Simplex Programmes”의 추진성과, 지자체 참여확대·ICT 안전망 확보·성과측정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 :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정부조달절차를 개선하고, 규제 순응비용을 낮춤으로써 포르투갈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법적 의무를 줄여주고, 라이선스 방식을 합리화하고, 기업과 정부간 효율적인 상호관계를 촉진하는 것은 순응비용을 줄이는 몇가지 수단들이 있음.
- 2)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 : 포르투갈은 행정간소화와 전자정부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통합된 back-office 기능들이 발전해야 하고, 특히 자료의 공유와 숙련된 기술자들이 확보되어야 함.
- 3) 행정간소화 전자정부의 시너지 효과 창출 : 행정간소화와 전자정부를 종합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The Simplex Programmes”은 명확한 목표와 효과성을 위한 강한 추진력이 유지되어야 함.
- 4) 공공영역간 협력·조정을 체계화 : 포르투갈의 공공서비스 전달과 행정간소화의 성공은

상당부분 모든 수준의 정부와 모든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점에 기인함. 공공영역에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조정체계를 강화하여 전략과 이행, 정책들의 통합이 상당히 제고됨

5) 모니터링과 평가를 체계화하여 성과를 제고 : 상시적이고 정확 모니터링과 평가는 성과와 이행을 관리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발견

(5) 위험과 규제에 대한 사례 연구

- 사무국(Greg)은 위험분석이 규제정책에 미치는 효과, 공공부문에서 위험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어려움, 향후 사례연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구하였으며 회원국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 분야에서 사례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정부가 효과적으로 위험분석과 규제 관리를 결합하고 있으며, 규제 이행과 발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수적인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범위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토대로 위험분석 Tool, 정책단계별 위험관리 방법, 위험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 등이 제시된다면 각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관리에 기반한 규제(Management-Based Regulation)

- 사무국은 기업들 스스로의 내부절차와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에 대응하도록 하는 ‘관리에 기반한 규제’의 기본개념, 이러한 규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 향후 연구과제 등을 발표 하였으며 회원국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 ※ 한국의 경우 식품관리에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를 도입하고 있고,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정부·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에 기반한 규제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리에 의한 규제에 대해 규제 정도·방식·위반시 제재조치 등 유형별 분석과 식품안전·환경오염·산업안전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며,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규제이행 역량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OECD 규제개혁작업반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and Management, '08. 10. 20 ~ 22, 프랑스 파리)**

'08. 10. 20~22 개최된 OECD 규제개혁작업반회의는 규제개혁의 중기적 전략방향 및 규제감독기구 비교연구, 다층적 규제관리(Multi-level Governance), 정부내부규제, 행정간소화 등을 주제로 논의를 하였다

**(1) 규제개혁의 중기적 전략방향 및 규제감독기구 비교연구**

- OECD에서는 규제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규제감독기구 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만족도 조사, 협의채널 구축, 규제정보화시스템 등을 감독기구의 수단으로 분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2) 다층적 규제관리(Multi-level Governance)**

- OECD에서는 중앙- 지방 정부간 규제개혁 인식 및 수단 공유, 규제정책, 조정체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규제정책과 수단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고,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규제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표준화 작업과 표준조례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3) 정부내부규제(Regulation inside Government)**

- 사무국은 정부내부규제에 대한 개념적 틀, 분야별 · 국가별 사례연구 결과, 통제수단과 관련된 행정부담의 평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조달분야에서 가중한 보고 의무를 요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는 행정내부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 시민의 부담 감소, 행정효율화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4) 행정간소화(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행정간소화 추진상황과 성공요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 ① 규제조직체계 구축
  - ② 간소화 추진목표 및 추진대상을 명확화
  - ③ 제도적 기반(규제정보시스템, 공공협의채널 등)
  - ④ 정치권과 국민들의 지지확보

**(5) 위험과 규제(Risk and Regulation)**

- 사무국은 위험분석이 규제정책에 미치는 효과, 공공부분에 위험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어려움, 향후 사례연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국은 이에 동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위험을 초기단계에 측정하고 관리수단을 마련하여 기업과 일반국민들이 수용가능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책단계별 위험관리방법, 위험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 OECD 규제정책그룹회의 (Group on Regulatory Policy, '08.12.1~2, 파리)**

2008.12.1~2 개최된 OECD 규제정책그룹회의(GRP)는 중국의 규제개혁성과, 위험분석과 관리, 이탈리아 규제개혁심사, 멕시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를 논의하였다.

**(1) 중국의 규제개혁성과**

- 사무국은 규제개혁심사에 대한 OECD방법론에 토대하여 중국의 규제개혁을 평가하였고, 다만 중국의 특수한 개혁과제들을 고려하고 중국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OECD관행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중국의 규제개혁은 1978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개발한 때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상당한 진전을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내었다.

- 중국은 급작스러운 개혁방법을 채택하기 보다는 다른나라의 경험을 중국의 특수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해 왔으며,
  - 중국의 노력은 규제시스템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 시스템으로의 공식적인 전환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 중국 규제개혁의 다른 영역은 행정적 합리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1990년 이후 규제의 틀이 진보적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합리화 되어 오고 있다.
- 규제개혁이 시작된지 2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규제과정에 있어서 개혁의 모멘텀을 잃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결정적인 국면에 있다.
- 소득불평등과 다원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법적 시스템에 대한 수요, 제도적 발전, 시장영역의 모호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화 문제 등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 우리 대표단은 중국의 규제개혁과정에서 시장과 국가기능 재조정 필요성, 규제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부재와 독립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필요성, 사회적 규제에 있어 외부감독기능의 필요성, 지방정부공무원의 법적 인식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2) 위험분석과 관리

-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분석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회원 각국의 위험분석과 정책반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회원국들의 주요논의방향은 위험관리에 있어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체계의 이점, 위험분석·관리에 있어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정책적 요소,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현재의 규제관행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사전인지가 중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과 정치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등, 정책적 경험을 소개하였고

- 현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있어 위기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한국의 경제상황과 현재 추진중인 금융규제개혁의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3) 이탈리아 규제개혁심사

- 이탈리아측은 2001년도 OECD 권고사항 이행현황, 최근 이탈리아의 정치적·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추진 체계 및 규제개혁 추진성과, RIA·행정부담 감축 등 규제 관련 제도의 변화와 향후 과제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 최근 이탈리아는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규제절차와 성과의 품질개선에 대한 공약(commitment)을 실현해 왔는 바, 구체화되고 종합적인 개혁아젠다를 만들어 냈으며, 개혁 목표들에 대한 강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었다.
- 중요한 발전은 European directives의 이행과 전이(transposing)에 대한 gap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졌으며(하향식 접근 : Descending Phase), 준비과정에서 국가와 European 수준의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졌음(상향식 접근 : Ascending Phase). 다만, 여전히 규제개혁과 절차의 설계에 있어 European 차원과의 더 나은 통합 영역이 남아 있다.

(4) 멕시코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 Mexico-OECD Collaborative Initiative에서는 멕시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멕시코는 시장개혁, 대외중심, 건전한 재정정책에 토대를 둔 발전모델을 추구해 오고 있는 바, 남은 과제는 증가하는 인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인프라 부문에 있어 규제체계와 감독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통합이 필수적이고, 민간 투자를 위해 폭 넓고 개선된 규제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 다수의 법과 규제로부터 야기되는 부담은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바, 규제정책은 규제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활동을 간소화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 ('08. 8. 3 ~ 5, 호주 멜버른)**

'08.8.3~5 호주에서 개최된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2004년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의제” 이행방안이 논의되었고,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도전 등 4개의 회의 의제 논의와 공동 성명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의제는 ① 구조개혁의 정치적 도전 ② 구조개혁에 대한 기업인과의 대화 ③ 규제개혁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 ④ 향후 구조개혁 방안이었고,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수석대표로,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 이희섭 주호주 한국대사관 공사, 김진남 국무총리실 과장이 참석하였다.

**(1)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도전**

- 구조개혁의 목적, 구조개혁에 대한 반대 및 극복방안, 구조개혁 추진환경, 구조개혁 순서·속도·범위, 구조개혁 모멘텀 유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구조개혁의 내용·편익·제도적 틀의 중요성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아래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 구조개혁은 지역경제통합과 경제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는 국경내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 규제,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발전으로 구성됨
  - 구조개혁의 편익은 ▲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위한 기회 확대, ▲ 경제안정, 생산성 향상, 지속적 경제성장 및 시민복지 증진임
  - 효과적인 제도적 틀은 선거나 기존 정부정책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혁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조정 및 보상을 통해 구조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혼란 등을 관리할 수도 있음
-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구조개혁 경험을 발표하고, 빠른 시간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소개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및 사회적 합의 형성,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한 법·제도적

틀 확립, 글로벌 기준 수용을 통한 경제의 투명성 제고 및 대외 개방 확대 등 성공요인을 소개하였다.

**(2) 구조개혁에 대한 기업인과의 대화**

- 기업 대표들은 정부 절차나 규제로 인해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성장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어떻게 기업이 구조 개혁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 구조개혁 수행에 있어 사업자단체, 연구기관 등 기업이 정부의 제도와 절차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기관들은 개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의 도출·지지세력 형성·이해관계자간 조정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기업 대표 또는 사업자 단체들은 시장기능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 및 개혁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 같은 국제적인 사업자단체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무역·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특히, ABAC회원인 전경련(이승철 전무)이 한국의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 운영 및 민간의 등록 규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3) 규제개혁을 통한 구조개혁**

- APEC은 규제개혁이 구조개혁의 핵심요소라는 인식하에, 2004년 “구조개혁이행을 위한 정상 의제”에서 5대 우선추진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 규제는 정부의 기본정책수단이자 원활한 경제운용의 핵심부분이며, 나쁜 규제는 기업활동 저하, 혁신적 활동을 위한 자원 분산,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 시장기능에 장벽이 될 수 있음
- 적합한 규제개혁 틀의 확립과 유지는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구조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문제점의 명백한 정의,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다양한 정책대안 고려, 규제의 비용과 편익 비교,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규제순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이행방안 검토 등에 기반한 규제개혁 틀은 좋은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훌륭한 규제개혁의 틀은 규제를 신설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포함함. 현존하는 규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틀의 유지는 임시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발제자로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 성공 요인 및 새로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해 사례발표하였다.
  -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규제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빠른 기간내에 극복
  -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 정치지도자의 적극적 지지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행정규제기본법 마련 등 확고한 제도적 틀을 구축한 점을 성공 요인으로 소개
  - 아울러 금년에 출범한 신정부도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홍보

(4) 향후 구조개혁 방안

- APEC 아젠다는 무역·투자정책, 구조 정책, 거시경제적 금융정책 세 가지로, APEC 지도자들은 '04년 LAISR(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을 통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 APEC은 경제정책에 대한 도전 및 좋은 사례들이 토의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국내 구조적 정책의 개선을 촉진하고, 회원국의 기술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는 APEC내 구조개혁 촉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APEC

구조개혁 아젠다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 매년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하였다.

- EC를 통해 구조개혁장관회의(Structural Reform Ministerial Meeting)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장관들이 서명한 '규제개혁에 대한 좋은 사례 가이드라인(Good Practice Guideline on Regulatory Reform)'을 발표
  - 각 회원국들이 개혁에 대한 제도적 틀과 절차에 대해 스스로 강·약점을 확인하는 자발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EC에서 감독
  - 구조개혁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기구를 운영

(5)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 공동성명서 주요내용

- 구조개혁은 지역경제 통합에 필수적이며 APEC 역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며 구조개혁에 대한 조치를 지지함
- 구조개혁은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어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없으나 강력한 정치적 의지는 성공적 구조개혁 추진의 관건임
- 규제는 정부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경제운용의 핵심부분으로 잘못 설계되고 부적절한 규제가 지역내 시장경쟁,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벽이 될 수 있음
- 지속적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위원회가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 1 절    ▶ 2008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제 2 절    ▶ 외부전문가 평가

제 3 절    ▶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계획

# 제1절 | 2008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275, woniroh@pmo.go.kr)

## 1. 평가 개요

새 정부 1년 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규제개혁 원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규제 개혁 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8년 평가는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 개선했나' 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로 평가의 잣대를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평가대상은 32개 중앙행정기관의 1년간(1.1~12.31)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부 단위(18개)와 청 단위(14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 규제개혁과제나 신설·강화 규제가 없는 통계청과 농촌진흥청 등 8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가항목은 규제개혁 과제발굴,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이행실적과 효과, 고객만족도로 크게 나누어 평가를 하였으며, 계획과 집행보다는 규제개혁의 효과와 만족도 등 산출과 결과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평가방법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였는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이행, 행정조사 정비율 등 정량적 항목은 평가 산식에 의거 점수를 산출하였고, 규제개혁 효과, 과제 발굴의 적절성 등 정성적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였다.

## 2. 평가결과 총평

'08년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법령 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 IT 기술, 제도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계획-1,249건 대비 73%).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조사 정비도 전체 행정조사의 20% 수준을 정비함으로써 기업부담 감축에 일조하였다.

기업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는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 부문의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의 품질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규제개혁만족도가 61.9점으로 '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하였으며, 규제개혁 종합점수도 66.9점으로 '07년(63.5점) 보다 3.5점 상승하였다.

다만, 규제개혁 조치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 되지 못하였고, 금융위기 등 여건 변동과 이해관계집단 반대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규제개혁 과제들도 일부 존재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등 규제의 합리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은 양호한 반면, 규제개혁 과제 이행실적과 효과 등 규제개혁의 성과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 항목별 평가결과

### ■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경제계·지자체 건의, 국민의견 수렴, 현장확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다.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한 결과 경제단체 건의 과제가 전체의 37%인 673건을 차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의 해소와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과제 발굴에도 주력하였다(자치단체 건의 과제는 전체의 9%인 162건을 차지). 과제 발굴에 있어 핵심 정책성 규제개혁 과제를 포함함은 물론, 행정

규제기본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까지도 폭 넓게 발굴하였고, 상당수의 부처가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보완책을 함께 마련·시행하였다.

'08년 중 연내 완료대상 1,249건 중 908건을 완료하였으며,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생활 분야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고루 추진하였다. 다만, 규제개혁 과제 관련 주요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159개 법률안 제출, 66개 통과)되지 못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화 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해관계집단 반대 등 여건 변동으로 중단되거나 연내 미완료된 과제들도 일부 존재(180여건(1.4%))하였다.

■ 신설·강화 규제 및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

새로운 산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국민의 생명·건강,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엄정한 규제심사를 이행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35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239건의 중요규제 중 122건(51%)에 대해 철회·개선 권고를 하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강조됨에 따라 경제 분야의 신설·강화 규제가 사회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신설되는 경우에도 철회·권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행 및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절차적인 요건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으나 자체규개위가 개선·철회·부대권고 없이 서면심의에 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 일몰제 설정, 우회적 규제신설에 대한 대응 등 규제의 합리화와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영향분석은 전반적으로는 '07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비용·편익분석 등은 중요규제의 경우에도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08년 전 부처 규제영향분석 평균점수는 61.6(100점 기준)으로 '07년 평균점수 57.2에 비해 4.4점 상승하였다. 규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실히 작성되고 있으나 비용편익분석 등 그 외 항목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집행단속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규제집행력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상 예상 문제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규제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존속기한' 설정 항목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 행정조사 정비실적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하여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조사 정비는 전체 행정조사의 20% 수준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15건의 행정조사 중 80건(19%)의 행정조사를 정비하고, 다수의 관련 개별규정 등을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산업·제조업 분야 통계조사 등 14건의 행정조사를 통합·폐지하고, 보훈대상자 고용현황 조사서 감축 등 40건의 조사 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만,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 분야의 핵심적인 행정 조사의 정비가 다소 미흡하였고, 식품안전(쇠고기 문제, 멜라민 파동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 등으로 분야의 행정조사 정비 추진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일부 조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8년도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61.9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보통과 약간만족 사이)을 나타냈다. '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4.7점 상승)하였다. 조사 대상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63점으로 일반국민(59.5), 내부고객(6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06	'07	'08	증감	'06	'07	'08	증감	'07	'08	증감	'06	'07	'08	증감
전체	58.2	54.8	59.5	▲4.7	67.7	63.0	66.3	▲3.3	-	60.7	-	62.7	58.8	61.9	▲3.1

※ 내부고객은 '08년부터 처음실시, 증감은 '07년 대비

항목별로는 규제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4.1),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수준(63.8)과 민원제기 감소 등 만족결과(62.4)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관간 업무협조, 의견 수렴, 정책 집행 신속성 등 규제과정에 대한 만족도(59.7점)와 규제성과 만족도(59.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제2절 | 외부 전문가 평가

### - 2008년 규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이 중 한 한국행정연구원

#### 1. 서론

2008년의 화두는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발생과 극복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준비에 온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더하여 올해 초 정권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는 조각파동으로 시작해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건, 용산참사 등 시련의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울수록 적기의 올바른 정책집행은 어느 때보다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 글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첫 해 동안의 규제개혁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정부이건 처음 일 년 동안 정책추진의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책의 효과가 정책 변경 또는 시행이후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의 효과는 정책시행이후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후 나타난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개혁정책이 입안되고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첫 해 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도 그 효과를 충분히 파악 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서 목표로 설정한 규제개혁 정책을 주어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정책의 투입과 집행과정 측면을 중심으로 매년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에 규제개혁의 효과도 고려되고 있지만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어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문적으로 규제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공식적인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 평가와는 보완적 관점에서 작성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은 경제활동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그룹별로 새로운 비용부담이나 편익발생 등 상반된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합계한 사회적 순편익이 규제개혁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개혁 정책은 정부의 어느 정책보다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정책의 평가는 이러한 규제개혁 효과에 근거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평가에서는 따라서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으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 정책의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을 설명한다. 둘째, 지난 일 년 동안 추진되어 온 규제개혁 과제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 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셋째, 이렇게 추진된 과제들의 성과가 무엇인지 정책목표, 과제 이행을 등과 함께 과제가 완수되었을 때 실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비추어 평가한다. 넷째,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규제개혁의 전반적 성과와 개선해야 할 점, 향후 규제개혁 정책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살펴본다.

####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 가. 규제개혁 평가대상

규제는 규제기관, 규제수단, 그리고 규제정책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규제개혁 또한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개혁으로 이루어진다.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개혁에 대한 평가가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기관은 규제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규제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 감독역량 등에 따라 규제 개혁이 달라질 수 있다. 규제수단은 규제집행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법적 형태, 제재수단 등 동원 가능한 다양한 제도형태로 이루어진다. 규제개혁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규제정책은 정책적 목적 달성 또는 사회적 공익의 실현을 위해 규제를 신설강화, 완화폐지 또는 합리화(재규제)하는 정부정책으로,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제개혁은 이러한 규제 정책이 피규제자에게 가능한 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 왜곡효과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직접적인 평가대상 규제개혁 과제는 올해 완화하거나 합리화하기로 입안한 과제들이며, 규제개혁 기관과 규제개혁 수단, 그리고 규제개혁 정책 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보다 큰 사회적 순편익을 증가시켰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 나. 규제개혁 평가방법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시간적으로는 정책집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평가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평가로 나눌 수 있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 목표중심, 과정중심, 결과중심의 평가, 그리고 정책의 집행단계에 따라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 또는 결과평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Nachmias, 1979; McNamara, 1998; Ruegg & Feller, 2003). 평가의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규제개혁 평가는 사후적 평가로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목표나 결과 중심의 평가에 해당한다. OECD(2004)에서는 규제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순응테스트(compliance test), 성과테스트(performance test), 기능테스트(function test) 등의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도 정책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논리모형(logic model)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논리모형은 공공 정책이나 R&D 사업의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평가모형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투입,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간의 논리적 연계를 보여준다. 정부의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 평가를 예를 들어 논리모형에 따라 검토해보자. 먼저 정책의 목표는 공공의 건강증진(public health improvement)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입요소는 전염병 연구에 대해 배정된 예산이며, 사업의 단기운영 산출(output)은 보고서, 발표, 워크숍, 테스트결과 등이 된다. 사업의 중기운영 산출은 임상 실험을 통과한 백신 원형과 치료법, 사업의 장기운영 결과(outcome)는 병원에서 진료에 활용되는 백신과 치료법이 된다. 사회적인 장기적 영향(impact)은 발병률 감소, 높은 생존율, 사망률 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을 지표로 만들어 종합적인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 2008년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기에는 자료나 시간 제약상 불가능하고, 다만 각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주어진 정책의 최상위 목표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세부과제들의 추진 결과(outcome) 또는 파급효과(impact)를 유추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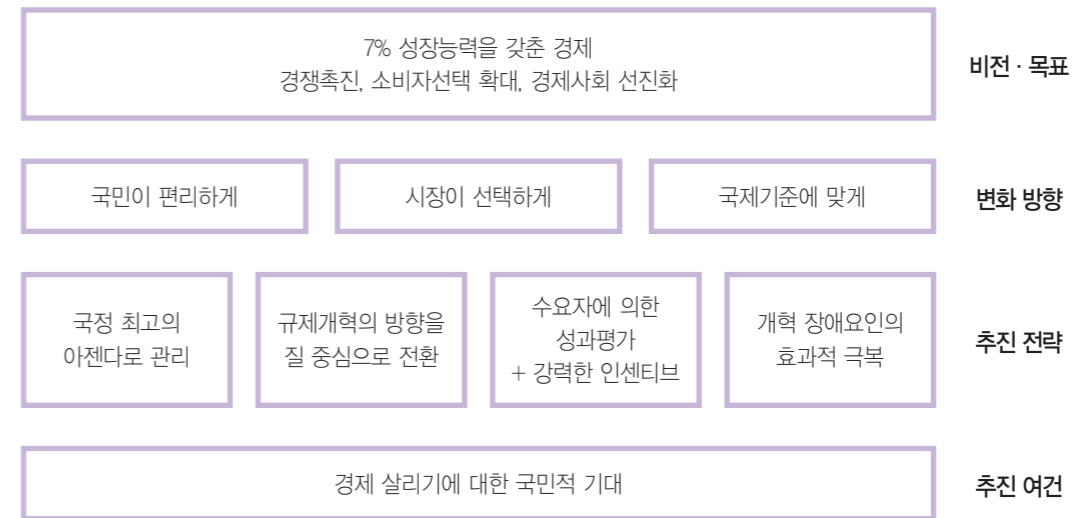
### 3. 2008년 규제개혁 과제 추진내용 및 평가

#### 가. 규제개혁 목표 및 방향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편의, 시장중심, 국제기준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의 목표를 '5년 후 국가경쟁력 순위 15위, 잠재성장률 6~7% 달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전략을 ①시스템개혁과 현장중심의 애로개선 병행, ②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정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 ③규제받는 수요자입장에서 품질위주 규제개혁 추진, ④Global Standard에 맞게 추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이명박 정부 국정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국정전략의 하나인 '규제의 대폭 감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2008년 규제개혁 비전 및 추진방향



#### 나.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의 개혁을 담당하고, 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부처의 규제개혁 과제를 관리하며 규제관련 제도를 운영한다. 개별 부처는 통상적인 부처단위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기존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이전에 비해 국가경쟁력 강화관점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제개혁 정책이 중요 기존규제 개혁과 신설강화 규제 및 규제개혁 과제관리를 규제개혁 위원회가 맡음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일원화된 규제개혁추진체계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설 규제개혁 총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었다.

다. 규제개혁 과제 추진실적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위계구조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기본 틀에 나타난 규제개혁 관련 국정과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은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4개 전략 중 규제완화 전략에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완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① 규제제도와 법령 선진화, ② 금융규제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 육성, ③ 방송통신사업 규제완화, ④ 독과점 폐해방지, ⑤ 지방·수도권 상생발전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위해 여기 제시된 규제관련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있어 최상위 과제로 중점과제나 일반과제들이 여기 5개 범주 과제의 하위과제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기본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정과제 및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정전략 :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 국정과제 : 규제제도와 법령 선진화

(1) 전략적 규제개혁

- ▶ 규제개혁 시스템 선진화
  - 규제절차 매뉴얼 도입 08상
  -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 08상
  -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08하
  - 규제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위한 정보화 추진 09하
- ▶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09상
  -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법제 도입 등

(2) 국민생활 불편 각종 규제개선

-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09상
- ▶ 매년 정기평가 실시 12하
-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연1회) 12하
- ▶ 국민불편법령 폐쇄 12하
- ▶ 국민불편·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12하
  - 국토부,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환경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 09상
  - 각 부처 행정규칙 수시정비 12하

○ 국정과제 : 금융규제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 육성

(1)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 ▶ 공적 연기금과 PEF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08하
-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08하
- ▶ 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지수회사 설립 08하
- ▶ 산업은행 민영화 매각대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정책금융기관 설립 08하

(2)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 ▶ 보험·금융투자지수회사 규제 합리화(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08하
- ▶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08하

- (3)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 ▶ RP시장 활성화 관련제도 개선 08하
  - ▶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08하
- 국정과제 : 방송통신사업 규제완화
  - ▶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09상
    -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기준 완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완화 09상
    - 대기업 진입규제 및 SO간 겸영규제 완화, 미디어 교차소유 확대 검토 등
  - ▶ 수요자 중심으로 전파이용규제 완화
    - 위험정도가 낮은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절차 간소화 09하
    - 통신사업자용 무선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축소 09하
  - ▶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 개선방안 마련 09하
- ▷ 국정과제 : 독과점 폐해방지
  - ▶ 출충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08하
  - ▶ 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감시·제재 강화 12하
  -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방안 검토 12하
- 국정과제 :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위한 규제완화
  - (1) 수도권 규제 합리화
    - ▶ 국가경쟁력 강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단기 규제정비 09상
    - ▶ 수도권 관리방식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12하
  - (2)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 ▶ 산지의 계획적 이용 및 활용도 제고위해 준보전산지 10만 ha 확대 공급 08하
- ▶ 용도지역·지구 단순화 추진 09상
  - 토지이용규제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규제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 ▶ 각종 개발행위시 계획수립기준 완화 및 절차간소화 09상
  -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2중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탄력화 09상
- ▶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 연접개발 규제 완화 09하
- ▶ 농지전용, 소유 및 거래 규제 완화 08하

(3)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그러나 작년 8월에 발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차회의 보고자료인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경위에 보고된 과제는 다음과 같은 13개 과제라고 한다.

[표 1] 상반기 규제개혁 평가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과제

회의차수	안건명	후속조치 과제수
1차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14개
2차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9개
	규제공무원 태도개선	4개
	창업절차 간소화	17개
	글로벌 고급인력유치 확대	9개
3차	산업단지 공급가격인하	11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20개
4차	금융규제 개혁	15개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22개
5차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 방안	18개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2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	10개
	기업현장 애로 개선	45개

또한 국경위의 주요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시스템 개혁'과 '현장애로의 신속한 개선'으로 보고하고 있다. 같은 시기 총리실에서 발표한 '2008년도 규제개혁 6개월 점검평가'에서

소개한 주요 규제개혁 사례는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생활 편의제고’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국정과제의 내용과 잘 맞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중점관리과제나 일반과제 등 규제개혁 추진과제가 국정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시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우선순위 부여에 따른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국무총리실에서 보고한 개혁과제들에 이러한 관련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표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상반기 주요 개혁내용

전방위적 시스템 개혁	투자환경개선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개별입지 공급확대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기업가 정신 고양	창업절차 간소화 행정형벌의 합리화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공무원 행태·의식 전환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정립 진입규제 개선 영업규제 개선 감독시스템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애로의 신속한 개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Global기준으로 개선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총리실에서 2008년 10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9월말까지 1,583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들 중 경제단체 건의과제가 640건 (40%)이고, 지자체 건의과제는 150여건(9%)을 차지했다. 9월말까지 437건이 조치 완료되어 전체 과제의 27.6%가 완료되었으나 연말까지는 1,000여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과제는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과제이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총리실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빠르고 큰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였다. 산업단지 규제개선, 창업절차 개선, 외국인 투자촉진, 출생제 폐지 등

시급하고 빠른 시간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였으며, 국토이용규제 합리화 등 핵심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이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둘째,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서민보호를 위한 과제도 최대한 조기 추진하였다.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축사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 경감 등 자영업자 및 농어민 경제활동을 우선 지원하였다.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조건 완화 등 서민생활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군 미필자등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 의무 폐지,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제도 개선 등도 최대한 조기 추진하였다. 셋째, 규제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금융규제완화에 상응하여 금융건전성 등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은행의 신BIS기준 조기 정착,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로 전환, 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율 제도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비하였다.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식품, 환경, 보건의료 등의 규제의 경우 규제완화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입지 규제 적정성 연구 등 전문 연구용역 수행, 시범사업 실시 및 운영지침 배포 등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라. 규제개혁 과제 평가

참여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에는 소위 말하는 ‘정책성 규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전의 규제개혁 과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추진과정도 총리실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총리실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3] 참여정부와 비교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특징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1. 국정철학	○ 정부 역할 강조 - 공무원 수 증가 - 조세부담률 증가 * 20.4%('03) → 22.7%('07)	○ 작은 정부·큰 시장 - 정부조직 축소 - 감세 병행 추진 * 5년간 23조원 감세 계획 발표(9.1일)
2. 정책우선순위	○ 내각 또는 부처 차원에서 규제개혁 추진	○ 국정최고 아젠다 - 대통령이 매월 국경위 회의를 통하여 직접 점검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3. 규제개혁 대상·범위	○ 형평성 및 이념 중시 - 규제개혁대상에서 일정부분을 원칙적으로 배제	○ 실용주의와 경제논리 우선 - 모든 규제를 대상 * 출중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4. 추진방식	○ 개별 법령정비 위주 - 문제된 법령 규정을 하나하나 별개로 개정	○ 시스템적 접근 중시 - 법령정비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예산·IT 등 조치 병행
5. 평가방식	○ 공급자 관점의 평가 - 공무원중심의 평가단 운영 - 과제 발굴율·이행율 등 개별 법령정비 진도를 중시	○ 수요자 관점의 평가 - 민간 위주의 평가단 구성 - 민간건의 과제 수용율·피규제자 만족도 중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규제개혁의 대상과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과 추진방식에서 개별 법령이나 규제단위의 정비에서 업무프로세스나 예산조치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미 주요 OECD 국가들에서는 규제개혁과 예산을 연계시켜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규제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항상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규제개혁 업무에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처내에서 중요 부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08년 8월에 기업인, 경제인, 경제학자 등 약 1,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대해 보통이상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3.2%로 과반수를 넘었다. 향후 규제개혁 노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금융세제 23.7%, 공정거래?대기업 15.7%, 공장설립·토지 15.5%, 인력·노동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경위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이 46.7%로 낮게 나타난 반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나 규제개혁 결과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4. 결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추진실적과 특성을 보면 정책적 성역없이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은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개혁과 관련된 국정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과제가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과제이며 법 개정 등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수의 국정과제들이 대기업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같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제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개혁의 범위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기존규제 개혁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사실상 이원화되었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도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국경위가 담당하지 않는 일반 규제개혁 과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규제개혁 정책 입안과 관리가 이원화된 구조이며 그에 따른 평가 주체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위기극복은 더욱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항상 기득권의 재분배를 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일수록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심화된다면 규제개혁의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요인은 개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을 감소 시킨다. 어떤 수준의 규제개혁이 우리에게 최적인지, 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도출이 장기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은 이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 제3절 |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계획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 (Tel. 2100-2275, woniroh@pmo.go.kr)

### 1. 2009년 규제개혁 추진여건

2009년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경기침체 및 국민고통이 가중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기대감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내수 부진과 투자악화 등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빠른 속도의 규제 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경기 불황이 본격화 되면서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게 더욱 힘겨운 한 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위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

미래대비 신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되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확충과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요구될 것이다.

### 2.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하되 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범정부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도 면밀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대비하여 신 성장산업 육성에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할 인프라도 정비·확충할 계획이다. 규제 일몰제 도입을 강화하고,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철저한 규제등록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건의에 대한 검토 강화, 국민제안 공모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집행 현장의 체감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 3.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

국무총리실은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2008년 12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기관별 2009년도 규제 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 12일 총리실에 제출하였다. 총리실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09년 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와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규제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09년에 정비할 1,002개 규제개혁과제를 2009년 1월 22일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회 합동보고회에서 확정하였다.

1,002개 규제개혁과제는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과제가 73%를 차지하고,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197개), 금융위원회(130개), 보건복지가족부(97개), 환경부(86개)의 규제개혁과제가 과반수(51%)를 차지한다.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구분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지원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동력 지원	국민생활 편의 제고
전체과제 (1,002개)	391개 (39%)	343개 (34%)	40개 (4%)	228개 (23%)

시기별로는 연내 완료대상 과제 중 63%(607개)를 상반기 중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시기별 규제개혁과제 추진계획]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
전체과제 (1,002개)	173개 (18%)	434개 (45%)	113개 (12%)	239개 (25%)	43개 (-)

(2) 신설·강화 규제 품질제고

'09년에는 국정과제 등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법령안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규제심사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규제심사 사전협의 활성화를 통해 규제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위기 극복 법안,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령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할 계획이며, 신성장산업(녹색기술산업, 융합신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규제대안을 마련하고, 규제수준의 적정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분석 강화를 통해 부담이 적고 실행이 용이한 규제를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조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 내 입장을 조율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하위 법령 제·개정시 엄격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우회적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 억제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 인프라 정비·확충

규제일몰제를 신설·강화 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까지 확대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 하여 미등록 규제를 일제 등록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등록, 규제개혁과제 관리, 규제심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4)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시키고 수요자 및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제안 공모를 실시('09.1.23~2.27)하고, 경제단체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 현장의 규제개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위법령상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규제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지자체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기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처 홈페이지의「규제개혁코너」에 부처별 규제개혁 계획과 과제를 게시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을 공개 하며, 규제개혁 슬로건(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추진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진성과에 대해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특별기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실천전략

행정조사 준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실천전략

안 총 영(규제개혁위원회 위원/중앙대 석좌 교수 및 Kotra 외국인투자 ombudsman)

### 1. 십자로에 선 한국경제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국민 공약아래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선진국 진입을 최우선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세계일류화를 추진하려는 차제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발한 세계적 대공황 속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8퍼센트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수년 동안 4퍼센트 중반대로 내려앉았다.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을 반전시키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경제발전 시스템을 구축 할 때 경제의 선진화가 가능하다.

올해 세계경제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경제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 앉고, 지난 20여 년 동안 년 평균 10%이상의 성장을 이룩한 고도성장의 대명사 중국경제마저 6%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경제는 GDP성장률의 90퍼센트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축소는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대외적 악재를 극복하여 한국경제가 선진국 진입을 달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에 구조적으로 함몰되어 중진국 신드롬 속에 갇혀 버리고 마느냐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를 갓 넘어선 시점에서 지난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 대신에 분배우선의 좌파적 정책을 추구한 결과 저성장의 뒷에 갇혀 결국 일자리는 축소되고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전환기에 일류 국가 건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시대적 소명이며,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규제개혁과 개혁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 2. 규제개혁이 경제희생의 열쇠

잠재성장률을 신장하고 세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제성장률은 자본스톡과 노동스톡의 증가율,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율에서 결정된다. 이들 3대 요소의 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경제의 성장률과 효율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OECD는 규제개혁과 완화를 경제선진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설정하고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함께 국제적 동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OECD에 의한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 권익을 신장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경쟁요인을 확충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룩하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행동하는 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규개혁위)에 높은 임무 부여를 하고 있다. 규개혁위는 경제사회시스템의 효율화와 국제적 모범수준으로 이행을 위하여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의 재정립과 규제제도 개선,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과 신설규제 및 기존규제의 강화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심의기구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를 출범시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기존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일류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급등, 추가하락, 400만에 이르는 고실업 문제를 안고 있다. 11년 전 외환 위기는 우리경제의 부채의존형 외형위주 성장과 금융부문의 낙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대외경제 여건은 양호하여 환란직후 우리 경제는 1998년 한 해에 417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IMF구제금융체제로부터 조기졸업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대외적으로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수출촉진을 통하여 무역흑자를 이룩하여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환율안정을 기하는 일이며, 대내적으로 내수 촉진을 통하여 소비와 투자 사이에 선순환을 이룩하여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번의 경제위기 이후 21세기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위시하여 EU와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며, NT, BT, IT가 상호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시스템도 하루 빨리 선진화의

길로 접어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혁파가 여러 부처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덩어리 규제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국경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켜 외국인 상공회의소 대표와 국내 경제단체장, 연구원장, 전문가 그룹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규제관련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을 해당 부처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부처가 전체 월례회의에서 직접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즉각적 실천력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국경위는 2008년 동안 규제철폐 및 개선조치 과정은 483개에 이르고, 이 중 118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365개는 조치가 진행 중 이다. 그리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위를 발족시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미 완료된 조치들 가운데는 산업단지 적기 공급확대, 금융 산업 선진화 방안, 창업절차 간소화, 기업가 정신 고양 등 다기한 영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규개위는 정부 각 부처의 신설규제에 대하여 집중검토,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경위와 규개위 양 기구 사이에 체계화된 지식과 지혜공유가 필요하다.

### 3. 규제개혁의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상대적으로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규제개혁을 규개위는 어떠한 원칙아래 어떠한 전략으로 추진 할 것인가? 우선 규제개혁의 기본원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가 자유화되는 네가티브리스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상위법과 하위시행령, 규칙 등과의 정합성, 일관성, 투명성을 최대로 살려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처와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과 개입이 일어나서 규제개혁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둘째, 규제혁파와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도 일선 행정부서에서 정착되는데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규제개혁 조치와 감사원의 감사방향 사이에 정합화와 함께 동시 이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의 기본방향도 징벌 위주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도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규제도 21세기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절대 필요한 규제혁파는 당장 시행하고 일몰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정부 부처가 그 동안 편법으로 그리고 행정편의 차원에서 활용한 미등록 규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때로는 부처이기주의와 부처편의주의에 의하여 추진된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미등록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불가피하게 존속되어야 할 규제는 심층적 영향평가 이후 법령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다섯째, 입법절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인 의원입법제도가 국회의원들의 당선 지역구의 지역성과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정치논리가 개입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과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규개위의 영향평가기능과 의원입법 과정 사이에 상호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두 입법절차 사이에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각종규제에 대한 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은 동태적 관점에서 상시적으로 이행되어 규제철폐의 우선 순위, 일몰의 시기, 기존규제에 대한 품질개선, 규제에 대한 국제적 비교분석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기능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경제권역화에 따라 지역 특정적 규제가 신설 혹은 존속될 경우가 있다. 전국 동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글로벌화 시대에 국경간 무역과 투자자유화는 시대적 조류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이 국제적 수준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한국이 투자 요충지로 각인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고임금, 강성노조, 고지가 등의 이유 때문에 계속 해외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 2007년도 경우 우리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2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국내로 유치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도착기준으로 73억 달러에 불과하다. 국제적 공급사슬과 생산분화(production fragmentation)현상 때문에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권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FDI의 국내 유입이 적극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여 국내외 FDI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동북아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가치를 상품화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나라를 FDI의 매력적 종착지로 만들어 역내 경제적 허브 기능을 달성하여야 한다.

## 4. 결 어

지금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한 박자 빠르게 적응하고 활용하여 일류국가 진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업의 투자활성화, 내수진흥, 수출촉진, FDI의 적극 유치 등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어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비하여 우리의 규제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미국, EU와 FTA를 발효시켜 개방형 선진통상국가 입지를 굳히고, G20 국가로서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에 우리의 역할을 고양하고 대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기는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조선, 전자, 철강,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적 정상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을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정착시키고 세계적 챔피언 기업을 만들어 국가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서 한국경제는 이제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그와 관련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의료, 교육, 문화, 관광, 회계, 비즈니스 컨설팅,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 획기적 규제효과가 있어야 한다

규개위는 앞으로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Post-Crisis) 아젠다까지 포함하여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확실하게 다지는 데 더욱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선도하여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의 등급이 수직상승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기구로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김 상 현(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I. 행정조사와 표준비용 모형

#### 제1절 행정조사와 행정부담

##### 1. 행정조사의 의의

#####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질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는 통상 행정기관이 실태파악, 정보수집, 범위반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조사에 기업이나 국민은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수인의무) 조사결과 범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검찰고발 등 관련법에 규정된 제재가 따르게 된다. 행정조사는 행정목적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검찰·경찰의 사법 조사와 다르다. 한편, 조사과정에 일반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제격리, 불량식품 수거와 같은 행정상 즉시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행정 조사는 즉시강제와 같은 긴급성이 없고, 모든 행정조사가 반드시 강제적인 것이 아닌 점 등에서 즉시 강제와 차이가 있다.

행정조사는 부처의 업무나 규제내용에 따라 그 방법이나 형태가 다종다양하다. 더욱이, 행정조사가 행정상 즉시강제 개념으로부터 독립되어 논의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행정조사의 개념이나 독자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미국에서는 행정조사를 주로 ① 기록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② 장부, 기록 및 가택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③ 증인 및 서류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 등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미국의 학계나 법조계가 행위의

형식보다는 정보수집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데 연유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행정조사 정비의 기대효과 및 행정조사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실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data)나 정보(information)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이같이 정의할 때, 행정조사의 주체는 정부부처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기관 등이 되고,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실태의 파악 혹은 규제의 이행여부 확인과 순응도 제고이다. 또한 행정조사의 근거는 개별법에서 금지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및 조사근거규정이며,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행정기관의 실행행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조사의 문제점 : 행정부담의 발생

올바른 행정조사는 조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조사가 경제사회 및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이루어지고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현행 행정조사는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사실 행정조사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수집이나 규제의 결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범위만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획조사’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은 크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종래의 조사관행은 변화 없이 답습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행정조사는 헌법에서 보장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정조사는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나 보고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조사기관인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경영외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이현, 2008).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의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행정조사 건수가 241건(06.7, 국조실)에 이르며, 기타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되는 행정조사 건수도 7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금감원이 44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부, 건교부가 각각 22건으로 많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행정조사 현황 (2006. 7월 기준)

부처명	관련법률	건수	조사유형
총 161개 법률 241건(관리감독 : 90, 위반확인 : 71, 사실확인 : 46, 실태조사 : 33, 심사)			
재정경제부	자산재평가법 등 2	2	사실확인 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법 등 4	14	실태조사 3, 관리감독 2, 사실확인 9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1	2	사실확인 : 1, 실태조사 : 1
행정자치부	온천법 1	1	사실확인 : 1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등 9	15	위반확인 : 7, 관리감독 : 3, 사실확인 : 4, 실태조사 : 1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15	17	관리감독 : 7, 위반확인 : 7, 사실확인 : 2, 실태조사 : 1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산업법 등 5	10	관리감독 : 4, 위반확인 : 6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검역법 등 6	6	관리감독 : 4, 사실확인 : 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15	22	관리감독 : 2, 위반확인 : 15, 사실확인 : 4, 실태조사 : 1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자복지기금법 등 13	14	관리감독 : 3, 위반확인 : 2, 사실확인 : 6, 실태조사 : 3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등 3	3	실태조사 : 3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택법 등 15	22	관리감독 : 15, 위반확인 : 3, 사실확인 : 1, 실태조사 : 2, 심사 : 1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9	11	관리감독 : 3, 위반확인 : 4, 실태조사 : 4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7	8	위반확인 : 6, 실태조사 : 2
금융감독위원회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14	44	관리감독 : 34, 위반확인 : 10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1	실태조사 : 1
국세청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 14	14	관리감독 : 1, 위반확인 : 2, 사실확인 : 11
관세청	관세법 1	2	사실확인 : 1, 위반확인 : 1
통계청	통계법 1	1	실태조사 : 1
병무청	병역법 1	3	관리감독 : 2, 사실확인 :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1	3	사실확인 : 1, 실태조사 : 1, 관리감독 : 1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법 등 3	4	위반확인 : 2, 실태조사 : 2
산림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 1	1	위반확인 :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3	15	관리감독 : 8, 실태조사 :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6	6	관리감독 : 1, 위반확인 : 5

자료 : 국무조정실(2007), 행정조사법 국회 통과 보도자료(4.27)

## 2. 행정부담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행정비용을 개념 정의하는 것은 사실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인지, 그리고 비용 발생의 원인에 따라 개념상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행정비용(부담)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정비용(부담)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비용과 행정부담은 행정적 규제의 결과로써, 기업들이 공공 부분이나 제3자에게 전형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중점이 된다. 공공부문이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의무들이 정보제공의무라고 일컬어진다. 정보제공의무는 어떠한 기업이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이나 규제의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업들이 법률에 반하여 작성하지 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말한다.

행정적 비용(administrative cost)은 기업들이 행정적 규제를 통해 지켜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따르는 과정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행정적 활동에 대한 비용이라고 한다. 행정적 규제는 법률을 충족하는 모든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국 법률을 충족하는 국제적 지시나 규칙에 적용되며, 법률이나 행정적 명령의 형태로 자국 법률을 충족하는 직접적인 국제적 규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국제 규제들은 측정되지 않는다. 이 때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은 기업들이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담하는 행정적 비용의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 AB)은 크게 규제에 따른 협의의 행정부담과 광의의 행정부담 그리고 직접적 부담과 간접적 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행정부담은 정부규제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는 정보를 확보하거나 준비할 의무로서, 공공당국 또는 제3자의 정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에 해당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이 보고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부담 개념정의는 통상적으로 행정부담과 관련된 비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행정부담은 정보제공 이상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담은 정보의 생산비용은 포함하고 있지만, 정보의 수집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비용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표 2] 행정비용의 개념

종 류	범 위
1. 협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순응비용만 포함
2. 실무적 정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순응비용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규제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포함
3. 기업의 관점	기업의 입장에서 본 행정부담의 정의는 정보수집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

자료 : OECD, (2005). A Review of the Standard Cost Model, Paris, p.5

먼저 협의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정의는 일관되고 구체화되어 실제 운영상 효용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이 정의의 주된 한계점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행정 부담’이라는 용어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정의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며, 행정부담 자체가 아닌 행정부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정의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보제공의무에 드는 순응비용을 행정비용으로 정의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에 부과된 정보제공의무에 드는 비용이 종종 평가절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의 비용 계산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의가 담고 있는 내용의 폭을 감안하면, 행정부담 자체가 아닌 행정부담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의무부담(Information Obligation Burdens)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도 있다.

두 번째 정의인 실무적 정의는 이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정의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두 번째 정의는 협의의 정의가 기업이 행정 부담으로써 고려하는 많은 요소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우리가 위에서 정보제공의무부담이라 부른 것을 분명히 넘어선 반면에 기업가가 행정 부담으로 여기는 모든 요소들을 모두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 행정부담의 정의는 구체화된 정의가 아니며 따라서 분석적 용도나 실제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파악한 행정부담의 전체를 포함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행정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비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정의는 실용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주관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너무 광범위한 정의는 행정부담연구 및 사례의 벤치마킹 측면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김신, 2005; 안혁근, 2007).

정부 당국의 규제 내지는 행정조사로 인한 민간기업의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은 크게

보아 규제 내지 행정조사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혁신성,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부담과, 규제 내지 행정조사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구입과 설치비용과 같은 자본 비용, 그리고 행정적 규제 내지 행정조사를 따르기 위해 문서들을 작성, 보고, 신고하는데 관련한 인력, 시간, 경비 등과 같은 행정적 비용을 지칭하는 직접적 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적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행정적 부담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부담이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부의 제반 규제 내지 행정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 제공 의무(information obligation), 예를 들면 규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문서작성과 당국에의 보고 및 신고 등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비용 상의 지출을 의미한다(이종한 외, 2006)

그런데 이러한 행정부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부담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담이란 단순한 정보제공의무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 정보제공의무란 정보를 확보하거나 준비할 의무로, 정부 당국이나 제3자의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생산하는 의무를 지칭한다.

## 제2절 행정부담의 측정방법

### 1. 표준비용 모형의 의의

#### 1) 표준비용측정(SCM)의 목표

정부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비용에 대한 표준비용측정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주어진 시간에 기업에 대한 총체적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며 둘째, 정부 차원에서 기업과 관련된 법규 개정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셋째, 사전적 방법에 의해서, 규제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경우에 기업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며 넷째, SCM에 의해 측정된 자료는 특정 규제에 의해 기업에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행정적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 이용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들 간의 투입 시간과 재원의 소요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 행정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전달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2) 정의와 개념 설명

[그림 1] 표준비용 모형의 구조



자료 :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 : Measuring and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for businesses』 p.9.; 이종한(2006). p. 60; 중소기업연구원(2007), p. 10.

SCM에 의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법률, 행정명령, 그리고 측정 가능한 다른 형태의 규제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① 행정적 부담 vs 행정적 비용

행정적 비용은 기업들이 행정적 규제를 통해 지켜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따르는 과정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행정적 활동에 대한 비용이며 행정적 부담은 기업들이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담하는 행정적 비용의 부분이다. 기업 행정은 기업의 모든 사무 행정에 속하는 모든 행정적 활동들, 즉 법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나, 측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적 업무를 의미한다.

#### ②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

SCM 측정과 관련된 기본적 개념들은 행정적 규제의 결과로써, 기업들이 공공 부분이나 제3자에게

전형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중점이 된다. 공공부문이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의무들이 정보제공의무라고 일컬어진다. 정보제공의무는 어떠한 기업이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이나 규제의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업들이 법률에 반하여 작성하지 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말한다.

③ 자료 요구(data requirement)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는 기업들이 정보제공의무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해야만 하는 다른 범위의 정보들로 구성된다. 이를 자료요구라 한다.

④ 행정적 활동

기업들에게 주어진 자료요구의 조건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한 시간과 자원의 소비는 각각의 기업들의 행정적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⑤ 비용변수

[표 3] 비용변수

내적 비용변수
시간
시간당 임금(비용)
외적 비용변수
시간
시간당 임금(비용)
취득물(Acquisitions)

자료 : 이종환(2006), p. 66.

- 가격(Price) : 행정적 활동에 대한 가격은 내적 활동에 대한 시간당 임금과 간접경비, 외적 활동에 대한 시간당 경비로 구성됨
  - 시간(Time) : 행정적 활동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 양(Quantity) : 각 년도에 행정적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빈도수와 행정적 활동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모집단 크기로 구성됨.
- 즉, 각 행정적 활동 당 비용(또는 자료요구 당 비용) = 가격×시간×양(=모집단수×빈도)

- 취득물(Acquisitions) : 취득물은 기업들이 특정한 정보제공의무/자료요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취득물의 가치는 예상되는 구입물의 년도 당 평균 비용을 말한다. 이 가치는 연간비용과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크기의 곱으로 계산한다.

3) SCM 측정 대상

SCM 측정에서 어떠한 값은 민간 기업들이 미래나 현재의 사업과 관련된 자국의 법률이나 행정적 명령을 따를 때 드는 행정적 비용으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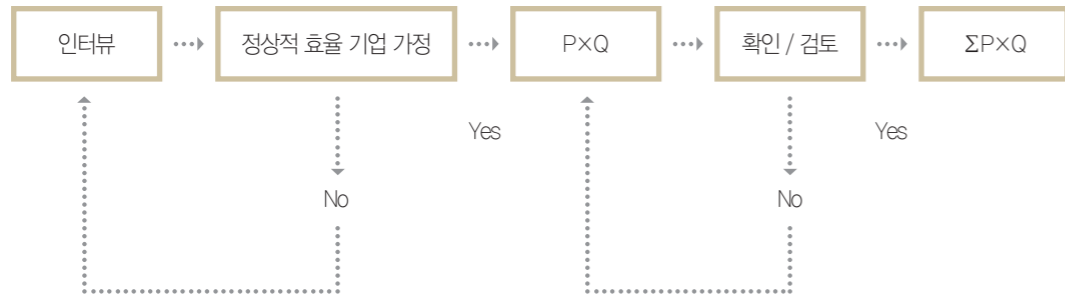
4) 표준비용 모형의 구성 및 절차

SCM은 다음의 5가지 단계로 구성된다(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Administrative Burdens, 2004). 첫 번째는 규제를 지도화하는 단계(mapping of regulation)이다. SCM은 규제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측정을 시작할 때, 고유의 정보제공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지도화된다. 이러한 작업은 되도록이면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을 식별(Identifying businesses)한다. 규제에 의해 영향 받을 기업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국가통계와 등기를 사용해서 수행한다. 기업들 내부에서도 세분화 작업이 이뤄진다(예를 들어, 규모별과 업종별).

세 번째 단계는 대상 기업과의 인터뷰(interviewing businesses)이다. 정보 제공 의무에 순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정보 제공 의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정보 혹은 메시지(회사이름, 주소 및 지불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확보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문제의 규제나 정보 요구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인터뷰를 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인터뷰는 각 부문에서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정확히 구분해 내리는 목적을 갖고 행해진다.

[그림 2] 설문지 평가 절차



출처 :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Administrative Burdens(2004), p. 24.

네 번째 과정은 부담의 산출(calculation of burdens)이다. 각 메시지는 매해마다 일정한 회수에 걸쳐 회사들이 전달하여야 한다 - 이것은 SCM에서 Q(메시지가 매해 전달되는 회수)를 구성한다. 이 메시지가 전달 가능하려면 기업들은 일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각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것은 SCM에서 행정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인 P에 해당된다. 임금이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행정 업무를 이행하던지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지에 따라 내부적 혹은 외부적이 될 수 있다. 법이 규제하고 있는 각 정보 제공의 의무에 순응했을 때, P와 Q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된다. 국가적 수준의 비용은  $\Sigma P \times Q$ 로써 표현될 수 있다. P와 Q에 관한 정보는 국가적 차원의 통계나 등기 혹은 사회조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마지막은 결과보고의 단계(reporting the results)다. 결과를 보고할 때, 부담의 계량화는 행정업무를 처음에 그 다음 메시지, 정보제공 그리고 최종적으로 규제 순으로 합산 된다. 이러한 세밀한 정보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계획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김신, 2005)

## 2. 본 연구의 특징

### 1) 정보의무 개념의 상이성

기존연구에서의 행정부담은 규제목록으로부터 8가지 유형의 정보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즉 ① 인허가 신청, ② 신고, ③ 등록, ④ 보고, ⑤ 조사 및 감사, ⑥ 서류비치 및 갱신, ⑦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⑧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담이라 하더라도 행정작용의 목적에 따라서 상이하다. 행정조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data)나 정보(information)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작용”이다. 본 연구에서의 행정부담은 행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실태의 파악 혹은 규제의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조사 객체의 행정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8가지 유형의 정보의무 중 ④ 보고, ⑤ 조사 및 감사, ⑥ 서류 비치 및 갱신 등에 한정된다.

### 2) 유형별 감축효과 제시

기존연구는 8가지 정보의무로 인한 행정비용 계산하였고 정비유형별 효과 제시를 위한 전단계적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 행정부담 측정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을 측정함과 동시에 이후 행정조사 정비로 인한 감축효과를 측정하며 정비유형을 고려한 행정비용 및 행정비용 감축효과를 계산·제시한다.



## II. 행정조사 정비로 인한 감축효과 측정

### 제1절 행정조사 및 정보의무 확인

#### 1. 행정조사의 확인

정비대상 행정작용이 행정조사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data)나 정보(information)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작용”이다. 정보제공의무가 수반되는 행정처분 내지 의무이행확보 수단 자체가 행정조사는 아니다. 행정조사의 주체는 정부부처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기관 등이 되고,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실태의 파악 혹은 규제의 이행여부 확인과 순응도 제고이다. 또한 행정조사의 근거는 개별법에서 금지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및 조사근거규정이다.

#### 2. 행정조사로 인한 정보의무와 자료요구 분석

일반적으로 정보의무는 행정부담 측정의 가장 기본단위로서 행정기관이 법령 등에 의거하여 대상 기업에게 특정정보를 서면·전산·기타 다른 형태로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 갱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외에 민간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중 행정조사로 인한 정보의무는 행정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3. 정보의무 이행을 위한 행정활동 확인

표준비용모형에서는 통상적인 기업이 각각의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인터뷰 등을 통해 계산한 뒤 총 행정부담을 산출하며, 이 때 행정활동을 16가지로 분류한다. 행정부담측정 매뉴얼에서는 측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영국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별 행정조사로 인한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및 이행절차에 따라 행정활동 유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표 4] 행정활동의 유형

- 정보의무의 속지
- 필요한 정보검색과 수집 및 평가
- 필요한 수치의 계산, 검토 및 수정
- 정보 보고 (보고서작성, 복사, 서류정리, 배포, 자료제출 포함)
- 결산 및 비용지불 : 세금, 요금 등의 지불
- 회의 개최 (내부회의 및 외부회의)
- 정부의 조사 협조 및 시정사항 수용

자료 : 국무조정실,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2008), p. 7.

행정조사의 정비 유형은 폐지, 기준완화, 공동조사, 및 자율관리체제 전환 등 총 4가지이며, 각각에 대하여 한 가지씩의 행정조사 정비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5] 본 과제의 행정조사 정비과제 대상 (정비 유형별 각 1개)

정비 유형	주관부처	행 정 조 사 정 비 과 제
유형 1 : 폐지	환경부	○협약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대상시설 점검 - 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674개 시설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 협약기준 준수여부 조사 후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부담금 제도 폐지 - 이에 따라 초과부담금 계산 및 납부과정에서 수반되는 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이 사라짐
유형 2 : 기준완화	국가보훈처	○취업보호 실시기관 실태조사 - 18,051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던 보훈대상자 고용현황조사 대상을 신규 등록업체, 종업원 변동이 많은 업체 등으로 축소하여 실시
유형 3 : 공동조사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청 합동	○공동조사 실시 -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청에서 각각 2년 1회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해 실시하던 독성여부 등의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
유형 4 : 자율관리 체제 전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지시설 점검 - 선박 등의 해양오염 방지설비에 대한 연1회 점검을 자율점검 보고서로 대체하고 출입검사 면제

1) 유형1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납부 관련 행정조사

(1) 정비 대상 행정조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제2항,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확정된 평가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제36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협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협의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하여 초과부담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초과부담금 계산 및 납부과정에서 업체에게 배출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2)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방식 : 현장 방문조사

[표 6] 초과부담금 대상시설 세부 점검방법

- 연간조사계획 수립 → 현장방문통보서 발송 → 2인1조 현장방문 → 시료채취 → 시험분석의뢰 → ① 또는 ②로 계속
  - ① 협의기준 이내 → 종료
  - ② 협의기준 초과 → 이행조치요청 → 이행완료 보고(사업자) → 이행사항 확인 및 시료채취 → 기준이내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계산(사업자는 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제출 필요)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 대기자동측정망이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 자동측정망 측정결과 송부(환경관리공단 → 관할 지방청, 상·하반기 2회) → 협의기준초과 여부 검토 → ① 또는 ②로 계속
  - ① 협의기준 이내 → 종료
  - ② 협의기준 초과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계산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3) 행정조사 정비로 인한 변동사항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 폐지(시행령 개정 '08.12, 현재 법제처 심사 중)되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개정되었으며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대한 특례(제36조) 삭제되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지자체의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점검 실시

2) 유형2 : 취업보호 실시기관 실태조사서 제출 의무

(1) 정비대상 행정조사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과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008년도 주요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기업체, 사립학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고용현황·채용 계획 등을 파악하며, 이러한 실태파악 과정에서 대상 업체는 당해 행정기관에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방식 : 서면조사 원칙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조사 또는 공부 등을 통한 간접조사 병행한다. 기업체 및 사립학교,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필수 조사대상 이외에는 기관별 조사 대상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실태조사 서식, 작성요령, 제출협조 공문 등을 발송한다.

[그림 3] 업체(사립학교) 등 실태조사서 (앞면 양식)

*지(방)청		* 일련번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 업체구분		
(1) 기본사항	①업종구분		②그룹구분		③업체명				□본사 □지사			
					④대표자		설립일자		년 월 일			
	⑤주소				⑥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상장회사여부		주생산 또는 영업종목				
(2) 기업체	직원 구성	합계	①사무	②기술	③생산	④경비	⑤노무	⑥영업	⑦서비스	⑧기타	⑨고용비율 (%)	⑩법정인원 (명)
	취업보호대상자 고용	합계	①사무	②기술	③생산	④경비	⑤노무	⑥영업	⑦서비스	⑧기타	미고용인원 (명)	고용률 (%)
(3) 사립학교	직원 구성	합계	①사무 (일반)	②기술 (기능)	③생산	④경비	⑤노무	⑥영업	⑦서비스	⑧기타	⑨고용비율 10%	⑩법정인원 (명)
	취업보호대상자 고용	합계	①사무	②기술	③생산	④경비	⑤노무	⑥영업	⑦서비스	⑧기타	미고용인원 (명)	고용률 (%)
(4) 계대군인 경력인정		1. 의무별 2. 학사관 3. 장교 4. 전부인정 0. 불인정					1. 100%인정 2. 30%이상 3. 30%미만 4. 불인정(사유: )					

(3) 행정조사 정비로 인한 변동사항

20인 이상 비제조업 및 2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립학교, 국가기관 등 모든 기관이 실태조사서 제출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2008년 상반기 업무지침 개정으로 신규 등록업체, 취업 선호업체, 고용율 50% 이하인 500인 이상 업체 등으로 대상기업 축소, 이에 따라 대상업체수가 18,051개에서 10,900개로 약 7,800개 감소하였다.

또한 조사주기를 매년 상반기 각 1회씩 실시하던 것을 상반기 1회로 완화하였다.

3) 유형3 :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의약품등 실태조사

(1) 정비대상 행정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농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에서는 각각 약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비임상시험기관의 시설 및 운영 실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 등에 대해 2년 1회 점검하였다. 비임상시험기관의 경우 식약청(16개 기관), 환경부('08.4기준 11개 기관), 농수산식품부('08.4기준 8개 기관)으로부터 각각 행정조사를 받는다. 이 중 3기관 중복은 6개 / 2기관 중복은 1개(환경부, 농수산식품부)의 경우가 있다.

[표 7] 중복검사 현황

중복 유형	건수	관련 부처
3개 부처 중복	6건	식약청,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2개 부처 중복	1건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2)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방식 및 절차 : 현지방문조사

현지평가는 일반적으로 개시회의, 자료요청, 시설점검, 시험감사, 종결회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내용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별표 3]의 III. 사후평가 중 2.1 주요 점검사항이다.

[표 8] 사후평가 시 주요 점검사항

2.1 주요 점검사항

- (1) 시험에 참여한 시험책임자 및 관련자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들의 훈련실적 및 업무경험, 숙련도 등 개인기록
- (2)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인원확보여부.
- (3) 시험에 사용된 특수장비나 기구의 각각의 항목, 장비에 대한 서비스기록, 유지상태 및 검량선 등
- (4) 검체의 안정성, 검체조성 및 분석, 사료의 분석과 관련된 기록
- (5) 시험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업무량과 실제 시험 투입된 업무비교
- (6) 아래의 서류에 관한 사항
  - 1) 시험계획서
  - 2) 시험수행 시 사용된 표준작업수순서
  - 3) 공정일지, 실험노트북, 파일, 작업표, 컴퓨터 저장 데이터 출력지 등
  - 4) 최종 보고서
- (7) 실험동물이 사용된 시험일 경우, 평가위원은 실험동물 일정비율에 대해 시험기관에 도착할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해보아야 하며 특히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야 한다.
  - 1) 동물체중, 음식/수분 섭취, 복용량 조성과 투여 등
  - 2) 일반관찰
  - 3) 임상 화학
  - 4) 해부학적 소견과 병리학
- (8) 시험기관지정시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3) 행정조사 정비로 인한 변동사항

식약청의 의약품등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약사법),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비임상시험기관 정기실태조사(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비임상시험기관 정기실태조사(농약관리법) 등에 대하여 08년 상반기부터 공동조사가 이루어진다.

4) 유형4 : 해양오염 방지시설 점검을 위한 선박 출입검사

(1) 정비대상 행정조사

해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장비 등을 점검, 확인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보고)에 의한다.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선박급유업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및 폐기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선박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연료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 폐기물 해양배출업·해양오염방제업·유청정소업을 영위하는 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보고 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방식 및 절차 : 현지방문조사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해양환경감시원이 등록선박 약 97,000척에 대하여 해경서별 지역실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별 연1회 실시하고, 출입 검사,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각종 기록부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3) 행정조사 정비로 인한 변동사항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한 선박 및 해양시설은 자율적으로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점검 후 연 1회 자율 점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출입검사는 면제한다. 08년 현재 332개 업체가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한다.

## 제2절 비용변수 확인 및 조사준비/실시

행정조사의 정비로 통한 행정부담 감축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 정비 전후로 나타나는 수량변수와 가격변수 등 비용변수의 변화를 계산과정에 반영하고 해야 한다. 비용변수의 변화는 크게 수량변수만 변화하는 경우, 가격변수만 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수량변수와 가격변수 모두 변화하는 경우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변수의 변화양상은 행정조사 정비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비되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량변수와 가격변수의 변화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비용변수 확인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로 인한 정태적인 행정부담 측정을 바탕으로 행정조사 정비 이후에 기대되는 감축효과라는 동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정비 전후로 수량변수와 가격변수 등 비용변수의 변화를 계산과정에 반영하였다.

비용변수의 변화는 크게 수량변수만 변화하는 경우, 가격변수만 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수량변수와 가격변수 모두 변화하는 경우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변수의 변화양상은 행정조사 정비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비되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량변수와 가격변수의 변화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4가지 행정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 1 (초과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조사)의 경우, 폐지 이후에는 대상 업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수량변수의 변화가 발생함(수량변수가 폐지 이후 0이 되므로 가격변수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음)
- 유형 2 (취업보호기관 실태조사)의 경우, 기준완화 이후 대상업체 및 조사 횟수가 축소되므로

수량변수의 변화는 발생하지만, 기준완화 이후에도 동 행정조사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므로 가격변수에는 변화가 없음.

- 유형 3 (비임상시험기관 독성검사)의 경우, 공동조사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별 비임상시험 기관이 받는 조사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수량변수의 변화는 발생하지만, 공동조사 이후에도 동 행정조사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므로 가격변수에는 변화가 없음.
- 유형 4 (선박출입검사)의 경우, 자율관리 체제로의 전환은 동 행정조사의 대상(선박)의 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의무이행에 따른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격변수의 변화를 가져옴.

[표 9] 유형별 비용변수의 변화 가능성

구분	유형1 (폐지)	유형2 (기준완화)	유형3 (공동조사)	유형4 (자율관리)
수량변수 변화	○	○	○	×
가격변수 변화	-	×	×	○

### 1) 수량변수의 확인

기존연구에서는 수량변수의 확인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수량변수를 결정
- 만약 소관부처에서 대상기업과 빈도수, 연간횟수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수량변수가 1이하인 경우에는 행정부담비용의 측정대상에서 제외

[표 10] 수량변수 확인방법

- 연간 보고서 허가의 총량 수치가 있는 경우 : 동 수치를 활용
- 대상 기업수와 빈도가 있는 경우 : 두 수치를 곱하여 산출
- 지역별 평균치 등만 있는 경우 : 평균치와 지역수를 곱하여 산출
- 범주정보(예 : 1000 ~ 2000)만 있는 경우 : 범주정보를 활용하여 추정

자료 : 국무조정실 · 중소기업연구원(2007), p. 20, 국무조정실,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2008), p. 21.

본 연구에서는 소관부처로부터 4가지 유형의 행정조사 모두의 대상 모집단 목록이 제공되었고 또한 해당 행정조사의 조사주기 또한 명시적으로 사전에 정해져있어 기업수와 연간 조사 빈도를

곱하여 수량변수값을 산출 가능하였다. 추가적으로 행정조사 정비 이후의 수량변수를 확인하여 정비 전후 사이의 수량변수 변화분을 계산하고, 이후 수량변수 변화분과 가격변수 변화분을 반영하여 행정감축비용을 계산하였다

[표 11] 행정조사별 수량변수

정비 유형	행정조사명	내 용	수량변수값 (Q)
유형1 (폐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관련 행정조사	[폐지 전]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실제 납부시설 : 63개 - 조사주기 : 1년 2회	$63 \times 2 = 126$
		[폐지 후]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실제 납부시설 : 0개 - 조사주기 : 1년 0회	0
유형2 (기준완화)	취업보호실시 기관 실태조사	[기준완화 전] - 대상업체수 : 18,051개 - 조사주기 : 1년 2회	$18,051 \times 2 = 37,102$
		[기준완화 후] - 대상업체수 : 10,900개 (▽7,151개) - 조사주기 : 1년 1회	$10,900 \times 1 = 10,900$
유형3 (공동조사)	비임상시험기관 공동조사	[공동조사 전] - 피중복검사 업체수 : 7개 (3개 기관 중복 6개, 2개 기관 중복 1개) - 조사주기 : 각 조사당 2년 1회	$(3 \times 6 + 2 \times 1) / 2 = 10$
		[공동조사 후] - 피중복검사 업체수 : 0개 - 조사주기 : 각 조사당 2년 1회	0
유형4 (자율관리체제전환)	해양오염 방지시설 점검을 위한 출입검사	[자율관리체제 전환 전] - 대상업체수 : 선박 97,000여대 - 조사주기 : 연 1회 - 출입검사	$332 \times 1$
		[자율관리체제 전환 후] - 대상업체수 : 선박 97,000여대 - 조사주기 : 연 1회 - 자율관리체제에 참여한 선박은 출입검사 폐지 - 08년 현재 332개 선박이 자율관리체제에 참여	$332 \times 1$

2) 가격변수의 확인

(1) 인건비

SCM 모델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율을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여건은 모집단의 분포 특성에 따라 임금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서의 비용측정을 위해서는 설문 혹은 전화로서 직접 실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종별 임금통계 기준은 조사대상자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활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임금율은 설문 및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실측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연구원, 2007). 본 연구에서는 실측된 연봉수치를 2007년 전체 산업의 월별 평균 정상근로시간의 연간 합계치(2,060.2h=123,612min)로 나누어 계산된 단위 분당 임금율을 사용하였다.

(2) 간접경비

중소기업연구원(2006) 시범측정에서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간접비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실측을 한 바 있다. 반면 매뉴얼에서는 일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25%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간접경비를 실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설문이 복잡해져 설문의 응답률을 낮추는 등 상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매뉴얼의 방식대로 인건비의 25%를 간접비로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취득비용 및 외부용역비

기업이 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매한 비용을 계산해야 하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비용도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등의 오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획득된 설문지의 취득비용 관련 응답들을 상호 비교하여 취득비용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2. 조사준비

### 1) 행정조사 유형별 설문지 작성

정보의무 이행절차를 세분화하고 절차별로 담당자의 수, 개별담당자별 임금 및 투입시간, 등 파악하는 등 설문문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정확한 비용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문지 구조가 복잡해지고 설문 응답자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설문지의 난해성과 복잡성은 응답률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따라서 설문지 설계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비용측정의 정확성(precision)과 설문응답자의 이해가능성, 응답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문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2) 대상기업 표본의 선정

표본추출의 설계(sampling design)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표성 있는 표본(representative sample)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표본추출이론에서는 표본추출의 설계유형을 크게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 등 두 범주로 나누고 있다.

-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은 표본추출 프레임 내에 있는 단위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법을, 비확률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은 이러한 성질을 갖지 않는 방법을 말함.

확률표본추출에서는 추출단위를 무작위로 선택하므로 표본추출에서 조사자의 주관에 배제할 수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표본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확률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사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층화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집단을 뚜렷한 특징을 가진 소집단별로 표본추출프레임을 작성, 각 소집단별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이들을 합산함
- 표본추출오차가 무작위추출보다 적으므로 대표성이 강화됨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대상모집단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층화 추출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대신 유형3을 제외하고 행정조사 각 유형별 모집단에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50개씩의 표본을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하였고, 유형3의 경우는 조사 대상이 7개 업체에 불과하여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 3. 설문조사의 수행 및 결과

설문조사는 가격변수의 표준화의 정확한 수행을 목표로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 바, 설문방법 중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조사가 용이하고 또한 비용 상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는 우편조사의 채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우편발송만으로는 응답률 및 정확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일정수준의 표본 및 정확한 설문 응답 확보를 위하여 이후 수신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설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설문응답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행정부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행정활동들을 실제에 입각하여 관련되는 절차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당되지 않는 행정활동을 구명)하다. 따라서 우편발송 후 개별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 내지 대면면접 등을 병행함으로써 외부 획득비용, 용역비는 해당 행정부담에 국한하여 조사하는 것임을 재차 주지시킨 후 조사하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수준의 표본 및 정확한 설문 응답 확보를 위하여 3가지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각 50부씩 설문지를 등기우편으로, 나머지만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7부의 설문지를 E-mail로 발송함. 이후 수신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전화, fax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제공 받음으로써 설문응답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실제 회수 내지 응답이 이루어진 수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2] 행정조사 유형별 모집단 및 표본수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목표 표본수	50	50	7	50
실제 획득 표본수	8	16	6	13
응답률	16%	32%	85.7%	26%

### 4. 자료검증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normally efficient Businesses)”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 수치 중 비정상적 수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별 △ 소요시간 △ 외부 비용 △ 취득비용을 대상으로 통상적 기업의 수치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 수치’를 찾아내야한다 (국무조정실, 2008).

- ① 평균으로부터 2표준편차를 벗어난 수치를 비정상적 수치로 간주
- ② 최소값이 최대값의 3배의 범위 내에 들어올 때 까지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하며, 이때 제외된 값을 비정상적 수치로 간주  
⇒ 방법2가 1보다 비정상적 수치를 더 많이 찾아내는 경향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방법 ②를 사용하여 비정상적 수치 여부를 판단하였다. 비정상적 수치는 다음 중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치를 제외하거나 수정하였다.

- 해당 기업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치의 오류가 있었는지, 해당 설문을 이해하는 데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검증하여 재 산출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치의 적정성 여부 검증 및 적정 수치 등을 자문
- 특히, 외부비용과 취득비용은 규모가 크고 취득비용은 간접비용과 혼동의 소지가 있어 기업체들이 잘못 이해하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필요

이상은 아래의 「행정조사 감축효과 측정 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내용에 해당되고 이후 단계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실측과정으로 제시한다.

[그림 4] 측정단계 개관



자료 : 국무조정실(2008),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 p.15 수정.



### 제3절 정비유형별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 1. 제1유형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관련 행정조사 폐지

1) 행정조사 정비 이전의 표준화된 1개 기업의 행정부담 산출

[표 13] 표준화된 행정부담 : 유형 1

구분	내부비용			외부비용			행정부담
	인건비	간접비	소계	취득비	외부용역비	소계	
폐수	₩5,198	₩1,299	₩6,497	₩0	₩0	₩0	₩6,497
대기	₩57,033	₩14,258	₩71,292	₩0	₩0	₩0	₩71,292

2) 행정부담 감축효과 : ₩3,410,429

환경부에 의하면, 행정조사 정비계획은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폐지에 따른 관련 행정조사 폐지이다. '07년 기준으로 초과부담금을 부과 받았던 업체 63개의 행정부담비용을 측정하면, 그 값이 폐지시 감축되는 행정부담비용이다. 정비 이전의 행정부담은  $(43 \times 2 \times ₩6,497) + (20 \times 2 \times ₩71,292) = ₩3,410,429$ , 정비 이후의 행정부담은  $(43 \times 2 \times ₩6,497) + (20 \times 2 \times ₩71,292) = ₩0$ , 따라서 감축 효과는 ₩3,410,429이다. 만약 670여개 대상을 모두 검사 하여 초과 부담금이 부과 될 경우 혹은 다른 년도에 더 많은 업체가 부담금을 부과 받았다면, 폐수관련 업체 수와 대기관련 수에 따라 행정부담비용이 ₩3,410,429 보다 증가할 것이다. 원(₩)단위 이하 값은 반올림 후 표기하였다(이하 다른 유형도 동일방식으로 표기).

[표 14] 행정조사 폐지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효과 : 유형 1

구분	수량변수	가격변수	총 행정부담
정비 전	폐수	43×2	₩6,497
	대기	20×2	₩71,292
정비 후	폐수	43×0	₩6,497
	대기	20×0	₩71,292
감축효과			₩3,410,429

#### 2. 제2유형 : 국가유공자 취업실태 파악 행정조사 기준완화

1) 행정조사 정비 이전의 표준화된 1개 기업의 행정부담 산출

[표 15] 표준화된 행정부담 : 유형 2

내부비용			외부비용			행정부담
인건비	간접비	소계	취득비	외부용역비	소계	
₩14,875	₩3,719	₩18,594	₩0	₩0	₩0	₩18,594

2) 행정부담 감축효과 : ₩468,605,201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행정조사 정비계획은 조사대상 축소<sup>1)</sup>와 조사주기 완화<sup>2)</sup>로 나뉜다. 대상업체 수가 18,051개에서 10,900여개로 감소하고 조사 주기는 연2회에서 1연1회로 완화한다.

정비 이전의 행정부담은  $18051 \times 2 \times ₩18,594 = ₩671,279,461$ , 정비 이후의 행정부담은  $10900 \times 1 \times ₩18,594 = ₩202,674,260$ , 따라서 감축효과는 ₩468,605,201이다.

[표 16] 기준완화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효과 : 유형 2

구분	수량변수	가격변수	총 행정부담
정비 전	18051×2	₩18,594	₩671,279,461
정비 후	10900×1	₩18,594	₩202,674,260
감축효과			₩468,605,201

- 1) 조사대상축소(대상업체수가 18,051개에서 10,900여개로 감소)
  - 현행 : 20인 이상 비제조업 및 2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립학교, 국가기관 등 모든 기관
  - 개정 : 신규 등록업체, 취업 선호업체, 고용율 50% 이하인 500인 이상 업체 등
- 2) 조사주기 완화(연2회에서 1연1회로 완화)
  - 상,하반기 각1회 → 상반기 1회

### 3. 제3유형 : 비임상시험기관 행정조사의 공동조사

1) 행정조사 정비 이전의 표준화된 1개 기업의 행정부담 산출

[표 17] 표준화된 행정부담 : 유형 2

내부비용			외부비용			행정부담
인건비	간접비	소계	취득비	외부용역비	소계	
₩605,119	₩151,280	₩756,399	₩235,000	₩0	₩235,000	₩991,399

2) 행정부담 감축효과 : ₩6,444,094 (1년 기준)

식약청 등에 의하면, 행정조사 정비계획은 3개 기관에서 각각 2년간 1회씩 조사하던 것을 2년간 공동조사 1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정조사 정비이전에 6개 업체는 식약청, 환경연구원, 농진청 3개 기관이 각각 조사하였고, 1개 업체는 환경연구원과 농진청 2개 기관이 조사하였다. 따라서 해당 업체 7개만 비용을 측정할 후, 3번 조사받던 업체는 1번으로, 2번 조사받던 업체는 1번으로 수량 조절을 함으로써 행정부담 감축효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정비 이전의 행정부담은  $(3 \times 6 \times 1 \times ₩991,399) + (2 \times 1 \times 1 \times ₩991,399) = ₩19,827,981$ , 정비 이후의 행정부담은  $(1 \times 6 \times 1 \times ₩991,399) + (1 \times 1 \times 1 \times ₩991,399) = ₩6,939,793$ , 따라서 2년기준 감축효과는 ₩12,888,188, 1년기준 감축효과는 ₩6,444,094이다.

[표 18] 공동조사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효과 : 유형 3

구분	수량변수	가격변수	총 행정부담
정비 전	3기관중복	$3(\text{조사주체}) \times 6(\text{업체수}) \times 1(\text{2년간조사횟수})$	₩991,399
	2기관중복	$2(\text{조사주체}) \times 1(\text{업체수}) \times 1(\text{2년간조사횟수})$	₩991,399
	소계		₩19,827,981
정비 후	3기관중복	$1(\text{조사주체}) \times 6(\text{업체수}) \times 1(\text{2년간조사횟수})$	₩991,399
	2기관중복	$1(\text{조사주체}) \times 1(\text{업체수}) \times 1(\text{2년간조사횟수})$	₩991,399
	소계		₩6,939,793
감축효과(2년기준)			₩12,888,188
감축효과(1년기준)			₩6,444,094

### 4. 제4유형 : 선박 출입검사의 자율관리 전환

1) 행정조사 정비 이전의 표준화된 1개 기업의 행정부담 산출

[표 19] 표준화된 행정부담 : 유형 4

구분	내부비용			외부비용			행정부담
	인건비	간접비	소계	취득비	외부용역비	소계	
출입검사	₩34,827	₩8,707	₩43,533	₩0	₩0	₩0	₩43,533
자율관리	₩11,294	₩2,824	₩14,118	₩0	₩0	₩0	₩14,118

2) 행정부담 감축효과 : ₩9,766,030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행정조사 정비계획은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한 선박 및 해양 시설은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것이다.<sup>3)</sup> 해양경찰청에서 08년 현재 참여한 선박수는 332척이다.

정비 이전의 행정부담은  $332 \times 1 \times ₩43,533 = ₩14,453,060$ , 정비 이후의 행정부담은  $332 \times 1 \times ₩14,118 = ₩4,687,030$ , 따라서 감축효과는 ₩9,766,030 이다.

[표 20] 자율관리 전환으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효과 : 유형 4

구분	수량변수	가격변수	총 행정부담
출입검사	$332 \times 1$	₩43,533	₩14,453,060
자율관리	$332 \times 1$	₩14,118	₩4,687,030
감축효과			₩9,766,030

3)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한 선박 및 해양시설은 자율적으로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점검 후 연1회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 토록 하고, 출입사는 면제함  
 \* '08.6월까지 자율점검제도(선박) 시범운영  
 \* '08.7월 ~ 12월까지 해양시설 확대운영

### 5. 유형별 연 기준 행정부담 감축효과 종합

이상의 정비유형별 감축효과 측정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유형2는 감축액의 크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1, 유형3, 유형4는 각각 해당기업수가 63개, 7개, 332개로 유형2(18051개→10900여개)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행정조사 정비시 행정부담액이 감축되는 크기는 행정조사 대상기업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좌우된다.

[표 21] 행정부담 감축효과 종합

행정조사 정비유형	최초 행정부담비용	정비 후 행정부담비용	행정부담감축액	감축비율
유형1	₩3,410,429	₩0	₩3,410,429	100.00%
유형2	₩671,279,461	₩202,674,260	₩468,605,201	69.81%
유형3	₩9,913,991	₩3,469,897	₩6,444,094	65.00%
유형4	₩14,453,060	₩4,687,030	₩9,766,030	67.57%

## Ⅲ. 감축효과 측정상의 한계 및 보완점

### 1.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류

#### 1) 행정조사 및 정보의무의 명확화 필요

감축효과 측정의 첫 단계에 해당하므로 정비대상이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정보제공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자료요구(data requirement) 분류의 활용

기업 내부자료들은 기업을 모집단 특성에 따라 구분할 때 구분기준을 추정해낼 수 있게 하는 변수들로 활용 가능하다.

- 기업의 내부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정보의무 담당자의 연봉(또는 단위시간당 임금율)임. 모집단의 연봉분포를 알고 있으면 모집단을 연봉의 규모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고 하위집단별로 무작위 추출하는 층화표본추출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모집단의 연봉정보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수의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연봉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봉정보와 함께 연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기업 관련자료들을 파악한 후, 연봉을 다른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regression)함으로써 연봉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음.

$$* \text{연봉추정식: } \hat{Y} = \hat{\alpha} + \hat{\beta}_1 X_1 + \hat{\beta}_2 X_2 + \hat{\beta}_3 X_3$$

$\hat{Y}$ : 추정연봉,  $X$ :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hat{\beta}$ : 회귀계수 추정치

- 이후 연봉추정식을 이용하여 일정수준별로 분할하여 표본을 구성할 수 있게 됨.

실제에 있어서는 관련부처가 제공하는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는 주소/연락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에 한정되므로 이를 통해 행정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기업의 내부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조사준비 단계

### 1)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표본추출

본 연구에서는 시간상 제약 및 행정조사 대상 모집단의 정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집단 분포를 반영한 정교한 표본추출을 실시하지 못하고, 일정수의 표본을 모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하였다.

기업의 자료요구가 확보되거나 신용평가 회사 등을 통한 기업 내부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모집단의 분포적 특징을 반영한 표본추출이 가능할 것이다.

### 2) 조사방법의 결정 및 시행

선행연구에서는 편차가 심하지 않은 표준화된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면 혹은 전화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인터뷰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인원과 조사기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시간상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우편조사는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대상업체들이 지리적, 거리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설문조사방법이다. 설문 발송 후 일정 기간 동안 반송된 설문지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편조사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반송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반송률의 제고를 위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조사방법들을 병행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의 반송률은 그리 양호하지 않았다.

향후 조사에서는 충분한 조사인원과 조사시간을 투입하여 대상업체에 대한 설문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법으로서 방문 대면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조사표의 설계도 방문조사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함
- 조사표의 질문이 조사상대방에게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사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기업 조사 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확인,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설문응답에 대한 인센티브(ex. 상품권 등) 제공을 통해 설문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자료검증 및 행정조사 준비의 감축효과 측정

### 1) 부정확한 설문응답

설문지상의 응답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연봉정보의 경우 정확한 수치보다는 일정 범주 형태로 기재하였다(ex. 4천만에서 5천만 원 사이). 연봉정보를 꺼려하는 사회분위 기상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범주로 기재된 연봉의 경우 범주의 중간값을 해당 응답자의 연봉으로 간주하였다.

### 2) 정상적 효율기업의 식별

비정상, 비효율 기업을 식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에는 크게 ① 평균치  $\pm$  2 표준편차 값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②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2배수-3배수 값을 벗어나는 측정치를 비정상, 비효율 기업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비정상, 비효율기업이 표본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 정상적 효율기업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상적 효율기업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우면 비정상, 비효율기업 표본을 제외하고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②번째 방법을 적용하여 비정상, 비효율 기업을 제외하고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 3) 측정치의 표준화

#### (1) 정상적 효율기업의 판별

정상적 효율 기업들의 임금율, 소요시간, 비용 등 측정치를 표준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대푯값에는 최빈치(mode), 중위값(median), 평균(mean) 등이 있다. 대푯값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비정상 기업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상치(outlier)라고 판단되는 수치가 제거되는 경우에는 최빈치나 중위값보다는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값들이 제외된 값들의 평균을 표준화값으로 사용하였다.

#### (2) 외부비용의 표준화

외부비용의 경우 같은 정보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외부비용 존재여부,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 매우

상이한 응답을 보인다. 특히 외부용역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기존연구에서는 실제로 외부용역비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설문대상 표본크기의 과반수(50%이상)의 업체가 정보의무 이행시 외부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응답할 경우, 정보의무는 외부용역이 필요한 정보의무로 간주하고 단순평균값(0이라고 응답한 기업 포함하여 계산)을 산출하여 이를 외부용역비 표준화 결과로 본다.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에 따라 과반수의 판단을 전체의 판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응답은 당해 비용이 '해당 행정부담에 국한'되는 것임을 응답자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문지의 작성 내지 조사자의 설문조사시 응답자에게 보다 외부용역비와 '행정부담과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신. (2005a).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배우자. 국회보, 통권 467호 : 71-75.
- 김신. (2005b).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 표준비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2(2) : 53-69.
- 김신. (2005c).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측정 : 모형 및 적용방안.
- 남궁근. (2005). 행정조사방법론 3판. 서울 : 법문사.
- 신종익. (2004).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 규제개혁 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4-25.
- 안혁근. (2007).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KIPA 연구보고서 2007-21.
- 이동주. (2005). 『산업단지내 입주 중소기업의 규제개혁 방안』. 국회규제개혁특별위원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관련 제2차 공청회 자료집>. 67-86. 서울.
- 이종한 외. (2006).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이현. (2008).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7-14.
- 중소기업연구원(2007).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2007).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
- OECD, (2005), A Review of the Standard Cost Model.
- \_\_\_\_\_, (2005c). The OECD Red Tape Scoreboard : Measuring and Comparing Administrative Burden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 World Bank, (2005). Doing Business in 2005 : Removing Obstacles to Growth, Washington D.C. : World 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Oxford University Press.

## 부 록

제 1 절   ▶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제 2 절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 제1절 |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 1. 행정규제기본법

- 제정 1997. 8.22 법률 제5368호
- 일부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 일부개정 2005. 12.29 법률 제7797호
-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규제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규제의 원칙)**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제11조 (예비심사)**

-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 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선권고)**

- 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17조 (의견제출)

-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개정 2005.12.29〉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 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2005.12.2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직정비등)

-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제24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 (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제29조 (전문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

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별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 (규제개선 점검·평가)**

-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국무총리실장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5.12.29, 2008.2.29>

**제37조 (공무원의 책임등)**

-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4호

### 제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3.31>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 삭제 <2006.3.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참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첨부서류의 보완)**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선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12조 (의견제출의 방법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제1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 제1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삭제 <2006.3.31>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전문위원 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실지조사)**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당 등)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 (규제개선 점검·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확인·점검사항
  - 2. 확인·점검일정
  -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81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 2006.3.31>**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⑦ 생략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일부개정 2008. 10. 2.

**제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10.2>
-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이상인 관계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2조의2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8.10.2>

**제3조(의안의 제출)**

-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 2 (중요규제 등의 결정)**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 여부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 여부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및 간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전검토 의견을 정한다. <신설 2008.10.2>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검토 의견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08.10.2>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삭제)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8.10.2>

**제6조(소관)**

-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해경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 ② (삭제)
-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삭제) <2008.10.2>

**제7조(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10.2>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제8조 (삭제)** <2008.10.2>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실의 직무)**

- 규제개혁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08.10.2>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 · 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 · 조사요원의 구성 등)**

-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2>
-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2>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08.10.2>

**제15조 (삭제) <2008.10.2>**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총리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10.2>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절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 1. 규제개혁위원회

회 수	부처명	안건 번호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89회 ('08.2.14)	복지부	717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리학과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1			1
	규개위	718	'08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규개위	719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부담 측정·감축정책 도입방안	보고				
제190회 ('08.3.21)	규개위	720	'08년 규제개혁추진 지침 수정안	의결	1			1
제191회 ('08.8.21)	복지부	7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192회 ('08.9.18)	노동부	72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1		1
	규개위	72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193회 ('08.10.2)	규개위	72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1			1
제194회 ('08.10.16)	공정위	724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유인여부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1			1
	공정위	725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72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문화부	727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총리실	728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회 수	부처명	안건 번호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95회 ('08.10.30)	행안부	2008-07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의결				재상정
	노동부	2008-11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환경부	2008-13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상정
제196회 ('08.11.13)	환경부	2008-13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2
	행안부	2008-07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의결	5	4		9
	복지부	2008-48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결	3	3		6
	복지부	2008-49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2008-58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2008-4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관세청	2008-40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197회 ('08.11.20)	복지부	2008-3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2008-3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2008-69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여성부	2008-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제198회 ('08.11.25)	지경부	2008-86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2008-88	항공법 개정안	의결	1	3		4
	규개위	2008-9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199회 ('08.12.4)	환경부	2008-99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상정
	복지부	2008-81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1			1
	규개위	2008-9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결	1			1
제200회 ('08.12.18)	국토부	2008-108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의결			1	1
	환경부	2008-99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2
	교육부	2008-103	외국인학교등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1
	총리실	2008-114	'09년 규제개혁추진 지침	의결	1			1

## 2. 경제분과위원회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43회 (08.1.10)	재정부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공정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안	의결	5	3		8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6	1		7
제344회 (08.1.31)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지경부	수출입 공고 개정안	의결	1			1
제345회 (08.3.6)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제346회 (08.4.17)	국토부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7		3	10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도로법 시행규칙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3			3
제347회 (08.5.9)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48회 (08.5.20)	지경부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제349회 (08.5.22)	농식품부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5
	국토부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3			3
	국토부 (해경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지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6
	지경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의결	1			1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50회 (08.5.28)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2
	지경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농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2
	농식품부	한국산생과실대만수출검역요건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도선법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51회 (08.6.4)	지경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의결	4			4
	지경부	소프트웨어사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5
	국토부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52회 (08.6.11)	지경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53회 (08.6.20)	방통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제354회 (08.6.24)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2		3	15
	국토부	측량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결	1			1
	방통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	의결	1			1
제355회 (08.7.3)	지경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1		5
	금융위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2	1		3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56회 (08.7.10)	방통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4	7		11
제357회 (08.7.17)	농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지경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7			7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지경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방통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58회 (08.7.24)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안	의결	5	2		7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정안	의결	1			1
제359회 (08.7.31)	농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의결	1	1		2
	지경부	전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60회 (08.8.14)	국토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국토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의결	4			4
	지경부 (특허청)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61회 (08.8.21)	지경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61회 (08.8.21)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61회 (08.8.21)	방통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 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 기준 제정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 기준 제정안	의결	3	1		4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지경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5			5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제362회 (08.8.27)	방통위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안	의결	1			1
	국토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의결	2			2
	국토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3			3
제363회 (08.9.4)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편적 업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의결	1		1	2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1		3
	지경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제364회 (08.9.11)	방통위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재정부	공중 등 협박목적에 관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365회 (08.9.18)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2			2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지경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66회 (08.9.2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			2
	지경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지경부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의결	1			1
제367회 (08.10.2)	지경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의결	3			3
	지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지경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의결	1			1
	지경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의결	4			4
	농식품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5			5
	농식품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4			4
제368회 (08.10.9)	지경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2
	지경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제369회 (08.11.6)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의결	1			1
제370회 (08.11.13)	농식품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1	1		2
	지경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71회 (08.11.20)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6	2		8
	방통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2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72회 (08.11.25)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73회 (08.12.4)	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의결	1		3	4
	농식품부	어업의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1	3	1	5
	금융위	은행법 개정안	의결		2		2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전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74회 (08.12.18)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1	3		4

###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서면 의결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60차 (08.1.1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소방방재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4			4
제361차 (08.1.17)	교육부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5
	게임위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정안	의결		1		1
제362차 (08.1.31)	보훈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의결	재심의			
	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5			5
제363차 (08.2.1)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64차 (08.2.14)	보훈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의결	재심의			
제365차 (08.2.21)	복지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고시) 제정안	의결	2			2
제366차 (08.4.3)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1		4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고시) 개정안	의결		1		1
	*소방방재청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	1			1
	*소방방재청	소방 관련 교과목 · 소방안전 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의결	1			1
제367차 (08.4.15)	*식약청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교과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67차 (08.4.15)	*교과부	교육환경평가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2

\* 서면 의결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68차 (08.4.17)	행안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9	3		12
	*식약청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69차 (08.5.1)	교과부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규정 제정안	의결	4	2		6
	교과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2
	*교과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문광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문광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개정안	의결	1			1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교과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9			9
제370차 (08.5.7)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고시) 제정안	의결	2			2
	*환경부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결혼중개업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9	2		11
제371차 (08.5.15)	*행자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식약청	의약품동등성 확보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72차 (08.5.22)	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계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2		8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1	1	5



\* 서면 의결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73차 (08.5.29)	*법무부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교과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문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의결	3			3
제374차 (08.6.5)	문광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0	1		11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의결	6			6
	문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의결	1			1
	*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식약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75차 (08.6.11)	*동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3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규정(고시) 개정안	의결	1			1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의결	2			2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376차 (08.6.19)	소방방재청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7	2		9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2	1	6
	복지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고시) 제정안	의결		1		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2		5
	*식약청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고시) 개정안	의결	1			1
	*외교부	해외이주법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고시) 개정안	의결	1			1

\* 서면 의결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77차 (08.6.26)	*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교과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3			3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78차 (08.7.3)	교과부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법 제정안	의결	2	2		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행안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79차 (08.7.3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1			1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의결	1	1		2
	법무부	공증인법 개정안	의결	2			2
	교과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1	1		2
	복지법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복지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교과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3			3
	*교과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교과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	의결	1			1
	*소방방재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2
제380차 (08.8.21)	*복지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1		1
	*문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 서면 의결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80차 (08.8.21)	*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3			3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2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안	의결	1			1
제381차 (08.8.28)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의결	3			3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82차 (08.9.4)	*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의결	1			1
	*교과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4			4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보훈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	1			1
	*교과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83차 (08.9.11)	*교과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결	4			4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 서면 의결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83차 (08.9.11)	*환경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6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84차 (08.9.1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3	1		4
	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안	의결		2		2
	*문화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5			5
	*식약청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2			2
제385차 (08.9.25)	*복지부	결핵예방법 개정안	의결	3			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7			7
제386차 (08.10.2)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문화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의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2		3
	*복지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결	3			3
제387차 (08.10.9)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의결	5			5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의			
	문화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제388차 (08.10.16)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3
제389차 (08.10.22)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	2			2
제390차 (08.10.30)	교과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2			2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 서면 의결

회 수	부처명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계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제391차 (08.11.20)	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1	1		2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8	4		12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4
	식약청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제392차 (08.12.4)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의결			1	1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393차 (08.12.11)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3	1		4
	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결	8			8
			총계	303	48	5	356

## 2008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09. 2.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집 · 인쇄 : 디자인랩 (Tel. 02-739-9956)